http://www.donga.ac.kr



2025

동아대학교 요람

DONG-A UNIVERSITY BULLETIN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2025학년도

동아대학교 요람

DONG-A UNIVERSITY BULLETIN

▸ 교기



▸ 교시

자유 · 진리 · 정의



승학캠퍼스



구덕캠퍼스



부민캠퍼스



石堂 鄭在煥先生 銅像贊

여기 偉大한 사람의 座標가 있다.

至誠의 人間 끈기있는 人間 謙虛의 人間으로서 또는 法哲學의 白金보다 굳세고 단단하고 찬란한 叡智로 東亞學塾을 創設擴充하고 淡淡하게 昇天하신 갸륵한 人間像이 있다.

실로 萬사람이 崇仰하는 스승의 姿勢다.

十萬弟子는 이제 追慕의 뜻으로 精誠을 모아 스승의 像을 이곳에 세운다.



총장 **이해우**

▸ 건학이념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은 홍익인간의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을 준봉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아울러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품격을 도야함으로써 조국번영의 역군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처럼 홍익인간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동시에 본 대학교 건학의 근본이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교육방침을 정하고 있다.

첫 째, 신체의 건전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불발의 정신을 가지게 한다.

둘 째, 민족적 독립과 자존의 기풍, 그리고 국제적 신의 협조의 정신이 구전한 국민의 품성을 도야한다.

세 째, 실천궁행과 근로역작의 정신을 강조하고 충실한 책임감과 상호애조의 공덕심을 발휘케 한다.

네 째, 고유문화를 순화양양하고 과학과 기술의 독립적 창의로써 인류문화에 공헌함을기한다.

다섯째,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예술을 감상, 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하게 사용하여 화해 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그리고 본 대학교는 교시로 자유·진리·정의를 받들고 있다. 학생은 자유의 전당인 학교에 들어와서 심오한 진리를 연구하여 정의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다.

▸ 대학이념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아래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 · 교육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자주정신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품격을 함양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복지사회실현 및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

▸ 교육목적

자유 · 진리 · 정의의 교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자유로이 탐구하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길러, 고도 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과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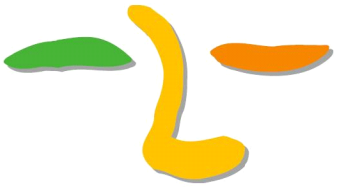
▸ 교육목표

- 물질만능 풍조와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과 문화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존중의 가치관을 확립한다.
- 사회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민족의 자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기른다.
-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품성을 기른다.
-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태도를 기른다.
- 세계화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기른다.
-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정보처리 능력을 기른다.
- 고도 산업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게 한다.
- 개방적인 산학협동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 심볼마크

방패 형상은 중세 이후 상아탑으로 상징되는 대학을 수호 한다는 의미와 대학이 학문 탐구의 길에 앞장선다는 뜻을 나타낸다. 방패 윗부분의 ‘ ’은 학문의 전당 곧 학문을 숭상하는 대학의 ‘대’자를 도안화한 것이며, 가운데 ‘U’는 University의 머리글자로 종합대학임을 나타내며, U자를 바탕으로한 ‘ㄷ’ 과 ‘O’은 자랑스러운 ‘동아’의 머리글자로 세계속의 대학교로 부상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짙은 바다색 (진청색 : Pantone282C)은 교색으로, 태평양을 향한 진취적 기상과 학문연구의 의지 및 희망의 상징성을 내포한다.

▸ 이미지심볼



이미지심볼은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라는 점에서 사색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큰교육, 큰사람, 대학의 대(大), 선비 사(士)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교상





표범의 진취적이고 강인한 기상은 동아의 패기를 잘 표출하고 있으며,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는 끊임 없이 도전하는 불굴의 동아정신을 상징하고 있다.

▸ 교목





소나무의 변함없는 기백과 생명력은 동아가 가지는 곧고 힘찬 정신을 담고 있다.

▸ 교화





목련의 부드러움과 온화로움은 동아의 공동체 정신에 흐르는 힘의 동력을 상징한다. 사제간에, 동문간에 면면히 이어지는 곧고도 부드러운 분위기는 동아를 잘 나타내어 준다.

▸ 2025학년도 학사일정

학 기	일 정	업 무
제1학기	• 2025. 2. 5.(수)~2. 7.(금)	제1학기 수강신청
	• 2025. 2. 19.(수)~2. 21.(금), 2. 24.(월)	제1학기 등록
	• 2025. 3. 4.(화)	**제1학기 개강**
	• 2025. 4. 22.(화)~4. 28.(월)	제1학기 중간시험
	• 2025. 6. 10.(화)~6. 13.(금)	**제1학기 보강일**
	• 2025. 6. 14.(토)~6. 20.(금)	제1학기 기말시험
	• 2025. 6. 21.(토)~6. 27.(금)	제1학기 성적입력
	• 2025. 6. 28.(토)~7. 4.(금)	성적공시 및 정정
	• 2025. 7. 7.(월)	성적확정
	• 2025. 6. 21.(토)~8. 31.(일)	하계방학
제2학기	• 2025. 8. 6.(수)~8. 8.(금)	제2학기 수강신청
	• 2025. 8. 25.(월)~8. 28.(목)	제2학기 등록
	• 2025. 9. 1.(월)	**제2학기 개강**
	• 2025. 10. 20.(월)~10. 26.(일)	제2학기 중간시험
	• 2025. 11. 1.(토)	개교기념일
	• 2025. 12. 8.(월)~12. 12.(금)	**제2학기 보강일**
	• 2025. 12. 13.(토)~12. 19.(금)	제2학기 기말시험
	• 2025. 12. 20.(토)~12. 26.(금)	제2학기 성적입력
	• 2025. 12. 27.(토)~2026. 1. 2.(금)	성적공시 및 정정
	• 2026. 1. 5.(월)	성적확정
	• 2025. 12. 20.(토)~2026. 2. 28.(토)	동계방학
	• 2026. 2. 23.(월)~2. 27.(금)	학위수여식

▸ 2025학년도 지정보강일

학기	일정		지정보강일
1학기	2025. 5. 1.(목)	근로자의날	2025. 6. 12.(목)
	2025. 5. 5.(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2025. 6. 11.(수)
	2025. 5. 6.(화)	대체휴일	2025. 6. 10.(화)
	2025. 6. 6.(금)	현충일	2025. 6. 13.(금)
2학기	2025. 10. 3.(금)	개천절	2025. 12. 12.(금)
	2025. 10. 6.(월)	추석	2025. 12. 8.(월)
	2025. 10. 7.(화)		2025. 12. 9.(화)
	2025. 10. 8.(수)	대체휴일	2025. 12. 10.(수)
	2025. 10. 9.(목)	한글날	2025. 12. 11.(목)

2025학년도 동아대학교 요람

CONTENTS

교기·교시
승학·구덕·부민캠퍼스 전경
석당동상 및 동상찬
총장근영
건학이념
대학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
심볼마크·이미지심볼
교상·교목·교화
2025학년도 학사일정

Ⅰ. 연 혁 17

1. 약사 ····· 19
2. 연표 ····· 44

Ⅱ. 학교법인 81

1. 학교법인 동아학숙 정관 ····· 83
2. 학교법인 동아학숙 임직원 ····· 118

Ⅲ. 구성 및 직제 119

1. 대학교 기구표 ····· 121
2. 구 성 ····· 122
   (1) 대학교 본부 ····· 122

2025학년도 동아대학교 요람

(2) 대학원 ····· 122
(3) 대학 ····· 125
(4) 총장 직속 기구 ····· 127
(5) 교학부총장 직속 기구 ····· 128
(6) 부속기관 ····· 128
(7) 부설연구기관 ····· 129

3. 보직자명단 ····· 130
(1) 대학교 본부 보직자 ····· 130
(2) 교무위원회 위원 ····· 130
(3) 대학원 ····· 131
(4) 대학 ····· 132
(5) 부속기관 ····· 135
(6) 부설연구기관 ····· 137
(7) 학생군사교육단 ····· 139
(8) 동아대학교 의료원 ····· 139

Ⅳ. 대 학 141

1. 학칙 및 학사에 관한 규정 ····· 143
(1) 학칙 ····· 143
(2) 학사에 관한 규정 ····· 194

2. 단과대학 소개 ····· 351
■ 인문과학대학 ····· 351
■ 자연과학대학 ····· 354
■ 사회과학대학 ····· 356
■ 경영대학 ····· 359
■ 생명자원과학대학 ····· 362
■ 공과대학 ····· 344
■ 디자인환경대학 ····· 370
■ 예술체육대학 ····· 373
■ 건강과학대학 ····· 376
■ 의과대학 ····· 377
■ 국제대학 ····· 379

CONTENTS

▮ 소프트웨어대학 ····· 381
▮ 간호대학 ····· 382
▮ 교양대학 ····· 383
▮ 융합대학 ····· 383
▮ 석당인재학부 ····· 385

Ⅴ. 동문회 387

1. 동문회 회칙 ····· 389
2. 동문장학회 정관 ····· 394

Ⅵ. 부 록 403

1. 교가, 응원가 Ⅰ, Ⅱ
2. 캠퍼스 안내

연혁 I

DONG-A UNIVERSITY BULLETIN

1. 약사

2. 연표





1. 약 사

자유·진리·정의를 교시로 1946년 11월 1일에 개교한 동아대학교는 1947년 8월 석당 정재환 선생을 중심으로 한 동아대학 설립 기성회가 부산시 수정동 1의 21번지에서 재단법인 동아학숙의 설립허가와 동아대학의 설립인가를 문교부에 신청, 동년 12월 30일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법학부와 문리학부 등 2학부 5학과의 4년제 대학으로 정식 개교하였으며, 초대 이사장에는 정재환 선생이, 초대 학장에는 정기원 선생이 각각 취임하였다.

해방 직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홍익인간'의 기본이념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자유·진리·정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민족 백년대계의 기치를 우뚝 세웠다.

1949년 4월 교사를 부산시 범1동 365번지로 옮기고, 7월 20일에는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1950년 6·25동란으로 교사를 다시 동대신동 3가 1번지로 이전하여 전시 가교사에서 수업을 속행하는 한편, 전시 문화·과학강좌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1953년에 정재환 학장의 취임으로 보다 발전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1954년에 농학부가, 1955년에 공학부가 증설되고, 1956년에 임시 2부 대학의 설립과 1958년에는 대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본관을 비롯한 중요건물의 준공을 보게 되어 구덕산록에 백악의 대전당을 구축하는 데 확고한 기반을 닦았다.
개교 후 10년간은 창설기적 건설단계에 불과하였으나, 1959년 종합대학교의 승격과 정재환 초대 총장의 취임 이후, 외곽시설의 확충과 내적 충실을 기하여 교세는 확장일로를 걸었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 각종 부속기관의 건물이 준공 또는 증축되고 각종 부설연구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사학의 대전당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 이후 10년간은 연구 분위기의 기반 조성과 내실 있는 성장기로서 기록되며 1967년 이후 실질적인 발전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1968년 제1본관의 준공을 보았고, 1969년에 경영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고 가정관이 준공되었으며, 1970년에 대학원 건물을 신축하였다.
1973년에 교육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았고, 제2본관 및 공과대학 별관을 준공하였다. 1971년부터 3년간 사회보장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중요 연구소가 대거 설치인가를 받았다.
1975년 6월 26일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며 초대 총장이었던 석당 정재환 박사가 명예 총장으로 취임하고 한림 정수봉 박사가 제2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1976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명문사학의 정상을 향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7년 9월 대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법경대학을 실험대학으로 개편하고, 1978년 10월에 문리과대학, 농과대학 및 공과대학을 실험대학으로 확대 승인 받음으로써 2부 대학을 제외한 전 대학을 실험대학체제로 개편하게 되었다.
1979년 4월에 사회개발연구소를 설치하고, 도시문제연구소 등 4개 연구소를 통합, 폐지하여 부설연구소를 정비하는 한편, 공과대학을 사하구 하단동 신축 제2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9월에는 문리과대학을 문

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법경대학을 정법대학과 상경대학으로 각각 분리하는 대학편제 개편의 인가를 받아 7개 단과대학을 확충하게 되었다.

1980년 10월에 정법대학을 법정대학으로 대학 명칭을 변경하고 전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2부 대학을 폐지하여 야간강좌 개설학과로 개편하였고, 동년 11월에는 공과대학 제3호관의 준공을 보았다.

1981년 8월 29일 조성 중이던 제2캠퍼스에 이과대학, 농과대학을 이전함과 동시에 제2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982년 2월 18일 종전의 어학연습실을 어학연구소로 개편하였고,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였다. 10월 5일에는 체육대학을 설치하였으며, 12월 30일에는 사하구 다대동에 야구장과 축구장 및 운동선수 합숙소가 갖추어진 종합운동장의 준공을 보아 체육동아의 터전을 다졌다.

1983년 8월 1일에 교수회관을 준공하고, 9월 8일에는 예술대학을 설치하였으며, 9월 9일에는 제2캠퍼스에 체육관의 준공을 보았다.

1984년 2월 16일에 기초과학연구소를 설치하고, 8월 29일에는 독일학연구소, 해양자원연구소 및 재료실험실을 설치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법정대학과 상경대학을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으로 조정 개편하는 한편, 이과대학에 의예과를 신설하였다.

1985년 3월 28일에 법학연구소를 설치하고, 8월 5일에는 제1캠퍼스를 대신동캠퍼스, 제2캠퍼스를 하단캠퍼스로 캠퍼스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8월 15일에는 하단캠퍼스에 대학본부와 문과대학건물을 준공·이전하였고, 11월 1일에는 하단캠퍼스에 제1학생회관의 준공을 보았다.

1986년 4월 10일에 여학생교양실을 설치하고, 11월 6일에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이과대학을 자연과학대학으로 대학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7년 3월 31일에 하단캠퍼스를 승학캠퍼스로, 대신동캠퍼스를 구덕캠퍼스로 캠퍼스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8월 21일에는 승학캠퍼스에 경영대학건물을 준공·이전하고, 10월 23일에는 문과대학을 인문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8년 8월 16일에 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승학캠퍼스로 이전하고, 10월 29일에는 공과대학 야간강좌 개설학과를 폐지하여 주간학과로 통합 개편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산업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1989년 2월 27일에 제2, 3, 4대 총장을 역임한 정수봉 총장이 이임하고, 3월 1일에 신순기 제5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3월 31일에는 관광레저연구소 및 생명과학연구소가 설치인가 되고 새마을연구소를 폐지하였으며, 5월 15일에는 공과대학 제4호관 및 기초과학실험실습실의 준공을 보아 국제적 수준의 공과대학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었다.

1990년 1월 19일 여학생교양실을 폐지하고, 2월 7일에는 의과대학에 산업의학연구소 및 종합실험실습실을 설치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구덕캠퍼스에 첨단시설과 최신 의료기기를 갖춘 동아대학교 병원을 준공·개원하였다.

1991년 2월 28일에 신순기 총장이 이임하고, 3월 1일에 손병규 제6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3월 9일에 경영정보교육원과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을 설치하고, 10월 22일에는 생활과학대학을 자연과학대학에서 분리 설치하고 예술대학에 기악과를 신설하였다.

1991년 12월 31일에 손병규 총장이 이임하고, **1992년** 1월 24일에 이태일 제7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



다. 4월 16일에는 공과대학에 생산기술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및 예술대학에 조형연구소가 설치인가 받았다.

1993년 2월 28일 이태일 총장이 이임하고, 3월 1일에 이상윤 제8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3월 25일 유전공학연구소 및 인문과학대학에 인문과학연구소, 생활과학대학에 생활과학연구소, 의과대학에 임상의학연구소가 설치인가를, 8월 19일에는 경기지도자연수원이 설치인가 받았다.

1994년 10월 21일에 언론홍보대학원을 설치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경영정보교육원을 경영정보연구소로 개편하였다.

1995년 1월 25일 동아대학교 병원이 동아의료원으로 승격되었고, 2월 1일 산학협력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월 8일에는 종합문화예술공간인 석당홀과 석당갤러리를 개관하였다.

1995년 2월 28일에 이상윤 총장이 이임하고, 3월 1일에 이태일 제9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6월 1일에는 경영정보연구원을 경영정보연구소로 개편하고, 9월 12일에는 한국자원개발연구소를 건설기술연구소로 개편하였으며, 10월 4일에는 농과대학을 생명자원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학부제 실시에 따라 생명자원과학부, 건설공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체육학부를 설치하였으며, 의과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하였고, 12월 21일에는 인구문제연구소를 인구 및 지역발전연구소로 개편하였다.

1996년 2월 1일에 전자계산소를 종합정보센터로 개편하였고, 6월 21일에는 교육대학원 부설 중등교원연수원을 개설하였고, 10월 9일에는 진해시와 보배캠퍼스(가칭) 조성에 따른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 24일에는 학부제 추가실시에 따라 인문학부, 한국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 자연과학부, 식품과학부, 의상섬유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관광경영 및 무역학부, 경영정보 및 통계학부, 도시조경학부, 지구환경공학부, 미술학부, 음악학부 등 16개 학부를 설치하였고, 11월 2일에는 정책과학대학원을 설치하였다.

1997년 11월 5일에 경영대학의 관광경영 및 무역학부를 국제관광통상학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1월 12일에는 국제관광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다.

1998년 3월 11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대학종합평가인정을 받았으며, 4월 22일에는 경영대학 부설 관광레저연구소를 동아대학교 부설 아·태관광연구소로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였다. 5월 1일에는 국제관광정보센터와 동년 4월 4일에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의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선정된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인문과학대학 외국어문학부를 서양어문학부와 중국·일본학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를 정치행정학부와 사회언론광고학부 등으로 분리하였으며, 경영대학 경영정보 및 통계학부를 경영정보과학부, 공과대학 건설공학부를 토목·해양공학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9년 1월 14일에 고가 공동기자재의 사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동기기센터를 설치하였고, 2월 12일에는 원스톱 산학협력 연구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산학협력관을 준공하였으며, 2월 24일에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상담 및 경영자문 등을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1999년 2월 28일에 이태일 총장이 이임하고, 3월 1일에 엄영석 제10대 총장이 취임하였다.

1999년 7월 23일에는 부산시로부터 부산테크노파크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8월 11일에는 농업자원연구소와 유전공학연구소를 통합하여 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생명과학연구소와 임상의학연구소를 통합하여 의과학연구소로 기구 개편하였으며, 8월 24일에는 정보통신연구소와 경영정보연구소

를 통합하여 정보기술연구소로 기구 개편하였다.
1999년 11월 1일에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1월 2일에는 동북아국제대학원을 설치하였고, 12월 21일에는 인터넷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2000년 1월 19일에 고용산재보험교육센터를 설치하였으며, 5월 19일에는 법학도서분관을 설치하였고, 6월 13일에는 동북아연구소를 설치하였다. 7월 18일에는 경찰법무대학원을 교육부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았고, 8월 8일에는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부의 한문학전공을 폐지하고 문예창작전공을 신설하였으며,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건축학부로 변경하여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으로 각각 신설하였다. 9월 26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1999년 학문분야(법학분야, 건축공학분야) 평가에서 법학부가 최우수로, 건축공학과가 우수로 선정되었으며, 9월 29일에는 고용산재보험교육연구센터를 지식자원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1년 2월 26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00년 학문분야(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 컴퓨터공학분야, 재료금속분야) 평가에서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와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최우수 그룹으로, 공과대학 재료금속·화학공학부와 대학원 금속공학과가 우수 그룹으로 선정되었다. 3월 1일에는 어학연구소를 언어교육원으로 개편하였으며, 7월 26일에는 인문학부의 서양어문학부를 영어영문학부와 유럽어문학부로, 미술학부를 미술학부와 디자인학부로 분리 개편하고 도시조경학부를 도시계획·조경학부로 학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보통신대학원과 예술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았다. 9월 8일에는 교육대학원의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을 공통과학교육전공으로 통합 개편 및 사회교육전공을 청소년사회교육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2년 1월 30일에 구덕 제2캠퍼스에 예술대학을 준공하고 이전하였다. 2월 27일에는 동아의료원을 동아대학교 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4월 29일에는 인구 및 지역발전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동북아연구소를 동아시아연구원으로 통합 개편하였으며, 첨단과학기술연구단을 설치하였다. 5월 21일에는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의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가 선정되었으며, 6월 19일에는 승학캠퍼스에 한림생활관을 준공하였다. 7월 19일에는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를 수학·신소재물리학부와 화학·생명과학부로 분리 및 생물학전공을 생명과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부를 식물생명공학부와 응용생명공학부로 분리 및 생물자원학전공을 식물유전공학전공으로, 원예과학전공을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으로, 응용생물학전공을 응용생물공학전공으로, 생물공학전공을 생명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을 신설하였고, 예술대학 디자인학부를 조형디자인학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년 7월 31일에는 구덕캠퍼스에 예술대학 실습동이 준공되었으며, 8월 1일에는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실험실습실을 기초과학실험실습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8월 20일에는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를 설치하였고, 9월 2일에는 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생명공학과를 신설하였으며, 10월 18일에는 법과대학, 동북아국제대학원, 경찰법무대학원, 사회교육원, 동아시아연구원, 지식자원개발센터가 부민캠퍼스 이전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10월 21일에는 암분자치료연구센터가 신설되었다.
2003년 1월 15일에 의과대학 종합실험실습실을 의과학실험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월 28일에는 법과대학, 동북아국제대학원, 경찰법무대학원, 사회교육원, 동아시아연구원, 지식자원개발센터를



부민캠퍼스로 이전하였다.
2003년 2월 28일에 엄영석 총장이 이임하고, 3월 1일에 최재룡 제11대 총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2003년 3월 25일에는 부민동 소재 캠퍼스를 부민캠퍼스로 명하고, 언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신설하였다. 7월 14일에는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에 영어영문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야간강좌에 영어전공을 신설하였고, 공과대학 재료금속·화학공학부를 신소재·화학공학부로, 금속공학전공을 신소재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를 기계공학과와 산업경영공학과로 분리하였으며, 경영대학 경영정보과학부의 경영정보학전공을 폐지하였다.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예술학과를 신설하였다. 대학원 및 산업대학원의 도시조경학과를 도시계획·조경학과로, 정보통신대학원의 정보공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예술대학원 미술학과를 아동미술학과로, 디자인학과를 조형예술학과로, 음악학과를 컴퓨터실용음악학과로, 대학교부설 아·태관광연구소를 대학교 부설 관광·레저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대학교 부설 국제관광정보센터를 폐지하였다. 10월 17일에는 의과학연구소와 산업의학연구소를 통폐합하여 의과학연구원을 설치하였으며, 11월 13일에는 중소기업협력단 및 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였다.
2004년 3월 16일에 (재단법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였다.
2004년 9월 1일에는 승학캠퍼스에 한림생활관 증축공사를 착공하고, 동년 10월 1일에는 승학캠퍼스에 산학협력관 증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004년 10월 1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다.
2004년 10월 4일에는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부 문예창작전공을 문예창작학과로 전환하였고, 법과대학에 국제법무학과를 신설하였다. 사회과학대학 사회언론광고학부를 사회·사회복지학부와 신문방송학과로 분리하였고, 사회·사회복지학부에 사회학전공과 사회복지학전공을 두었으며, 경제학부를 경제학과와 금융학과로 분리하고, 경영대학 국제관광통상학부를 국제관광학부와 국제무역학과로 분리하였다. 국제관광학부에는 관광경영학전공과 국제관광학전공 및 호텔외식경영학전공을 두었으며,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를 분자생명공학부로, 식물유전공학전공을 유전공학전공으로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을 환경생명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를 전자컴퓨터공학부와 전기공학과로 분리하고, 전자컴퓨터공학부에 전자공학전공과 컴퓨터공학전공을 두었으며, 기계공학과를 기계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계공학전공과 자동차공학전공을 두었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사회학과를, 동북아국제대학원에 박사과정(국제학과)을, 교육대학원에 영양교육전공을 신설하였다. 산업대학원과 정보통신대학원을 산업정보대학원으로 통합하고, 해양공학과를 폐지하며 산업시스템공학과를 산업경영공학과로, 제어정보학과를 전기공학과로 명칭 변경하였다. 경찰법무대학원의 경찰법학과를 폐지하며 부동산법학전공을 신설하고, 정책과학대학원을 사회복지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학전공과 행정학전공을 폐지하고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하였다.
2004년 11월 17일에는 공학교육인증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동년 11월 23일에는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였다.
2004년 12월 16일에는 (재단법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를 설치하였고, 12월 30일에는 인터넷창업보육센터를 창업보육센터에 편입 통합하였다.
2005년 2월 28일에는 승학캠퍼스 산학협력단 2개층 증축공사를 준공하였다.

2005년 7월 22일에는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부를 국어국문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생활과학대학 식품과학부의 식품영양학전공과 식품과학(식품학)전공을 식품영양학전공으로 통합하였고, 의상섬유학부 섬유공학전공을 섬유산업시스템전공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경영대학 국제관광학부의 호텔외식경영학전공을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공과대학 토목·해양공학부의 토목공학전공, 해양토목공학전공을 폐지하였고, 토목·해양공학부를 토목공학부로, 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을 전자공학과로, 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을 컴퓨터공학과로, 신소재·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을 신소재공학과로, 신소재·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을 화학공학과로 명칭 변경하였다. 체육대학을 스포츠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체육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 사회체육학전공, 무용학전공, 무도학전공)를 스포츠과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 사회체육학전공)와 스포츠문화학부(무용예술학전공, 무도학전공, 태권도학전공)로 분리하였다.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에 문예창작학과를 신설하며, 응용미술학과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고 조형디자인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며, 농학과를 유전공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생명자원과학과를 식물생명공학과로 명칭 변경하였다. 학·연·산협동과정에 석·박사학위과정의 의학과(의과학연구원)를 신설하고 학과간협동과정에 석·박사학위과정의 나노공학과를 신설하였으며, 산업정보대학원의 신발산업공학과를 폐지하였다.

2005년 8월 1일에는 (재단법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나노기술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동년 10월 1일에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설치하였다.

2005년 11월 7일에는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동년 12월 30일에는 교양교육원을 설치하였다.

2006년 2월 16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설치(2009년) 승인을 받았으며, 동년 2월 21일에는 승학캠퍼스 한림생활관 증축공사를 준공하였다.

2006년 3월 1일에는 학생복지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변경하였으며, 도서관의 수서과와 정리과를 통합하여 학술정보지원과로 개편, 열람1과를 학술정보봉사1과로, 열람2과를 학술정보봉사2과로 개편하였다. 의과학실험지원센터를 본부 부속기관에서 의과대학 부속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과대학부속공장, 첨단과학기술연구단을 폐지하였고,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암분자치료연구센터를 본부 부설연구기관에서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2006년 4월 27일에는 멀티미디어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2006년 5월 12일에는 석당전통문화연구원 및 인문과학연구소를 통폐합하여 석당학술원을 설치하였다.

2006년 7월 18일에는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를 인문학부(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와 역사문화학부(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로 학부를 분리, 신설하고 전공을 분리하였으며, 중국·일본학부(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를 일어일문학과와 중국학부로 분리하였다. 공과대학 지구환경공학부의 자원공학전공을 에너지·자원공학전공으로 전공 명칭 변경,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를 기계공학부로 전공 통합하여 단일학부로,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의 무도학전공을 무도경찰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의 의생명과학과를 신설하고, 동북아국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제학과(중국지역전공, 일본지역전공, 동북아통상전공, 아·태관광전공)를 국제학과(동북아지역및통상전공, 아·태관광전공)로 전공 통합하였고, 산업정보대학원 전자상거래학과를 폐지하였으며, 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를 문화예술매

니지먼트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6년 7월 31일에는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Wisconsin Law School)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 11월 9일에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였다.
2007년 2월 15일에는 전력변환시스템신기술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2007년 2월 28일에는 최재룡 제11대 총장이 이임하고, 2007년 3월 2일에는 심봉근 제12대 총장이 취임하였다.
2007년 5월 3일에는 호주 라트로브대학교(La Trobe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6월 28일에는 중국의 2개 대학 중국해양대학(中國海洋大學), 서남정법대학(西南政法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7월 1일에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혁신을 위한 경영진단 및 경쟁력 제고 전략 수립'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2007년 7월 2일에는 중국 심천대학(深川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7년 8월 1일에는 역사문화학부의 사학전공은 사학과로, 고고미술사학전공은 고고미술사학과로, 수학·신소재물리학부의 수학전공은 수학과로, 신소재물리전공은 신소재물리학과로, 화학·생명과학부의 화학전공은 화학과로, 생명과학전공은 생명과학과로, 의상섬유학부의 패션디자인전공은 패션디자인학과로, 섬유산업시스템전공은 섬유산업학과로, 정치행정학부의 정치외교학전공은 정치외교학과로, 행정학전공은 행정학과로, 사회·사회복지학부의 사회학전공은 사회학과로, 사회복지학전공은 사회복지학과로, 분자생명공학부의 유전공학전공은 유전공학과로, 환경생명공학전공은 분자생명공학과로, 응용생명공학부의 응용생물공학전공은 응용생물공학과로, 생명공학전공은 생명공학과로, 지구환경공학부의 환경공학전공은 환경공학과로, 에너지·자원공학전공은 에너지·자원공학과로, 스포츠과학부의 체육학전공은 체육학과로, 경기지도학전공은 경기지도학과로, 사회체육학전공은 생활체육학과로, 스포츠문화학부의 무용예술학전공은 무용학과로, 무도경찰학전공은 무도경찰학과로, 태권도학전공은 태권도학과로, 미술학부 조소전공은 조각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7년 8월 1일에는 미국 UNCP대학교(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embroke)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2007년 8월 28일에는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테라스 증축공사를 준공하였다.
2007년 9월 11일에는 대학원 응용경제학과를 금융학과로, 산업시스템공학과를 산업경영공학과로, 자원공학과를 에너지·자원공학과로, 경영대학원 경영정보전공과 인터넷비즈니스전공을 경영정보전공으로,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과 교육상담전공을 교육심리및상담전공으로 통합하였으며, 교육방법전공을 폐지하였다. 산업정보대학원의 건설사업관리학과를 신설하였고, 언론홍보대학원 및 소속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를 폐지하였다.
2007년 10월 17일에는 일본 노스아시아대학(North ASI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컨테이너화물안전수송기술개발클러스터사업단을 설치하였다.
2007년 12월 27일에는 중국 대련대학(大连大学) 체육학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8년 2월 4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08년 3월 1일에는 대외협력부총장을 폐지하고, 교학부총장을 부총장으로 변경하였다. 학생·취업지원

처를 학생처로 명칭 변경, 대외협력실과 국제교류교육원을 통합하여 대외협력처로 신설·통합하였으며, 건설관리본부를 신설하여 기획처의 건설과와 사무처의 관리과 업무를 통합하였다. 정보통신처를 정보전산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부속기관에 두었으며, 체육부 및 복지시설관리부를 대학본부에서 부속기관으로 소속 변경하였다. 학보사와 방송국을 다우미디어센터로 통합하였으며, 직장예비군연대를 사무처 산하로 소속 변경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및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을 신설하였다.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경영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스포츠과학대학의 부학장 직제를 폐지하고, 공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2개의 부학장제를 1개의 부학장제로 축소하였다. 동북아국제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경찰법무대학원, 예술대학원의 부원장 직제를 폐지하였으며, 석당학술원, 교양교육원, 사회교육원, 생활체육지도자연구원, 교육대학원부설중등교원연수원의 부원장 직제를 폐지하였다. 공학교육인증지원센터를 공학교육혁신센터로 변경하였다.
2008년 7월 1일에는 사회교육원을 평생교육원으로, 국어상담소를 국어문화원으로 개편하였다.
2008년 7월 7일에는 몽골 국립사범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인문대학 인문학부(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를 철학과, 윤리문화학과로,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영어전공)를 영어영문학과로, 유럽어문학부(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를 독어독문학과, 프랑스문화학과로, 중국학부를 중어중문학과로, 중국학과를 신설하였다. 식품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을 식품영양학과로, 경영학부를 경영학과로, 국제관광학부(관광경영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를 관광경영학과로, 경영정보과학부를 경영정보학과로, 토목공학부를 토목공학과로, 도시계획·조경학부(도시계획학전공, 조경학전공)를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로, 기계공학부를 기계공학과로, 사회과학대학에 국제거래관계학과를 신설하였고, 무도경찰학과를 경찰무도학과로, 미술학부(회화전공, 공예전공, 조각전공)를 회화학과, 공예학과, 조각학과로, 조형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섬유조형디자인전공)를 산업디자인학과, 섬유조형디자인학과로, 음악학부(음악전공, 기악전공)를 음악학과, 기악학과로 신설하였으며, 법과대학 및 법학부, 국제법무학과를 폐지하였다.
2008년 8월 1일에는 조규향 제13대 총장이 취임하였다.
2008년 9월 2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정원 80명)를 통보받았다.
2008년 10월 8일에는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과정, 교육대학원 유아영어교육전공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을 신설, 공통과학교육전공을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으로 분리, 경영대학원의 생산e-business전공을 운영관리전공으로 변경하였고,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였다.
2008년 10월 31일에는 경찰법무대학원을 법무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신축공사, 부민캠퍼스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보수정비 및 박물관 내부시설 공사를 준공하였다.
2008년 11월 13일에는 영국 하트퍼드셔대학교(University of Hertfordshire)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2월 1일과 5일에 대만 국립고웅사범대학(國立高雄師範大學),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经济贸易大学)과 각각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8년 12월 15일에는 교육대학원부설중등교원연수원을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12월 15일에는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008년 12월 24일에는 SK telecom 산학협력 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2009년 3월 1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를 설치하였다.
2009년 3월 30일에는 중국 가목사대학(佳木斯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4월 24일에는 미국 볼주립대학(Ball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5월 19일에는 박물관을 부민캠퍼스로 이전 개관하였다.
2009년 6월 11일에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를 생물·의생명과학과로,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를 아동가족학과로 변경하였고, 생명자원과학대학에 의약생명공학과를 신설하였으며,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및 건축공학전공을 건축학과(5년제) 및 건축공학과로 개편하였다. 석당인재학부를 신설하였고, 사회과학대학 국제거래관계학과, 인문과학대학 중국학과 및 일어일문학과를 국제학부로 신설하여 각각 국제학전공, 중국학전공, 일본학전공으로 개편하였다.(2010.3.1. 시행)
2009년 6월 26일에는 대만 국립정치대학(國立政治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7월 8일에는 중국 감숙성(甘肃省)정부와 인재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8월 6일에는 호주 서호주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8월 10일에는 호주 퀸즐랜드공과대학교(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8월 10일에는 대만 국립중정대학(國立中正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8월 25일에는 중국 란주대학(蘭洲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9월 1일에는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부원장을 교무부원장과 학생부원장의 2개의 직제로 변경하였다.
2009년 9월 15일에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가정관리학과를 아동가족학과로 변경하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건축학과 및 태권도학과를 신설하였다. 해양공학과를 폐지하고, 박사학위과정에 간호학과를 신설하였으며, 학·연·산 협동과정 법학과를 국제법무학과로 변경하였다. 동북아국제대학원을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으로 변경하였고, 산업정보대학원 화학공학과를 폐지하였으며, 뉴에코시티학과 및 그린에너지시스템학과를 신설하였다.(2010.3.1. 시행)
2009년 10월 12일에는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2009년 10월 26일에는 일본 무사시노대학(武蔵野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10월 27일에는 일본 테이쿄대학(帝京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11월 5일에는 영국 카디프웨일즈대학(University of Wales, Institute of Cardiff)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12월 7일에는 공과대학과 중국 계서대학 안전환경공정과(鸡西大学 安全与环境工程系)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12월 9일에는 증국 대련외국어대학(大连外国语大学)과 중국 산동대학 위해분교山东大学威海分校)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1월 12일에는 사회과학대학과 베트남 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1월 25일에는 중국 산동경제학원(山东经济学院)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3월 1일에는 교무·연구처 교무·연구과를 교무처 교무과로, 산학협력단 기획조정실을 산학연구지원실로 변경하였으며,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진흥실을 신설하였고, 산학협력단의 중소기업협력단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폐지하였으며,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인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를 본부 직할 부설연구기관으로 변경하였다. 석당인재학부 행정지원실 및 국제학부 행정지원실을 신설하였고, 동북아국제대학원 행정지원실을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로 변경하였으며, 일부 대학(원)에만 운용되던 부학(원)장 직제를 전 대학(원)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 3월 5일에는 공과대학과 카자흐스탄 카자흐 리딩 아카데미(Kazakh Leading Academy of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4월 22일에는 스포츠과학대학 경기지도학과를 스포츠지도학과로 변경하였다.(2011.3.1. 시행)
2010년 5월 26일에는 중국 곡부사범대학(曲阜师范大学)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6월 2일에는 일본 후쿠오카대학(福岡大学)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6월 26일에는 미국 웨스턴미시간대학(Western Michigan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7월 2일에는 캐나다 탐슨리버스대학(Thompson Rivers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7월 7일에는 미국 하와이퍼시픽대학(Hawaii Pacific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7월 19일에는 Medi-Farm 산업화연구사업단을 설치하였다.
2010년 8월 20일에는 한림생활관 구덕관을 준공하였다.
2010년 8월 27일에는 교직부를 설치하였다.
2010년 9월 1일에는 입학사정관실, 평가 · 감사실, 국제교류과를 설치하고, 산학연구지원실을 연구지원실로, 산학협력진흥실을 산학협력실로 변경하였고, 나노기술연구센터를 폐지하였다.
2010년 10월 4일에는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1층 일부를 증축하였다.(사회과학대학 영상방송실습실 설치공사)
2010년 10월 5일에는 대학원 학 · 연 · 산 협동과정 신소재물리학과 석 · 박사 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생명의료윤리학과 석 · 박사 과정을 신설하였고, 교육대학원 독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식물자원 · 조경교육전공, 상업정보교육전공을 폐지하였다. 산업정보대학원 전기공학과, 전자정보통신학과, 컴퓨터공학과를 폐지하였으며, 기술 · 경영컨설팅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를 신설하였다.(2011.3.1. 시행)
2010년 10월 25일에는 영어교육연구소, 에코디자인사업단을 설치하였으며, 공과대학 부학장을 교학부학장과 산학부학장의 2개의 직제로 변경하였다.
2010년 11월 26일에는 중국 화남농업대학(华南农业大学)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12월 9일에는 호주 션샤인코스트대학(University of Sunshine Coast)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12월 9일에는 영국 앵글리아러스킨대학(Anglia Ruskin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0년 12월 15일에는 호주 모나쉬대학(Monash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1월 7일에는 중국 동화대학(东华大学)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1월 24일에는 중국 서안외사대학(西安外事大学)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2월 18일에는 교육대학원 철학교육전공, 관광교육전공, 전기 · 전자 · 통신교육전공, 정보 · 컴퓨터교육전공을 폐지하였다.(2011.3.1시행)
2011년 3월 1일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연구소, 동아항노화연구소,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신재생에너지전력변환시스템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멀티미디어연구센터, 전력변환시스템신기술연구센를 폐지하였다.
2011년 4월 21일에는 건축·디자인·패션대학을 설립해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학과를 각각 건축·디자인·패션대학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관광경영학과를 국제관광학과로, 섬유조형디자인학과를 섬유미술학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무용학과를 폐지하고 실용음악학과를 신설하였으며, 음악학과와 기악학과를 음악학과로 통합하였다.(2012.3.1. 시행) 창업지원단 및 국제통상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식자원개발센터를 글로벌인재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1년 6월 22일에는 미국 랜더대학(Lander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6월 24일에는 캐나다 알고마대학(Algom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7월 20일에는 계약학과를 신설하였다.(2011.9.1 시행)
2011년 8월 8일에는 캄보디아 기술 대학교(Cambodian University for Specialties)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8월 30일에는 승학캠퍼스 창업보육센터 공장식 건물을 착공하였다.
2011년 9월 9일에는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영유아보육학과 석·박사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산업정보대학원 뉴에코시티학과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선물거래전공을 폐지하였고, 일반대학원 생물학과를 생명과학과로,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증권/금융전공을 재무전공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2012.3.1. 시행)
2011년 9월 14일에는 호주 커틴대학(Curtin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9월 30일에는 암분자치료연구센터를 폐지하였다.
2011년 11월 4일에는 창업지원단을 본부직할 부속기관에서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으로 변경하였다.
2011년 12월 6일에는 독일 프레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부산캠퍼스(Friedrich-Alezander University Busan Campus)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1월 5일에는 건축·디자인·패션대학 행정지원실을 설치하였다.
2012년 1월 9일에는 미국 테네시대학(The University of Tennessee)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2월 1일에는 필리핀 아테네오대학(Ateneo de Manil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2월 2일에는 인도네시아 비누스대학(BINUS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2월 3일에는 인도네시아 프레지던트대학(President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2월 14일에는 인문과학대학 철학과와 윤리문화학과를 철학·윤리문화학과로, 예술대학 회화학과와 조각학과를 미술학과로 각각 통합하였으며, 자연과학대학 생물·의생명과학과를 생명과학과로, 스포츠과학대학 경찰무도학과를 경찰경호학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생활과학대학을 폐지하였으며, 생활과학대

학 식품영양학과와 아동가족학과를 각각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와 인문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생활과학대학 섬유산업학과를 공과대학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로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였다.(2013.3.1. 시행)
2012년 2월 23일에는 부민캠퍼스 국제관(가칭) 부분 임시사용을 승인하였다.
2012년 2월 29일에는 법과대학 행정지원실을 폐지하였다.
2012년 4월 9일에는 베트남 빈중대학(Binh Duong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5월 24일에는 대만 국립동화대학(National Donghwa University) 및 대만 봉갑대학(Feng Chi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5월 29일에는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University of Malaya)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5월 30일에는 필리핀 라살대학(University of St. La Salle)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6월 5일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공동기기센터를 본부 직할 부속기관에서 산학협력단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맑스엥겔스연구소,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융합디자인연구소,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소, 천연물신약개발연구센터 등 5개 연구기관을 신설하였으며, 조형연구소, 신재생에너지전력변환시스템연구소, SK telecom 산학협력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센터 등 3개 연구기관을 폐지하였다.
2012년 6월 8일에는 영국 이스트런던대학(University of East London)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6월 13일에는 대만 보인대학(Fen Jen Catholic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6월 26일에는 부민캠퍼스 국제관을 준공하였다.
2012년 6월 27일에는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Friedrich Alexander University Erlangen Nurberg)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6월 27일에는 미국 안젤로주립대학(Angelo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6월 29일에는 태국 카셋삿대학(Kasetsart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7월 10일에는 승학캠퍼스에 창업관을 준공하였다.
2012년 7월 31일에는 조규향 총장이 이임하고, 8월 1일에는 권오창 제14대 총장이 취임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8월 6일에는 호주 스윈번대학(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8월 15일에는 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학교 커니캠퍼스(University of Nebraska at Kearne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9월 1일에는 산학협력단을 대학교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대외협력처를 단일과(대외협력과) 체제로 변경하였으며, 국제교류교육원을 신설하여 종전 대외협력처 국제교류과를 국제교류교육원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2012년 9월 13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신설하였다. 교육대학원 청소년사회교육전공, 도덕·윤리교육전공 석사과정을 폐지하고, 다문화교육전공 석사과정을 신설하였다.(2013.3.1. 시행)
2012년 9월 25일에는 대학발전 기획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2012년 9월 28일에는 일본 다이도대학(Daido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10월 9일에는 베트남 호치민기술사범대학(University of Technical Education, Ho Chi Minh C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10월 12일에는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이 국제전문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2013. 3.1. 시행)
2012년 10월 19일에는 베트남 호치민기술사범대학 한국어센터(University of Technical Education, Ho Chi Minh City, Korean Language Center)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호치민기술사범대학 내에 동아대학교 한국어센터를 개원하였다.
2012년 11월 1일에는 학생처를 학생 · 취업지원처로, 취업정보실을 취업지원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를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신설하였다.
2012년 12월 5일에는 베트남 한·베 친선IT대학(Korea-Vietnam Friendship IT College)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12월 13일에는 미국 휴스턴대학(University of Houston)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2년 12월 18일에는 태국 아시아공과대학(Asian Institute of Technolog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1월 14일에는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1월 18일에는 호주 맥콰리대학(Macquqrie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1월 21일에는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를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신설하였다.
2013년 2월 15일에는 생활과학연구소를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3년 3월 1일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을 총장 직속기관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3월 7일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2013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부산울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2013년 3월 27일에는 창업지원단을 총장 직속기관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5월 9일에는 미국 현대디지텍과 학생인턴십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7월 12일에는 본교 국제전문대학원과 인도 KIIT대학교, 인도 켈커타대학교 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7월 17일에는 베트남 동방대학교 및 하노이공과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9월 1일에는 평가·감사실을 부총장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고 법무·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학술정보봉사1, 2과를 학술정보서비스1, 2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국제교류교육원을 국제교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부직할 부속기관으로 언어교육원을 신설하였다. 박물관을 석당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부직할 부속기관으로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를 신설하였다.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으로 태권도건강문화연구소를 신설하였다.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를 신설하였다.
2013년 9월 17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013년 10월 4일에는 승학캠퍼스 공과대학2호관 증축공사(승강기 설치공사)를 준공하였다.
2013년 10월 17일에는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2관 및 한림생활관 승학2관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013년 11월 15일에는 일본 나고야대학(Nagoya University)과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2013년 12월 5일에는 경찰법무대학원을 법무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 천연물신약개발센터를 폐지하였다.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BK21Plus총괄사업단을 신설하였다.
2013년 12월 23일에는 스페인 말라가대학(University of Malaga)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3년 12월 27일에는 한국대학평가원이 주관한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였다.
2014년 1월 2일에는 2014년 시무식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윤리적 사명과 규범 인식, 대학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및 자기규제 윤리 정착 등을 목적으로 동아인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2014년 1월 6일에는 중국 정주대학(Zhengzhou University)과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간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1월 8일에는 캐나다 레이크헤드대학(Lakehead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1월 14일에는 태국 킹몽쿳공과대학(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과 동아대학교 공과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2월 13일에는 석당 글로벌하우스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014년 3월 1일에는 예술대학원을 문화예술대학원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다.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R&D전략기획센터,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교육부 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인증을 획득하였다.
2014년 3월 4일에는 프랑스 에싸드 미술학교(Ecole Superieure d'Art et Design Grenoble- Valence)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3월 12일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2014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창업선도대학 사관학교식 육성사업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3월 13일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부설어학센터(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English Language Programs)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3월 17일에는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치매센터를 개소하였다.
2014년 3월 18일에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부산지역통일교육센터를 신설하였다.
2014년 4월 15일에는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미국 동북아 경제 포럼(Northeast Asian Economic Forum)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동아대학교와 중국 광주성건직업학원(Guangzhou City Construction College)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5월 9일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2단계 참여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6월 11일에는 중국 섬서공상직업대학(陕西工商职业学院)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7월 1일에는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에 생명산업 통합연계교육 사업단, 생명의료윤리전공 특성화 사업단, 동남권 지역사회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新교육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통섭형 인재양성 사업단, 기능성재료 특화 화학교육 사업단 등 총 4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2014년 7월 31일에는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1관 리모델링 증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014년 8월 1일에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과 R&D전략기획센터를 폐지하였다. 교무처에 연구지원실을 신설하였고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국제교류원의 명칭을 국제교류처로 변경하고 본부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선정에 따라 총장 직속기관으로 특성화총괄사업단을 신설하였고, 동아대학교와 중국 보계문리대학(宝鸡文理学院)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8월 19일에는 필리핀 파티마대학교(Our Lady of Fatima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8월 31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Medi-Farm산업화연구사업단과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영어교육연구소를 폐지하였다.
2014년 9월 1일에는 부총장 직속기관으로 교육혁신원을 신설하고, 교육혁신센터 부속기관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신설하였다. 교무처 부속기관인 교육혁신센터와 교직부, 학생·취업지원처 부속기관인 학생상담센터를 교육혁신센터 부속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체육부를 스포츠단으로, 체육과를 스포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4년 9월 26일에는 인도네시아 바탐국제대학교(International University Batam)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10월 7일에는 핀란드 아시아 익스체인지(Asia Exchange)와 방문학생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4년 10월 16일에는 베트남 국립경제대학교(National Economics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10월 28일에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조선기술대학(Shipbuilding Institute of Polytechnic Surabaya)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특성화 우수학과로 생명의료윤리 전공 특성화 사업단에 참여중인 철학·윤리문화학과가 선정되었다.
2014년 11월 1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2단계 사업에 에너지·자원공학과가 선정되었다.
2015년 1월 6일에는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과와 말레이시아 테일러스대학교(Taylor's University) 국제관광학과 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월 14일에는 중국 산동이공대학(山东理工大学)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월 15일에는 중국 제남대학(济南大学)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2월 6일에는 중국 서안번역대학(西安翻译学院)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관광대학교(Trisakti Institute of Tourism), 트리삭티 경영대학교(Trisakti School of Management), 트리삭티 물류&운송대학교(Institute of Transportation & Logistics Management of Trisakti), 국제여자대학교(International Women University), STMIK WIDYA UTAMA, STMIK BANI SALEH, 하라판 버사마 폴리테크닉(Polytechnic Harapan Bersama), 픽시 인풋 세랑 폴리테크닉(Poltechnic Piksi Input Serang)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2월 26일에는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Yokohama National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2월 27일에는 승학캠퍼스 예술대학 임시사용을 승인 받았다.
2015년 2월 28일에는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2관을 준공하였다.
2015년 3월 1일에는 생활과학대학을 폐지하고 건축·디자인·패션대학의 명칭을 디자인환경대학으로 변경하였다. 예술체육대학, 건강과학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을 신설하였다. 사무처 행정관리실과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복지시설관리부(과)를 폐지하였다.
2015년 3월 17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공공정책연구소와 친환경도시농업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5년 3월 19일에는 일본 나라학원대학(Nara Gakuin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4월 1일에는 중국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4월 6일에는 일본 메이죠대학(Meijo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4월 14일에는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1관 리모델링 증축공사를 준공하였다.
2015년 4월 23일에는 인도네시아 스트믹위드야우타마대학(STMIK WIDYA UTAMA)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4월 28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를 폐지하였다.
2015년 5월 15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데이비스(University of California-Davis)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5월 26일에는 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학-오마하(University of Nebraska-Omaha)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6월 1일에는 교무처, 기획처, 재무처에 부처장제를 신설하였고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글로벌인재개발센터를 학생·취업지원처 부속기관으로 이관하였다.
2015년 6월 26일에는 터키 도쿠즈엘르윌대학(Dokuz Eylul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7월 1일에는 석당 글로벌하우스를 준공하였다.
2015년 7월 8일에는 석당인재학부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국제보건정책 공간연구센터(University of Texas-Dallas, Center for Geospatial in Global Health Policy)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7월 22일에는 고고미술사학과와 일본 도쿠시마대학(Tokushima University)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7월 24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기업가정신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5년 8월 10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에너지환경응용기술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5년 9월 1일에는 사무처 내 안전관리실을 신설하였다.
2015년 9월 24일에는 라오스 수파노봉대학(Souphanouvong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0월 2일에는 터키 이스탄불공과대학(Istanbul Technical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0월 26일에는 대만 중화대학(中華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0월 29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IoT연구센터를 신설하였다.
2015년 11월 12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글로벌금융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5년 11월 19일에는 중국 기남대학(暨南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1월 26일에는 말레이시아 세다얏 국제대학[University College Sedayat International (U.C.S.I.)Extension]과 학생인턴십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2월 14일에는 중국 사천대학(四川大學)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1월 1일에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동아대학교 부산하나센터를 신설하였다.
2016년 1월 12일에는 인도네시아 파순단대학(Pasundan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1월 13일에는 인도네시아 컴퓨터대학(Indonesian Computer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1월 27일에는 국제관광학과와 말레이시아 테일러대학(Taylor's University)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2월 19일에는 승학캠퍼스 한림생활관 승학2관을 준공하였다.
2016년 2월 29일에는 융합형디자인육성사업단을 폐지하였다.
2016년 3월 1일에는 융합 교양대학, 중국·일본학부, 공과대학 내 4개 학부(인간 환경융합공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기계산업경영공학부, 신소재화학공학부)를 신설하였고,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국제학부 및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교양교육원을 폐지하였다.
2016년 3월 9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울산근로자건강센터를 신설하였다.
2016년 3월 11일에는 중국 산서성과학기술미디어그룹(山西科技传媒集团)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3월 29일에는 구덕캠퍼스 중정부지 지하공간 개발공사를 착공하였다.
2016년 4월 7일에는 인도네시아 파드자드자란대학(Universitas Padjadjaran)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4월 19일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윌밍턴(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5월 1일에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인문역량강화사업단 신설하였다.
2016년 5월 10일에는 독일 본 대학(University of Bonn)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6월 8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인문학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6년 6월 8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생명의료윤리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6년 6월 8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공동가치창출혁신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6년 6월 8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신설하였다.
2016년 7월 22일에는 미국 노스캐롤라 주립대학, 그린스보로(University of North Carolina- Greensboro)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7월 31일에는 권오창 총장이 이임하고, 8월 1일에는 한석정 제15대 총장이 취임하였다.
2016년 10월 11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소를 해양도시건설 · 방재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6년 11월 16일에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을 신설하였다.
2016년 12월 8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글로벌재난안전연구센터를 신설하였다.
2016년 12월 14일에는 미얀마 양곤 기술대학(Yangon Technological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12월 15일에는 인도네시아 머츄 부아나 대학(University of Mercu Buan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6년 12월 19일에는 중국 양주중국스위스호텔 직업대학(中瑞酒店職業學院)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1월 10일에는 영국 미들섹스 대학(Middlesex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1월 12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선박해양시스템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7년 1월 12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를 폐지하였다.
2017년 3월 1일에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을 연구개발지원실과 사업화지원실로 확대 신설, 교육혁신원

부속기관으로 교육성과관리센터 신설, 융합교양대학을 기초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속기관으로 표현력증진센터 및 인성체험증진센터를 신설,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기술이전센터를 기술경영센터로 명칭 변경, 사무처 안전관리실과 산합협력단 부속기관인 창업보육센터를 폐지하였다.
2017년 3월 3일에는 일본 동아대학(University of East Asi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3월 13일에는 베트남 두이탄대학(Duy Tan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4월 6일에는 필리핀 산어거스틴대학(Colegio San Agustin-Bacolod)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4월 13일에는 그루지아 이카루스대학(ICARUS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4월 13일에는 인도네시아 위드야타마대학(Widyatama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4월 13일에는 키르키즈스탄 오쉬 국립대학(Osh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5월 23일에는 인도네시아 에퀴타스대학(STIE Ekuitas)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6월 26일에는 필리핀 산호세대학(University of San Jose-Recoletos)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7월 3일에는 인도네시아 세마랑 1945년 8월 17일 대학(University of 17 August 1945 Semarang)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7월 4일에는 인도네시아 무하마디야 퍼르워커르토대학(University of Muhammadiyah Purwokerto)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7월 7일에는 인도네시아 람붕망쿠랏대학(Universiyt of Lambung Mangkurat)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7월 20일에는 인도네시아 디포네고로대학(University of Diponegoro)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8월 23일에는 미국 하와이대학 어학센터(Hawaii English Language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Hawaii, Manoa)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7년 9월 1일에는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제를 신설하였다.
2017년 9월 1일에는 교육부 주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재선정에 따라 사업단 명칭을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으로 변경하고 부속기관인 기업지원센터를 폐지하였다.
2017년 9월 12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사회복지경영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7년 11월 23일에는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대학(Atma Jaya Catholic University of Indonesi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2월 1일에는 인도네시아 함카무함마디야대학(University of Muhammadiyah Prof. Dr. Hamk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2월 1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함마디야대학(University of Muhammadiyah Jakart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3월 8일에는 중국 청도농업대학(Qingdao Agricultural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4월 10일에는 인도네시아 아흐마드달란대학(Universitas Ahmad Dahlan)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4월 10일에는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무함마디야대학(Universitas Muhammadiyah Surakart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4월 10일에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무함마디야대학(Universitas Muhammadiyah Yogyakart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4월 10일에는 인도네시아 말랑무함마디야대학(Universitas Muhammadiyah Malang)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5월 8일에는 필리핀 마푸아 기술 대학(Mapua Institute of Technolog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5월 9일에는 방글라데시 데포딜 국제대학(Daffodil International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5월 17일에는 미국 덴버 메트로폴리탄 대학(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of Denver)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5월 28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세계언어대학(Uzbekistan State World Languages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7월 13일에는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Tilburg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8월 6일에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y of Indonesi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8월 10일에는 싱가포르 난양 폴리텍(Nanyang Polytechnic)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8월 30일에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8월 30일에는 중국 엽합국제대학(Uniterd International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9월 10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하였다.
2018년 9월 19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서비스대학(Vladivostok State University Of Ecnomics and Services)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10월 10일에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국립대학(State University of Surabay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10월 23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젠더·어펙트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8년 11월 22일에는 카자흐스탄 카즈뀨대학(M. Narikbayev Kazguu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11월 22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다문화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8년 12월 19일에는 중국 목단강사범대학(Mudanjiang Normal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12월 19일에는 대만 성오과기대학(Hsing Wu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8년 12월 28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스 사범대학(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1월 24일에는 탄자니아 달 에스 살람 대학(University of Dar es Salaam)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1월 28일에는 구덕캠퍼스 '중정부지 지하공간' 임시사용을 승인받았다.
2019년 2월 19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조형문화예술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9년 2월 25일에는 태국 출랄롱코른대학교(Chulalongkorm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2월 28일에는 필리핀 라구나 말라얀 대학(Malayan College Laguan)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2월 28일에는 교직부를 폐지하고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와 공공정책연구소를 폐지하였다.
2019년 3월 11일에는 필리핀 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3월 14일에는 베트남 베트남 국립과학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Hanoi)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3월 14일에는 베트남 과학기술대학교-하노이(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Hanoi)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4월 2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19년 4월 25일에는 말레이시아 썬웨이대학교(Sunway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4월 25일에는 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HELP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5월 2일에는 터키 압둘라 걸 대학교(Abdullah Gul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5월 14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항바이러스의약연구소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경영연구소를 폐지하였다.
2019년 5월 17일에는 말레이시아 테일러대학교(Taylor's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5월 20일에는 인도네시아 에얼랑까 대학교(Universitas Airlangga)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5월 21일에는 호주 커틴대학교(Curtin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연장하였다.
2019년 5월 23일에는 러시아 남연방대학교(Southern Federal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6월 15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폐지하였다.
2019년 7월 19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였다.
2019년 8월 19일에는 베트남 미네소타 대학교 베트남센터(University of Minnesota, Vietnam Center)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8월 19일에는 베트남 호치민 교육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ducation)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8월 31일에는 총장 직속기관인 특성화총괄사업단을 폐지하고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소를 폐지하였다.
2019년 9월 1일에는 자연과학대학 부속기관인 유전자변형생물체관리실을 신설하였다.
2019년 10월 10일에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단을 신설하였다.
2019년 10월 21일에는 베트남 두이탄대학교(Duy Tan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10월 27일에는 중국 중경공상대학(Chongqing Technology and Business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11월 12일에는 베트남 베트남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11월 19일에는 베트남 말라가 대학교(University of Malaga)와 학술교류 협정을 연장하였다.
2019년 11월 21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의 명칭을 아세안연구소로 변경하고 빅데이터센터를 폐지하였다.
2019년 12월 9일에는 인도네시아 텔콤 대학교(Universitas Telkom)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12월 9일에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12월 12일에는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야 대학교-족자카르타(Universitas Muhammadiyah Yogyakarta)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12월 13일에는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야 대학교-수라카르타(Universitas Muhammadiyah Surakarta)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9년 12월 20일에는 한국대학평가원이 주관한 2019년(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였다.
2020년 2월 10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무인이동체기술지원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20년 2월 13일에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대학교(Universiti Islam Indonesia)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0년 2월 20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무인이동체기술지원연구소를 신설하였다.
2020년 2월 29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를 폐지하였다.
2020년 3월 1일에는 산업정보대학원과 문화예술대학원을 폐지했고 사회과학대학 소속의 정치외교학과와 사회학과가 정치 · 사회학부(정치외교학전공, 사회학전공)로 통합됐으며, 생명자원과학대학 소속의 생명공학과는 식품생명공학과로 학과 명칭 변경됐다.
2020년 4월 9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교육연구소를 폐지했다.
2020년 4월 16일에는 독일 츠비카우 응용과학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of Zwuickau)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0년 4월 17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의 명칭을 스마트물류연구센터로 변경하였으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신설했다.
2020년 4월 23일에는 미국 이스턴 미시간 대학교(Eastern Michigan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0년 6월 1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산학협력연구센터 폐지했다.
2020년 8월 18일에는 러시아 노브고로드 연방대학교(Novgorod State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0년 9월 1일에는 석당뮤지엄을 신설하며 산하에 석당박물관, 석당미술관, 역사기록관을 두고 기존 석당박물관 산하 자료과의 명칭을 학예연구과로 변경 및 석당뮤지엄 산하로 이관했으며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산학협력연구센터를 폐지했다.
2020년 10월 8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무인이동체기술지원연구소를 폐지했다.
2020년 10월 12일에는 중국 상해해양대학교(Shanghai Ocean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0년 10월 20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무인이동체기술지원연구소를 폐지하고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인 미래형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를 신설했다.
2020년 11월 1일에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대학혁신사업단을 신설했다.
2020년 12월 8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친환경도시농업연구소의 명칭을 바이오식품소재산업화연구소로 변경하고 항암면역연구센터를 신설했다.
2021년 2월 3일에는 구덕캠퍼스 교육동 임시사용을 승인받았다.
2021년 2월 28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인문학연구소를 폐지했다.
2021년 3월 1일에는 대외부총장제를 신설하고, 총장 직속기관으로 클라우드혁신센터를 신설, 교육혁신원 부속기관으로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신설했다. 교무처 연구지원실을 폐지하고, 대학원 교육연구정책실을 신설했으며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BK21Plus총괄사업단을 대학원 부속기관으로 이관했다.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을 국제대학으로 변경하였으며, 컴퓨터·AI공학부를 신설했다.
2021년 4월 6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환경문제연구소, 생명의료윤리연구소를 폐지했다.
2021년 4월 29일에는 총장 직속기관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신설했다.
2021년 6월 24일에는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오마하(University of Nebraska-Omaha)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1년 7월 20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인문사회의학 연구소를 신설했다.
2022년 8월 29일에는 부민캠퍼스 동아한국어학당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2021년 9월 1일에는 건설관리본부 부속기관으로 연구실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기관 유전자변형생물체관리실을 폐지했다.
2021년 9월 30일에는 파키스탄 포먼 크리스천 칼리지(Forman Christian College)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 7일에는 터키 알틴바스 대학(Altinbas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 9일에는 홍콩 링난 대학(Lingnan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 19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신경중개연구솔루션 센터를 신설했다.
2021년 10월 19일에는 미국 카이저 대학(Keiser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1년 10월 21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푸드 바이오이노베이션센터를 신설했다.
2021년 12월 2일에는 스페인 카탈루냐 국제대학(Universitat Internacional de Cataluny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1년 12월 14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AI·디지털트윈·SW실증센터를 신설했다.
2021년 12월 15일에는 브라질 미나스 게라이스 국립대학(Federal University of Minas Gerais)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1년 12월 23일에는 호주 퀸즈랜드 공과대학(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과 학술교류 협정을 연장했다.
2021년 12월 28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디스플레이 소자융합 기술개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동남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 센터를 폐지했다.
2022년 1월 4일에는 일본 카나가와 대학(Kanagawa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2년 3월 1일에는 교학부총장 직속기관으로 인권센터 신설, 대외협력처와 국제교류처를 통합하여 대외



국제처로, 도서관과 정보전산원을 통합하여 학술정보원으로 개편했다. 산학협력단 조직을 2부단장(연구개발지원부단장, 기술경영지원부단장) 2실(연구개발지원실, 사업화지원실) 6팀(R&D전략기획팀, 정산팀, 회계팀, 구매팀, 기술사업화팀, 자산관리팀)에서 2부단장(산학지원부단장, 산학협력부단장) 3실(연구개발지원실, 사업기획실, 성과관리지원실) 7팀(정산팀, 재무팀, 구매팀, 자산관리팀, 기술사업화팀, 전략기획팀, 협약팀)으로 개편, 부속기관인 기술경영센터를 폐지했다.

2022년 3월 21일에는 중국 웨이팡공정직업대학(Weifang Engineering Vocational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2022년 3월 22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동아기능성운동트레이닝센터(학교기업)를 신설했다.

2022년 4월 21일에는 아일랜드 칼로우 대학(I.T. Carlow)과 학술교류 협정을 연장하였다.

2022년 5월 3일에는 산합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부산디지털역량강화사업센터 신설, 스마트공장운영설계 전문인력양성사업단 폐지,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의 명칭을 부산광역시환경보건센터로 변경했다.

2022년 6월 16일에는 의과대학 부속기관인 의학시뮬레이션센터를 신설했다.

2022년 7월 28일에는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3.0) 선정에 따라 총장 직속기관인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의 명칭을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3.0)으로 변경,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센터를 신설했다.

2022년 8월 8일에는 베트남 두이탄대학(Duy Tan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연장하였다.

2022년 8월 16일에는 베트남 호치민 과학기술대학(Hochiminh City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2년 8월 26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동방대학(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2년 8월 29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대학(Samarkand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2년 8월 31일에는 카자흐스탄 아블라이한 국제관계언어대학(Kazakh Ablai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 World Languages)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2년 9월 1일에는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며 산하에 안전관리팀을 두고 기존 건설관리본부 부속기관인 연구실안전관리센터를 폐지했다. 총장 직속기관으로 바이오헬스규제과학IP선도센터를,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AI·디지털트윈·SW실증센터, SW전문인재양성사업단을 신설했다.

2022년 10월 20일에는 보건복지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간호학부 부속기관인 간호시뮬레이션센터를 신설했다.

2022년 1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몬테레이 베이(California State University-Montery Ba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2년 11월 22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응용 과학대학(Frankfurt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2년 11월 22일에는 파키스탄 수피리어 대학(Superior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2년 11월 29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AI로봇윤리기술센터, 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를 신설했다.

2022년 12월 1일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Sasn Francisco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2년 12월 26일에는 콜롬비아 엘 보스크 대학(Universidad el Bosque)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3년 1월 3일에는 경영대학 부속기관인 경영교육인증지원센터를,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스마트거버넌스연구센터를 폐지했다.
2023년 3월 1일에는 단과대학으로 융합대학 신설, 학술정보원 조직을 3과(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서비스1과, 학술정보서비스2과) 2분관 5팀(학술지원팀, 학술서비스팀(승학/부민), 법학정보서비스팀, 의학정보서비스팀)에서 2과(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서비스과) 2분관 5팀(학술정보지원팀, 학술정보서비스1팀, 학술정보서비스2팀, 법학정보서비스팀, 의학정보서비스팀)으로 개편했다.
2023년 3월 21일에는 일본 분쿄 학원대학(Bunkyo Gakuin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3년 3월 27일에는 미국 센트럴 오클라호마 대학(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3년 4월 14일에는 일본 국립 노인병학 및 노년학 센터(National Center for Geriatrics and Gerontolog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3년 6월 1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DANVI센터를 신설했다.
2023년 6월 15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입학전형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생산기술연구소, 에너지환경응용기술연구소, 항암면역연구센터를 폐지했다.
2023년 8월 1일에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사업 선정에 따라 총장 직속기관인 클린에너지융합부품소재사업단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 선정에 따라 총장 직속기관인 소프트웨어혁신센터를 신설했다.
2023년 8월 11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부산소방마음돌봄센터를 신설했다.
2023년 9월 1일에는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안전관리센터를 교육부총장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직업교육 혁신지구 스마트제조 인력양성사업센터를 신설했다.
2023년 11월 2일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윌밍턴(University of North Caarolina-Wilmington)과 학술교류 협정을 연장하였다.
2023년 12월 11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와 메타미디어연구소를 신설했다.
2023년 12월 20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배터리기술센터를 신설했다.
2024년 1월 11일에는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지능정보빅데이터센터를 신설했다.
2024년 1월 17일에는 베트남 홍방국제대학(Hong Bang International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4년 2월 2일에는 영국 티사이드 대학(Teesside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4년 2월 13일에는 그루지아 그루지아대학(University of Georgi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4년 2월 14일에는 독일 루파나 대학-뤼네부르크(Leuphana University Lunberburg)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4년 2월 19일에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학(University of Indonesia)과 학술교류 협정을 연장하였다.
2024년 2월 19일에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대학(Fenerbahce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

였다.
2024년 3월 1일에는 교육혁신원 부속기관인 교육성과관리센터를 폐지하고, 학생상담센터, 진로개발센터를 학생·취업지원처 산하로 이관하였다. 기획처 부속기관으로 IR센터를,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으로 미래기술연구원을 신설하고, 학생·취업지원처 부속기관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폐지하였다.
2024년 3월 8일에는 스페인 알리칸테대학(Universidad de Alicante)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4년 4월 4일에는 포르투갈 민호대학(University of Minho)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4년 4월 18일에는 일본 오사카학원대학(Osaka Gakuin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4년 5월 7일에는 인도네시아 비누스대학(BINUS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연장하였다.
2024년 7월 1일에는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종료에 따라 총장 직속기구인 인문역량강화사업단을 폐지하였다. 예술체육대학 부속기관 경기지도자연수원 명칭을 전문스포츠지도사연수원으로 변경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을 폐지하였다.
2024년 10월 24일에는 태국 치앙마이대학(Chiang Mai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4년 12월 1일에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선정에 따라 총장 직속기구로 글로컬대학추진단을 신설하였다.
2024년 12월 19일에는 특수대학원으로 부동산대학원을 신설하였다.
2024년 12월 26일에는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첨단극저온재료센터, 휴먼케어R&D혁신지원센터, 차세대전력반도체센터를 신설하였다.
2025년 1월 9일에는 중국 연안대학(Yanan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5년 1월 21일에는 영국 허트퍼트셔대학(University of Hertfordshire)과 학술교류 협정을 연장하였다.

현재 대학교의 규모는 7개 대학원[석사 76개 학과 및 105개 과정(전공), 박사 71개 학과 및 76개 과정(전공)], 11개 단과대학(3개 학부 49개 학과 14개 전공), 3개 독립학부(3개 학과, 1개 전공), 3개 계약학과(3개 학사과정, 2개 석사과정, 1개 박사과정)로 구성돼 있다.

2. 연 표

1946. 11. 1 개 교
1947. 12. 30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동아학숙의 설립허가와 동아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학부(법률학과), 문리학부(문학과, 정치경제학과, 수학과, 물리학과)의 2학부 5학과를 설치
1948. 6. 15 동아대학보 창간
1949. 4. 1 교사를 부산시 범1동 365번지로 이전
1949. 7. 20 제1회 졸업식 거행
1951. 2. 12 전시문화강좌 개설
1951. 2. 19 전시과학강좌 개설
1951. 10. 5 교사를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로 이전
1952. 9. 1 법학부를 법정학부(법률학과, 정치경제학과)로 개편
1953. 9. 10 제2관 준공
1953. 10. 14 정재환 학장 취임
1954. 1. 30 농학부를 설치하고 농학과, 농공학과, 원예학과 신설
1954. 11. 5 본관 준공
1955. 3. 7 공학부를 설치하고 건축학과, 토목학과, 기계학과를 신설
문리학부에 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화학과를 신설
법정학부의 정치경제학과를 정치학과, 경제학과로 개편
1955. 9. 10 제3관 준공
1955. 10. 9 제5관 준공
1956. 4. 25 임시 2부대학 설치(법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상학과) 인가
1956. 5. 30 임시 2부대학에 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농학과, 농공학과, 원예학과, 건축학과, 토목학과, 기계학과를 설치
1956. 8. 7 제2학생회관(기숙사)준공
1957. 2. 10 박물관 준공
1957. 12. 8 과학관 준공
1957. 12. 18 중앙도서관 준공
1958. 2. 4 농학부의 농공학과를 폐지하고 문리학부에 가정학과, 법정학부에 상학과를 신설
1958. 9. 18 대학원 설치인가
석사학위과정에 법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영문학과, 물리학과, 농학과, 기계학과를 신설
1958. 10. 1 대학원 개원

1959. 2. 26 종합대학교 승격 인가(4개 대학 16개 학과)
문리과대학(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가정학과)
법정대학(정치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상학과)
농과대학(농학과, 원예학과)
공과대학(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1959. 4. 1 정재환 초대 총장 취임
1960. 1. 30 농과대학 본관 준공
1960. 2. 20 문리과대학과 2부대학에 철학과, 농과대학에 축산학과를 신설
공과대학과 2부대학의 건축학과, 토목학과, 기계학과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로 개편
1960. 10. 1 고전연구소 설치
1961. 4. 17 제117 R.O.T.C. 창설
1962. 2. 9 대학정비 기준령에 의하여 문리과대학의 국문학과, 영문학과와 법정대학의 정치학과, 상학과를 폐지, 정규 2부대학의 인가와 함께 국문학과, 영문학과, 가정학과, 경제학과, 상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를 설치하고 철학과, 사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정치학과, 법학과를 폐지
1962. 2. 27 동아대학교 병설 실업초급대학 설치인가
1962. 12. 29 문리과대학의 수학과, 물리학과를 수물학과로 통합개편하고 가정학과 폐지, 체육학과 신설
법경대학의 상학과와 2부대학의 정치학과, 법학과를 복과
1963. 1. 29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하고 법학과, 경제학과 신설
석사학위과정에 화학과, 토목학과 신설
1963. 12. 16 문리과대학의 국문학과, 영문학과, 가정학과와 법경대학의 정치학과를 복과
1964. 1. 18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동아학숙을 학교법인 동아대학교로 변경
1964. 3. 11 대강당 준공
1964. 6. 2 동아대학교 출판사 설치
1965. 1. 9 문리과대학에 미술학과, 농과대학에 잠사학과, 공과대학에 도시계획학과를 신설
1965. 2. 17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사학과, 상학과, 축산학과 신설
1965. 5. 8 농과대학에 한국농업기술연구소, 공과대학에 한국자원개발연구소 및 한국공장관리연구소 설치
1965. 11. 5 공과대학 실습관 준공
1966. 2. 16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철학과, 국어국문학과, 건축학과 신설
박사학위과정에 철학과, 농학과 신설
1966. 3. 30 법경대학 교사 준공
1966. 4. 6 학교법인 동아대학교를 학교법인 동아학숙으로 개편
1966. 6. 13 농과대학에 한국가축비육연구소 설치

1966. 12. 26 문리과대학에 음악과, 공과대학에 공업경영학과, 위생공학과, 화학공학과를 설치
1967. 1. 10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수학과, 가정학과, 체육학과를 신설하고 물리학과를 폐지
박사학위과정에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축산학과를 신설
1967. 5. 22 동아대학교 방송국(DUBS) 개국
1968. 8. 15 제1본관 준공
1968. 12. 20 학생군사훈련단 건물 준공
1968. 12. 26 문리과대학의 국문학과를 국어국문학과로, 영문학과를 영어영문학과로, 수물학과를 수학과로, 미술학과를 회화과로, 음악과를 성악과로 개편
법경대학의 정치학과를 정치외교학과로, 상학과를 경영학과로 개편
2부대학의 국문학과를 국어국문학과로, 영문학과를 영어영문학과로, 정치학과를 정치외교학과로, 상학과를 경영학과로 개편
농과대학에 농업생물학과, 공과대학에 전자공학과, 통신공학과, 응용물리학과를 신설
1969. 2. 4 경영대학원 설치 및 경영학과 신설인가
1969. 10. 25 학생지도연구소 설치
1969. 10. 29 가정관 준공
1969. 12. 27 공과대학의 통신공학과, 응용물리학과를 폐지하고 금속공학과, 전기공학과를 신설
1970. 3. 2 사회개발연구소 설치
1970. 10. 5 박물관의 동고관 준공
1970. 10. 15 체육관 준공
1970. 10. 19 대학원 교사 준공
1970. 12. 31 문리과대학의 성악과를 음악교육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2부대학에 전자공학과를 설치
1971. 1. 23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공업경영학과, 화학공학과를 신설
박사학위과정에 토목학과를 신설
1971. 3. 어학연습실 설치
1971. 10. 7 지독료 발족
1971. 12. 31 법경대학에 지역사회개발학과 신설
1972. 1. 2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도시계획학과를 신설
박사학위과정에 화학과를 신설
1972. 3. 2 법경대학에 사회보장문제연구소 설치
1972. 5. 5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치
1972. 6. 22 농과대학 연구교사 준공
1972. 8. 15 체육교육상(표범상) 건립
1972. 10. 13 구덕관 준공
1972. 12. 26 문리과대학에 교육학과, 법경대학에 관광경영학과를 신설
공과대학의 금속공학과를 분말야금공학과로, 화학공학과를 응용화학과로, 전기공학과



를 제어공학과로 개편

1973. 1. 9 교육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육행정전공, 교육심리전공, 교육방법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일반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육전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공업교육전공, 농업교육전공을 신설

1973. 4. 17 문리과대학 교사 증축

1973. 7. 23 시민하계 교양강좌 개설

1973. 8. 30 제2본관 및 공과대학 별관 준공

1973. 9. 19 인구문제연구소, 도시문제연구소 설치

1973. 12. 28 공과대학의 응용화학과를 공업화학과로, 분말야금공학과를 금속공학과로, 제어공학과를 전기제어공학과로 개편

1973. 12. 29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원예학과, 전자공학과를 신설

1974. 3. 1 에너지연구소 설치
문리과대학의 회화과를 미술학과로 개편

1974. 12. 21 법경대학에 무역학과 신설, 지역사회개발학과 폐지

1975. 6. 26 정수봉 제2대 총장 및 정재환 명예총장 취임

1975. 6. 28 학도호국단 창단

1975. 9. 1 석당학술연구장려회 발족

1975. 11. 30 중앙도서관, 대강당 및 학생회관의 증·개축

1975. 12. 30 법경대학에 행정학과, 문리과대학에 물리학과를 신설

1976. 1. 2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위생공학과, 금속공학과, 전기공학과를 신설

1976. 1. 30 박물관의 국보관 준공

1977. 1. 15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과별 학생정원제를 계열별 학생정원제로 변경

1977. 1. 27 경영문제연구소, 문리과대학에 한국민속문화연구소 설치인가

1977. 5. 20 새마을연구소 설치

1977. 9. 12 실험대학 승인(법경대학)

1977. 11. 1 석당 정재환 박사 동상 건립

1977. 12. 31 문리과대학에 독어독문학과, 일본어학과, 식품영양학과, 법경대학에 회계학과, 2부대학에 전기공학과를 신설

1978. 1. 24 문리과대학에 기초과학실험실습실 설치

1978. 2. 4 동아대학교 병설실업초급대학 폐지

1978. 8. 17 독일 아헨공과대학(Rheinisch- Westfät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78. 10. 5 실험대학 대상 확대승인(문리과대학, 농과대학, 공과대학)

1978. 10. 7 문리과대학에 생물학과, 응용미술학과를 신설

미술학과를 회화과로 학과명칭 변경
2부대학에 독어독문학과, 행정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공업경영학과,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를 신설

1978. 12. 30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행정학과, 무역학과를 신설
박사학위과정에 경영학과, 수학과를 신설
교육대학원에 상업교육전공, 기계교육전공을 신설

1979. 4. 10 사회개발연구소 설치
도시문제연구소, 에너지연구소, 법경대학의 사회보장문제연구소, 농과대학의 한국가축비육연구소 및 공과대학의 한국공장관리연구소를 폐지

1979. 4. 18 공과대학을 사하구 하단동의 신축 제2캠퍼스로 이전

1979. 9. 22 문리과대학을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법경대학을 정법대학과 상경대학으로 각각 분리 개편
공과대학의 전기제어공학과를 전기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1979. 12. 5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교육학과를 신설
박사학위과정에 정치학과, 전자공학과, 위생공학과, 기계공학과를 신설

1980. 10. 2 정법대학을 법정대학으로 대학명칭 변경
2부대학을 폐지하고 야간강좌개설학과로 개편
문과대학에 불어불문학과, 법정대학에 사회학과를 신설
문과대학의 일본어학과를 일어일문학과로, 이과대학의 가정학과를 가정관리학과로, 공과대학의 위생공학과를 환경공학과로, 공업화학과를 화학공학과로 각각 학과명칭 변경

1980. 11. 3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독어독문학과, 물리학과를 신설
박사학위과정에 행정학과, 금속공학과, 화학공학과를 신설

1980. 11. 24 교육대학원에 교육상담전공, 독어교육전공, 국민윤리교육전공, 공예교육전공을 신설

1980. 11. 26 공과대학 3호관 준공

1981. 3. 2 한국비교공법연구소 설치

1981. 3. 전자계산소 개소
고전연구소를 문과대학 부설 역사문화연구소로 명칭 변경

1981. 8. 29 제2캠퍼스에 이과대학과 농과대학을 이전
제2도서관 개관

1981. 9. 8 정수봉 제3대 총장 취임

1981. 10. 20 이과대학에 의류학과, 상경대학에 응용통계학과, 농과대학에 농업경제학과, 공과대학에 자원공학과를 각각 신설

1981. 11. 25 대학원 계열별 학생정원제를 총정원제로 변경
석사학위과정의 상학과를 경영학과로, 건축학과를 건축공학과로, 토목학과를 토목공학과로, 기계학과를 기계공학과로, 위생공학과를 환경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박사학위과정에 교육학과를 신설, 토목학과를 토목공학과로, 위생공학과를 환경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경영대학원에 경제행정학과, 공업경영학과 설치

1982. 2. 18 어학연습실을 어학연구소로 개편
방사선물리연구소, 보건진료소 설치

1982. 8. 20 독일 뮌헨대학(Ludwig-Maximilians Universität München)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82. 10. 1 사회개발연구소와 한국비교공법연구소를 사회과학연구소로 통합 개편

1982. 10. 5 체육대학 설치 및 무용학과 신설, 이과대학의 체육학과를 체육대학으로 학과소속 변경
문과대학에 중어중문학과를 신설

1982. 11. 2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생물학과 신설

1983. 2. 25 영자학보(The Dong-A Herald) 창간

1983. 5. 24 역사문화연구소와 한국민속문화연구소를 석당전통문화연구원으로 통합 개편, 사회과학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설치, 사회개발연구소, 방사선물리연구소 폐지

1983. 8. 1 교수회관 준공

1983. 9. 8 예술대학 설치 및 조소과 신설
문과대학의 회화과, 음악교육과, 응용미술학과를 예술대학의 회화과, 음악학과, 공예과, 산업미술과로 조정 개편
문과대학의 독어독문학과 야간강좌 폐지, 일어일문학과 신설
공과대학에 전산공학과를 신설, 공업경영학과를 산업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체육대학에 경기지도학과를 신설

1983. 9. 9 제2캠퍼스 체육관 준공

1983. 10. 29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식품영양학과, 잠사학과를 신설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의 무역관리전공 폐지

1984. 2. 16 기초과학실험실습실 폐지
이과대학에 기초과학실험실습실, 기초과학연구소, 농과대학에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목장, 한국농업기술연구소, 공과대학에 부속공장, 한국자원개발연구소를 각각 설치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환경문제연구소로 명칭 변경

1984. 8. 29 독일학연구소 및 공과대학에 해양자원연구소, 재료실험실 설치 인가

1984. 10. 5 법정대학, 상경대학을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으로 조정개편
이과대학에 의예과, 경영대학에 관광경영학과 야간강좌, 농과대학에 조경학과, 체육대학에 사회체육학과를 신설

1984. 11. 27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회화과, 음악학과, 응용미술학과, 농생물학과를 신설하고, 공업경영학과를 산업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박사학위과정에 독어독문학과, 생물학과, 체육학과, 산업공학과를 신설
경영대학원에 관광경영학전공 신설

1985. 3. 28 법학연구소 설치인가

1985. 8. 5 제1캠퍼스를 대신동캠퍼스, 제2캠퍼스를 하단캠퍼스로 캠퍼스 명칭 변경
1985. 8. 15 하단캠퍼스에 대학본부와 문과대학 건물 준공 및 이전
1985. 9. 8 정수봉 제4대 총장 취임
1985. 11. 1 하단캠퍼스에 제1학생회관 준공
1985. 11. 15 문과대학에 국민윤리학과, 경영대학에 경영정보학과, 공과대학에 해양공학과를 신설
1986. 4. 10 여학생교양실 설치
1986. 6. 10 중화민국 중국문화대학(中國文化大學)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86. 9. 1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3계열에서 4계열로 변경하여 인문계열의 회화과, 음악학과, 응용미술학과를 예능계열로 계열 변경
1986. 11. 6 의과대학 설치 및 의학과 신설
이과대학을 자연과학대학으로 대학명칭 변경
문과대학에 고고미술사학과를 신설
1986. 11. 29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도시계획학과를 도시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1987. 2. 20 하단캠퍼스에 학군단 건물 준공
1987. 3. 31 하단캠퍼스를 승학캠퍼스로, 대신동캠퍼스를 구덕캠퍼스로 캠퍼스 명칭 변경
1987. 4. 17 일본 츄우쿄오대학(中京大學)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87. 8. 21 승학캠퍼스에 경영대학건물 준공 및 이전
1987. 10. 23 문과대학을 인문과학대학으로, 공과대학의 도시계획학과를 도시공학과로 각각 대학 및 학과명칭 변경
인문과학대학에 한문학과, 사회과학대학에 신문방송학과, 농과대학에 농화학과, 예술대학에 섬유미술학과를 신설
1987. 11. 9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사회학과, 자원공학과를 신설
박사학위과정에 무역학과, 원예학과, 전기공학과, 도시공학과를 신설
1988. 8. 16 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승학캠퍼스로 이전
1988. 8. 25 영국 리버풀대학(The University of Liverpool)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88. 10. 29 공과대학 야간강좌개설학과를 폐지, 주간학과로 통합 개편
1988. 11. 4 베네수엘라 오리엔떼대학(Universidad de Oriente)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88. 11. 30 산업대학원을 설치하고 산업공학과, 건설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산공학과, 환경관리학과, 유통산업학과, 화학공학과를 신설
1988. 12. 22 학생회관 증축
1989. 2. 27 정수봉 총장 이임
1989. 3. 1 신순기 제5대 총장 취임
1989. 3. 31 경영대학에 관광레저연구소 및 의과대학에 생명과학연구소 설치인가
새마을연구소 폐지
1989. 5. 15 공과대학 제4호관 및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실험실습실 준공
1989. 10. 26 의과대학과 미국 텍사스 의학재단 및 휴스톤 종합의료원(Texas Medical Science

Foundation and Houston Medical Institute)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89. 11. 6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의류학과, 해양공학과 신설
경영대학원의 경영학과, 경제행정학과, 공업경영학과가 경영학과로 통합 조정

1990. 1. 1 의과대학과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Baylor College of Medicine)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0. 1. 17 미국 프레스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90. 1. 19 여학생교양실 폐지

1990. 2. 7 농과대학 잠사학과를 천연섬유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의과대학에 산업의학연구소와 종합실험실습실 설치

1990. 3. 26 부속병원 준공 및 개원

1990. 10. 16 인문과학대학 일어일문학과의 야간강좌 폐지

1991. 2. 28 신순기 총장 이임

1991. 3. 1 손병규 제6대 총장 취임

1991. 3. 9 경영정보교육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설치인가

1991. 10. 22 생활과학대학을 설치하고 자연과학대학의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를 생활과학대학으로 학과소속 변경
예술대학에 기악과 신설

1991. 11. 2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을 동아대학교 병원으로 명칭 변경

1991. 12. 31 손병규 총장 이임

1992. 1. 24 이태일 제7대 총장 취임

1992. 4. 16 공과대학에 생산기술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및 예술대학에 조형연구소 설치인가
농과대학에 한국농업기술연구소를 농업자원연구소로 명칭 변경

1992. 7. 14 카자흐공화국 국립체육대학(Kazakh Institute of Physical Education)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92. 7. 28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농화학과, 회계학과 신설 및 전산공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박사학위과정에 농생물학과, 해양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신설 인가

1992. 10. 7 보건진료소 개소

1992. 11. 20 의과대학과 일본 고오베대학(神戶大學) 의학부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2. 11. 27 의과대학과 일본 고오베 아사히병원(神戶朝日病院)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3. 2. 28 이태일 총장 이임

1993. 3. 1 이상윤 제8대 총장 취임

1993. 3. 25 공과대학 전산공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유전공학연구소 및 인문과학대학에 인문과학연구소, 생활과학대학에 생활과학연구소, 의과대학에 임상의학연구소 설치인가

1993. 8. 19 경기지도자연수원 설치인가
중국 북경제2외국어대학(北京第二外國語學院)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93. 9. 4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신문방송학과, 관광경영학과 설치인가
박사학위과정에 물리학과 신설인가
1993. 12. 29 사회교육원 설치인가
1994. 10. 21 언론홍보대학원 설치 및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신설인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경영정보학과, 박사학위과정에 회계학과 신설인가
교육대학원에 사회교육전공, 일본어교육전공 신설인가
산업대학원의 전자공학과를 전자통신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1994. 12. 20 경영정보교육원을 경영정보연구소로 개편
1995. 1. 25 동아대학교 병원을 동아의료원으로 승격
1995. 2. 1 산학협력연구센터 설치
1995. 2. 8 석당홀 및 석당갤러리 개관
1995. 2. 28 이상윤 총장 이임
1995. 3. 1 이태일 제9대 총장 취임
1995. 6. 1 경영정보연구원을 경영정보연구소로 개편
1995. 6. 29 일본 히메지 공업대학(姬路工業大學)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95. 9. 12 한국자원개발연구소를 건설기술연구소로 개편
1995. 10. 4 농과대학을 생명자원과학대학으로 농업경제학과를 자원경제학과로 각각 대학 및 학과 명칭 변경
학부제 실시에 따라 생명자원과학부, 건설공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체육학부의 4개 학부 설치
의과대학에 간호학과 신설
1995. 10. 23 교육대학원에 유아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신설인가
1995. 12. 21 인구문제연구소를 인구 및 지역발전연구소로 개편
1996. 2. 1 전자계산소를 종합정보센터로 개편
1996. 2. 28 공과대학과 일본 오사카대학(大阪大學) 기초공학부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6. 6. 21 교육대학원 부설 중등교원연수원 개설인가
1996. 7. 3 부산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1996. 7. 31 예술대학과 일본 타마미술대학(多摩美術大學)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6. 8. 6 경성대, 동서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여대, 부산외국어대, 한국해양대 등 부산지역 7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체결
1996. 9. 5 대구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1996. 9. 20 동의대, 부경대, 부산여대, 부산외국어대와 국제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협력체제수립에 관한 협정체결
1996. 10. 9 진해시와 보배캠퍼스(가칭) 조성에 따른 기본협약체결

1996. 10. 24 학부제 추가실시에 따라 인문학부, 한국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 자연과학부, 식품과학부, 의상섬유학부, 법학부, 사회과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관광경영 및 무역학부, 경영정보 및 통계학부, 도시조경학부, 지구환경공학부, 미술학부, 음악학부의 16개 학부 설치

1996. 10. 30 교육대학원에 전기교육전공, 관광경영전공 신설인가

1996. 11. 2 정책과학대학원 설치 및 지방자치전공, 도시 및 환경정책전공, 사회복지전공 신설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자원경제학과, 조경학과, 박사학위과정에 관광경영학과 신설인가

1996. 11. 16 의과대학과 중국 상해의과대학(上海醫科大學)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6. 11. 26 중국 북경어언문화대학(北京語言文化大學)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96. 12. 4 중국 중앙공예미술학원(中央工藝美術學院) 및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장식미술대학(Ecole des Arts Decoratifs de Strasbourg)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97. 2. 14 해군사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1997. 3. 24 공과대학과 미국 워싱턴대학교 공과대학(The Univ. of Washington College of Engineering)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7. 7. 11 일본 구주국제대학(九州國際大學)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97. 10. 25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천연섬유학과와 의류학과를 의상섬유학과로 통합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컴퓨터공학과, 산업대학원에 도시조경학과 신설

1997. 11. 5 경영대학의 관광경영 및 무역학부를 국제관광통상학부로 명칭 변경

1997. 11. 12 국제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

1997. 11. 24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98. 1. 31 정책과학대학원의 지방자치전공, 도시 및 환경정책전공, 사회복지전공을 지방자치행정전공과 사회복지전공으로 개편

1998. 3. 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인정을 받음

1998. 4. 4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가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의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선정

1998. 4. 15 아·태관광연구소와 중국 항주대학 관광연구소(杭州大學 旅遊硏究所)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8. 4. 16 일본 가나자와대학(金澤大學)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98. 4. 22 경영대학 부설 관광레저연구소를 동아대학교 부설 아·태관광연구소로 소속 및 명칭 변경

1998. 5. 1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설치
국제관광정보센터 설치

1998. 6. 20 아·태관광연구소와 호주 머독대학교 관광연구센터(Cooperative Research Center for Tourism, Murdoch Univ.)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8. 9. 1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목장을 동아대학교 부속 종합농장으로 통합

공과대학 부속 전산실습실 폐지
인문과학대학 부설 인문과학연구소를 동아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로 소속 변경
생활과학대학 부설 생활과학연구소를 동아대학교 부설 생활과학연구소로 소속 변경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설 농업자원연구소를 동아대학교 부설 농업자원연구소로 소속 변경
공과대학 부설 건설기술연구소, 해양자원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를 동아대학교 부설 건설기술연구소, 해양자원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로 소속 변경
예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를 동아대학교 부설 조형연구소로 소속 변경
의과대학 부설 생명과학연구소, 산업의학연구소, 임상의학연구소를 동아대학교 부설 생명과학연구소, 산업의학연구소, 임상의학연구소로 소속 변경

1998. 9. 2 국제관광통상학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환대경영학과(Dept. of Hospitality Management, San Francisco State Univ.)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8. 9. 14 아·태관광연구소와 미국 휴스톤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Tourism Industry Institute, Univ. of Houston)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8. 10. 19 인문과학대학 외국어문학부를 서양어문학부와 중국·일본학부로 분리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를 정치행정학부와 사회언론광고학부로 분리
인문과학대학 외국어문학부(야간)을 서양어문학부(야간)로 명칭 변경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야간)을 정치행정학부(야간)로 명칭 변경
경영대학 경영정보 및 통계학부를 경영정보과학부로 명칭 변경
공과대학 건설공학부를 토목·해양공학부로 명칭 변경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산업시스템공학과로 명칭 변경

1998. 11. 11 마카오관광대학(旅遊學院)과 자매결연협정체결

1998. 12. 7 생명자원과학대학과 일본 오카야마 농학부(岡山大學 農學部)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8. 12. 22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1999. 1. 14 공동기기센터 설치

1999. 1. 26 숙명여자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1999. 2. 12 산학협력관 준공

1999. 2. 24 창업보육센터 설치

1999. 2. 28 이태일 총장 이임

1999. 3. 1 엄영석 제10대 총장 취임

1999. 3. 4 사회과학대학과 일본 쯔쿠바대학 사회과학부(筑波大學 社會科學部)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1999. 7. 23 부산시로부터 부산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로 선정

1999. 8. 11 농업자원연구소와 유전공학연구소를 통합하여 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생명과학연구소와 임상의학연구소를 통합하여 의과학연구소로 기구 개편

1999. 8. 24 정보통신연구소와 경영정보연구소를 통합하여 정보기술연구소로 기구개편



1999. 8. 31 교육부로부터 두뇌한국21사업 지역대학 육성사업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와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가 선정

1999. 10. 14 공과대학의 기계공학과와 산업시스템공학과를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로, 화학공학과와 금속공학과를 재료금속·화학공학부로 통합

1999. 11.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설치

1999. 11. 2 동북아국제대학원 설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원예학과와 농화학과를 생명자원과학과로 통합, 산업공학과를 산업시스템공학과로 명칭 변경, 박사학위과정의 원예학과를 생명자원과학과로, 산업공학과를 산업시스템공학과로 명칭 변경, 학연산 협동과정에 부산발전연구원 법학과, 학과간 협동과정에 음악문화학과 신설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에 선물거래전공 신설, 경제학전공, 행정학전공, 공정관리전공, 품질관리전공 폐지. 재무관리전공을 증권·금융전공으로, 생산·OR전공을 운영관리전공으로, 마아케팅전공을 마케팅전공으로 명칭 변경

산업대학원 신발산업공학과,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신설, 유통산업학과 폐지, 산업공학과를 산업시스템공학과로 명칭 변경

1999. 11. 26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교류협약체결

1999. 12. 8 교육부로부터 두뇌한국21사업 핵심사업분야에 경영정보과학부의 에이전트기반상거래지원팀이 선정

1999. 12. 21 인터넷창업보육센터 설치

2000. 1. 19 고용산재보험교육센터 설치

2000. 5. 2 공과대학과 일본 후쿠이대학 공학부(福井大學 工學部)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2000. 5. 19 법학도서분관 설치

2000. 6. 13 동북아연구소 설치

2000. 7. 11 호주 그리피스대학교(Griffith University)와 자매결연협정체결

2000. 7. 13 중국 강소성사회과학원(江蘇省社會科學院)과 자매결연협정체결

2000. 7. 18 경찰법무대학원을 교육부로부터 설치인가

2000. 8. 8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부의 한문학전공을 폐지하고 문예창작전공을 신설,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건축학부로 변경하여,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으로 각각 신설

2000. 9. 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1999년 학문분야(법학분야, 건축공학분야) 평가에서 법학부가 최우수로, 건축공학과가 우수로 선정

2000. 9. 29 고용산재보험교육센터를 지식자원개발센터로 명칭 변경

2001. 2. 7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Hochinminh City)와 자매결연협정 체결

2001. 2. 2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00년 학문분야(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 컴퓨터공학분야, 재료금속분야) 평가에서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와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최우수 그룹으로, 공과대학 재료금속·화학공학부와 대학원 금속공학

과가 우수 그룹으로 선정
2001. 3. 1 대학교 부설 어학연구소를 대학교 부속 언어교육원으로 소속 및 명칭 변경
2001. 6. 3 중국 중앙 공예미술학원이 청화대학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재협정 체결
2001. 6. 16 동북아국제대학원과 중국 하남대학(河南大學)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2001. 7. 12 일본 가나자와세료대학(金澤星稜大學)과 자매결연협정체결
2001. 7. 26 인문과학대학의 서양어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를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유럽어문학부(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로 분리 개편 및 국민윤리학전공을 윤리문화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체육학부에 무도학전공 신설
미술학부(회화전공, 공예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조소전공, 섬유미술전공)를 미술학부(회화전공, 공예전공, 조소전공),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섬유조형디자인전공)로 분리 개편 및 전공 명칭 변경
도시조경학부를 도시계획·조경학부로, 도시공학전공을 도시계획학전공으로 학부 및 전공 명칭 변경. 건축학부의 4년제 건축학전공을 2002학년도부터 5년제 건축학전공으로 학제 개편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축산학과를 식품과학과로 명칭 변경 및 박사학위과정에 고고미술사학과 신설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학과간 협동과정에 항만물류시스템과정 신설
정책과학대학원의 지방자치전공을 행정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산업대학원의 전기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폐지
정보통신대학원(제어정보학과, 전자정보통신학과, 정보공학과, 전자상거래학과) 설치 인가
예술대학원(미술학과,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설치 인가
2001. 9. 8 교육대학원의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을 공통과학교육전공으로 통합개편 및 사회교육전공을 청소년사회교육전공으로 명칭 변경
2001. 11. 2 일본 리쓰메이깐대학(立命館大學)과 자매결연협정체결
2002. 1. 30 구덕캠퍼스에 예술대학 준공 및 이전
2002. 2. 4 필리핀마닐라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Manila)과 자매결연협정체결
2002. 2. 6 필리핀 바기오대학(University of Baguio)과 자매결연협정체결
2002. 2. 8 호주 퀸스랜드대학교(The University of Queensland)와 자매결연협정체결
2002. 2. 27 동아의료원을 동아대학교 의료원으로 명칭 변경
2002. 3. 21 필리핀 딜리만대학(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과 자매결연협정체결
2002. 3. 25 산학협력연구센터와 일본 이와테대학교 지역공동연구센터(Iwate University, Center for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간의 학술교류협정체결
2002. 4. 29 대학교 부설 인구및지역발전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동북아연구소를 대학교 부설 동아시아연구원으로 통합 개편 및 대학교 부설 첨단과학기술연구단 설치

2002. 5. 21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의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선정
2002. 6. 19 승학캠퍼스에 한림생활관 준공
2002. 7. 10 중국 서남사범대학(西南師範大學)과 자매결연협정체결
2002. 7. 19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를 수학·신소재물리학부와 화학·생명과학부로 분리 및 생물학전공을 생명과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부를 식물생명공학부와 응용생명공학부로 분리 및 생물자원학전공을 식물유전공학전공으로, 원예과학전공을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으로, 응용생물학전공을 응용생물공학전공으로, 생물공학전공을 생명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을 신설
예술대학 디자인학부를 조형디자인학부로 명칭을 변경
2002. 7. 30 미국 키인대학교(Kean University)간의 학술교류협정체결
2002. 7. 31 구덕캠퍼스에 예술대학 실습동 준공
2002. 8. 5 이탈리아 메시나대학교(Universitù degli Studi di Messina)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2. 8. 7 공과대학과 베트남 하노이공과대학(Hanoi Univ. of Technology)간의 학술교류협정체결
2002. 8. 20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설치
2002. 8. 21 몽고 과학기술대학교(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2. 8. 25 중국 천진체육대학(天津體育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2. 9. 2 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생명공학과를 신설
2002. 9. 23 싱가폴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2. 9. 26 중국 길림예술대학(吉林藝術學院)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2. 10. 4 프랑스 소르본대학(Universite Paris I Pantheon Sorbonne)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2. 10. 18 법과대학, 동북아국제대학원, 경찰법무대학원, 사회교육원, 동아시아연구원, 지식자원개발센터가 부민캠퍼스 이전계획을 승인 받음
2002. 10. 21 암분자치료연구센터 신설
2002. 12. 6 중국 화중농업대학(華中農業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2. 12. 14 일본 애지숙덕대학(愛知淑德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3. 1. 15 의과대학 종합실험실습실을 의과학실험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2003. 1. 22 미국 미주리-컬럼비아대학(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3. 2. 24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 평생교육원(University of Victoria)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3. 2. 28 엄영석 총장 이임
법과대학, 동북아국제대학원, 경찰법무대학원, 사회교육원, 동아시아연구원, 지식자원개발센터를 부민캠퍼스로 이전

2003. 3. 1 최재룡 제11대 총장 취임
2003. 3. 25 부민동 소재 캠퍼스를 부민캠퍼스로 명함
언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교수학습개발센터 신설
2003. 7. 14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에 영어영문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야간강좌에 영어전공을 신설
공과대학 재료금속·화학공학부를 신소재·화학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속공학전공을 신소재공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를 기계공학과와 산업경영공학과로 분리
경영대학 경영정보과학부의 경영정보학전공을 폐지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예술학과를 신설
대학원 및 산업대학원의 도시조경학과를 도시계획·조경학과로 명칭을 변경
정보통신대학원의 정보공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명칭을 변경
예술대학원 미술학과를 아동미술학과로, 디자인학과를 조형예술학과로, 음악학과를 컴퓨터실용음악학과로 명칭을 변경
대학교 부설 아·태관광연구소를 대학교 부설 관광·레저연구소로 명칭 변경
대학교 부설 국제관광정보센터 폐지
2003. 10. 17 의과학연구소, 산업의학연구소 통폐합하여 의과학연구원 설치
2003. 11. 13 중소기업협력단 및 기술이전센터 설치
2004. 2. 25 생명자원과학대학과 중국 화동이공대학(華東理工大學)간의 학술교류협정체결
2004. 3. 16 (재단법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설치
2004. 3. 31 일본 나가사키 시볼드대학(長崎Siebold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4. 4. 28 생명자원과학대학과 심양약과대학(沈陽藥科大學)간의 학술교류협정체결
2004. 4. 30 미국 일리노이 공대(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4. 5. 28 중국 동북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4. 5. 29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延邊科學技術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4. 9. 1 승학캠퍼스 한림생활관 증축공사 착공
2004. 9. 8 일본 삿포로학원대학(札幌學院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4. 9. 16 예술대학과 일본 큐슈대학 예술공학부(九州大學藝術工學部)간의 학술교류협정체결
2004. 10. 1 승학캠퍼스 산학협력관 증축공사 착공,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2004. 10. 4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부 문예창작전공을 문예창작학과로 전환
법과대학에 국제법무학과를 신설
사회언론광고학부를 사회·사회복지학부와 신문방송학과로 분리하고 사회·사회복지학부에 사회학전공과 사회복지학전공을 두며, 경제학부를 경제학과와 금융학과로 분리
경영대학 국제관광통상학부를 국제관광학부와 국제무역학과로 분리하고 국제관광학부에 관광경영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 호텔외식경영학전공을 둠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를 분자생명공학부로, 식물유전공학전공을 유전공학전공으로,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을 환경생명공학전공으로 명칭 변경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를 전자컴퓨터공학부와 전기공학과로 분리하고, 전자컴퓨터공학부에 전자공학전공과 컴퓨터공학전공을 둠
기계공학과를 기계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계공학전공과 자동차공학전공을 둠
동북아국제대학원에 박사과정(국제학과)을 신설
교육대학원에 영양교육전공을 신설
산업대학원과 정보통신대학원을 산업정보대학원으로 통합하고, 해양공학과를 폐지하며 산업시스템공학과를 산업경영공학과로, 제어정보학과를 전기공학과로 명칭 변경
경찰법무대학원의 경찰법학과를 폐지하며, 부동산법학전공을 신설
정책과학대학원을 사회복지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회복지학전공과 행정학전공을 폐지하고 사회복지학과를 신설

2004. 11. 12 대학원과 중국 북경대학 동북아연구소(北京大學東北亞硏究所)간의 학술교류협정체결
2004. 11. 17 공학교육인증지원센터 설치
2004. 11. 23 법률상담센터 설치
2004. 12. 16 (재단법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 설치
2004. 12. 30 인터넷창업보육센터를 창업보육센터에 편입 통합
2005. 2. 14 일본 큐슈산업대학(九州産業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5. 2. 15 일본 쿠마모토대학(熊本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5. 2. 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05년 학문분야(기계공학분야)에서 공과대학 기계공학부가 “우수” 로 선정
2005. 2. 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05년 대학종합평가 “우수”로 선정
2005. 2. 28 승학캠퍼스 산학협력관 2개층 증축공사 준공
2005. 3. 1 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교류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2005. 3. 3 일본 류코쿠대학(龍谷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5. 3. 4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05년도 “훌륭한 대학교”로 선정
2005. 3. 10 일본 큐슈대학(九州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5. 4. 19 일본 칸사이대학(關西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5. 4. 21 대만 명전대학(銘傳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5. 4. 30 아일랜드 Swan Training Institute와 인턴십교류협정체결
2005. 7. 22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부를 국어국문학과로 명칭 변경
생활과학대학 식품과학부의 식품영양학전공과 식품과학(식품학)전공을 식품영양학전공으로 전공통합하고 의상섬유학부 섬유공학전공을 섬유산업시스템전공으로 전공명칭 변경
경영대학 국제관광학부의 호텔외식경영학전공을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으로 전공명칭 변경

공과대학 토목·해양공학부의 토목공학전공, 해양토목공학전공을 폐지하고 토목·해양공학부를 토목공학부로 학부 명칭을 변경하며, 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을 전자공학과로 명칭 변경과 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을 컴퓨터공학과로 명칭 변경하며, 신소재·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을 신소재공학과로 명칭 변경과 신소재·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을 화학공학과로 명칭 변경

체육대학을 스포츠과학대학으로 대학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 사회체육학전공, 무용학전공, 무도학전공)를 스포츠과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 사회체육학전공)와 스포츠문화학부(무용예술학전공, 무도학전공, 태권도학전공)로 분리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에 문예창작학과를 신설하며, 응용미술학과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고 조형디자인학과로 학과명칭을 변경하며, 농학과를 유전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생명자원과학과를 식물생명공학과로 학과명칭을 변경하며, 학·연·산협동과정에 석·박사학위과정의 의학과(의과학연구원)를 신설하고 학과간협동과정에 석·박사학위과정의 나노공학과를 신설하며, 산업정보대학원의 신발산업공학과를 폐지

2005. 8. 1 (재단법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나노기술연구센터 설치

2005. 8. 19 아일랜드 Institute of Technology, Carlow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5. 9. 14 러시아 극동국립대학교(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5. 10. 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설치

2005. 11. 7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신축공사 착공

2005. 12. 26 미국 시카고 주립대학(Chicago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5. 12. 30 교양교육원 설치

2006. 2. 8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6. 2. 9 일본 삿포로학원대학(札幌學院大學)과 교환학생교류에 관한 협정체결

2006. 2. 12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주관 200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교육대학원이 교육여건영역에서 “우수”로 선정

2006. 2. 16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설치(2009년) 승인받음

2006. 2. 1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05년 학문분야(체육학)평가에서 체육대학 체육학부가 “우수”로 선정

2006. 2. 21 승학캠퍼스 한림생활관 증축공사 준공

2006. 3. 1 학생복지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변경, 도서관의 수서과와 정리과를 통합하여 학술정보지원과로 개편하며, 열람1과를 학술정보봉사1과로, 열람2과를 학술정보봉사2과로 개편, 의과학실험지원센터를 본부 부속기관에서 의과대학 부속기관으로 변경, 공과대학부속공장사1폐지, 첨단과학기술연구단 폐지,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암분자치료연구센터를 본부 부설연구기관에서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소속 변경

2006. 4. 27 멀티미디어연구센터 설치
2006. 5. 12 석당학술원 설치(석당전통문화연구원 및 인문과학연구소 통폐합)
2006. 5. 12 석당전통문화연구원 및 인문과학연구소 폐지
2006. 7. 18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를 인문학부(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와 역사문화학부(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로 학부의 분리, 신설 및 전공분리, 중국·일본학부(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를 일어일문학과와 중국학부로 분리, 공과대학 지구환경공학부의 자원공학전공을 에너지·자원공학전공으로 전공 명칭 변경,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를 기계공학부로 전공 통합하여 단일학부로,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부의 무도학전공을 무도경찰학전공으로 전공 명칭 변경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의 의생명과학과 신설
동북아국제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제학과(중국지역전공, 일본지역전공, 동북아통상전공, 아·태관광전공)를 국제학과(동북아지역및통상전공, 아·태관광전공)로 전공 통합
산업정보대학원 전자상거래학과를 폐지
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를 문화예술매니지먼트학과로 명칭 변경
2006. 7. 31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Wisconsin Law School) 과 국제교류 협정 체결
2006. 11. 9 대학평의원회 설치
2007. 2. 15 전력변환시스템신기술연구센터 설치
2007. 2. 28 최재룡 총장 이임
2007. 3. 1 심봉근 제12대 총장 취임
2007. 5. 3 호주 라트로브대학교(La Trobe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7. 6. 28 중국 중국해양대학(中國海洋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7. 6. 28 중국 서남정법대학(西南政法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7. 7. 1 삼성경제연구소와 “혁신을 위한 경영진단 및 경쟁력 제고 전략 수립” 경영진단 실시
2007. 7. 2 중국 심천대학(深川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7. 8. 1 역사문화학부의 사학전공은 사학과로, 고고미술사학전공은 고고미술사학과로, 수학·신소재물리학부의 수학전공은 수학과로, 신소재물리전공은 신소재물리학과로, 화학·생명과학부의 화학전공은 화학과로, 생명과학전공은 생명과학과로, 의상섬유학부의 패션디자인전공은 패션디자인학과로, 섬유산업시스템전공은 섬유산업학과로, 정치행정학부의 정치외교학전공은 정치외교 학과로, 행정학전공은 행정학과로, 사회·사회복지학부의 사회학전공은 사회학과로, 사회복지 학전공은 사회복지학과로, 분자생명공학부의 유전공학전공은 유전공학과로, 환경생명공학전공은 분자생명공학과로, 응용생명공학부의 응용생물공학전공은 응용생물공학과로, 생명공학전공은 생명공학과로, 지구환경공학부의 환경공학전공은 환경공학과로, 에너지·자원공학전공은 에너지·자원공학과로 변경한다. 스포츠과학부의 체육학전공은 체육학과로, 경기지도학전공은 경기지도학과로, 사회체육학전공은 생활체육학과로, 스포츠문화학부의 무용예술학전공

은 무용학과로, 무도경찰학전공은 무도경찰학과로, 태권도학전공은 태권도학과로, 미술학부 조소전공은 조각전공으로 한다(2008.3.1 시행)

2007. 8. 1 미국 UNCP대학교(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embroke)와 학술교류 협정체결

2007. 8. 1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설치

2007. 8. 28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테라스 증축공사 준공

2007. 9. 11 대학원 응용경제학과를 금융학과로, 산업시스템공학과를 산업경영공학과로, 자원공학과를 에너지·자원공학과로, 경영대학원 경영정보전공과 인터넷비즈니스전공을 경영정보전공으로 통합하고,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과 교육상담전공을 교육심리및상담전공으로 통합하고, 교육방법전공을 폐지한다. 산업정보대학원의 건설사업관리학과를 신설하고, 언론홍보대학원 및 소속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를 폐지한다(2008.3.1 시행)

2007. 10. 17 일본 노스아시아대학(North ASI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체결
컨테이너화물안전수송기술개발클러스터사업단 설치

2007. 12. 27 중국 대련대학(大连大学) 체육학원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8. 2.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됨

2008. 3. 1 대외협력부총장을 폐지하고, 교학부총장을 부총장으로 변경, 학생·취업지원처를 학생처로 명칭변경, 대외협력실과 국제교류교육원을 통합하여, 대외협력처로 신설·통합하며, 건설관리본부를 신설하여, 기획처의 건설과와 사무처의 관리과 업무를 통합하며, 정보통신처를 정보전산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부속기관에 두며, 체육부 및 복지시설관리부를 대학본부에서 부속기관으로 소속변경
학보사와 방송국을 다우미디어센터로 통합하며, 직장예비군연대를 사무처 산하로 소속변경하며,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및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을 신설.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경영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스포츠과학대학의 부학장 직제를 폐지하고, 공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2개의 부학장제를 1개의 부학장제로 축소한다. 동북아국제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경찰법무대학원, 예술대학원의 부원장 직제를 폐지한다. 석당학술원, 교양교육원, 사회교육원, 생활체육지도자연구원, 교육대학원부설중등교원연수원의 부원장 직제를 폐지
공학교육인증지원센터를 공학교육혁신센터로 변경

2008. 7. 1 사회교육원을 평생교육원으로, 국어상담소를 국어문화원으로 개편

2008. 7. 7 몽골 국립사범대학 학술교류협정체결

2008. 7. 7 대학 인문학부(철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를 철학과, 윤리문화학과로,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영어전공)를 영어영문학과로, 유럽어문학부(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를 독어독문학과, 프랑스문화학과로, 중국학부를 중어중문학과로, 중국학과를 신설하며, 식품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을 식품영양학과로, 경영학부를 경영학과로,

국제관광학부(관광경영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를 관광경영학과로, 경영정보과학부를 경영정보학과로, 토목공학부를 토목공학과로, 도시계획·조경학부(도시계획학전공, 조경학전공)를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로, 기계공학부를 기계공학과로, 사회과학대학에 국제거래관계학과를 신설하며, 무도경찰학과를 경찰무도학과로, 미술학부(회화전공, 공예전공, 조각전공)를 회화학과, 공예학과, 조각학과로, 조형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섬유조형디자인전공)를 산업디자인학과, 섬유조형디자인학과로, 음악학부(음학전공, 기악전공)를 음악학과, 기악학과로, 법과대학 및 법학부, 국제법무학과를 폐지(2008.3.1시행)

2008. 8. 1 조규향 제13대 총장이 취임

2008. 9. 2 교육과학기술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통보(정원 80명)

2008. 10. 8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 교육대학원 유아영어교육전공 및 외국어로소의 한국어교육전공 신설하고 공통과학교육전공을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으로 분리하며, 경영대학원의 생산e-business전공을 운영관리전공으로 변경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신설(2009.3.1 시행)

2008. 10. 31 경찰법무대학원을 법무대학원으로 대학원 명칭 변경,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신축공사 준공, 부민캠퍼스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보수정비 및 박물관 내부시설공사 준공

2008. 11. 13 영국 하트퍼드셔대학교(University of Hertfordshire)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8. 12. 1 대만 국립고웅사범대학(國立高雄師範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8. 12. 5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经济贸易大学)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8. 12. 15 교육대학원부설중등교원연구원을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으로 변경

2008. 12. 15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설치

2008. 12. 24 SK telecom 산학협력 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센터 설치

2009. 3. 1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설치

2009. 3. 30 중국 가목사대학(佳木斯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9. 4. 24 미국 볼주립대학(Ball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9. 5. 19 박물관 부민캠퍼스 이전 개관

2009. 6. 11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를 생물·의생명과학로,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를 아동가족학과로 변경, 생명자원과학대학에 의약생명공학과를 신설,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및 건축공학전공을 건축학과(5년제) 및 건축공학과로 개편, 석당인재학부 신설, 사회과학대학 국제거래관계학과, 인문과학대학 중국학과 및 일어일문학과를 국제학부를 신설하여 각각 국제학전공, 중국학전공, 일본학전공으로 개편(2010.3.1 시행)

2009. 6. 26 대만 국립정치대학(國立政治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9. 7. 8 중국 감숙성(甘肅省)정부와 인재교류에 관한 협정체결

2009. 8. 6 호주 서호주대학교(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9. 8. 10 호주 퀸즐랜드공과대학교(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와 학술교류협

정체결
2009. 8. 10 대만 국립중정대학(國立中正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9. 8. 25 중국 란주대학(蘭洲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9. 9. 1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의 부원장 직제 신설, 법학전문대학원의 부원장을 교무부원장과 학생부원장의 2개의 직제로 변경
2009. 9. 15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가정관리학과를 아동가족학과로 변경,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건축학과 및 태권도학과 신설, 해양공학과 폐지, 박사학위과정에 간호학과 신설, 학·연·산 협동과정 법학과를 국제법무학과로 변경, 동북아국제대학원을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으로 변경, 산업정보대학원 화학공학과 폐지, 뉴에코시티학과 및 그린에너지시스템학과를 신설(2010.3.1시행)
2009. 10. 12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설치
2009. 10. 26 일본 무사시노대학(武蔵野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9. 10. 27 일본 테이쿄대학(帝京大學)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9. 11. 5 영국 카디프웨일즈대학(University of Wales, Institute of Cardiff)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9. 12. 7 공과대학과 중국 계서대학 안전환경공정과(鸡西大学 安全与环境工程系)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9. 12. 9 중국 대련외국어대학(大连外国语大学)과 중국 산동대학 위해분교(山东大学威海分校)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10. 1. 12 사회과학대학과 베트남 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0. 1. 25 중국 산동경제학원(山东经济学院)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0. 3. 1 교무·연구처 교무·연구과를 교무처 교무과로, 산학협력단 기획조정실을 산학연구지원실로 변경,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진흥실 신설, 산학협력단의 중소기업협력단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폐지,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를 본부 직할 부설연구기관으로 변경, 석당인재학부 행정지원실 및 국제학부 행정지원실 신설, 동북아국제대학원 행정지원실을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로 변경, 일부 대학(원)에만 운용되던 부학(원)장 직제를 전 대학(원)으로 확대
2010. 3. 5 공과대학과 카자흐스탄 카자흐 리딩 아카데미(Kazakh Leading Academy of Archiecture and Civil Engineering)와의 학술교류협정체결
2010. 4. 22 스포츠과학대학 경기지도학과를 스포츠지도학과로 변경(2011.3.1시행)
2010. 5. 26 중국 곡부사범대학(曲阜师范大学)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0. 6. 2 일본 후쿠오카대학(福岡大学)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0. 6. 26 미국 웨스턴미시간대학(Western Michigan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0. 7. 2 캐나다 탐슨리버스대학(Thompson Rivers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0. 7. 7 미국 하와이퍼시픽대학(Hawaii Pacific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0. 7. 19 Medi-Farm 산업화연구사업단 설치

2010. 8. 20 한림생활관 구덕관 준공
2010. 8. 27 교직부 설치
2010. 9. 1 입학사정관실, 평가·감사실, 국제교류과 설치
산학연구지원실을 연구지원실로, 산학협력진흥실을 산학협력실로 변경
나노기술연구센터 폐지
2010. 10. 4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1층 일부 증축(사회과학대학 영상방송실습실 설치공사)
2010. 10. 5 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신소재물리학과 석·박사 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생명의료윤리학과 석·박사 과정 신설
교육대학원 독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식물자원·조경교육전공, 상업정보교육전공 폐지
산업정보대학원 전기공학과, 전자정보통신학과, 컴퓨터공학과 폐지, 기술·경영컨설팅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신설(2011.3.1시행)
2010. 10. 25 영어교육연구소, 에코디자인사업단 설치
공과대학 부학장을 교학부학장과 산학부학장의 2개의 직제로 변경
2010. 11. 26 중국 화남농업대학(华南农业大学)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0. 12. 9 호주 션샤인코스트대학(University of Sunshine Coast)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0. 12. 9 영국 앵글리아러스킨대학(Anglia Ruskin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0. 12. 15 호주 모나쉬대학(Monash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1. 1. 7 중국 동화대학(东华大学)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1. 1. 24 중국 서안외사대학(西安外事大学)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11. 2. 18 교육대학원 철학교육전공, 관광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정보·컴퓨터교육전공 폐지(2011.3.1시행)
2011. 3. 1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연구소, 동아항노화연구소,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신재생에너지전력변환시스템연구소 설치
멀티미디어연구센터, 전력변환시스템신기술연구센터 폐지
2011. 4. 21 건축·디자인·패션대학 설립,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학과를 각각 건축·디자인·패션대학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로 소속 변경
관광경영학과를 국제관광학과로, 섬유조형디자인학과를 섬유미술학과로 명칭 변경
무용학과 폐지, 실용음악학과 신설, 음악학과와 기악학과를 음악학과로 통합(2012.3.1 시행)
창업지원단, 국제통상연구소 설치
지식자원개발센터를 글로벌인재개발센터로 명칭 변경
2011. 6. 22 미국 랜더대학(Lander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1. 6. 24 캐나다 알고마대학(Algom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1. 7. 20 계약학과 신설(2011.9.1 시행)

2011. 8. 8 캄보디아 Cambodian University for Specialties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1. 8. 30 승학캠퍼스 창업보육센터 공장식 건물 착공
2011. 9. 9 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 영유아보육학과 석·박사과정 신설
산업정보대학원 뉴에코시티학과,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선물거래전공 폐지
일반대학원 생물학과를 생명과학과로,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증권/금융전공을 재무전공으로 명칭 변경(2012.3.1 시행)
2011. 9. 14 호주 커틴대학(Curtin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1. 9. 30 암분자치료연구센터 폐지
2011. 11. 4 창업지원단을 본부직할 부속기관에서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으로 변경
2011. 12. 6 독일 Friedrich-Alezander University Busan Campus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1. 5 건축·디자인·패션대학 행정지원실 설치
2012. 1. 9 미국 테네시대학(The University of Tennessee)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2. 1 필리핀 아테네오대학(Ateneo de Manil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2. 2 도네시아 비누스대학(BINUS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2. 3 인도네시아 프레지던트대학(President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2. 23 부민캠퍼스 국제관(가칭) 부분 임시사용 승인
2012. 2. 29 법과대학 행정지원실 폐지
2012. 4. 9 베트남 빈증대학(Binh Duong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5. 24 대만 국립동화대학(National Donghw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대만 봉갑대학(Feng Chia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5. 29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University of Malaya)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5. 30 필리핀 라살대학(University of St. La Salle)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6. 5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신설. 공동기기센터를 본부 직할 부속기관에서 산학협력단 산하로 소속 변경. 연구기관 5개소 신설 : 맑스엥겔스연구소,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융합디자인연구소,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소, 천연물신약개발연구센터. 연구기관 3개소 폐지 : 조형연구소, 신재생에너지전력변환시스템연구소, SK telecom 산학협력차세대디스플레이연구센터
2012. 6. 8 영국 이스트런던대학(University of East London)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6. 13 대만 보인대학(Fen Jen Catholic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6. 26 부민캠퍼스 국제관 준공
2012. 6. 27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Friedrich Alexander University-Erlangen Nurberg)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6. 27 미국 안젤로주립대학(Angelo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6. 29 태국 카셋삿대학(Kasetsart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7. 10 승학캠퍼스 창업관 준공
2012. 7. 31 조규향 총장 이임

2012. 8. 1 권오창 제14대 총장 취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8. 6 호주 스윈번대학(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8. 15 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학교 커니캠퍼스(University of Nebraska at Kearne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2. 9. 1 산학협력단을 대학교 본부 소속으로 변경, 대외협력처를 단일과(대외협력과) 체제로 변경, 국제교류교육원을 신설하여 종전 대외협력처 국제교류과를 국제교류교육원 소속으로 변경
2012. 9. 13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교육대학원 청소년사회교육전공, 도덕·윤리교육전공 석사과정 폐지, 다문화교육전공 석사과정 신설(2013.3.1.시행)
2012. 9. 25 대학발전 기획 추진단 발족
2012. 9. 28 일본 다이도대학(Daido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10. 9 베트남 호치민기술사범대학(University of Technical Education, Ho Chi Minh C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10. 12 동북아국제전문대학원이 국제전문대학원으로 명칭변경(2013.3.1.시행)
2012. 10. 19 베트남 호치민기술사범대학 한국어 센터(University of Technical Education, Ho Chi Minh City, Korean Language Center)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11. 1 학생처를 학생·취업지원처로, 취업정보실을 취업지원실로 각각 명칭 변경.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를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신설
2012. 12. 5 베트남 한·베 친선IT대학(Korea-Vietnam Friendship IT College)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12. 13 미국 휴스턴대학(University of Houston)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2. 12. 18 태국 아시아공과대학(Asian Institute of Technolog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3. 1. 14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3. 1. 18 호주 맥콰리대학(Macquqrie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3. 1. 21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를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신설
2013. 2. 15 본부 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생활과학연구소를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로 명칭 변경
2013. 3. 1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총장 직속으로 변경
2013. 3. 7 중소기업청 주관 창업선도대학 선정
2013. 3. 27 창업지원단을 총장 직속기관으로 변경
2013. 5. 9 미국 현대디지텍과 학생인턴십협정 체결
2013. 7. 12 본교 국제전문대학원과 인도 KIIT대학교, 인도 켈커타대학교 간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2013. 7. 17 베트남 동방대학교 및 하노이공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3. 9. 1 평가감사실을 부총장 직속기관으로 소속 변경, 법무·감사실로 명칭 변경
학술정보봉사1, 2과를 학술정보서비스 1, 2과로 명칭 변경

국제교류교육원을 국제교류원으로 명칭 변경
본부직할 부속기관으로 언어교육원 신설
박물관을 석당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본부직할 부속기관으로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신설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으로 태권도건강문화연구소를 신설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동남권건설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신설

2013. 9. 7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부산사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설
2013. 10. 4 승학캠퍼스 공과대학2호관 증축공사(승강기 설치공사)를 준공
2013. 10. 17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2관 및 한림생활관 승학2관 신축공사 착공
2013. 11. 15 일본 나고야대학(Nagoya University)과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간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3. 12. 5 경찰법무대학원을 법무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 천연물신약개발센터 폐지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BK21Plus총괄사업단 신설
2013. 12. 23 스페인 말라가대학(University of Malaga)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3. 12. 27 한국대학평가원 주관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4. 1. 2 동아인 윤리강령 선포
2014. 1. 6 중국 정주대학(Zhengzhou University)과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간의 협정 체결
2014. 1. 8 캐나다 레이크헤드대학(Lakehead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4. 1. 14 태국 킹몽쿳공과대학(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과 동아대학교 공과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4. 2. 13 석당 글로벌하우스 신축공사 착공
2014. 3. 1 예술대학원을 문화예술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교수학습개발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명칭 변경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R&D전략기획센터 및 기업지원센터 신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인증 획득
2014. 3. 4 프랑스 에싸드 미술학교(Ecole Superieure d'Art et Design Grenoble-Valence)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4. 3. 12 창업선도대학-사관학교식 육성사업 선정
2014. 3. 13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부설어학센터(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English Language Programs)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4. 3. 17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치매센터 개소
2014. 3. 18 총장 직속기관으로 부산지역통일교육센터 신설
2014. 4. 15 사회과학대학과 미국 동북아 경제 포럼(Northeast Asian Economic Forum) 학술교류 협정 체결
중국 광주성건직업학원(Guangzhou City Construction College)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4. 5. 9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2단계 참여대학 선정
2014. 6. 11 중국 섬서공상직업대학(陕西工商职业学院)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4. 7. 1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에 생명산업 통합연계교육 사업단, 생명의료 윤리 전공 특성화 사업단, 동남권 지역사회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新교육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통섭형 인재양성 사업단, 기능성재료 특화 화학교육 사업단 등 총 4개 사업단 선정
2014. 7. 31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1관 리모델링 증축공사 착공
2014. 8. 1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과 R&D전략기획센터 폐지
교무처에 연구지원실 신설
국제교류원의 명칭을 국제교류처로 변경하고 본부 소속으로 변경
총장 직속기관으로 특성화총괄사업단 신설
중국 보계문리대학(宝鸡文理学院)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4. 8. 19 필리핀 파티마대학교(Our Lady of Fatima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4. 8. 31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Medi-Farm산업화연구사업단 폐지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영어교육연구소 폐지
2014. 9. 1 부총장 직속기관으로 교육혁신원 신설
교육혁신센터 부속기관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 신설
교무처 부속기관인 교육혁신센터와 교직부를 교육혁신센터 부속기관으로 소속 변경
학생·취업지원처 부속기관인 학생상담센터를 교육혁신센터 부속기관으로 소속 변경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체육부를 스포츠단으로, 체육과를 스포츠지원과로 명칭 변경
2014. 9. 26 인도네시아 바탐국제대학교(International University Batam)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4. 10. 7 핀란드 아시아 익스체인지(Asia Exchange)와 방문학생 유치 협약 체결
2014. 10. 16 베트남 국립경제대학교(National Economics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4. 10. 28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조선기술대학(Shipbuilding Institute of Polytechnic Surabaya)과 학술 교류협정 체결
2014. 10. 28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특성화 우수학과에 철학·윤리문화학과 선정
2014. 11. 13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2단계 사업에 에너지·자원공학과 선정
2015. 1. 6 말레이시아 테일러스대학교(Taylor's University) 국제관광학과와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과 간 학술교류협정체결
2015. 1. 14 중국 산동이공대학(山东理工大学)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1. 15 중국 제남대학(济南大学)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2. 6 중국 서안번역대학(西安翻译学院)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관광대학교(Trisakti Institute of Tourism)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경영대학교(Trisakti School of Management)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물류&운송대학교(Institute of Transportation & Logistics Management of Trisakti)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국제여자대학교(International Women University)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STMIK WIDYA UTAMA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STMIK BANI SALEH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하라판 버사마 폴리테크닉(Polytechnic Harapan Bersama)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픽시 인풋 세랑 폴리테크닉(Poltechnic Piksi Input Serang)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2. 26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Yokohama National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2. 27 승학캠퍼스 예술대학 임시사용 승인
2015. 2. 28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2관 준공
2015. 3. 1 생활과학대학 폐지
건축·디자인·패션대학의 명칭을 디자인환경대학으로 변경
예술체육대학, 건강과학대학 및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을 신설
사무처 행정관리실 폐지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복지시설관리부(과)를 폐지
2015. 3. 17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공공정책연구소, 친환경도시농업연구소 신설
2015. 3. 19 일본 나라학원대학(Nara Gakuin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4. 1 중국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4. 6 일본 메이죠대학(Meijo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4. 14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1관 리모델링 증축공사 준공
2015. 4. 23 인도네시아 스트믹위드야우타마대학(STMIK WIDYA UTAMA)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4. 28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면역네트워크파이오니어연구센터 폐지
2015. 5. 15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데이비스(University of California-Davis)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5. 26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오마하(University of Nebraska-Omaha)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6. 1 교무처, 기획처, 재무처에 부처장제 신설
2015. 6. 1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글로벌인재개발센터를 학생·취업지원처 부속기관으로 조직개편
2015. 6. 26 터키 도쿠즈엘르윌대학(Dokuz Eylul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7. 1 석당 글로벌하우스 준공
2015. 7. 8 석당인재학부와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국제보건정책 공간연구센터(University of Texas-Dallas, Center for Geospatial in Global Health Policy)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7. 22 고고미술사학과와 일본 도쿠시마대학(Tokushima University)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7. 24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기업가정신연구소 신설
2015. 8. 10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에너지환경응용기술연구소 신설
2015. 9. 1 사무처 내 안전관리실 신설
2015. 9. 24 라오스 수파노봉대학(Souphanouvong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10. 2 터키 이스탄불공과대학(Istanbul Technical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10. 26 대만 중화대학(中华大学)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10. 29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IoT연구센터 신설
2015. 11. 12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글로벌금융연구소 신설
2015. 11. 19 중국 기남대학(暨南大学)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5. 11. 26 말레이시아 세다얏국제대학(University College Sedayat International(U.C.S.I.) Extension)과 학생인턴십협정 체결
2015. 12. 14 중국 사천대학(四川大学)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6. 1. 12 인도네시아 파순단대학(Pasundan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6. 1. 13 인도네시아 컴퓨터대학(Indonesian Computer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6. 1. 27 국제관광학과와 말레이시아 테일러대학(Taylor's University) 학술교류협정 체결
2016. 2. 19 승학캠퍼스 한림생활관 승학2관 준공
2016. 2. 29 융합형디자인육성사업단 폐지
2016. 3. 1 융합교양대학 및 중국·일본학부 신설
공과대학 내 4개 학부 신설(인간환경융합공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기계산업경영공학부, 신소재화학공학부)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및 국제학부 폐지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교양교육원 폐지
2016. 3. 9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울산근로자건강센터 신설
2016. 3. 11 중국 산서성과학기술미디어그룹(山西科技传媒集团)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2016. 3. 29 구덕캠퍼스 중정부지 지하공간 개발공사 착공
2016. 4. 7 인도네시아 파드자드자란대학(Universitas Padjadjaran)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6. 4. 19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윌밍턴(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6. 5. 1 총장 직속기관으로 인문역량강화사업단 신설
2016. 5. 10 독일 본 대학(University of Bonn)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6. 6. 8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인문학연구소 신설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생명의료윤리연구소를 신설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공동가치창출혁신연구소를 신설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신설
2016. 7. 22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그린스보로(University of North Carolina- Greensboro)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6. 10. 11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소를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로 명칭을 변경
2016. 11. 16 총장 직속기관으로 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 신설
2016. 12. 8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글로벌재난안전연구센터 신설
2016. 12. 14 미얀마 양곤 기술대학(Yangon Technological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6. 12. 15 인도네시아 머츄 부아나 대학(University of Mercu Buan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6. 12. 19 중국 양주중국스위스호텔 직업대학(中瑞酒店職業學院)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1. 10 영국 미들섹스 대학(Middlesex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1. 12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선박해양시스템연구소를 신설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를 폐지
2017. 3. 1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실을 연구개발지원실과 사업화지원실로 확대 신설
교육혁신원 부속기관으로 교육성과관리센터 신설
융합교양대학을 기초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속기관으로 표현력증진센터 및 인성체험증진센터를 신설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기술이전센터를 기술경영센터로 명칭 변경
사무처 안전관리실 및 산합협력단 부속기관인 창업보육센터를 폐지
2017. 3. 3 일본 동아대학(University of East Asi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3. 13 베트남 두이탄대학(Duy Tan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4. 6 필리핀 산어거스틴대학(University of East Asi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4. 13 그루지아 이카루스대학(ICARUS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4. 13 인도네시아 위드야타마대학(Widyatama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4. 13 키르키즈스탄 오쉬 국립대학(Osh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5. 23 인도네시아 에퀴타스대학(STIE Ekuitas)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6. 26 필리핀 산호세대학(University of San Jose-Recoletos)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7. 3 인도네시아 세마랑 1945년 8월 17일 대학(University of 17 August 1945 Semarang)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7. 4 인도네시아 무하마디야 퍼르워커르토대학(University of Muhammadiyah Purworkerto)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7. 7 인도네시아 람붕망쿠랏대학(University of Lambung Mankurat)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
2017. 7. 20 인도네시아 디포네고로(University of Diponegoro)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8. 23 미국 하와이대학 어학센터(Hawaii English Language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Hawaii Manoa)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7. 9. 1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제 신설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명칭을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으로 변경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기업지원센터를 폐지

2017. 9. 12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사회복지경영연구소를 신설
2017. 11. 23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대학(Atma Jaya Catholic University of Indonesi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8. 2. 1 인도네시아 함카무함마디야대학(University of Muhammadiyah Prof. Dr. Hamk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8. 2. 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함마디야대학(University of Muhammadiyah Jakarta)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018. 3. 8 중국 청도농업대학(Qingdao Agricultural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4. 10 인도네시아 아흐마드달란대학(Universitas Ahmad Dahlan)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4. 10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무함마디야대학(Universitas Muhammadiyah Surakarta)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4. 10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무함마디야대학(Universitas Muhammadiyah Yogyakarta)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4. 10 인도네시아 말랑무함마디야대학(Universitas Muhammadiyah Malang)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8. 5. 8 필리핀 마푸아 기술 대학(Mapua Institute of Technolog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5. 9 방글라데시 데포딜 국제대학(Daffodil International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5. 17 미국 덴버 메트로폴리탄 대학(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of Denver)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5. 28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세계언어대학(Uzbekistan State World Languages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7. 13 네덜란드 틸버그 대학(Tilburg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8. 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y of Indonesia)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8. 10 싱가포르 난양 폴리텍(Nanyang Polytechnic)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8. 30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8. 30 중국 엽합국제대학(Uniterd International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9. 10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신설
2018. 9. 19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립경제서비스대학(Vladivostok State University Of Ecnomics and Services)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10. 10 인도네시아 수라바야국립대학(State University of Surabaya)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10. 23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젠더·어펙트연구소 신설
2018. 11. 22 카자흐스탄 카즈뀨대학(M. Narikbayev Kazguu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11. 22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다문화연구소 신설
2018. 12. 19 중국 목단강사범대학(Mudanjiang Normal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12. 19 대만 성오과기대학(Hsing Wu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8. 12. 28 우즈베키스탄 타슈켄스 사범대학(Tashkent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named after Nizami)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1. 24 탄자니아 달 에스 살람 대학(University of Dar es Salaam)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1. 28 구덕캠퍼스 '중정부지 지하공간' 임시사용 승인
2019. 2. 19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조형문화예술연구소 신설
2019. 2. 25 태국 출랄롱코른대학교(Chulalongkorm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2. 28 필리핀 라구나 말라얀 대학(Malayan College Laguan)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2. 28 교직부 폐지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그린에너지기기연구소 폐지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공공정책연구소 폐지
2019. 3. 11 필리핀 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3. 14 베트남 베트남 국립과학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Hanoi)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3. 14 베트남 과학기술대학교-하노이(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Hanoi)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4. 2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신설
2019. 4. 25 말레이시아 썬웨이대학교(Sunway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4. 25 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HELP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5. 2 터키 압둘라 걸 대학교(Abdullah Gul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5. 14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항바이러스의약연구소 신설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사회복지경영연구소 폐지
2019. 5. 17 말레이시아 테일러대학교(Taylor's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5. 20 인도네시아 에얼랑까 대학교(Universitas Airlangga)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5. 21 호주 커틴대학교(Curtin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연장
2019. 5. 23 러시아 남연방대학교(Southern Federal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6. 15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미토콘드리아허브제어연구센터 폐지
2019. 7. 19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빅데이터센터 신설
2019. 8. 19 베트남 미네소타 대학교 베트남센터(University of Minnesota, Vietnam Center)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8. 19 베트남 호치민 교육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ducation)와 학술교류 협정체결
2019. 8. 31 총장 직속기관인 특성화총괄사업단 폐지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소 폐지
2019. 9. 1 자연과학대학 부속기관인 유전자변형생물체관리실 신설
2019. 10. 10 총장 직속기관으로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단 신설

2019. 10. 17 중국 중경공상대학(Chongqing Technology and Business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10. 21 베트남 두이탄대학교(Duy Tan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11. 12 베트남 베트남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11. 19 베트남 말라가 대학교(University of Malaga)와 학술교류 협정 연장
2019. 11. 21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빅데이터센터 폐지
2019. 11. 21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을 아세안연구소로 명칭 변경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빅데이터센터 폐지
2019. 12. 9 인도네시아 텔콤 대학교(Universitas Telkom)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12. 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12. 12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야 대학교-족자카르타(Universitas Muhammadiyah Yogyakarta)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9. 12. 13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야 대학교-수라카르타(Universitas Muhammadiyah Surakarta)와 학술 교류 협정 체결
2019. 12. 20 한국대학평가원 주관 2019년(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20. 2. 10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무인이동체기술지원연구소 신설
2020. 2. 1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대학교(Universiti Islam Indonesia)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0. 2. 20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무인이동체기술지원연구소 신설
2020. 2. 29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전력기기융합설계연구센터 폐지
2020. 3. 1. 산업정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폐지
사회과학대학 소속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가 정치사회학부(정치외교학전공, 사회학전공)로 통합
생명자원과학대학 소속 생명공학과는 식품생명공학과로 학과명칭 변경
2020. 4. 9.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교육연구소 폐지
2020. 4. 16. 독일 츠비카우 응용과학대학교(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of Zwuickau)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0. 4. 17.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를 스마트물류연구센터로 명칭 변경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신설
2020. 4. 23. 미국 이스턴 미시간 대학교(Eastern Michigan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0. 6. 1.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산학협력연구센터 폐지
2020. 8. 18. 러시아 노브고로드 연방대학교(Novgorod State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0. 9. 1. 석당뮤지엄을 신설하고 산하조직으로 석당박물관, 석당미술관 이관 및 역사기록관 신설

석당박물관 산하 자료과를 학예연구과로 명칭 변경 및 석당뮤지엄 산하로 이관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산학협력연구센터 폐지
2020. 10. 8.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무인이동체기술지원연구소 폐지
2020. 10. 12. 중국 상해해양대학교(Sanghai Ocean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0. 10. 20.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무인이동체기술개발지원연구소 폐지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미래형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신설
2020. 11. 1. 총장 직속기관으로 대학혁신사업단 신설
2020. 12. 8.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친환경도시농업연구소를 바이오식품소재산업화 연구소로 명칭 변경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항암면역연구센터 신설
2021. 2. 3. 구덕캠퍼스 '교육동' 임시사용 승인
2021. 2. 28.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인문학연구소 폐지
2021. 3. 1. 대외부총장제 신설
총장 직속기관으로 클라우드혁신센터 신설, 교육혁신원 부속기관으로 원격교육 지원센터 신설 교무처 연구지원실을 폐지하고 대학원 교육연구정책실을 신설,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BK21Plus\사업단 대학원으로 이관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을 국제대학으로 변경, 컴퓨터·AI공학부 신설
2021. 4. 6.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환경문제연구소, 생명의료윤리연구소 폐지
2021. 4. 29. 총장 직속기관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설
2021. 6. 24.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오마하(University of Nebraska-Omaha)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1. 7. 20.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인문사회의학연구소 신설
2022. 8. 29. 부민캠퍼스 '동아한국어학당' 리모델링 공사 완료
2021. 9. 1. 건설관리본부 부속기관인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신설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기관인 유전자변형생물체관리실 폐지
2021. 9. 30. 파키스탄 포먼 크리스천 칼리지(Forman Christian College)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1. 10. 7. 터키 알틴바스 대학(Altinbas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1. 10. 9. 홍콩 링난 대학(Lingnan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1. 10. 19.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신경중개연구솔루션센터 신설
2021. 10. 19. 미국 카이저 대학(Keiser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1. 10. 21.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푸드바이오이노베이션센터 신설
2021. 12. 2. 스페인 카탈루냐 국제대학(Universitat Internacional de Catalunya)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1. 12. 14.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AI·디지털트윈·SW실증센터 신설
2021. 12. 15. 브라질 미나스 게라이스 국립대학(Federal University of Minas Gerais)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1. 12. 23. 호주 퀸즈랜드 공과대학(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과 학술교류 협정 연장
2021. 12. 28.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디스플레이소자융합기술개발지원센터 신설,
동남권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폐지
2022. 1. 4. 일본 카나가와 대학(Kanagawa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2. 3. 1. 교학부총장 직속기관으로 인권센터 신설
대외협력처와 국제교류처를 통합하여 대외국제처로, 도서관과 정보전산원을 통합하여 학술정보원으로 개편 산학협력단 조직을 2부단장(연구개발지원부단장, 기술경영지원부단장) 2실(연구개발지원실, 사업화지원실) 6팀(R&D전략기획팀, 정산팀, 회계팀, 구매팀, 기술사업화팀, 자산관리팀)에서 2부단장(산학지원부단장, 산학협력부단장) 3실(연구개발지원실, 사업기획실, 성과관리지원실) 7팀(정산팀, 재무팀, 구매팀, 자산관리팀, 기술사업화팀, 전략기획팀, 협약팀)으로 개편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기술경영센터 폐지
2022. 3. 21. 중국 웨이팡공정직업대학(Weifang Engineering Vocational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2. 3. 22.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동아기능성운동트레이닝센터(학교기업) 신설
2022. 4. 21. 아일랜드 칼로우 대학(I.T. Carlow)과 협정 연장
2022. 5. 3.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부산디지털역량강화사업센터 신설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스마트공장운영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단 폐지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의
명칭을부산광역시환경보건센터로 변경
2022. 6. 16. 의과대학 부속기관인 의학시뮬레이션센터 신설
2022. 7. 28. 총장 직속기관인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의 명칭을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3.0)으로 변경
산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센터 신설
2022. 8. 8. 베트남 두이탄대학(Duy Tan University)과 협정 연장
2022. 8. 16. 베트남 호치민 과학기술대학(Hochiminh City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2. 8. 2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동방대학(Tashkent State University of Oriental Studies)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2. 8. 29.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대학(Samarkand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2. 8. 31. 카자흐스탄 아블라이한 국제관계언어대학(Kazakh Ablaikhan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 World Languages)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2. 9. 1.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산하에 안전관리팀 신설, 건설관리본부 부속 기관인 연구실안전관리센터 폐지

총장 직속기관인 바이오헬스규제과학IP선도센터 신설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AI·디지털트윈·SW실증센터, SW전문인재양성사업단 신설
2022. 10. 20. 간호학부 부속기관인 간호시뮬레이션센터 신설
2022. 11. 7.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몬테레이 베이(California State University-Montery Ba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2. 11. 22. 독일 프랑크푸르트 응용 과학대학(Frankfurt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2. 11. 22. 파키스탄 수피리어 대학(Superior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2. 11. 29.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AI로봇윤리기술센터, 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 신설
2022. 12. 1.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Sasn Francisco State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2. 12. 26. 콜롬비아 엘 보스크 대학(Universidad el Bosque)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3. 1. 3. 경영대학 부속기관인 경영교육인증지원센터 폐지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스마트거버넌스연구센터 폐지
2023. 3. 1. 단과대학으로 융합대학 신설
학술정보원 조직을 3과(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서비스1과, 학술정보서비스2과) 2분관 5팀(학술지원팀, 학술서비스팀(승학/부민), 법학정보서비스팀, 의학정보서비스팀)에서 2과(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서비스과) 2분관 5팀(학술정보지원팀, 학술정보서비스1팀, 학술정보서비스2팀, 법학정보서비스팀, 의학정보서비스팀)으로 개편
2023. 3. 21. 일본 분쿄 학원대학(Bunkyo Gakuin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3. 3. 27. 미국 센트럴 오클라호마 대학(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3. 4. 14. 일본 국립 노인병학 및 노년학 센터(National Center for Geriatrics and Gerontolog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3. 6. 1.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인 DANVI센터 신설
2023. 6. 15.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입학전형연구센터 신설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소, 에너지환경응용기술연구소, 항암면역연구센터 폐지
2023. 8. 1. 총장 직속기관인 클린에너지융합부품소재사업단, 소프트웨어혁신센터 신설
2023. 8. 11.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부산소방마음돌봄센터 신설
2023. 9. 1. 본부직할 부속기관인 안전관리센터를 교육부총장 직속기구로 개편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직업교육 혁신지구 스마트제조 인력양성사업센터 신설
2023. 11. 2.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윌밍턴(University of North Caarolina-Wilmington)과 학술교류 협정 연장.
2023. 12. 11.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메타미디어연구소 신설
2023. 12. 20.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인 배터리기술센터 신설
2024. 1. 11.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인 지능정보빅데이터센터 신설

2024. 1. 17. 베트남 홍방국제대학(Hong Bang International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4. 2. 2. 영국 티사이드 대학(Teesside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4. 2. 13. 그루지아 그루지아대학(University of Georgia)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4. 2. 14. 독일 루파나 대학-뤼네부르크(Leuphana University Lunberburg)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4. 2. 1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대학(University of Indonesia)과 학술교류 협정 연장
2024. 2. 19.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대학(Fenerbahce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4. 3. 1. 교육혁신원 부속기관인 교육성과관리센터 폐지, 학생상담센터, 진로개발센터를 학생·취업지원처 산하로 이관
기획처 부속기관으로 IR센터 신설,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으로 미래기술연구원 신설
학생·취업지원처 부속기관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폐지
2024. 3. 8. 스페인 알리칸테대학(Universidad de Alicante)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4. 4. 4. 포르투갈 민호대학(University of Minho)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4. 4. 18. 일본 오사카학원대학(Osaka Gakuin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4. 5. 7. 인도네시아 비누스대학(BINUS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연장
2024. 7. 1. 총장 직속기구인 인문역량강화사업단 폐지
예술체육대학 부속기관인 경기지도자연수원을 전문스포츠지도사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폐지
2024. 10. 24. 태국 치앙마이대학(Chiang Mai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4. 12. 1. 총장 직속기구로 글로컬대학추진단 신설
2024. 12. 19. 특수대학원으로 부동산대학원 신설
2024. 12. 26.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으로 첨단극저온재료센터, 휴먼케어R&D혁신지원센터, 차세대전력반도체센터 신설
2025. 1. 9. 중국 연안대학(Yanan University)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25. 1. 21. 영국 허트퍼트셔대학(University of Hertfordshire)과 학술교류 협정 연장

현재 대학교의 규모는 7개 대학원[석사 76개 학과 및 105개 과정(전공), 박사 71개 학과 및 76개 과정(전공)], 11개 단과대학(3개 학부 49개 학과 14개 전공), 3개 독립학부(3개 학과, 1개 전공), 3개 계약학과(3개 학사과정, 2개 석사과정, 1개 박사과정)로 구성돼 있다.

학교법인 Ⅱ

DONG-A UNIVERSITY BULLETIN

1. 학교법인 동아학숙 정관
2. 학교법인 동아학숙 임직원





1. 학교법인 동아학숙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동아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동아학숙(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3가)에 둔다.〈변경 2014. 5.21.〉

제4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2008. 3.24.〉 〈전문개정 2012.8.23.〉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5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변경 2008.3.24.〉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익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8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대학병원회계로 구분한다.
③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한다.

제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1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의2(예·결산의 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3.24.]

제 3 절 삭제 〈2006.10.17.〉

제12조 삭제〈2006.10.17.〉
제13조 삭제〈2006.10.17.〉
제14조 삭제〈2006.10.17.〉
제15조 삭제〈2006.10.17.〉
제16조 삭제〈2006.10.17.〉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변경 2006.10.17.〉
② 제1항의 임원중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중 1인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변경 2006.10.17.〉
1. 이사 5년〈변경 2006.10.17.〉
2. 감사 3년〈변경 2006.10.17.〉



② 삭제 〈변경 2016.12.21.〉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감사 중 1인은 추천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변경 2006.10.17.〉〈변경 2008.3.24.〉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6.10.17.〉

제19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변경 2008.3.24.〉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격기준이 일반이사의 자격기준과 상당히 다를 수는 없다.〈변경 2008.3.24.〉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변경 2008.3.24.〉

④ 삭제〈2008.3.24.〉

[본조신설 2006.10.17.]

제19조의3(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동아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5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③ 추천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개방이사의 추천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4.]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2006.10.17.〉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의 단수 추천을 받아 선임하며, 추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9조 2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 10.17.〉〈변경 2008.3.24.〉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동아대학교의 총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5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동아대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 및 동아대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동아대학교 총장 및 교원임면에 관한 사항〈변경 2019.8.20.〉
6. 동아대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변경 2006.10.17.〉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변경 2006.10.17.〉

제28조(이사회의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변경 2016.5.25. 〉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변경 2006.10.17.〉〈변경 2016.5.25.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변경 2006.10.17.〉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변경 2008.3.24.〉〈변경 2021.2.1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4.〉 [본조신설 2006.10.17.]

제 4 장 수익사업, 사회복지사업, 수탁운영사업

〈변경 2011.2.15.〉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과 동아대학교의 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내외의약품, 독극물 및 의료기구 도매업
2. 농장경영
3. 부동산 임대업
4. 장례식장 영업
5. 주차장업
6. 소매업
7. 의료업〈변경 2015.5.20.〉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신설 2015.5.20.〉〈변경 2016.5.25. 〉

제32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1조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동아의료용품사업소
2. 부동산임대(농장 포함)사업소
3. 동아장례식장사업소
4. 동아주차장관리사업소
5. 동아유통사업소
6. 동아대학교대신병원〈신설 2015.5.20.〉〈변경 2018.12.19.〉〈변경 2023.5.10.〉

제33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이 법인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의료용품사업소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3가)〈변경 2014.5.21.〉
2. 부동산임대(농장포함)사업소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3가) 〈변경 2014.5.21.〉
3. 동아장례식장사업소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3가)〈변경 2014.5.21.〉
4. 동아주차장관리사업소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3가) 〈변경 2014.5.21.〉
5. 동아유통사업소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3가)〈변경 2014.5.21.〉
6. 동아대학교대신병원 :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3가)〈신설 2015.5.20.〉 〈변경 2018.12.19.〉〈변경 2023.5.10.〉

제33조의2(사회복지사업)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24.]

제33조의3(수탁운영사업)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수탁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2.15.]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활동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제34조(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변경 2008.3.24.〉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된다.〈변경 2008.3.24.〉

제37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변경 2008.3.24.〉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변경 2019.8.20.〉

제38조(임용) ① 동아대학교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변경 2006.10.17.〉 〈변경 2008.3.24.〉〈변경 2019.8.20.〉

② 제1항에 의하여 동아대학교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대학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하되, 파견·휴직·복직·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전보·겸임과「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된 강사 및 조교, 제17조에 규정된 교원의 임용권은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변경 2009.3.4.〉〈변경 2012.7.13.〉〈변경 2019.8.1.〉〈변경 2019.8.20.〉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정관 제44조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 교수시간, 연구업적 및 성과, 학생지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4.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대학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7.2.13.]

⑤ 대학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그 정년이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다만,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7.2.13.]

⑥ 대학교의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등 교무위원과 직제규정에서 규정한 대학교 본부 직할 부속기관장, 의료원의 교원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며, 그 외의 교원의 보직임면권은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변경 2007.2.13.〉 〈변경 2009.3.4.〉

⑦ 제3항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따로 정한다.〈변경 2007.2.13.〉

⑧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변경 2007.2.13.〉〈변경 2016.5.25.〉〈변경 2019.8.20.〉

제38조의2(교원의 임무 등) ①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는 교원에게는 제6장 제1절 제2관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14.]

제 2 관 신분보장

제39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변경 2014.5.21.〉〈변경 2016.5.25.〉〈변경 2019.8.2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변경 2014.5.21.〉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재외국민 교육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변경 2006.10.17.〉〈변경 2019.12.24.〉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변경 2006.10.17.〉〈변경 2008.3.24.〉〈변경 2014.5.21.〉〈변경 2019.12.24.〉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게 된 때[본조신설 2014.5.2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변경 2008.3.24.〉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삭제 2014.5.21.〉
12.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9.12.24.〉

제40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9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변경 2014.5.21.〉

2. 제39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9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변경 2006.10.17.〉

4. 제39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9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9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변경 2008.3.24.〉〈변경 2021.2.17.〉

6의2. 제39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4.5.21.]

7. 제39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9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9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삭제 2014.5.21.〉

11. 제39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2. 제39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9.12.24.〉

제41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변경 2009.3.4.〉〈변경 2019.8.20.〉

③ 제39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9조 제1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39조 제5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제39조 제7호 및 제7호의2의 사유로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변경 2008.3.24.〉〈변경 2014.5.21.〉

② 제39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에서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변경 2006.10.17.〉〈변경 2016.5.25.〉〈변경 2019.12.24.〉

③ 제39조 제7호 및 제7호의2의 사유로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동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변경 2014.5.21.〉

제43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변경 2016.5.25.〉〈변경 2016.12.21.〉〈변경 2019.8.20.〉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5」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변경 2016.5.25.〉〈변경 2016.8.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변경 2019.8.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변경 2006.10.17.〉〈변경 2016.5.25.〉〈변경 2016.12.21.〉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변경 2016.12.21.〉〈변경 2019.8.2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의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변경 2019.8.20.〉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가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변경 2016.5.25.〉〈변경 2016.12.21.〉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변경 2019.8.20.〉

제44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21.12.22.〉

제45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부(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변경 2006.10.17.〉

제45조의 2(명예퇴직) ① 장기간 근속한 교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를 둔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변경 2008.3.24.〉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대학교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하게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06.10.7.〉〈변경 2019.8.20.〉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변경 2012.7.13.〉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제청 하고자 할 때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변경 2019.8.20.〉
2. 계약제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변경 2019.8.20.〉

1. 연구실적, 교원업적평가 결과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교학부총장과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외에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상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변경 2006.10.17.〉〈변경 2008.3.24.〉〈변경 2010.3.1.〉〈변경 2017.9.1.〉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다만, 교학부총장이 없을 때에는 교무처장이 한다. 〈변경 2006.10.17.〉〈변경 2008.3.24.〉〈변경 2008.3.24.〉〈변경 2010.3.1.〉〈변경 2017.9.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학교의 교무과장으로 한다.〈변경 2006.10.17.〉〈변경 2010.3.1.〉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게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변경 2022.5.11.〉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2016.8.24.〉〈변경 2022.3.25.〉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7인〈변경 2022.3.25.〉〈변경 2022.5.11.〉 2. 이 법인에 소속되지 않으며「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 2인 〈변경 2022.3.25.〉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8.24.〉
④ 외부위원이「사립학교법 제62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사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8.24.〉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0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의결요구 사유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변경 2019.8.20.〉
제62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변경 2019.8.20.〉〈변경 2022.3.25.〉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변경 2019.8.20.〉

④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4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변경 2006. 10.17.〉〈변경 2012.8.23.〉〈변경 2015.5.20.〉〈변경 2018.12.19.〉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6.10.17.〉〈변경 2016.5.25.〉

제66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법인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7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68조(임용) ① 사무직원(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의료원 포함) 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변경 2008.3.24.〉

②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면허증 등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변경 2016.5.2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변경 2017.12.2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동아대학교 및 의료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재직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9조의 2(계약직) 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자를 필요한 경우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계약직 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의료직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1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21.12.22.〉

제72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의료직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3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여야 한다.

②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4조(법인 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인 직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에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75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③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 대외부총장을 두며, 교수인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대외부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른 초빙교원 등 또는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변경 2008.3.1.〉〈변경 2017.9.1.〉〈변경 2021.3.1.〉

④ 제3항의 부총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산학부총장의 순서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08.3.1.〉〈변경 2017.9.1.〉

1. 교학부총장 : 교무, 학생, 입학, 기획 등 일반행정 영역에 관한 사항
2. 산학부총장 : 산학협력 영역에 관한 사항
3. 대외부총장 : 대외협력 영역에 관한 사항〈신설 2021.3.1.〉

⑤ 총장은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⑥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며, 비서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23.3.1.〉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6조(학장, 학부장, 원장 등)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단과대학에 소속하지 않는 학부(이하 "독립학부"라 한다)에 학부장을, 각 대학원에 원장을 둔다.〈변경 2010.3.1.〉〈변경 2012.5.24.〉

② 학장과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변경 2008.3.1.〉〈변경 2010.3.1.〉

③ 학장, 학부장 및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학부 및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변경 2010.3.1.〉

④ 학장과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단과대학에 부학장을, 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변경 2008.3.1.〉

제77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취업지원처, 입학관리처, 기획처, 사무처, 재무처, 대외국제처, 산학협력단, 건설관리본부, 법무·감사실, 교육혁신원, 인권센터, 안전관리센터를 둔다.〈변경 2008.3.1.〉〈변경 2010.3.1.〉〈변경 2012.8.23.〉〈변경 2012.11.1.〉〈변경 2013.9.1.〉〈변경 2014.8.1.〉〈변경 2014.9.1.〉〈변경 2022.3.1.〉〈변경 2023.9.1.〉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2급인 직원으로,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건설관리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3급 이상의 직원으로, 법무·감사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교육혁신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인권센터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안전관리센터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2008.3.1.〉〈변경2012.8.23.〉〈변경 2012.11.1.〉〈변경 2013.9.1.〉〈변경 2014.9.1.〉〈변경 2022.3.1.〉〈변경 2023.3.1.〉〈변경 2023.9.1.〉

③ 교무처, 학생·취업지원처, 기획처, 재무처에는 부처장을,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과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부단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2012. 11.1.]〈변경 2015.6.1.〉〈변경 2022.3.1.〉〈변경 2023.3.1.〉

④ 교무처에 교무과, 학사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10.3.1.〉〈변경 2014.8.1.〉〈변경 2021.3.1.〉〈변경 2023.3.1.〉

⑤ 학생·취업지원처에 학생복지과, 취업지원실을 두며, 과장과 실장은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08.3.1.〉〈변경 2012.11.1.〉〈변경 2023.3.1.〉

⑥ 입학관리처에 입학관리과, 입학사정관실을 두며, 과장은 일반직4급 이상, 실장은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10.9.1.〉〈변경 2023.3.1.〉

⑦ 기획처에 기획과를 두며, 과장은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08.3.1.〉〈변경 2010.9.1.〉〈변경 2013.9.1.〉〈변경 2023.3.1.〉

⑧ 사무처에 총무과, 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8.3.1.〉〈변경 2008.12.24.〉〈변경 2015.3.1.〉〈변경 2015.9.1.〉〈변경 2017.3.1.〉〈변경 2023.3.1.〉

⑨ 재무처에 경리과, 구매과를 두며, 각 과장은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⑩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과, 국제교류과를 두며, 과장은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08.3.1.〉〈변경 2010.9.1.〉〈변경 2012.8.23.〉〈변경 2022.3.1.〉〈변경 2023.3.1.〉

⑪ 삭제〈2022.3.1.〉

⑫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지원실, 사업기획실, 성과관리지원실을 두며, 실장은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 또는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다만, 성과관리지원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8.23.]〈변경 2014. 8.1.〉〈변경 2017.3.1.〉〈변경 2023.3.1.〉

⑬ 건설관리본부에 건설과를 두며, 과장은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08.3.1.〉〈변경 2008.12.24.〉 〈변경 2012.8.23.〉〈변경 2014.8.1.〉〈변경 2023.3.1.〉

⑭ 대학교 하부조직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14.8.1.〉

제78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대학교의 단과대학, 독립학부 및 대학원에 행정지원실을 둔다. 다만, 일반대학원은 행정지원실을 대신하여 교육정책실을 둘 수 있다. 〈변경 2010.3.1.〉 〈변경 2012.5.24.〉〈변경 2021.3.1.〉〈변경 2025.3.1.〉

② 행정지원실 및 교육정책실에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실장은 일반직4급 또는 일반직5급인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8.3.1.〉〈변경 2021.3.1.〉〈변경 2023.3.1.〉〈변경 2025.3.1.〉

③ 단과대학, 독립학부 및 대학원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08.3.1.〉〈변경 2010.3.1.〉〈변경 2012.5.24.〉

제79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은 학칙으로 둘 수 있다.〈변경 2006.10.17.〉

② 부속시설 중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본부직할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특임교수로 보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특임교수, 명예교수 또는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변경 2006.10.17.〉〈변경 2017.12.21.〉〈변경 2021.12.22.〉〈변경 2023.3.1.〉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학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⑤ 부속시설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0조(학술정보원) ① 학술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법학도서분관과 의학도서분관에 각각 분관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분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변경 2022.3.1.〉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변경 2022.3.1.〉

③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서비스과, 정보전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장의 경우에는 소정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변경2008.3.1.〉〈변경 2010.9.1.〉〈변경 2013.9.1.〉〈변경 2019.8.20.〉〈변경 2022.3.1.〉〈변경 2023.3.1.〉〈변경 2023.3.1.〉

④ 학술정보원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22.3.1.〉

제81조(석당뮤지엄) ① 석당뮤지엄에 관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변경 2013.9.1.〉〈변경 2020.8.11.〉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석당뮤지엄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변경 2013.9.1.〉〈변경 2020.8.11.〉

③ 석당뮤지엄에 학예연구과를 두며, 과장은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8.3.1.〉〈변경 2013.9.1.〉〈변경 2020.8.11.〉〈변경 2023.3.1.〉

④ 석당뮤지엄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변경 2013.9.1.〉〈변경 2020.8.11.〉

제81조의2 삭제〈2008.3.1.〉

제81조의3 삭제〈2022.3.1.〉

제81조의4(스포츠단) ① 스포츠단에 단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23.3.1.〉

②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스포츠단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스포츠단에 스포츠지원과를 두며, 과장은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23.3.1.〉

④ 스포츠단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1.]〈변경 2014.9.1.〉

제81조의5 삭제 〈2015.3.1.〉

제81조의6 삭제 〈2014.8.1.〉

제81조의7(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23.3.1.〉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평생교육원에 행정지원실을 두며, 실장은 일반직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23.3.1.〉

⑤ 평생교육원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1.]

제82조(의료원) ① 의료원에 의료원장을 두며, 경영능력과 통솔력이 있는 자로 보한다.

② 의료원장은 총장이 위임하는 근거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

다.
③ 의료원에 기획조정실을 두며, 기획조정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09.9.30.〉〈변경 2013.3.1.〉〈변경 2023.3.1.〉
④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과, 홍보마케팅과, 감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11.9.1.〉〈변경 2013.3.1.〉〈변경 2023.3.1.〉
⑤ 의료원에 병원을 두며, 병원장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교수인 교원으로 보한다.〈변경 2009.9.30.〉
⑥ 병원에 병원장의 진료부서 및 건강증진센터, 국제진료센터, 교육수련부 관장업무를 보좌하는 진료부원장과 행정부 및 원무부 관장업무를 보좌하는 사무처장을 두며, 진료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은 일반직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0.3.1.〉〈변경 2011.1.21.〉〈변경 2011.2.22.〉〈변경 2012.5.24.〉〈변경 2017.9.1.〉〈변경 2023.3.1.〉〈변경 2024.3.1.〉
⑦ 병원에 진료부, 교육수련부, 의료질향상관리실, 의료정보센터, 진료협력센터, 간호부, 약제부, 건강증진센터, 국제진료센터, 임상시험연구센터, 연구지원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제대혈은행, 행정부, 원무부를 두며, 진료부장, 교육수련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의료질향상관리실장, 감염관리실장, 의료정보센터소장, 진료협력센터장, 약제부장, 건강증진센터소장, 국제진료센터소장, 임상시험연구센터소장, 연구지원단장, 제대혈은행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해당자격을 갖춘 일반직3급 이상의 직원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교수인 교원으로, 간호부장은 해당 면허증을 소지한 일반직3급 이상의 직원으로, 행정부장, 원무부장은 일반직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진료부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진료부장을 둘 수 있다.〈변경 2009.9.30.〉〈변경 2010.3.1.〉〈변경 2010.9.1.〉〈변경 2011.9.1.〉〈변경 2012.5.24.〉〈변경 2015.3.1.〉〈변경 2016.5.25.〉〈변경 2017.9.1.〉〈변경 2019.5.21.〉〈변경 2023.3.1.〉〈변경 2024.3.1.〉
⑧ 진료부에 진료각과, 센터, 실, 은행, 진료업무지원을 위한 부속실을 두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며, 진료각과장 및 센터장, 은행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실장은 교원 또는 해당 면허증을 소지한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진료업무지원과의 각 과장은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09.9.30.〉〈변경 2010.3.1.〉〈변경 2011.9.1.〉〈변경 2012.5.24.〉〈변경 2013.3.1.〉〈변경 2015.3.1.〉〈변경 2020.8.11.〉〈변경 2023.3.1.〉〈변경 2024.3.1.〉
⑨ 교육수련부에 교육수련과, 의학교육 지원실을 두며, 과장과 실장은 교원이나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09.9.30.〉〈변경 2010.3.1.〉〈변경 2023.3.1.〉〈변경 2024.3.1.〉
⑩ 의료질향상관리실에 의료질향상관리과를 두며, 과장은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09.9.30.〉〈변경 2010.3.1.〉〈변경 2023.3.1.〉
⑪ 의료정보센터에 전산정보과, 의료정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의료정보과장은 해당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신설 2011.9.1.〉〈변경 2023.3.1.〉
⑫ 간호부에 병동간호1과, 병동간호2과, 중환자간호과, 특수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2008.3.1.〉〈변경2010.3.1.〉〈변경2011.9.1.〉〈변경 2013.3.1.〉〈변경 2013.9.1.〉〈변경 2023.3.1.〉



⑬ 약제부에 약제과를 두며 과장은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10.3.1.〉〈변경 2011.9.1.〉〈변경 2012.5.24.〉〈변경 2023.3.1.〉

⑭ 건강증진센터에 직업환경의학과, 건강증진과를 두며, 각 과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업무지원을 위하여 건강증진지원과를 두며, 과장은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변경 2010.3.1.〉〈변경 2011.9.1.〉〈변경 2012.2.17.〉〈변경 2023.3.1.〉

⑮ 임상시험연구센터에 행정지원실을 두며, 실장은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0.3.1.]〈변경 2011.9.1.〉〈변경 2023.3.1.〉

⑯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예방관리센터, 행정지원실을 두며, 각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실장은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0.9.1.]〈변경 2011.9.1.〉〈변경 2015.3.1.〉〈변경 2023.3.1.〉

⑰ 진료협력센터에 진료협력실을 두며, 실장은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12.24.〉〈변경 2023.3.1.〉

⑱ 행정부에 총무과, 인사과, 경리과, 관재과, 영양과, 의공과, 시설관리과, 특수기능검사실을 두며, 각 과장과 실장은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영양과장은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변경 2010.3.1.〉〈변경 2010.9.1.〉〈변경 2011.9.1.〉〈변경 2018.3.1.〉〈변경 2019.12.24.〉〈변경 2022.3.1.〉〈변경 2023.3.1.〉

⑲ 원무부에 입원원무과, 외래원무과, 보험과, 의료사회사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일반직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의료사회사업과장은 해당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변경 2008.3.1.〉〈변경 2010.3.1.〉〈변경 2010.9.1.〉〈변경 2011.9.1.〉〈변경 2016.12.21.〉〈변경 2019.12.24.〉〈변경 2020.8.11.〉〈변경 2023.3.1.〉

⑳ 의료원 및 병원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하되,「의료법」에 의거한 의료행위 및「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사업 등을 포함한다.〈변경 2010.3.1.〉〈변경 2010.9.1.〉〈변경 2011.9.1.〉〈변경 2018.5.23.〉〈변경 2019.12.24.〉

제82조의2 삭제 〈2012.8.23.〉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본절신설 2006.10.17.]

제83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06.10.17.]

제84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5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2011.2.15.〉〈변경 2020.8.11.〉

1. 교원 대표 5인
2. 직원 대표 3인〈변경 2011.2.15.〉

3. 조교 대표 1인[본조신설 2020.8.11.]
4. 학생 대표 3인〈변경 2020.8.11.〉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변경 2011.2.15.〉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11.2.15.]〈변경 2012.7.13.〉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 독립학부 및 대학원 교수회의에서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일반직4급 이상 직원회의에서 추천하는 2인, 일반직5급 이하(기능직원 포함) 직원회의에서 추천하는 4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변경 2023.3.1.〉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무처에서 추천하는 2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본조신설 2020.8.11.]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대학 및 대학원 학생회에서 추천하는 6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변경 2020.8.11.〉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6.10.17.]

제85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변경 2020.8.11.〉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0.17.]

제86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6.10.17.]

제87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변경 2008.3.24.〉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변경 2008.3.24.〉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변경 2008.3.24.〉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변경 2008.3.24.〉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8.3.24.]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변경 2008.3.24.〉

[본조신설 2006.10.17.]



제88조(규정에의 위임) 이 정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평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17.]〈변경 2011.2.15.〉

제 4 절 정 원 [본절변경 2006.10.17.]

제89조(정원) 법인, 동아대학교, 의료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다.〈변경 2006.10.17.〉〈변경 2008.3.1.〉〈변경 2009.9.30.〉〈변경 2013.9.1.〉〈변경 2015.3.1.〉〈변경 2016.5.25.〉〈변경 2018.2.21.〉〈변경 2019.3.1.〉〈변경 2019.5.21.〉〈변경 2020.3.1.〉〈변경 2021.3.1.〉〈2022.3.1.〉〈변경 2023.3.1.〉

제 8 장 글로컬대학[본장신설]

제90조(글로컬 연합대학의 정의) 글로컬 연합대학(이하 "연합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아대학교, 동서대학교가 다음 각 호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연합하는 체제를 말한다.

1. 교육 : 연합전공 및 통합 교육과정 신설 · 운영
2. 산학협력 :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지산학협력체계 구축, 통합산단 설립 · 운영
3. 국제화 : 외국인 유학생 공동 관리
4. 지역혁신 : 서부산 도시재생 및 지역현안 문제 해결방안 수립

제91조(연합대학 거버넌스의 설치) 연합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연합대학 거버넌스를 둔다.

제92조(운영세칙) 다음 각 호의 연합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대학 거버넌스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 JA교원 및 계약직원 인사
2. 관련 사업비 예산 수립 및 집행 · 관리
3. 하부조직의 신설 및 폐지, 개편
4. 제90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 9 장 보 칙

제93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변경 2006.10.17.〉

제94조(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규정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변경 2006.10.17.〉

제95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변경 2006.10.17.〉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정재환	불 명	4 년	부산부 서대신동 2가 146
이사	정기원	불 명	4 년	부산부 초장동 3가 24
이사	김재식	불 명	4 년	부산부 동대신동 3가 156
이사	강원석	불 명	4 년	경남 김해군 진영읍 진영리 273-6
이사	김경준	04. 5. 12	4 년	부산부 부전리 494
이사	김형덕	불 명	4 년	부산부 좌천동 53
이사	김복식	불 명	4 년	부산부 좌천동 68-27
이사	정해영	불 명	4 년	부산부 대교동 4가 18

제96조(청렴의무) 법인 임직원 및 대학교 총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3.25.]

제97조(행동강령) 제93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변경 2022.8.3.〉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22.8.3.〉

가. 법인 또는 총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22. 8.3.〉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신설 2022.8.3.〉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2.8.3.〉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2.8.3.〉

[본조신설 2022.3.25.]

부 칙 (1975. 10. 29.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75.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10. 20.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77.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02. 24.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7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1. 20.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80. 11.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09. 08.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 9. 8.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된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대학교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⑦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까지 채용하지 못한다.
⑧ (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3. 11. 12.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83. 11.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08. 02.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84. 8.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02. 19.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85. 2.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07. 10.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 7. 1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7. 05. 11.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87. 5.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04. 30.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88. 4.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02. 27.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89. 2.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04. 28.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89. 4.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0. 23.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89. 10.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01. 24.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90. 1.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04. 03.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90. 4.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07. 27. 문교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90. 7.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09. 28. 교육부장관 변경인가)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 9. 28 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대학교 병원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중 교수, 부교수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용기간을 폐지하고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1. 11. 02. 교육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91. 1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05. 04. 교육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92. 5.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2. 26. 교육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93.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9. 27. 교육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93. 9.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1. 30. 교육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93. 11.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1. 25. 교육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94. 1.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6. 02. 교육부장관 변경인가)

이 정관은 1994. 6.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 1. 25.부터 시행한다.
② (총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 총장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소속한 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보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의 보직교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보임된 것으로 보되, 그 보임기간은 1995년 2월 28일까지 이다.
⑤ (교원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 1. 17.부터 시행한다.
②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995. 1. 24. 이전 동아대학교 병원에 임용된 직원은 1995. 1. 25.자로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동아의료원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 6. 20.부터 시행한다.
② (직원중 의료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동아의료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중 의료직 주사(인턴, 레지던트)는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 4.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 9.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 9.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 4.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제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을 준용하되,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교수 및 부교수 : 정년
2. 조교수 : 3년
3. 전임강사 : 2년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2 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2 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2 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 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임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 종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2 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 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12 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 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9 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9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 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2 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2 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9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0 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2 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5 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는 2012년 7월 22일자로 조교수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4호, 동조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201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제5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 제17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제65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89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63조, 제93조, 제94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5.)

이 정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4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75조 제6항, 제77조 제2항 내지 제10항, 동조 제12항 내지 제13항,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2항, 제80조 제3항, 제81조 제3항, 제81조의4 제1항, 동조 제3항, 제81조의7 제1항, 동조 제4항, 제82조 제3항 내지 제4항, 동조 제6항 내지 제19항, 제84조 제3항 제2호,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변경).

부 칙(2023. 5. 10.)

이 정관은 202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제6호, 제33조 제6호 변경)

부 칙(2023. 8. 2.)

이 정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7조 제1항 내지 제2항 변경)

부 칙(2023. 12. 20.)

이 정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2조 제6항 내지 제9항 변경)

부 칙(2024. 5. 8.)

이 정관은 교육부가 본교를 「2024년 글로컬대학」 사업 본지정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장(제90조 내지 제92조) 신설 및 종전 제8장(제90조 내지 제94조)을 제9장(제93조 내지 제97조)으로 변경)

부 칙(2024. 12. 18.)

이 정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8조 제1항 내지 제2항 변경)

(별표1)

법인 직원 정원

〈변경 2023.3.1.〉

총 계	20
일반직원 계	15
일반직2급	1
일반직3급	2
일반직4급	3
일반직5급	3
일반직6급	3
일반직7급	3
기능직원 계	5
6등급	1
7등급	1
8등급	1
9등급	1
10등급	1

(별표2)

동아대학교 직원 정원

〈변경 2009. 9.30〉 〈변경 2011. 1.21〉
〈변경 2013. 9.1〉 〈변경 2019. 3.1〉
〈변경 2023.3.1.〉

총 계	364
일반직원 계	215
일반직2급	3
일반직3급	12
일반직4급	34
일반직5급	55
일반직6급	49
일반직7급	33
일반직8급	20
일반직9급	9
기능직원 계	149
5등급	2
6등급	24
7등급	42
8등급	54
9등급	27

(별표3)

의료원 직원 정원

〈변경 2009.3.1.〉〈변경 2009.9.30.〉
〈변경 2011.2.22.〉〈변경 2013.3.1.〉
〈변경 2015.3.1.〉〈변경 2016.5.25.〉
〈변경 2016.12.21.〉〈변경 2017.5.24.〉
〈변경 2018.2.21.〉〈변경 2019.5.21.〉
〈변경 2020.3.1.〉〈변경 2021.3.1.〉
〈변경 2022.3.1.〉〈변경 2023.3.1.〉

총 계	1,987
일반직원 계	1,581
일반직2급	2
일반직3급	5
일반직4급	33
일반직5급	103
일반직6급	400
일반직7급	332
일반직8급	700
일반직9급	6
지원직원 계	121
6급(지원직)	2
7급(지원직)	112
8급(지원직)	5
9급(지원직)	2
기능직원 계	40
6등급	6
7등급	11
8등급	19
9등급	2
10등급	2
의료직원 계	245
의료직3급(임상특임석좌의사)	2
의료직4급(임상특임의사)	26
의료직5급(전임의,임상강사,임상의사)	57
의료직6급(인턴,레지던트)	160

2. 학교법인 동아학숙 임직원

가. 이사회 임원

〈2025. 4. 1〉

직 위	성 명
이사장	정휘위
이 사	최재룡
〃	최창옥
〃	최 순
〃	제종모
〃	정상희
〃	조한식
〃	강병희
〃	배종근
〃	하치경
〃	이해우
감 사	류종민
〃	예상우
〃	박영규

나. 법인사무국 직원

〈2025 4. 1〉

직 위	성 명
사무국장	윤태영
과 장	
팀 장	김용성
직 원	김승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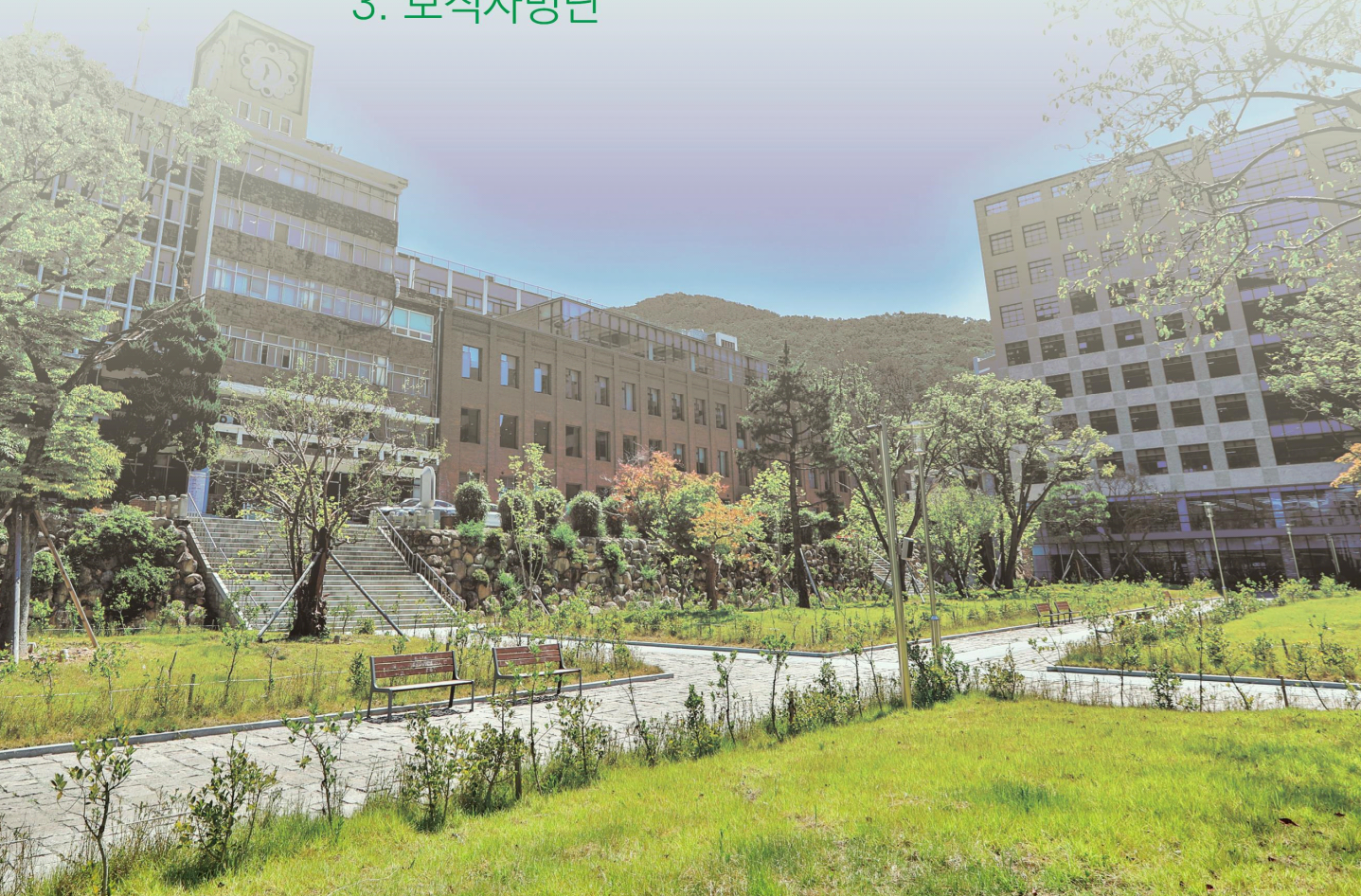
III 구성 및 직제

DONG-A UNIVERSITY BULLETIN

1. 대학교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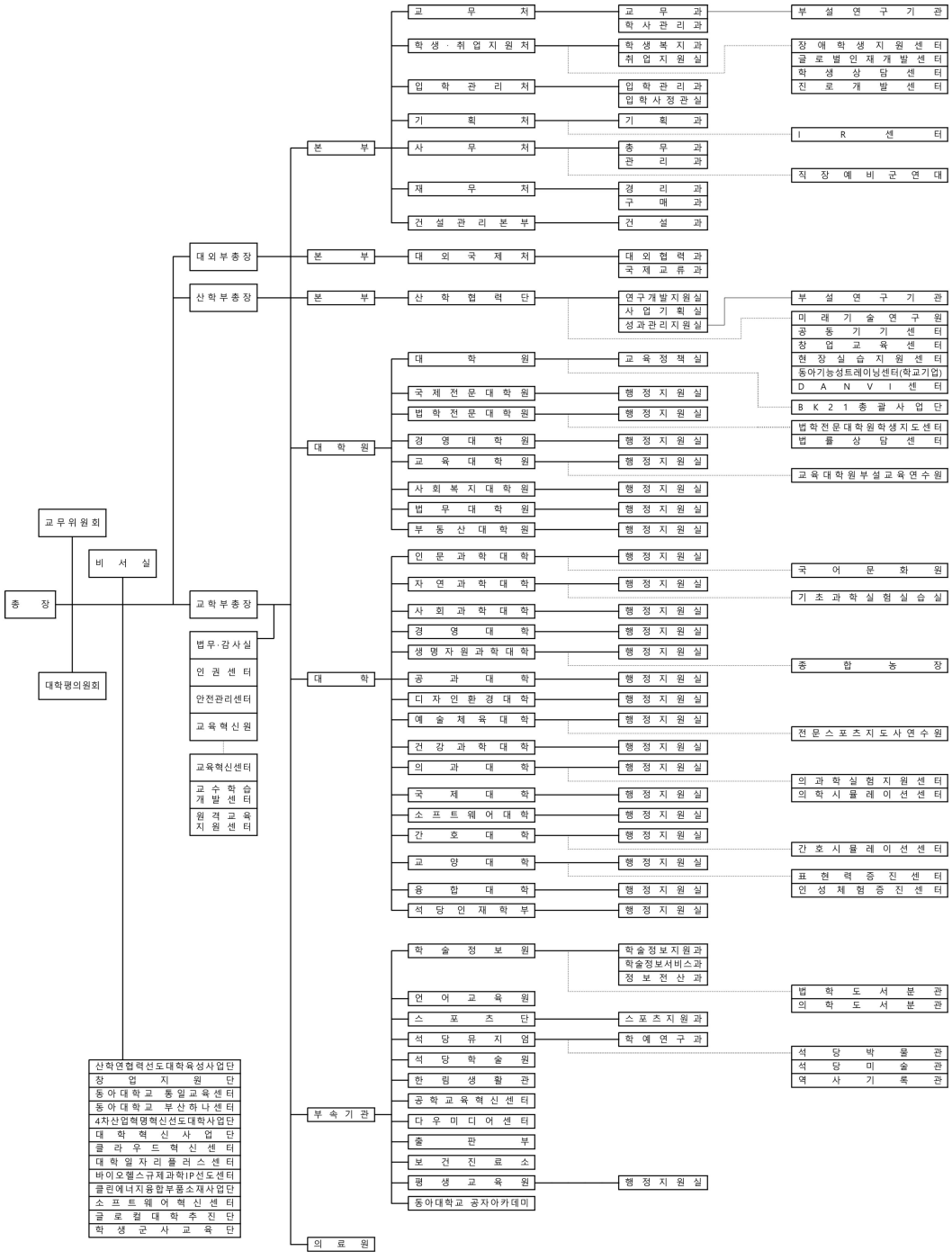
2. 구 성

3. 보직자명단





1. 대학교 기구표


총장
교무위원회
비서실
대학평의원회
대외부총장
산학부총장
교학부총장
법무·감사실
인권센터
안전관리센터
교육혁신원
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본부
교무처
교무과
학사관리과
부설연구기관
학생·취업지원처
학생복지과
취업지원실
장애학생지원센터
글로벌인재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진로개발센터
입학관리처
입학관리과
입학사정관실
기획처
기획과
IR센터
사무처
총무과
관리과
직장예비군연대
재무처
경리과
구매과
건설관리본부
건설과
본부
대외국제처
대외협력과
국제교류과
본부
산학협력단
연구개발지원실
사업기획실
성과관리지원실
부설연구기관
미래기술연구원
공동기기센터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동아기능성트레이닝센터(학교기업)
DANVI센터
BK21총괄사업단
대학원
교육정책실
국제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지도센터
법률상담센터
경영대학원
행정지원실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지원실
법무대학원
행정지원실
부동산대학원
행정지원실
대학
인문과학대학
행정지원실
국어문화원
자연과학대학
행정지원실
기초과학실험실습실
사회과학대학
행정지원실
경영대학
행정지원실
생명자원과학대학
행정지원실
종합농장
공과대학
행정지원실
디자인환경대학
행정지원실
예술체육대학
행정지원실
전문스포츠지도사연수원
건강과학대학
행정지원실
의과대학
행정지원실
의과학실험지원센터
의학시뮬레이션센터
국제대학
행정지원실
소프트웨어대학
행정지원실
간호대학
행정지원실
간호시뮬레이션센터
교양대학
행정지원실
표현력증진센터
인성체험증진센터
융합대학
행정지원실
석당인재학부
행정지원실
부속기관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서비스과
정보전산과
법학도서분관
의학도서분관
언어교육원
스포츠단
스포츠지원과
석당유지재단
학예연구과
석당학술원
석당박물관
석당미술관
역사기록관
한림생활관
공학교육혁신센터
다우미디어센터
출판부
보건진료소
평생교육원
행정지원실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의료원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창업지원단
동아대학교 통일교육센터
동아대학교 부산하나센터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단
대학혁신사업단
클라우드혁신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바이오헬스규제과학IP선도센터
클린에너지융합부품소재사업단
소프트웨어혁신센터
글로컬대학추진단
학생군사교육단

2. 구 성

(1) 대학교 본부

교 무 처	교무과	학사관리과	
학생·취업지원처	학생복지과	취업지원실	
입 학 관 리 처	입학관리과	입학사정관실	
기 획 처	기획과		
사 무 처	총무과	관리과	
재 무 처	경리과	구매과	
대 외 국 제 처	대외협력과	국제교류과	
산 학 협 력 단	연구개발지원실	사업기획실	성과관리지원실
건 설 관 리 본 부	건설과		

(2) 대학원

가. 석사·박사학위과정

계 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 과
인 문 사 회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아동심리·상담학과	
	법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무역학과



계 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 과
인 문 사 회	회계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금융학과	
		부동산학과
자 연 과 학	수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화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의상섬유학과	의상섬유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명과학과
	간호학과	간호학과
	건강과학과	건강과학과
	중개의과학과	중개의과학과
공 학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축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금속공학과	금속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도시계획·조경학과	도시계획·조경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예 · 체 능	체육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미술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조형디자인학과	조형디자인학과
의 학	의학과	의학과

나. 학·연·산 협동과정

협약기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 과
부산발전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부설 재난안전원	국제법무학과	국제법무학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신소재물리학과	신소재물리학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금속공학과	금속공학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태평양해양산업	재난관리학과	재난관리학과
농촌진흥청	응용생명과학과	응용생명과학과

다. 학·연 협동과정

협약기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 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관학과	유관학과

※모집 가능 학과는 모집 요강에 별도로 표기

라. 학과간 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 과
음악문화학과	음악문화학과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예술학과	예술학과
생명의료윤리학과	생명의료윤리학과
영유아학과	영유아학과
	의료상담심리학과
스포츠의학과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부동산금융학과
공공정책학과	공공정책학과
스마트융합시스템공학과	스마트융합시스템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마. 특수대학원

구 분	석사학위과정	
	학 과 / 전 공	
교 육 대 학 원	교육심리및상담전공	미술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다문화교육전공	기계교육전공
	독서교육전공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국어교육전공	진로진학상담전공
	영어교육전공	심리치료전공
	역사교육전공	음악치료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미술치료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언어치료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문화예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경 영 대 학 원	경영학과	
사 회 복 지 대 학 원	사회복지행정학전공, 상담심리치료학전공, 보건행정학전공	
법 무 대 학 원	경찰법학전공	부동산법학전공
부 동 산 대 학 원	부동산투자전공, 부동산개발건설전공, 부동산자산관리전공	

바. 전문대학원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 과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국제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사. 계약학과(정원 외)

계 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 과	학 과
공 학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3) 대학

대 학 · 학 부	학 과 · 전 공
인 문 과 학 대 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역사문화학부(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한국어문학과
	교육학과
	아동학과

대 학 · 학 부	학 과 · 전 공
자연과학대학	정보수학과
	반도체학과
	화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사회학부(정치외교학전공, 사회학전공)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제학과
	경찰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국제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금융학과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소재공학과
	응용생물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스마트그린자원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부(환경안전전공,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건축학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학과(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제품스페이스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과
	조경학과



대 학 · 학 부	학 과 · 전 공
예 술 체 육 대 학	미술학과(현대미술전공, 영상예술전공, 목조형가구전공, 도자예술전공)
	음악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건 강 과 학 대 학	식품영양학과
	의약생명공학과
	건강관리학과
의 과 대 학	의예과
	의학과
국 제 대 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영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소 프 트 웨 어 대 학	컴퓨터공학과
	AI학과
간 호 대 학	간호학과
교 양 대 학	
융 합 대 학	자유전공학부
석 당 인 재 학 부	공공정책학전공

(4) 총장 직속 기구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창업지원단
부산지역통일교육센터
동아대학교 부산하나센터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사업단
대학혁신사업단
클라우드혁신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바이오헬스규제과학IP선도센터
클린에너지융합부품소재사업단
소프트웨어혁신센터
글로컬대학추진단
학생군사교육단

(5) 교학부총장 직속 기구

법무·감사실
교육혁신원
인권센터
안전관리센터

(6) 부속기관

교육혁신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학술정보원
언어교육원
스포츠단
석당뮤지엄
석당학술원
한림생활관
공학교육혁신센터
다우미디어센터
출판부
보건진료소
평생교육원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의료원
장애학생지원센터
글로벌인재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진로개발센터
IR센터
직장예비군연대
미래기술연구원
공동기기센터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동아기능성운동트레이닝센터(학교기업)
DANVI센터
BK21총괄사업단
법학전문대학원학생지도센터
법률상담센터
교육대학원부설 교육연수원
국어문화원
기초과학실험실습실
종합농장
전문스포츠지도사연수원
의과학실험지원센터
의학시뮬레이션센터
간호시뮬레이션센터
표현력증진센터
인성체험증진센터



(7) 부설연구기관

아세안연구소
의과학연구원
경영문제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해양·자원연구소
관광·레저연구소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정보기술연구소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국제통상연구소
맑스엥겔스연구소
융합디자인연구소
태권도건강문화연구소
바이오식품소재산업화연구소
기업가정신연구소
글로벌금융연구소
글로벌재난안전연구센터
선박해양시스템연구소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젠더·어펙트연구소
다문화연구소
입학전형연구센터
직업교육혁신지구스마트제조인력양성사업센터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메타미디어연구소
조형문화예술연구소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항바이러스의약연구소
인문사회의학연구소
푸드바이오이노베이션센터
AI·디지털트윈·SW실증센터
AI로봇윤리기술센터
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
ESG지역혁신연구소
스포츠융합혁신연구소
휴먼케어R&D혁신지원센터
인공지능정부연구소
미디어디바이스연구센터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스마트물류연구센터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에코디자인사업단
부산광역시 환경보건센터
부산사하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울산근로자건강센터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미래형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신경중개연솔루션센터
디스플레이소자융합기술개발지원센터
부산디지털역량강화사업센터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센터
SW전문인재양성사업단
지능정보빅데이터센터
부산소방마음돌봄센터
배터리기술센터
첨단극저온재료센터
차세대전력반도체센터

3. 보직자 명단

(1) 대학교 본부 보직자

〈2025. 4.1〉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총장	이해우		재무처장	설영수	정보수학과
교학부총장	강대성	전자공학과	대외국제처장	박현태	건강과학과
교무처장	전미라	건강과학과	산학협력단장	최정호	조선해양공학과
학생·취업지원처장	신용택	조선해양공학과	건설관리본부장	권태정	도시공학과
입학관리처장	신상문	산업경영공학과	비서실장	박성혁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기획처장	황기식	국제학과	학술정보원장	이정관	응용생명과학과
사무처장	허남인	사무처	교육혁신원장	김종식	화학공학과

(2) 교무위원회 위원

〈2025. 4.1〉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총장	이해우		인문과학대학장	김진경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교학부총장	강대성	전자공학과	자연과학대학장	정진웅	바이오메디컬학과
교무처장	전미라	건강과학과	사회과학대학장	윤상우	사회학전공
학생·취업지원처장	신용택	조선해양공학과	경영대학장	최규환	관광경영학과
입학관리처장	신상문	산업경영공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장	김두현	응용생명과학과
기획처장	황기식	국제학과	공과대학장	이정재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사무처장	허남인	사무처	디자인환경대학장	이성호	건축학과
재무처장	설영수	정보수학과	예술체육대학장	우진희	체육학과
대외국제처장	박현태	건강과학과	건강과학대학장	김오연	건강과학과
산학협력단장	최정호	조선해양공학과	의과대학장	김종국	중개의과학과
건설관리본부장	권태정	도시공학과	국제대학장	김대중	국제학과
비서실장	박성혁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교양대학장	김진경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학술정보원장	이정관	응용생명과학과	융합대학장	이정재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교육혁신원장	김종식	화학공학과	소프트웨어대학장	이석환	컴퓨터공학과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최정호	조선해양공학과	석당인재학부장	김희준	석당인재학부
창업지원단장	이학성	신소재공학과	간호대학장	강지연	간호학과
평생교육원장	강정규	부동산학과	대학원장	송강직	법학전문대학원
언어교육원장	김진경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국제전문대학원장	김대중	국제학과
석당뮤지엄관장	김기수	건축학과	법학전문대학원장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장	최규환	관광경영학과	사회복지대학원장	윤상우	사회학전공
교육대학원장	조규판	교육학과	법무대학원장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부동산대학원장	강정규	부동산학과			

(3) 대학원

〈2025. 4.1〉

대학원	직위	성명	소속	비고
대학원	원장	송강직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양수철	화학공학과	
국제전문대학원	원장	김대중	국제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심영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변우주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원장	최규환	관광경영학과	
	부원장	이경환	경영학과	
교육대학원	원장	조규판	교육학과	
	부원장	염정국	기계공학과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윤상우	사회학전공	
법무대학원	원장	송시섭	법학전문대학원	
부동산대학원	원장	강정규	부동산학과	

(4) 대학

■ 학(부)장 및 부학장

〈2025.4.1〉

대학	직위	성명	소속	비고
인문과학대학	학장	김진경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부학장	조홍준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자연과학대학	학장	정진웅	바이오메디컬학과	
	부학장	손종우	화학공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장	윤상우	사회학전공	
	부학장	배유일	행정학과	
경영대학	학장	최규환	관광경영학과	
	부학장	김연국	경영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김두현	응용생명과학과	
	부학장	이광식	응용생명과학과	
공과대학	학장	이정재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교학부학장	기성훈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산학부학장	강효	화학공학과	
디자인환경대학	학장	이성호	건축학과	
	부학장	조동길	조경학과	
예술체육대학	학장	우진희	체육학과	
	부학장	최지은	음악학과	
건강과학대학	학장	김오연	건강과학과	
	부학장	임지혜	건강관리학과	
의과대학	학장	김종국	중개의과학과	
	교무부학장	이종화	의학과	
	교육학생부학장	김도경	의예과	
	연구부학장	홍영빈	중개의과학과	
국제대학	학장	김대중	국제학과	
	부학장	박장식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소프트웨어대학	학장	이석환	컴퓨터공학과	
간호대학	학장	강지연	간호학과	
교양대학	학장	김진경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부학장	강태홍	바이오메디컬학과	
융합대학	학장	이정재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석당인재학부	학부장	김희준	석당인재학부	



■ 학과장

〈2025.4.1.〉

대 학	학 부(과)		보직명	소 속	성 명
인 문 과 학 대 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학과장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조홍준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책임교수	사학전공	조형열
		고고미술사학전공	책임교수	고고미술사학전공	김재현
	한국어문학과		학과장	한국어문학과	정규식
	교육학과		학과장	교육학과	이준원
	아동학과		학과장	아동학과	이승희
자 연 과 학 대 학	정보수학과		학과장	정보수학과	황경원
	반도체학과		학과장	반도체학과	김정길
	화학과		학과장	화학공학과	이승훈
	바이오메디컬학과		학과장	건강과학과	이종호
사 회 과 학 대 학	정치·사회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책임교수	정치외교학전공	주인석
		사회학전공	책임교수	사회학전공	권혜원
	행정학과		학과장	행정학과	한세억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장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은순
	경제학과		학과장	경제학과	이우석
	경찰학과		학과장	경찰학과	허 황
경 영 대 학	경영학과		학과장	경영학과	정재현
	관광경영학과		학과장	관광경영학과	강상훈
	국제무역학과		학과장	국제무역학과	정무섭
	경영정보학과		학과장	경영정보학과	김상진
	금융학과		학과장	금융학과	이상원
	융합경영학과		학과장	관광경영학과	송명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학과장	경영학과	이익선
생명자원과학대학	분자유전공학과		학과장	응용생명과학과	정호원
	응용생물공학과		학과장	응용생물공학과	최기혁
	식품생명공학과		학과장	식품생명공학과	손보경
	생명자원산업학과		학과장	응용생명과학과	박종환

대 학	학 부(과)		보직명	소 속	성 명
공 과 대 학	건축공학과		학과장	건축공학과	이건호
	도시공학과		학과장	도시공학과	윤갑식
	건설시스템공학과		학과장	ICT융합해양 스마트시티공학과	최재호
	환경에너지 공학부	환경안전전공	책임교수	환경안전전공	안영희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책임교수	미래에너지공학전공	현창욱
	전기공학과		학과장	전기공학과	이성구
	전자공학과		학과장	전자공학과	박민수
	기계공학과		학과장	기계공학과	박준홍
	산업경영공학과		학과장	산업경영공학과	최지원
	조선해양공학과		학과장	조선해양공학과	이상봉
	화학공학과		학과장	화학공학과	이정규
	신소재공학과		학과장	신소재공학과	강신곤
	산업공학과(계약)		학과장	산업경영공학과	이승훈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계약)		학과장	산업경영공학과	신상문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학과장	건축학과	성이용
	산업디자인학과		학과장	산업디자인학과	신재욱
	패션디자인학과		학과장	의상섬유학과	최형열
	조경학과		학과장	조경학과	반권수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학과장	미술학과	이훈기
	음악학과		학과장	음악학과	박지용
	체육학과		학과장	체육학과	전형필
	태권도학과		학과장	태권도학과	이용국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학과장	식품영양학과	윤은주
	의약생명공학과		학과장	건강과학과	김현주
	건강관리학과		학과장	건강관리학과	임지혜
의 과 대 학	의예과		학과장	의학과	고명석
	의학과		학과장	의학과	이정훈



대 학	학 부(과)	보직명	소 속	성 명
국 제 대 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	학과장	글로벌비즈니스학과	황욱연
	영미학과	학과장	영미학과	박정연
	중국학과	학과장	중국학과	김선진
	일본학과	학과장	일본학과	신동규
소프트웨어대학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컴퓨터공학과	한정규
	AI학과	학과장	컴퓨터공학과	김현석
간 호 대 학	간호학과	학과장	간호학과	이수민
교 양 대 학	리버럴아츠전공	책임교수	융합대학	임소연
융 합 대 학	스마트모빌리티전공(융합)	책임교수	중개의과학과	김종욱
	수소시스템전공(융합)	책임교수	신소재공학과	전종배
	바이오헬스규제과학전공(융합)	책임교수	의상섬유학과	최형열
	스마트헬스케어전공(융합)	책임교수	경영정보학과	박병권
	AI · SW융합전공(융합)	책임교수	컴퓨터공학과	천세진

(5) 부속기관

〈2025. 4. 1〉

부속기관	소속	성명
교육혁신원 교육혁신센터	화학공학과	김종식
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	경제학과	정성문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경영정보학과	조용복
학생·취업지원처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학과	조규판
학생·취업지원처 글로벌인재개발센터	조선해양공학과	신용택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상담센터	융합대학	김지혜
학생·취업지원처 진로개발센터	교육학과	조규판
기획처 IR센터	경영학과	차경천
사무처 직장예비군연대		정승균
산학협력단 미래기술연구원	전자공학과	심대용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	화학공학과	김종식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전기공학과	최선영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	체육학과	전형필
산학협력단 동아기능성운동트레이닝센터(학교기업)	체육학과	전형필

부속기관	소속	성명
산학협력단 DANVI센터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김우생
대학원 BK21총괄사업단	법학전문대학원	송강직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박봉철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노미리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교육학과	조규판
인문과학대학 국어문화원	국어교육전공	김영선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실험실습실	반도체학과	최보훈
생명자원과학대학 종합농장	응용생명과학과	허재복
예술체육대학 전문스포츠지도사연수원	체육학과	전형필
의과대학 의과학실험지원센터	중개의과학과	고형종
의과대학 의학시뮬레이션센터	의학과	문상이
기초교양대학 표현력증진센터	융합대학	임소연
기초교양대학 인성체험증진센터	바이오메디컬학과	강태홍
간호학부 간호시뮬레이션센터	간호학과	김민주
학술정보원	응용생명과학과	이정관
언어교육원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김진경
스포츠단	체육학과	우진희
석당뮤지엄	건축학과	김기수
석당학술원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김진경
한림생활관	한림생활관	박재진
공학교육혁신센터	건축공학과	임병찬
다우미디어센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권영성
출판부	응용생명과학과	이정관
보건진료소	의학과	박영진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강정규
동아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국제무역학과	문철주
의료원	의예과	안희배
안전관리센터	사무처	허남인



(6) 부설연구기관

〈2025. 4. 1〉

부설연구기관	소속	성명
아세안연구소	고고미술사학전공	김재현
의과학연구원	의학과	안원석
경영문제연구소	경영학과	양재호
스포츠과학연구소	체육학과	신기옥
기초과학연구소	화학과	김효준
법학연구소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의
해양도시건설·방재연구소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이정재
해양·자원연구소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차종문
관광·레저연구소	관광경영학과	황영현
휴먼라이프리서치센터	아동학과	전효정
농업생명과학연구소	응용생명과학과	이선우
정보기술연구소	전자공학과	정봉식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	중개의과학과	강도영
국제통상연구소	국제무역학과	김완중
맑스엥겔스연구소	경제학과	정남기
융합디자인연구소	조경학과	양건석
태권도건강문화연구소	태권도학과	이용국
바이오식품소재산업화연구소	식품생명공학과	서권일
기업가정신연구소	경영학과	박희태
글로벌금융연구소	경영정보학과	조용복
글로벌재난안전연구센터	석당인재학부	권한용
선박해양시스템연구소	조선해양공학과	신용택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경찰학과	이동규
젠더·어펙트연구소	한국어문학과	권명아
다문화연구소	국제학과	황기식
조형문화예술연구소	미술학과	김승호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일본학과	신동규
항바이러스의약연구소	의약생명공학과	조종현

부설연구기관	소속	성명
인문사회의학연구소	의예과	김도경
푸드바이오이노베이션센터	건강과학과	전미라
ESG지역혁신연구소	융합대학	오지영
인공지능정부연구소	행정학과	한세억
AI로봇윤리기술센터	중개의과학과	김종욱
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	건강과학과	박현태
입학전형연구센터	산업경영공학과	신상문
직업교육혁신지구스마트제조인력양성사업센터	산업경영공학과	신상문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기초교양대학	김주환
메타미디어연구소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대경
지능정보빅데이터센터	경영정보학과	김상진
산학협력단 신소형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신소재공학과	김재일
산학협력단 스마트물류지원센터	경영정보학과	박병권
산학협력단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기계공학과	이진
산학협력단 에코디자인사업단	패션디자인학과	박은주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환경보건센터	의예과	홍영습
산학협력단 부산사하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영양학과	윤은주
산학협력단 울산근로자건강센터	의학과	김정일
산학협력단 말초신경병증연구센터	중개의과학과	박환태
산학협력단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의예과	홍영습
산학협력단 미래형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신소재공학과	김재일
산학협력단 신경중개연구솔루션센터	중개의과학과	고형종
산학협력단 디스플레이소지융합기술개발지원센터	전자공학과	이기동
산학협력단 부산디지털역량강화사업센터	기계공학과	류을현
산학협력단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센터	신소재공학과	최재영
산학협력단 AI·디지털트윈·SW실증센터	컴퓨터공학과	옥수열
산학협력단 SW전문인재양성사업단	경영정보학과	김상진
산학협력단 부산소방마을돌봄센터	간호학과	이나윤
산학협력단 배터리기술센터	화학공학과	김점수



(7) 학생군사교육단

〈2025. 4.1.〉

직 위	성 명
학군단장	이 승 현
선임교관	주 성 은
전문경력관	김 정 명

(8) 동아대학교 의료원

〈2025. 4 1.〉

직 위	성 명(2024.4.1.)
의료원장 (병원장 겸임)	안 희 배
진료부원장	空　席
기획조정실장	김 종 현
사무처장	空　席
진료1부장	송 영 진
진료2부장	정 진 우
교육수련부장	남 영 희
건강증진센터소장	박 영 진
의료정보센터소장	강 명 진
임상시험연구센터소장	오 성 용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김 대 현
간호부장	변 숙 진
약제부장	하 정 숙
행정부장	손 용 만
원무부장	배 윤 호

대학 Ⅳ

DONG-A UNIVERSITY BULLETIN

1. 학칙 및 학사에 관한 규정
2. 단과대학 소개





1. 학칙 및 학사에 관한 규정

(1)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자유·진리·정의의 교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자유로이 탐구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 고도 산업 사회 및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과 정의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 및 대학원) ① 본 대학교에는 단과대학으로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공과대학, 디자인환경대학, 예술체육대학, 건강과학대학, 의과대학, 국제대학, 소프트웨어대학, 간호대학, 기초교양대학, 융합대학을 둔다. 단과대학에 소속하지 않는 학부(이하 “독립학부”라 한다)로 석당인재학부를 둔다.

② 본 대학교에는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국제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특수대학원으로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법무대학원을 둔다.

③ 대학원의 학칙은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2(공유대학의 설치, 운영 등) ① 국내·외 타 대학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대학을 둘 수 있다.

② 공유대학 내 융합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유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편성 및 정원) ① 본 대학교 각 대학의 학부(과)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2개 이상의 전공이 편성된 학부(과)의 전공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의1(정원외 전담학과 설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만 해당), 제7호, 제12의2호, 제14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담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부속시설) ① 본 대학교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술정보원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대학[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제외]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2.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되, 융합전공Ⅰ 이수자는 4년으로 한다.
3. 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구분한다.
4.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 운영(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하는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5년[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는 4.5년]으로 한다.

② 조기졸업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각 대학[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제외]은 6학기 또는 7학기
2.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는 8학기 또는 9학기(다만, 융합전공Ⅰ 이수자의 경우 6학기 또는 7학기)

③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의예과와 의학과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하며,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는 제적된다.

제 3 장 학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6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다만,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학부, 전공) 또는 학년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

②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계절학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절학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의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개별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법정 공휴일(임시휴일 포함) 및 대체휴무일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일수에 대하여 보강일을 지정하여 학기 개시일 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기휴가



2. 동기휴가
3. 개교기념일(11월 1일)
4. 일요일
5. 국정공휴일

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 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 및 전부(과)

제9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입학자격)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11조(모집단위와 모집인원) ① 입학 모집단위는 학부(과) 및 전공별로 한다.

② 입학 모집인원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입학정원내로 하되 전형유형별로 모집인원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해당 연도의 구체적인 학부(과)별 정원은 모집요강에 공고한다.

제12조(편입학) ① 제3학년(의학과는 1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른 대학에서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 또는 법령상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부(과)별 제1학년과 제2학년의 제적자 수에 한하여 소정의 전형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에게는 제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본 대학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협약체결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연계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계교육 학사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④ 편입학 할 수 있는 학년별 인원은 당해연도 교육부 「대학 편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제13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총 정원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학과, 의과대학 및 간호학부는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② 제5조제3항에 의거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한 학기가 경과한 후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제2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 재입학 허가 시 제적 당시의 학적을 유지한다. 다만, 재입학 이후의 학사경고, 유급은 재입학 이전 발생분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입학지원 서류) ① 각 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입시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증명 서류
2. 성적증명서
3. 기타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1.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한다.
2.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본 대학교가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한다.
3.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의 범위 및 모집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입학전형자료는 지원자의 출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중 필요한 성적 및 자료와 지원자가 제출한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입학허가) 입학의 허가는 각 입학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총장이 한다.

제17조(입학등록 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이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을 하였거나 지원 자격 미달자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 (삭제 2009. 3. 1)

제19조(전부(과)) ① 전부(과)는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2,3,4학년 과정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의예과·의학과는 전부(과)를 불허하고, 간호학과는 전출은 허가하나 전입은 불허하며, 교육학과는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전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부(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전부(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소속변경) 대학 학생정원조정으로 인해 학생모집이 중단되거나 통폐합된 학과에 소속된 자

중에 희망자는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속변경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 5 장 등 록

제20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등록에 대해서는「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지침」으로 따로 정하고, 정학생의 등록에 대해서는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의 등록은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수강 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 6 장 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2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 8학기(4년)[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는 통산 10학기(5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의과대학의 의예과와 의학과의 휴학기간은 「의과대학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병역, 창업 및 육아휴학) ① 병역의무이행, 창업 및 육아(임신·출산 포함)로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병역, 창업 및 육아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휴학·복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복학) 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복학할 수 있다.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6조(자퇴)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자가 복학해야 할 해당학기의 복학기간 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입학전형 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위반자로 교육부로부터 입학취소통보를 받은 자
4. 재학 중 학사경고 통산 3회 또는 유급 2회인 자
5. 중간시험 종료일까지 통산하여 무단결석기간 4주 이상이며 학업지속의사가 없다고 총장이 판단한 자

제 7 장 교과 및 이수

제28조(교과구분) 각 대학의 교과는 교양교과, 전공교과, 자유선택교과로 구분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 ①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 등에 의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수업시간 및 기타 강의 개설(분반 및 폐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의시간표 편성 지침」으로 정한다.

제31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2조(취득학점) ① 각 대학의 매학기 취득학점은 17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취득학점은 19학점(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및 간호학부 간호학과는 21학점,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석당인재학부는 24학점)으로 한다. 다만, 수강을 원하는 교과목의 학점 단위로 인해 최대취득학점보다 부족하게 수강신청을 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학점이 2학점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점만큼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 시까지 24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석사 연계과정자 및 조기졸업지원자는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 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다.

④ 복수·부·연계·자기설계연계전공·교양학사학위과정·융합전공Ⅱ와 전공교직과정을 동시 이수하는 자와 복수·연계전공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일 경우 3학년부터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 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다.

⑤ 공학교육심화 프로그램의 편입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학기 최대 신청학점 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있다.

⑥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처장이 승인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대취득학점을 매학기 2학점 이내로 초과할 수 있다.

제33조(수료학점) ① 각 대학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대상 / 학년	각 대학 [예외 적용 대상은 별도 명시]	간호학부 간호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경영대학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공과대학 스마트제조공학과
1학년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2학년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64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3학년	98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96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4학년	1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160학점 이상	128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5학년				160학점 이상	

② 의과대학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6학점 이상으로 하고 수료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졸업학점) 졸업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대학(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의과대학, 경영대학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간호학부, 공과대학 스마트제조공학과 제외)의 졸업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2. (삭제 2009. 3. 1)
3. 간호학부 간호학과의 졸업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4.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의과대학 의학과의 졸업학점은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5. 경영대학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공과대학 스마트제조공학과의 졸업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6. 융합전공 I 이수자의 졸업학점은 「융합전공 이수 규정」을 따른다.

제35조(조기졸업)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과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전 학년의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으로 과목 평점이 3.0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시킬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학점 및 성적인정) ① 전부(과)생 및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심사하여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② 편입학생은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심사하여 졸업학점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입학생 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37조(대학원 및 타 대학 등의 학점인정) ① 재학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되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체결 관계가 있는 국내·외의 다른 대학(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국내교류학생에 관한 규정」 및 「국외교류학생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09. 3. 1)

제38조(다전공 및 융합전공) ① 학생은 소속 학부(과) 전공 이외에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 연계전

공, 부전공, 융합전공, 교양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연계전공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자기설계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⑤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부전공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⑥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융합전공 이수 규정」으로 정한다.

⑦ 교양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양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⑧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 연계전공, 융합전공, 교양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위를 수여하고,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제38조의2(소단위 교육과정)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소단위 교육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의3(학·석사 연계과정)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의4(학군사관후보생과정) 본 대학교에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제117학생군사교육단을 두며, 군사교육단의 조직과 교과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7학생군사교육단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시험·출결·성적 및 졸업논문

제39조(시험) ① 학기마다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필요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교과목 담당 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40조(출결) ① 공결을 포함하여 수업실시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체육특기자 또는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된 학생 중 스포츠단장이 인정하는 학생은 2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사항은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공결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예습·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생출결관리, 학점 및 성적관리 기록물은 5년간 보관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출결 관리 지침」 및 「학점 및 성적관리 기록물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시험, 출결, 성적평가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제42조(성적등급) 학업성적은 등급별로 분류하고 평점평균 4.5 만점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취득학점인정) D등급 이상과 P등급의 학업성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을 이중 취득한 경우에는 교과구분 및 교과목번호가 다르더라도 높은 성적의 교과목 학점을 인정하며 낮은 성적의 교과목은 삭제 처리한다.

제43조의2(특별학점의 인정) 공인된 어학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특별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3(사회봉사학점의 인정) 재학 중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사회봉사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4(고교-대학 연계학점의 인정)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고교-대학 연계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본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5(현장실습 학점의 인정) 재학 중 국내·외 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의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6(대학과목선이수제 학점의 인정)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과목 선이수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7(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인정) ①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 또는 방송·통신·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격수업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교육적 경험을 사회봉사, 인성, 리더십 등 관련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위 각 항의 인정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인정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43조의8(학교생활기록부위주전형 예비입학생 학점의 인정) 학교생활기록부위주전형 예비입학생이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입학한 경우 그 취득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매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위주전형 예비입학생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9(원격수업 학점의 인정) 재학 중 방송·통신 등에 의한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원격수업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10(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학점의 인정) 재학 중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11(국가대표선수 이동수업학점의 인정) 재학 중 국가대표로 발탁된 경우, 이동수업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국가대표선수 이동수업학점 인정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44조(재수강) 동일교과목과 유사 및 대체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재수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와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시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46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이 소정의 평점평균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한다.

② 학사경고에 관한 사항은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는 「의과대학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유급) ①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 중에서 학업성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② 유급에 관한 사항은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는 「의과대학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부(과)에 따라서는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공인된 기관의 어학시험 및 자격증, 팀프로젝트 결과보고서로 이에 대체할 수 있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자 및 졸업예정학기 장기현장실습 이수자에게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졸업논문이 심사에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수료 후 10년 내에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10년을 초과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후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졸업논문이 심사에 통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졸업논문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졸업논문 시행 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학점 및 졸업논문 취소) 학점이나 졸업논문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거나 심사에 통과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 9 장 졸업 및 학위



제50조(졸업인정 및 학위수여) ① 최소 수업연한, 졸업학점, 소정의 성적, 졸업논문 등의 자격을 갖춘 자(해당학기 졸업일 기준 정학 이상의 징계 중인 자는 제외)에게 졸업을 인정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학위수여 종류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칙 제2조2에 의한 공유대학, 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의 학위수여 종류는 따로 정한다.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한 학위수여는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본 대학교에서 84학점(다만, 학사학위를 가진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 본 대학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칙 제50조의 졸업인정 및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지침」으로 정한다.

제50조의3(복수학위)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외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졸업취소) 졸업생으로서 제49조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한다.

제 10 장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제52조(위탁생의 수학허가)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위탁과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자에게는 정원 외에 위탁생으로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위탁생의 자격상실)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떠났을 때에는 수학을 할 수 없다.

제54조(외국인학생의 입학허가) 외국인이 제4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학력을 평가한 후 정원 외에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외국인학생의 과정이수)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6조(외국인학생의 편입학)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대학 편입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정규학생으로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7조(학칙의 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특별학생에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11 장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운영

제57조의2(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의한 학과 및 과정의 설치·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장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

제58조(시간제 등록생) ① 열린교육 사회체제와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간제 등록생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선발하며, 본 대학교의 재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반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별도 반을 둘 수 있다.

③ 시간제 등록생의 통합반과 별도 반 모집인원은 각각 해당 연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교육학과,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간호학과는 모집하지 아니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에게는 본 학칙을 준용하며, 매학기 등록, 교육과정, 학점인정, 학위수여 및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은 「시간제 등록생 학사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58조의2(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이상, 전공 60학점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다만, 학사학위를 가진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8학점) 이상인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및 동조 제2항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 18학점 이상인 자.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이수, 교육과정이수 및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② 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매학기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록, 교육과정 및 등록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은 「평생교육원 운영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 ① 제58조의2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제50조제2항에 의한 학위종별 및 전공에 따른다.

③ 학위취득이 인정된 자에게는 「평생교육원 운영 시행세칙」에 따라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 할 수 있다.

제58조의4(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세부사항은 「평생교육원 운영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3 장 공개강좌

제59조(공개강좌) ①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산업체근로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모집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총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4 장 학생활동

제60조(학생활동) ① 학생의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신장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창조적인 학문탐구를 통하여 대학문화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하기 위하여 동아대학교 총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 및 「학생회 간부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학생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예술 및 체육·문화 활동
2. 학생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학생 간 교류증진을 위한 활동
4. 방재 및 구난활동
5. 학생자치기구 주관 각종 활동

제61조(학생지도) ① 학사, 교과, 취업 및 진로 등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생지도교수제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② 교외에서 진행되는 단체행사 운영 시 안전 확보 및 학생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외 단체행사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62조(학생활동 지원) ① 학생활동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활동의 안전과 공익성을 위한 교육 및 특강
2.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
3. 활동 경비의 일부 지원
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학생단체 또는 개인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학생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학생회 등 특별자치기구 주관 학생활동에 관한 관리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총괄한다.
2. 단과대학 학생회 및 동아리(학회) 주관 학생활동에 관한 관리는 소속 단과대학장이 총괄한다.
3. 학부(과) 학생회 및 동아리(학회) 주관 학생활동에 관한 관리는 소속 학부(과)장이 총괄한다.

제62조의2(사회봉사활동 지원)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지원범위 및 관리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62조와 같다.

제63조(학생활동의 한계)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4조 (삭제 2005. 3. 1)

제 15 장 포상 및 징계

제65조(포상 및 징계) ①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또는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일탈한 때에는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의 징계처분을 한다.

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 장 장 학 금

제66조(장학금) 본 대학교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으로 정한다.

제 17 장 등 록 금

제67조(등록금의 납부)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수업료, 입학금 등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등록금의 공시)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등록기간 전에 공시한다.

제69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의 심의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8 장 직제 및 교원의 교수시간

제70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직제 규정」으로 정한다.

제71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본 대학교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1인당 주당 9시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보직교원에 대한 책임시간의 일부면제와 교원에 대한 초과 강의시간의 제한은「강의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지침」으로 정한다.

제 19 장 대학평의원회

제71조의 2(대학평의원회) 본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동아학숙 정관 제3절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제71조의 3(운영규정) 평의원의 추천방법 및 절차와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학평의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20 장 교 수 회

제72조(교수회의 설치)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를 둔다.

제73조(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74조(교수회의 소집)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다만, 관례적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총장이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 처·실장, 학과장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대학별 교수회는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이 소집한다. 총장은 각 대학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75조(교수회의 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한 사항
3.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사에 관한 사항

제 21 장 교무위원회

제76조(교무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77조(교무위원회의 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독립학부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건설관리본부장, 비서실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언어교육원장, 석당뮤지엄관장, 평생교육원장,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 소프트웨어혁신센터장으로 한다.

제78조(교무위원회의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제 22 장 각종 위원회

제79조(각종 위원회) 본 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직제 규정」에 정한다.

제 23 장 학칙개정

제80조(학칙개정 절차) ① 대학의 학칙 개정은 교무처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 총장은 제안된 학칙 개정안을 1주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학칙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제 24 장 자체평가

제80조의2(자체평가) ① 총장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점검· 평가한다.
②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은「자체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 25 장 장애학생

제80조의3(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습 및 생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 및 센터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 장 학교기업

제81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체 등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명칭, 소재지, 현장실습, 예산 및 회계, 보상금 등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 27 장 시행세칙

제82조(시행세칙) ①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23.9.1.)

③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④ 석당인재학부의 학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석당인재학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⑤ (재)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본 개정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3조, 제34조, 제3조의 단서규정과 제38조의 규정은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한 입학생에게 적용하며, 1977학년도 이전의 입학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따로 정한다.(1977. 12. 22. 학무 1010-1696)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978학년도 이전의 입학생은 구학칙을 적용한다.(1979. 1. 23. 학무 1010-126)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9. 3. 29. 학무 1041. 3-597)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79. 4. 10. 학무 1041. 3-659)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1979. 7. 2. 학무 1041. 3-992)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1980. 3. 4. 학무 1041. 3-463)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1980. 7. 29. 학무 1041. 3-969)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제42조 제2항, 제64조의 규정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1980학년도 이전의 입학생에게는 구학칙을 적용한다.(1981. 5. 30. 학무 1041. 3-1048)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1982. 2. 18. 학무 1041. 3-392)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83. 5. 24. 학무 1041. 3-1071)

부 칙

①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198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중 별표1-4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대학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11292호, 1983. 12. 30)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1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1984. 2. 16. 학무 1041. 3-408)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1984. 8. 29. 학무 1041. 3-1049)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1984. 9. 26. 학무 1041. 3-1497)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32조, 제34조 제1항은 198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제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1985. 3. 2. 학무 25210-476)

부 칙

이 학칙은 198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1985. 3. 28. 학무 25210-566)

부 칙

이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86. 2. 26. 학무 25210-208)

부 칙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87. 2. 28. 학무 25210-392)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12237호 1987. 8. 29)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3조 제1항, 제1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학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1987. 8. 29. 학무 25210-1048)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은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1990학년도(의학과는 199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종전 학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졸업 정원과 제33조,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44조 제3항, 제59조 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88. 7. 20. 학무 25210-803)

부 칙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의 내용중 법과대학, 공과대학의 최대 취득학점은 198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1989. 3. 31. 학무 25210-484)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6조 제2항은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984학년도부터 음악학과로 개편된 음악교육과의 입학자는 당초 입학학과인 음악교육과로 졸업한다.
③ (동전)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잠사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개정학칙에 의한 천연섬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1990. 2. 7. 학무 25210-208)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1991. 3. 9. 학무 25210-445)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중 제59조 제3항은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1992. 4. 16. 학무 25210-626)
③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992학년도 이전 음악학과에 기악전공으로 입학하여 휴학한 자는 복학시 동일학년 해당 전공학과로 전과 복학한다.(1992. 8. 7. 학무 25210-988)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이 변경된 전산공학과 입학자중 199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전산공학과로 졸업하고, 199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컴퓨터공학과로 졸업한다.(1993. 3. 25. 학무 81412-463)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3조 제1항,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1993. 3. 31. 학무 81412-527)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1993. 8. 19. 학무 81412-1312)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중 제32조 제2항은 199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1994. 4. 12. 학무 81412-656)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인가일: 1994. 10. 21) 및 제3조(인가일: 1995. 9. 5)의 개정 조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1995. 6. 1. 학무 81510-737)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1995. 8. 12. 학무 81510-1054)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46조는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1997. 3. 5. 학무 81412-658 일부변경)
③ (대학 및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에 농과대학 농업경제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변경 학칙에 의한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원경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학부제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동 학과가 학부제로 전환된 이후 복학하는 경우 동일학년에 학과가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학과로, 동일학년에 학과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학부로 복학한다.
⑤ (재입학에 관한 특례) 1996학년도말 이전에 경제적 사유 등[학무 제81210-958(1993. 7. 8): 제적학생 재입학확대방안 중 "나. 구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제적된 자에게 재입학을 허가 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4년간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생 수를 제외한 인원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1996. 3. 5. 학무 81210-513)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부제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 및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1999학년도까지는 동 학과 및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0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로 졸업한다.

1. 인문과학대학의 철학과, 사학과, 국민윤리학과, 고고미술사학과는 인문학부로
2. 인문과학대학의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는 한국어문학부로
3. 인문과학대학의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는 외국어문학부로
4.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는 자연과학부로
5.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부 식품과학전공은 생활과학대학 식품과학부로
6.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천연섬유학과는 생활과학대학 의상섬유학부로
7. 법과대학의 법학과는 법학부로
8. 사회과학대학의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는 사회과학부로
9.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원경제학과는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로
10. 경영대학의 경영학과, 회계학과는 경영학부로
11. 경영대학의 관광경영학과, 무역학과는 관광경영및무역학부로
12. 경영대학의 응용통계학과, 경영정보학과는 경영정보및통계학부로
13.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조경학과는 공과대학 도시조경학부로

14. 공과대학의 환경공학과, 자원공학과는 지구환경공학부로
15. 체육대학의 무용학과는 체육학부로
16. 예술대학의 회화과, 산업미술과, 공예과, 조소과, 섬유미술학과는 미술학부로
17. 예술대학의 음악학과, 기악과는 음악학부로

③ (학과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전에 자연과학대학 의예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의과대학 의예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전공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별표1(1-3)중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부의 생물자원학전공을 생물자원학전공과 원예과학전공으로 분리하고, 자원환경학전공을 응용생물학전공으로 변경한다.(1997. 3. 5. 학무 81412-658)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소속변경과 그에 따른 경과조치)

1. '96학년도이전 생명자원과학대학 입학자중 천연섬유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생활과학 대학으로, 조경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공과대학으로, 자원경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사회과학대학으로, '95학년도이전 생명자원과학대학 입학자중 축산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생활과학대학으로 학과소속을 변경하며, 변경된 소속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학과소속변경에 따른 축산학과, 천연섬유학과, 자원경제학과, 조경학과의 경우 학칙 제31조, 제32조, 제34조는 소속변경전의 종전학칙을 적용하며, 학칙 제46조의 졸업인정은 축산학과는 농학사로, 천연섬유학과는 이학사로, 자원경제학과는 경제학사로, 조경학과는 공학사로 한다.

③ (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 별표1(1-3)중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을 신소재물리학전공으로 변경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전공)·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학부(과)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1학년도까지는 동 학부(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2학년도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과)로 졸업한다.

가. 외국어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를 서양어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와 중국·일본학부(일어일문

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로
나. 사회과학부(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사회학전공, 신문방송학전공)를 정치행정학부(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와 사회언론광고학부(사회학전공, 언론광고학전공)로
다. 건설공학부를 토목·해양공학부(토목학전공, 해양토목공학전공)로, 산업공학과를 산업시스템공학과로 한다.
2. 변경 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학부(전공)로 복학하고,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학생이 원하는 학부로 복학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제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로 통합되는 공과대학의 기계공학과와 산업시스템공학과, 화학공학과와 금속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2학년도까지는 동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3학년도부터는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재료금속·화학공학부로 졸업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및 제50조는 2001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부(전공)·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1. 학부(전공)·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전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3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한다.
가. 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한문학전공)는 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전공)로
나. 건축공학과는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로 한다.
2. 이 변경 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배정을 받지 않았거나 학과 명칭변경 및 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학생이 원하는 학부(전공)로 복학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28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부(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생활과학대학 식품과학부(식품과학전공)를 식품과학부(식품과학(식품학)전공)로 명칭 변경하고 2001학년도 졸업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로 졸업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5조, 제33조, 제34조, 제50조(가정관리학과 학위 제외)는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4년제)은 재적생 졸업 시까지 전공을 존속한다.

③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1. 2001학년도 이전 공과대학 건축학부에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며 학위명은 공학사로 한다.

2. 2002학년도 이후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에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며 학위명은 건축학사로 한다.

④ (졸업논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제48조 제1항에 의한 공인된 기관의 어학시험을 졸업논문으로 대체하는 것은 1999학년도 경영대학 국제관광통상학부 국제관광학전공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국제관광학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2001학년도 이후 이수하는 자 부터 적용한다.

⑤ (학위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학위명은 '이학사'를 '가정학사'로 변경하되 2001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⑥ [학부(전공)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학부(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4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로 졸업한다.

가. 인문학부(철학전공, 사학전공, 국민윤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는 인문학부(철학전공, 사학전공, 윤리문화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로,

나. 서양어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는 영어영문학부, 유럽어문학부(독어독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로,

다. 도시조경학부(도시공학전공, 조경학전공)는 도시계획·조경학부(도시계획학전공, 조경학전공)로,

라. 미술학부(회화전공,공예전공,산업디자인전공, 조소전공, 섬유미술전공)는 미술학부(회화전공, 공예전공, 조소전공)와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섬유조형디자인전공)로 한다.

2. 이 변경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학부(전공) 명칭에 따라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일학부 또는 변경 학부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부로 복학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5 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전공)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학부(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5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로 졸업한다.
가. 자연과학부(수학전공, 신소재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생물학전공)는 수학·신소재물리학부(수학전공, 신소재물리학전공)와 화학·생명과학부(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로,
나. 생명자원과학부(생물자원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응용생물학전공, 생물공학전공)는 식물생명공학부(식물유전공학전공,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와 응용생명공학부(응용생물 공학전공, 생명공학전공)로,
다.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로,
라. 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섬유조형디자인전공)는 조형디자인학부(산업디자인전공, 섬유조형디자인전공)로 한다.
2. 이 변경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학부(전공) 명칭에 따라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일학부 또는 변경 학부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부로 복학한다.
③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4년제) 학위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제2항의 학칙 변경에도 불구하고 2005학년도 이후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4년제)으로 졸업할 경우 학위명은 '공학사'로 한다.
④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81조 제2항의 학칙 변경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 국제관광통 상학부 국제관광학전공자(복수전공 신청자 포함)는 '경영대학 국제관광통상학부 국제관광학전공 학사에 관한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식물유전공학전공,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 학위명은 '농학사'를 '이학사'로 변경하되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학부(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학부(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학과로 졸



업한다.

가. 영어영문학부는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주간), 영어전공(야간)〕로,

나. 경영정보과학부(경영정보학전공)는 경영정보과학부로,

다.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의 기계공학전공은 기계공학과로, 산업시스템공학전공은 산업경영공학과로,

라. 재료금속·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금속공학전공)는 신소재·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로 한다.

2. 이 변경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학부(전공) 명칭에 따라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일학부(전공)·학과 또는 변경 학부(전공)·학과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부(전공)·학과로 복학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학부(전공)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7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한다.

가. 한국어문학부의 국어국문학전공은 한국어문학부로, 문예창작전공은 문예창작학과로

나. 사회언론광고학부의 사회학전공은 사회·사회복지학부(사회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로, 언론광고학전공은 신문방송학과로,

다. 경제학부의 경제학전공은 경제학과로, 응용경제학전공은 금융학과로,

라. 국제관광통상학부의 관광경영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은 국제관광학부(관광경영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로, 무역학전공은 국제무역학과로,

마. 식물생명공학부의 식물유전공학전공, 원예식물생명공학전공은 분자생명공학부(유전공학전공, 환경생명공학전공)로,

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의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은 전자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로, 전기공학전공은 전기공학과로,

사. 기계공학과는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로 한다.

2. 이 변경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할 때 학부(과)·전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생이 원하는 유사 학부(과)·전공으로 복학한다.

③ (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제50조 제2항에 의한 생명자원과학대학 응용생명공학

부 응용생물공학전공 학위명은 '농학사'를 '이학사'로 변경하되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2(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요건)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은 2005학년도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③ (인턴십 학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 5(인턴십 학점의 인정)에 의한 학점인정은 2004학년도 인턴십 이수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 학부(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1. 대학, 학부(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대학,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8학년도까지는 동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대학,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한다.
가. 한국어문학부는 국어국문학과로,
나. 식품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 식품과학(식품학)전공]는 식품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로,
다. 의상섬유학부의 섬유공학전공은 섬유산업시스템전공으로,
라. 국제관광학부의 호텔외식경영학전공은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으로,
마. 토목·해양공학부(토목공학전공, 해양토목공학전공)는 토목공학부로,
바. 전자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는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로,
사. 신소재·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는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로,
아. 체육대학은 스포츠과학대학으로, 체육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 사회체육학전공, 무용학전공, 무도학전공)는 스포츠과학부(체육학전공, 경기지도학전공, 사회체육학전공), 스포츠문화학부(무용예술학전공, 무도학전공, 태권도학전공)로 한다.
2. 이 변경 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학부(전공) 명칭에 따라 전공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일학부(전공)·학과 또는 변경 학부(전공)·학과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부(전공)·학과로 복학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 학부(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1. 부칙 48의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스포츠과학대학으로 졸업한다.

2. 학부(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9학년도까지 는 동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명칭이 변경된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한다.

가. 인문학부(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는 역사문화학부(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 공)로

나. 중국·일본학부(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는 일어일문학과, 중국학부로

다. 지구환경공학부의 자원공학전공은 에너지·자원공학전공으로

라.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는 기계공학부로

마. 스포츠문화학부의 무도학전공은 무도경찰학전공으로 한다.

3. 이 변경 학칙 이전 입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학부(전공) 명칭에 따라 전공 배정을 받은 학생은 해당 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 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동일 학부(전공)·학과 또는 변경 학부(전공)·학과 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학부(전공)·학과로 복학한다.

③ (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제2항에 의한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학위명은 '문학사'를 '언론학사'로 변경하되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문화학부 무용예술학전공 학위명은 '체육학사'를 '무용학사'로 변경하되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부(전공)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학부(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0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전공배정을 받은 휴학자가 복학하는 경우, 전공배정 받은 학부(전공)로 복학하되,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휴학자가 복학하는 경우, 입학당시의 학부(전공)·학과 또는 복학 당시 학부(전공)·학과로 전공을 배정 받을 수 있다.

1. 역사문화학부의 사학전공은 사학과로, 고고미술사학전공은 고고미술사학과로

2. 수학·신소재물리학부의 수학전공은 수학과로, 신소재물리전공은 신소재물리학과로

3. 화학·생명과학부의 화학전공은 화학과로, 생명과학전공은 생명과학과로

4. 의상섬유학부의 패션디자인전공은 패션디자인학과로, 섬유산업시스템전공은 섬유산업학과로

5. 정치행정학부의 정치외교학전공은 정치외교학과로, 행정학전공은 행정학과로
6. 사회·사회복지학부의 사회학전공은 사회학과로, 사회복지학전공은 사회복지학과로
7. 분자생명공학부의 유전공학전공은 유전공학과로, 환경생명공학전공은 분자생명공학과로
8. 응용생명공학부의 응용생물공학전공은 응용생물공학과로, 생명공학전공은 생명공학과로
9. 지구환경공학부의 환경공학전공은 환경공학과로, 에너지·자원공학전공은 에너지·자원공학과로 변경한다.
10. 스포츠과학부의 체육학전공은 체육학과로, 경기지도학전공은 경기지도학과로, 사회체육학전공은 생활체육학과로
11. 스포츠문화학부의 무용예술학전공은 무용학과로, 무도경찰학전공은 무도경찰학과로, 태권도학전공은 태권도학과로
12. 미술학부 조소전공은 조각전공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사회복지학부 사회학전공으로 졸업하는 자의 학위는 '문학사'에서 '사회학사'로, 사회복지학전공으로 졸업하는 자의 학위는 '문학사'에서 '사회복지학사'로,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으로 졸업하는 자의 학위는 '정치학사'에서 '정치외교학사'로 변경하되 2008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과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졸업인증 적용례) 제50조의 졸업인증은 2009학년도 신입학생 및 2011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④ (2009학년도 학생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전공)·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전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1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되, 이 학칙 시행 이전 전공배정을 받은 휴학자가 복학하는 경우 전공배정을 받은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하고, 전공배정을 받지 않은 휴학자가 복학하는 경우 입학당시의 학부·학과 또는 복학 당시 학과로 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다.
1. 인문학부의 철학전공은 철학과로, 윤리문화학전공은 윤리문화학과로
2.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및 영어전공은 영어영문학과로
3. 유럽어문학부 독어독문학전공은 독어독문학과로, 불어불문학전공은 프랑스문화학과로
4. 중국학부는 중어중문학과로

5.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은 식품영양학과로
6. 경영학부는 경영학과로
7. 국제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 및 호텔· 컨벤션경영학전공은 관광경영학과로
8. 경영정보과학부는 경영정보학과로
9. 토목공학부는 토목공학과로
10. 도시계획·조경학부 도시계획학전공은 도시계획학과로, 조경학전공은 조경학과로
11. 기계공학부는 기계공학과로
12. 무도경찰학과는 경찰무도학과로
13. 미술학부 회화전공은 회화학과로, 공예전공은 공예학과로, 조각전공은 조각학과로
14. 조형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은 산업디자인학과로, 섬유조형디자인전공은 섬유조형디자인학과로
15. 음악학부 음악전공은 음악학과로, 기악전공은 기악학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0학년도 학생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1. 학부(전공)·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다음의 학부(전공)·학과의 재적생은 2012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부(전공)·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되, 복학 등으로 인해 2010학년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가. 생명과학과는 생물·의생명과학과로
나. 가정관리학과는 아동가족학과로
다.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은 건축학과(5년제)로, 건축공학전공은 건축공학과로 변경한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 인문과학대학 중국학과와 사회과학대학 국제거래관계학과의 재적생은 각각 이 개정학칙에 의한 국제학부 중국학전공, 국제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1학년도 학생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경기지도학과의 재적생은 2013학년도까지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되, 복학 등으로 인해 2011학년도 신입생과 졸업연

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지도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건축·디자인·패션대학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모집을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단과대학 및 학과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학과의 재적생은 2014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의 배정이 필요할 경우 학생이 원하는 세부전공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관광경영학과는 국제관광학과로
2. 섬유조형디자인학과는 섬유미술학과로
3.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학과는 건축· 디자인·패션대학 패션디자인학과로
4.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는 건축·디자인·패션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으로
5.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는 건축·디자인·패션대학 산업디자인학과로
② 학과가 통합되는 음악학과 및 기악학과의 재적생은 2014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음악학과의 해당 전공 및 실용음악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③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스포츠과학대학 무용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 (학위명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4(4-2)의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의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이수자 학위명의 변경은 2007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의 개정) 2010년 3월 1일 개정된 동아대학교 학칙 부칙 제2항 제1호 나목 학과의 재적생은 2012학년도부터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단과대학의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은 2015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자연과학대학 생물·의생명과학과는 생명과학과로
2.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는 인문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로
3.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는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로
4. 생활과학대학 섬유산업학과는 공과대학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로
5. 스포츠과학대학 경찰무도학과는 경찰경호학과로
② 학과가 통합되는 다음 학과의 재적생은 2015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3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학과의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1. 철학과 및 윤리문화학과는 철학·윤리문화학과로
2. 회화학과 및 조각학과는 미술학과로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의 개정) 2013년 3월 1일 개정된 동아대학교 학칙 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재적생은 2013학년도부터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5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단과대학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은 2017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5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인문과학대학 철학·윤리문화학과는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로
2.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학과로
3.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는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로
4. 생명자원과학대학 의약생명공학과는 건강과학대학 의약생명공학과로

5.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는 디자인환경대학 도시계획공학과로
6. 공과대학 조경학과는 디자인환경대학 조경학과로
7. 건축·디자인·패션대학 건축학과는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로
8. 건축·디자인·패션대학 산업디자인학과는 디자인환경대학 산업디자인학과로
9. 건축·디자인·패션대학 패션디자인학과는 디자인환경대학 패션디자인학과로
10. 예술대학 미술학과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로
11. 예술대학 음악학과는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로
12.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지도학과 및 생활체육학과는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로
13. 스포츠과학대학 경찰경호학과, 태권도학과는 예술체육대학 태권도경호학과로

② 학과가 통합되는 다음 학과의 재적생은 2017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5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학과의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1. 국어국문학과 및 문예창작학과는 한국어문학과로
2. 유전공학과 및 분자생명공학과는 유전공학과로
3. 미술학과, 공예학과 및 섬유미술학과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로
4. 음악학과 및 실용음악학과는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로
5. 체육학과, 스포츠지도학과 및 생활체육학과는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로
6. 경찰경호학과 및 태권도학과는 예술체육대학 태권도경호학과로
7. 국제학부는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단과대학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은 2018학년도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고, 복학등으로 인해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인문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는 아동학과로
2.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4. 생명자원과학대학 유전공학과는 분자유전공학과로
5. 예술체육대학 태권도경호학과는 태권도학과로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의 개정) 2015년 3월 1일 개정된 「동아대학교 학칙」 부칙 제2조제2항제7호의 내용 중 국제학부는 국제학부 국제학전공으로 변경한다.
③ (201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18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및 재입학 등으로 인해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국제학부 중국학전공은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으로
2. 국제학부 일본학전공은 중국·일본학부 일본학전공으로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학부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0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및 재입학 등으로 인해 2018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공과대학 인간환경융합공학부 건축공학과는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로
2. 공과대학 인간환경융합공학부 토목공학과는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로
3. 공과대학 인간환경융합공학부 환경공학과는 공과대학 환경공학과로
4. 공과대학 인간환경융합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는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로
5.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과는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로
6.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과는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로
7. 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과는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로
8. 공과대학 기계·산업경영공학부 기계공학과는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로
9. 공과대학 기계·산업경영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는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로
10. 공과대학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는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로
11. 공과대학 신소재화학공학부 화학공학과는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로
12. 공과대학 신소재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과는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로
13. 공과대학 신소재화학공학부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는 공과대학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로

14.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건축학과(5년제)로
15. 디자인환경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어패럴디자인전공 및 리테일머천다이징전공은 패션디자인학과로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부(과) 규정 변경사항 적용례) 제19조 전부(과) 가능 학년에 관한 개정 학칙은 「전부(과)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 및 제19조는 2019년 1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 (2019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1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경영대학 국제관광학과는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로
2.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간호학부 간호학과로
③ (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2항에 의한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 학위명은 '글로벌비즈니스학사'를 '국제경영학사'로 변경하되 2018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④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인문과학대학 독어독문학과, 프랑스문화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학부 소속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2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20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사회학부 정치외교학전공으로
2.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사회학부 사회학전공으로
3.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과는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로
③ (공과대학 취득학점, 수료학점 및 졸업학점 변경사항 적용례) 제32조 취득학점, 제33조 수료학점, 제34조 졸업학점에 관한 개정 학칙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1학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2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소속 및 학과(전공)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3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인문과학대학 사학과는 인문과학대학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으로
2. 인문과학대학 고고미술사학과는 인문과학대학 역사문화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으로
3.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는 국제대학 영미학과로
4. 인문과학대학 중국어학과는 국제대학 중국학과로
5.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는 자연과학대학 정보수학과로
6. 자연과학대학 신소재물리학과는 자연과학대학 반도체학과로
7.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는 자연과학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로
8. 사회과학대학 금융학과는 경영대학 금융학과로
9.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는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로
10. 공과대학 환경공학과는 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로
11.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는 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로
12.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AI공학부 컴퓨터공학과로

13.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국제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로
14.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은 국제대학 중국학과로
15. 중국·일본학부 일본학전공은 국제대학 일본학과로

부 칙

이 학칙은 2020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2학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2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가 변경되는 학과는 재적생 중 2024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22학년도 이해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5년제)는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_ 또는 실내건축디자인전공(4년제)으로
2. 디자인환경대학 도시계획공학과는 공과대학 도시공학과로
3.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는 예술체육대학 현대미술학과로
4.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는 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성악·작곡전공 및 실용음악전공은 예술체육대학 음악학과로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2항에 의한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학위명은 '관광학사'를 '관광경영학사'로 변경하되, 2021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위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2항에 의한 디자인환경대학 패션디자인학과의 학위명은 '디자인학사'를 '디자인이학사'로 변경하되, 2023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단, 2020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위명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5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3학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2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전공)가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5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23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사회과학대학대학 경찰·소방학과는 사회과학대학 경찰학과로
2. 공과대학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는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로
3. 예술체육대학 현대미술학과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로
4. 예술체육대학 공예학과는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로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4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5학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25학년도 학사조직 개편 및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전공)가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7학년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23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1.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산업학과는 생명자원과학대학 스마트그린자원학과로
2. 생명자원과학대학 분자유전공학과는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소재공학과로
3. 컴퓨터·AI공학부 컴퓨터공학과는 소프트웨어대학 컴퓨터공학과로
4. 컴퓨터·AI공학부 AI공학과는 소프트웨어대학 AI학과로
5. 간호학부 간호학과는 간호대학 간호학과로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융합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3학년도 이전 스마트헬스케어전공 선발학생은 융합전공 I 을 적용하고, 2024학년도 이후 선발된 학생은 융합전공II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례규정) 2024학년도 의과대학 의예과 입학생에 한하여 제32조제1항의 매학기 최대취득학점(24학점) 적용을 예외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5호의 개정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202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사항 적용례) 2026학년도 정원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202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전공)가 변경되는 학과의 재적생 중 2028학년

도 졸업생까지는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하고, 복학 등으로 인해 2026학년도 이후 신입생과 졸업연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인문과학대학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은 인문과학대학 역사고고미술사학과로
인문과학대학 역사문화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은 인문과학대학 역사고고미술사학과로

[별표 1(1-1)]

학부(과) 편성 및 입학정원(2023학년도~2026학년도)

캠퍼스	대학	학부(과)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2026 학년도
승학	인문 과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45	45	45	45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40	40	40	
			고고미술사학전공	40	40	40	
		역사고고미술사학과					60
		한국어문학과		60	60	60	60
		교육학과		35	35	35	35
		아동학과		40	40	40	40
		소 계		260	260	260	240
승학	자연 과학	정보수학과		45	45	45	45
		반도체학과		45	45	45	45
		화학과		60	60	60	50
		바이오메디컬학과		45	45	45	45
		소 계		195	195	195	185
부민	사회 과학	정치·사회학부	정치외교학전공	40	40	40	40
			사회학전공	35	35	35	35
		행정학과		60	60	60	60
		사회복지학과		50	50	50	5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55	60	60	60
		경제학과		80	80	80	80
		경찰학과		70	70	70	70
		소 계		390	395	395	395
부민	경영	경영학과		278	280	280	280
		관광경영학과		110	110	110	110
		국제무역학과		110	110	110	110
		경영정보학과		110	110	110	110
		금융학과		60	60	60	60
		융합경영학과		1			
		지식서비스경영학과		1			
		소 계		670	670	670	670

캠퍼스	대학	학부(과)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2026 학년도
승학	생명 자원 과학	바이오소재공학과				50	50
		분자유전공학과		55	55		
		응용생물공학과		50	50	50	50
		식품생명공학과		50	50	50	50
		스마트그린자원학과				40	40
		생명자원산업학과		40	40		
		소 계		195	195	190	190
승학	공과	건축공학과		50	50	50	50
		도시공학과		50	50	50	50
		건설시스템공학과		75	75	75	75
		환경·에너지공학부	환경안전전공	45	45	45	45
			미래에너지공학전공	45	45	45	45
		전기공학과		90	90	90	90
		전자공학과		130	130	130	130
		기계공학과		195	195	195	195
		산업경영공학과		75	75	75	75
		조선해양공학과		50	55	55	55
		화학공학과		100	100	100	100
		신소재공학과		95	95	95	95
		소 계		1,000	1,005	1,005	1,005
승학	디자인 환경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55	55	55	55
			실내건축디자인전공(4년제)				
		산업 디자인학과	시각미디어 디자인전공	65	65	70	70
			제품스페이스 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과		50	50	50	50
		조경학과		45	45	45	45
		소 계		215	215	220	220
승학	예술 체육	미술학과	현대미술전공	80	80	80	80
			영상예술전공				
			목조형가구전공				
			도자예술전공				
		음악학과		90	80	70	60



캠퍼스	대학	학부(과)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2026 학년도
		체육학과	104	104	104	104
		태권도학과	60	60	60	60
		소 계	334	324	314	304
승학	건강과학	식품영양학과	70	70	70	70
		의약생명공학과	55	55	55	55
		건강관리학과	60	60	60	60
		작업치료학과				50
		소 계	185	185	185	235
구덕	의과	의 예 과	49	49	100	100
		의 학 과	[49]	[49]	[100]	[100]
		소 계	49 [49]	49 [49]	100 [100]	100 [100]
부민	국제	글로벌비즈니스학과	70	70	70	60
		영미학과	80	70	70	70
		중국학과	60	60	60	60
		일본학과	50	50	50	50
		소 계	260	250	250	240
승학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과	80	80	85	85
		AI학과	80	80	80	80
		소 계	160	160	165	165
구덕	간호	간호학과	105	115	120	120
		소 계	105	115	120	120
승학	융합	자유전공학부			50	50
		소 계			50	50
부민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전공	40	40	40	40
		소 계	40	40	40	40
승학	합 계		2,544	2,544	2,584	2,594
구덕	합 계		154 [49]	164 [49]	220 [100]	220 [100]
부민	합 계		1,360	1,355	1,355	1,345
총 계			4,058 [49]	4,058 [49]	4,159 [100]	4,159 [100]

※ [ ]안의 숫자는 의학과 정원으로 [ ]밖의 숫자에 불포함

[별표 1(1-2)]

계약학부(과) 편성 및 입학정원(2022학년도~2025학년도)

캠퍼스	대학	학부(과)	2022 학년도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비고
승학	공과	산업공학과	20	20	20	20	3학년편입
승학	공과	스마트생산융합 시스템공학과	20	20	20	20	3학년편입
승학	공과	스마트제조공학과		30	30	30	

[별표 1(1-3)]

정원외 전담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2023~2025학년도)

캠퍼스	대학	학부(과)	2023 학년도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2026 학년도
부민	경영	융합경영학과		0	0	0
부민	경영	지식서비스경영학과		0	0	0
승학	공과	글로벌첨단융합공학부				0
부민	사회과학	부동산자산경영학과				0

※ 융합경영학과, 글로벌첨단융합공학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만 해당)의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함

※ 지식서비스경영학과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호의2호의 성인학습자 또는 제14호 다목의 재직자만을 모집함

※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2호의2호의 성인학습자만을 모집함

[별표 2(2-1)]

학부(과)별 학위수여 종류

대학	학부(과) / 전공		학위명
인문과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문 학 사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인문학사
		고고미술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사
	한국어문학과		문 학 사
	교 육 학 과		교육학사
	아 동 학 과		아동학사
자연과학	정보수학과		이 학 사
	반도체학과		이 학 사
	화 학 과		이 학 사
	바이오메디컬학과		이 학 사
사회과학	정치 · 사회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정치외교학사
		사회학전공	사회학사
	행 정 학 과		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커뮤니케이션학사
	경 제 학 과		경제학사
	경 찰 학 과		경찰학사
경영	경 영 학 과		경영학사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사
	국제무역학과		무역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금융학과		경영학사
	융합경영학과		경영학사
	지식서비스경영학과		경영학사
생명자원과학	바이오소재공학과		이 학 사
	응용생물공학과		이 학 사
	식품생명공학과		이 학 사
	스마트그린자원학과		이 학 사

대학	학부(과) / 전공		학위명
공과	건축공학과		공 학 사
	도시공학과		공 학 사
	건설시스템공학과		공 학 사
	환경 · 에너지공학부	환경안전전공	공 학 사
		미래에너지공학전공	공 학 사
	전기공학과		공 학 사
	전자공학과		공 학 사
	기계공학과		공 학 사
	산업경영공학과		공 학 사
	조선해양공학과		공 학 사
	화학공학과		공 학 사
	신소재공학과		공 학 사
디자인환경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학사
		실내건축디자인전공(4년제)	디자인학사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제품스페이스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패션디자인학과		디자인이학사
	조경학과		공 학 사
예술체육	미술학과	현대미술전공	미술학사
		영상예술전공	미술학사
		목조형가구전공	미술학사
		도자예술전공	미술학사
	음 악 학 과		음악학사
	체 육 학 과		체육학사
	태권도학과		체육학사
건강과학	식품영양학과		이 학 사
	의약생명공학과		이 학 사
	건강관리학과		이 학 사
의 과	의 학 과		의 학 사
국제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국제경영학사
	영미학과		국제학사
	중국학과		국제학사
	일본학과		국제학사

대학	학부(과) / 전공		학위명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과		공 학 사
	AI학과		공 학 사
간호	간호학과		간호학사
석당인재학부		공공정책학전공	공공정책학사

[별표 2(2-2)]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이수자 학과별 학위수여종류

대학	학과	학위명
공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사
	환경·에너지공학부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공학사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사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사
	건축공학과	건축공학사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사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사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사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사

[별표 2(2-3)] 연계·융합전공별 학위수여종류

주관대학	주관학과	전공명	학위명	비고
인문과학	한국어문학과	인문융합콘텐츠기획	인문콘텐츠학사	연계전공
인문과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창의인문경영	인문경영학사	연계전공
중국·일본학부	일본학전공	동북아인문프론티어	동북아지역학사	연계전공
경영	경영학과	국제통상	국제통상학사	연계전공
경영	관광경영학과	항공비즈니스	항공영어학사	연계전공
경영	경영정보학과	스마트물류무역	무역경영학사	융합전공 I
디자인환경	건축학과(5년제)	실내공간디자인	디자인학사	융합전공 I
융합		바이오헬스규제과학	이학사	융합전공II
융합		스마트모빌리티	공학사	융합전공II
융합		수소시스템	공학사	융합전공II
융합		AI·SW 융합	AI·SW융합전공 공학사	융합전공II
융합		스마트헬스케어	이학사	융합전공II

[별표 2(2-4)] 계약학부(과)별 학위수여종류

대학	학부(과)	전공	학위명
공 과	산업공학과		공 학 사
공 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공 학 사
공 과	스마트제조공학과		공 학 사

[별표 2(2-5)] 교양학사

대학	전공	학위명
기초교양	리버럴아츠	리버럴아츠학사

[제50조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성 명
____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 학부(과) (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 박사 ○ ○ ○

학위번호 : 동아대○○○○(학) ○○○○

[제48조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____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 학부(과) (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 박사 ○ ○ ○

(2) 학사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 「동아대학교 학칙」 제28조에 규정된 각 교과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은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와 같다.

제3조(필수교양교과) 필수교양교과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함양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한다.

제4조(중핵교양교과) ① 중핵교양 교과는 3학점 단위로 인문·사회·자연·융합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자유로운 학문탐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제해결과정에서 창의적 융합능력을 기르기 위한 강좌로 편성한다.

분류	영역분류	주제별 분류기준	학문분야별 분류기준
1영역	인문	인간의 본성 및 조건, 역사적 현실, 종교적 가치, 미적 가치	문학, 예술, 역사, 철학, 종교
2영역	사회	문화현상과 현대문명, 인류성 탐구와 도덕적 추론, 사회적 현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심리학
3영역	자연	자연 및 과학, 기술의 본성과 성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과학기술학
4영역	융합	융합 및 통섭	융합

② 각 영역별로 3학점씩 필수로 이수하고, 잔여학점은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다만,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는 지정된 이수학점만큼 이수하되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 3학점씩 이수한다.

제4조의2(토대교양교과) ① 토대교양 교과는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전공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강좌로 2학점 단위로 편성한다.

② 토대교양 교과는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으로 구성되며, 필수영역에서 2학점, 선택영역에서 2학점을 이수한다. 다만, 자유전공학부는 필수영역에서만 2학점을 이수한다.

③ 경영대학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공과대학,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소프트웨어대학, 간호대학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학과교양교과) ① 학과교양 교과는 해당 학문의 전공교과를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 함양에 도움을 주는 개론적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② 학과교양교과는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전공기초교과) 전공기초교과는 학과의 전공이수에 필요한 기초공통지식의 습득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교과개설에 관한 사항은 「강의시간표 편성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전공필수교과) 전공필수 교과는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과과정으로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개설에 관한 사항은 「강의시간표 편성 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전공선택교과) ① 전공선택 교과는 전공분야의 심화를 위한 교과과정으로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교과개설에 관한 사항은 「강의시간표 편성 지침」으로 정한다.

② 전공선택교과의 이수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선택교과를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학부(과)·전공 개설과목(학과교양 및 전공교과) 중 학과에서 지정한 경우, 4개 이내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대학(지식서비스경영학과 제외)은 경영대학 전공 개설과목(학과교양, 전공교과) 및 학과에서 지정한 4개 이내 개설과목(타 단과대학·학부 전공 개설과목, 경영세미나Ⅰ, 경영세미나Ⅱ)을 포함하여 총 6개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자유전공교과) ① 자유전공 교과는 자유전공필수와 자유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 자유전공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이해 및 학문경험을 통해 전공 ·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개설한다.

② 자유전공교과는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교과개설에 관한 사항은 「강의시간표 편성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자유선택교과) ① 자유선택 교과는 교양교과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기초학력의 증진 및 취업대비 등의 목적으로 개설한다.

② 제1항의 교과 뿐 아니라 각 영역별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교과도 자유선택 교과로 인정한다.

제10조(공학계열교과) 공학계열 교과(공학교양교과, 기초과학 및 수학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설한다.

1. 공학교양교과는 공학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공학교육인증(ABEEK)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과과정[별표1-1, 1-3]으로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한다.

2. 기초과학 및 수학교과는 공학적 응용에 필요한 수학, 기초과학 지식과 이론의 습득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한다.

제11조(교육과정개편) ① 교육과정은 5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 교육과정 개편은 주관학과와 교양대학에서 협의된 안을 재학생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교양대학 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 검토 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은 외부전문가 및 재학생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합의된 안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 및 교육혁신원 검토 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단과대학 차원의 전공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할 경우, 합의된 안을 교무처로 제출하기 전 전체 학과장회의(학장 주관) 심의를 거친다.

④ 교육과정은 학문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개편한다.

제12조(수강신청) ①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동아대학교 학칙」 제32조에 규정된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교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할 수 없으며 성적도 인정받지 못한다.

제13조(수강인원 제한) ①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대상 및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인원이 제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번별, 전공별, 성적순 등으로 구성한 수강확정 기준을 둘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수강신청교과목의 취소)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수강취소기간 내에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강교과목을 취소한 자는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없다.

제15조(교원-자녀 간 수강신청 제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자녀인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금지한다. 다만, 필수 이수교과목이 해당교원의 수업만으로 개설된 경우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해당교원은 개강 후 3주 이내에 교원-자녀 간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선·후수 교과목) 학부(과) 개설 교과목 중, 학과에서 지정한 경우 5개 조합 이내로 선·후수 교과목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지정된 교과목의 경우, 후수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선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3.9.1.)

제18조(외국인유학생 특별전형 입학자 예외 적용) 2023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 입학생부터 필수교양교과, 토대교양교과를 「외국인유학생 한국어 교과목 운영지침」에서 명시한 교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교과과정 개편 및 영역별 이수학점표 변경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종전규정 「학부운영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교과과정의 이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교과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에 관한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3학년도 이전 신입생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원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교과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에 관한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4학년도 이전 신입생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원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교과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에 관한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5학년도 이전 신입생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5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원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교과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에 관한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6학년도 이전 신입생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원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교과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에 관한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6학년도 이전 신입생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원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교과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에 관한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7학년도 이전 신입생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원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

구분 / 대학		교양교과					전공교과			자유선택	합계
		필수교양	중핵교양	토대교양	학과교양	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인문과학대학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역사문화학부 교육학과 아동학과	12	15	4	12	43	18	54	72	15	130
	한국어문학과	12	15	4	12	43	6	66	72	15	130
자연과학대학		12	12	4	15	43	18	54	72	15	130
사회과학대학	정치·사회학부 행정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제학과 경찰학과	12	15	4	12	43	18	54	72	15	130
	사회복지학과	12	15	4	12	43	12	60	72	15	130
경영대학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국제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금융학과	12	15	4	15	46	15	57	72	12	130
	융합경영학과	-	-	-	15	15	18	54	72	33	120
	지식서비스경영학과	9	-	-	27	36	18	48	66	18	120
생명자원과학대학	스마트그린자원학과	12	15	4	12	43	12	60	72	15	130
	바이오소재공학과 응용생물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12	15	4	12	43	18	54	72	15	130
공과대학		[별표1-1] 참조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별표1-2] 참조									
	산업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조경학과	12	12	4	15	43	18	54	72	15	130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12	15	4	12	43	18	54	72	15	130
	음악학과	12	15	4	12	43	16	56	72	15	130
건강과학대학		12	15	4	12	43	18	54	72	15	130
의과대학	의예과	12	18	-	-	30	16	29	45	1	76
	의학과	-	-	-	-	-	160	-	160	-	160
국제대학		12	15	4	12	43	18	54	72	15	130



구분 / 대학		교양교과					전공교과			자유선택	합계
		필수교양	중핵교양	토대교양	학과교양	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소프트웨어대학		[별표1-3] 참조									
간호대학		12	12	-	18	42	85	6	91	7	140
석당인재학부		12	15	4	12	43	18	54	72	15	130
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별표1-4] 참조									

※ 중핵교양교과는 1~4영역에서 반드시 각 3학점씩 이수하고, 학부(과)·전공별로 지정된 학점에서 12학점을 차감한 남은 잔여학점은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한다. 단,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는 지정된 이수학점만큼 이수하되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 3학점씩 이수한다.

※ 경영대학 융합경영학과, 의과대학 의학과는 필수교양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식서비스경영학과는 필수교양 중 '컴퓨팅사고와sw활용', '창의적대학설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1]

공과대학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

이수구분 / 학과	교양교과(기본소양)				학문기반교과		전공교과				자유선택	합계
	교양필수	공학교양	학과교양	계	기초과학 및 수학	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제외)	12	6	-	18	30	30	6	18	51	75	7	130
전자공학과	12	6	-	18	30	30	6	13	56	75	7	130
스마트제조공학과 (계약학과)	9	6	15	30	-	-	18	24	48	90	-	120

※ 환경안전전공, 전기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도시공학과, 신소재공학과는 위 이수학점을 따르나, 공학교육인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스마트제조공학과는 필수교양 중 '컴퓨팅사고와sw활용', '창의적대학설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2]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

이수구분 / 학과	교양교과				전공교과				자유선택	합계
	필수교양	중핵교양	학과교양	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건축학전공(5년제)	12	9	15	36	36	69	15	120	4	160
실내건축디자인전공(4년제)	12	9	12	33	21	18	54	93	4	130

※ 건축학과는 지정된 중핵교양 이수학점만큼 이수하되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 3학점씩 이수한다.

[별표 1-3]

소프트웨어대학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

이수구분 / 학과	교양교과(기본소양)			학문기반교과		전 공 교 과				자유선택	합계
	교양필수	공학교양	계	기초과학 및 수학	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컴퓨터 · AI공학부	12	6	18	24	24	6	18	57	81	7	130

※ AI학과는 위 이수학점을 따르나, 공학교육인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표 1-4]

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

이수구분 / 학과	교양교과				자유전공교과			전 공 교 과				자유선택	합계
	필수교양	중핵교양	토대교양	계	자유전공필수	자유전공선택	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컴퓨터 · AI공학부	12	12	2	26	9	9	18	선택전공에 따라 변동					130

※ 자유전공학부는 지정된 중핵교양 이수학점만큼 이수하되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 3학점씩 이수한다.
※ 자유전공학부는 토대교양 필수영역에서만 2학점을 이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원-자녀 간 수강신청서

1. 교원 소속

대학		학부·과	
성명			

2. 학생 소속

대학			학부·과		
학번		학년		성명	

3. 수강신청 교과목 및 사유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분반	
수강신청 사유					

「교과과정 운영규정」제15조에 의거 수강신청을 위해 교원-자녀 간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아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29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계획수립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3. 교과이수
4. 수업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5. 기타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계열별 전임교원, 전문위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조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제9조(연구비 등) 위원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세칙)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강의료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의에 대한 강의료 지급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의 구분 및 정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실험, 실습, 실기 등의 수업을 특수강의라 한다.
2. 특수강의 이외의 일반적인 이론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3.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한 강의 · 강연을 특별강의라 한다.

제3조(강의책임시간) ① 강의책임시간은 연간 교원이 담당해야 하는 최소 강의시간을 말한다.

②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은 연간 1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원의 소속, 직급, 직책, 트랙 등에 따라 강의책임시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비전임교원은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강의책임시간 세부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강의료의 구분 및 지급) ① 강의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를 초과강의료라 하며, 초과강의료는 강의책임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에 지급하는 강의료를 시간강의료라 하며, 시간강의료는 실제 강의한 시간에 따라 지급한다.

③ 특별강의를 강의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를 특별강의료라 하며, 특별강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강의료 계산) ① 강의료는 학사일정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학점 당 특수강의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임교원과 초빙교수의 특수강의 2시간은 보통강의 1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기타 특수한 경우 강의시간을 달리 계산 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강의료의 지급기준액) ① 강의료 지급기준액은 매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에 따른다.

② 각 대학원의 논문연구 교과목은 논문지도비를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강의료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학부 및 대학원 계약학과 개설 교과목
2. 지식서비스경영학과 개설 교과목
3.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
4. 그 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강의료 지급일) ① 강의료는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강의료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초과강의료는 연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퇴직예정자의 경우 학기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수전공이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8조의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복수전공의 이수 대상 학부(과)·전공은 편제된 모든 학부(과)·전공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칙」 2ㅐ57조의2에 따라 계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총장이 지정하는 학부(과)·전공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자격)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이하 "복수전공자"라 한다)는 「학칙」 제33조에 따른 제1학년 수료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해당 학기의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한다.

② 부전공으로 이수중인 학부(과)·전공으로는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연계전공 · 자기설계연계전공 · 융합전공Ⅱ · 교양학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④「학칙」 제57조의2에 따라 계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소속 학생은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조(선발기준 및 모집정원) ① 복수전공자의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순,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한다. 단,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연간 모집정원은 해당 학년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③ 2학기 모집정원은 연간 모집정원에서 1학기에 선발한 인원을 제외한 잔여석으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절차) ①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신청기간내 복수전공이수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복수전공자를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과대학(독립학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과의 이수) ① 복수전공자는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서 정한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에 의하여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 45학점,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교과 중 전공필수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전공교과에서 제외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모듈 교육과정으로 이수하는 경우, 소속 또는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를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인문학 계열 학과·전공(교육학과, 아동학과를 제외한 인문과학대학 소속 학과 및 중국·일본학부 소속 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중점교양교과 중 1영역 및 2영역의 이수학점을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전공을 복수전공 하고자 할 경우 교과이수는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의 전공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교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필수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그 학점만큼 복수전공 전공선택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⑦ 복수전공자는 「학칙」 제48조에 의한 복수전공의 졸업논문을 함께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제7조(학위수여) 복수전공자가 소속 학부(과)·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만 각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다만, 소속 학부(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8조에 의한 복수전공이수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전공 학위만 수여한다.

제8조(중도포기) ① 복수전공자가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복수전공이수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복수 전공하는 대학 또는 독립학부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은 복수전공이수포기서를 접수 받은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 졸업생은 이 개정규정 제3조를 제외하고는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이 개정 규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2000학년 이전 입학자가 복학으로 인해 2001학년도 입학생과 학년, 학기를 같이 하거나 이하로 복학할 시에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복수전공자에 관한 경과조치)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이 개정 규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2000학년도 입학자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복수전공이수 규정」을 적용하되, 2006학년도 입학생과 학년, 학기를 같이하는 복학생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복수전공자의 교과 이수에 관한 제6조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복수전공자의 교과 이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2015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부(과)·전공을 복수전공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전공은 본인이 따르는 교과과정 학년도의 이수체계에 따라 이수하되, 복수전공 학부(과)·전공은 신설된 학년도의 이수체계를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복수전공 이수 자격에 관한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집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의 2학기 모집정원 기준은 2018학년도 2학기 모집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복수전공이수지원신청서

1. 소속대학

대 학		학부 · 과		전공	
성 명		학년		학번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2. 복수전공대학 학부(과) · 전공

제1지망	대학		학부 · 과		전공	
제2지망	대학		학부 · 과		전공	

3. 학업성적

년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평균	비고

학칙 제38조에 의거 복수전공이수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복수전공이수포기서

1. 소속대학

대학		학부 · 과		전공	
성명		학년		학번	
생년월일			휴대전화		

2. 복수전공대학

대학		학부 · 과		전공		학년	

상기 본인은 학년도 제 학년 학부(과)·전공의 복수전공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포기사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연계전공이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아대학교 학칙」제38조의 연계전공 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계전공"은 두 개 이상의 학부(과)·전공(이하 "참여학과"라 한다)이 연계하여 개설한 전공을 말한다.

제3조(연계전공의 신설 및 폐지) ① 연계전공의 신설은 희망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신설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신설한다.

② 연계전공 신청자가 제5조제2항의 최소 선발인원에 2년 연속 미달될 경우 해당 연계전공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전공의 필요성, 산업체 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제4조(자격) ①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계전공자"라 한다)는「동아대학교 학칙」제33조에 따른 제1학년 수료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전공을 신청하는 해당 학기의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한다.

② 복수전공 또는 자기설계연계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은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산업공학과(계약학과),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소속 학생은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선발기준 및 모집정원) ① 연계전공자는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순,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의 운영특성에 따라 선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연간모집정원은 20명 이상으로 하되, 교육여건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정원을 설정해야 한다.

③ 연간모집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2학기 모집정원은 연간모집정원에서 1학기에 선발한 인원을 제외한 잔여석으로 한다.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연계전공자는 신청기간 내 연계전공이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연계전공자를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계전공의 운영) ① 연계전공을 주관·운영하기 위하여 주관교수, 주관학과(전공), 주관대학(독립학부)을 지정한다.

② 연계전공의 주관교수는 참여학과에서 협의하여 지정하며, 주관교수 소속에 따라 주관학과(전공), 주관대학(독립학부)이 결정된다.

③ 연계전공은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으며, 교무처 학사관리과에서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8조(교과편성 및 이수) ① 연계전공의 교과과정 편성은 69학점 이내로 하며 참여학과 전공 교과목 중 54학점 이상을, 연계전공만을 위한 신설 교과목은 15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② 연계전공자는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서 정한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이수학점 전체를 포함하여 전공교과 45학점, 제8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연계전공 교과과정 중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전공교과에서 제외된다.

③ 인문학 계열 학과·전공(교육학과, 아동학과를 제외한 인문과학대학 소속 학과 및 중국·일본학부 소속 전공)이 주관학과인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중점교양교과 중 1영역 및 2영역의 이수학점을 6학점까지 연계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중복되는 학점만큼 연계전공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⑤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연계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연계전공자는 「동아대학교 학칙」 제48조에 의한 연계전공의 졸업논문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9조(학위수여) 연계전공자가 소속 학부(과)·전공 및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만 각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다만, 제10조에 의거 연계전공이수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학위만 수여한다.

제10조(중도포기) ① 연계전공자가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연계전공이수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관대학(독립학부)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대학장(독립학부장)은 연계전공이수포기서를 접수 받은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삭제 2017.9.1.)

제12조(연계전공 교직과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과정으로 운영하는 연계전공의 설치, 선발기준, 교과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직과정 운영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년 27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연계전공자의 교과 이수에 관한 제7조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개정된 제7조에 따라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연계전공자의 교과이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연계전공 이수 자격에 관한 제4조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집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의 연간모집정원 조정과 제4항의 2학기 모집정원 기준은 2018학년도 2학기 모집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계전공이수지원신청서

1. 소속대학

대 학		학부 · 과		전공	
성 명		학년		학번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2. 연계전공명

연계전공	

3. 학업성적

년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평균	비고

학칙 제38조에 의거 연계전공이수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계전공이수포기서

1. 소속대학

대학		학부 · 과		전공	
성명		학년		학번	
생년월일			휴대전화		

2. 연계전공명

연계전공	

상기 본인은 _____학년도 제 ___학년 _____의 연계전공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연계전공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포기사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자기설계연계전공 이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38조의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자기설계 연계전공”이라 함은 학생이 두 개 이상의 타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 자기설계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기설계 연계전공자” 라 한다)는 「동아대학교 학칙」 제33조에 따른 제1학년 수료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설계 연계전공을 신청하는 해당 학기의 계절학기 학점은 수료 학점에서 제외한다.

② 복수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Ⅱ·교양 학사학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자기설계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계약학과(산업공학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소속 학생은 자기설계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조(신청 절차 및 선발기준) ① 자기설계 연계전공자는 평생지도교수와 면담 후 신청기간 내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평생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생지도교수는 학생이 신청한 전공의 각 학부(과)·전공별 해당 분야 교수 1인으로 자기설계연계전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의 타당성, 학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완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③ 교무처장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기설계 연계전공자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과편성 및 이수) ① 자기설계 연계전공의 교과과정 편성은 두 개 이상의 타 학부(과)·전공 전공교과 69학점 이내로 하며,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과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②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자는 교육과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이수학점 전체를 포함하여 전공교과 45학점을 이수하고, 제5조제1항에서 편성한 연계전공 교과과정 중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자기설계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연계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승인된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과정을 변경할 경우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과정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생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학위수여) ①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자가 소속 학부(과)·전공 및 자기설계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만 각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다만, 제7조에 의거 자기설계 연계전공이수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전공)·학과의 학위만 수여한다.

② 자기설계 연계전공의 학위는 연계한 학부(과)·전공의 학위명칭 중 전공 적합성, 교과과정 편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선택하고 자기설계연계전공위원회 심사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인증제 참여학과(공과대학의 경우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의 학위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중도포기) ① 자기설계 연계전공자가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속 대학 또는 독립학부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은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포기서를 접수 받은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기설계연계전공 이수 신청서

단과대학			학부(과)	
학번			성명	
연락처	H.P		총 취득 학점	
	e-mail			
연계전공명	국문: 영문:			
학위명칭	국문: 영문:			
연계 학과명				
전공소개 및 신청사유				
학업목표				
신청 및 승인 절차	평생지도교수 면담 → 이수 신청서 제출(평생지도교수) → 자기설계연계전공위원회 심사 →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승인 통보			

위와 같이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 자기설계연계전공 이수 계획서 1부.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 계획서

1. 교과과정표

OOO연계전공 교과과정표

연번	개설학부(과)·전공	교과목번호	교 과 목	개설과목 이수구분	학년	학기	학점	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학점 계								

※ 연계전공 교과과정의 편성은 두 개 이상의 학과 교과과정에서 69학점 이내로 지정한다.
(본인이 따르는 학년도의 학과별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작성바람)

2. 학년별 학기별 개설 교과목

구분	1학기			2학기			학점 계
	개설학과	교과목명	학점	개설학과	교과목명	학점	
2학년							
3학년							
4학년							
학점 계							

[별지 제2호 서식]

자기설계연계전공 이수포기서

1. 소속대학

대학		학부 · 과		전공	
성명		학년		학번	
생년월일			휴대전화		

2. 자기설계연계전공명

자기설계연계전공	

상기 본인은 ____학년도 제 __학년 _____의 자기설계 연계전공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포기사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자기설계연계전공 교과과정 변경 신청서

단과대학				학부(과)	
학번				성명	
연락처	H.P			총 취득 학점	
	e-mail				
연계전공명	국문: 영문:				
연계 학과명					
변경사유					

변경내용	개설학과	교과목 번호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고 (추가/삭제)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신청서 제출(평생지도교수) →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 승인 통보**

위와 같이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생지도교수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자기설계연계전공 위원회 심의결과서

1. 자기설계연계전공 위원회 인적구성

소속대학	소속학과	직번	직위	성명	비고
					평생지도교수 (당연직)
					참여학과1
					참여학과2
					참여학과3
					참여학과4

2. 심의대상 학생 인적사항

단과대학		학과	
학번		성명	
연계전공명		희망학위명	

3. 회의관련 내용

차수	일자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 안건
1차				
2차				
3차				

4. 교과과정 편성의 적합성 및 학습계획에 대한 의견

5. 종합결론(승인여부 등)

6. 참여교수 확인 서명

구 분	참여학과1	참여학과2	참여학과3	참여학과4
성명				
서명				

작 성 일 자 : . . . 작성자: 평생지도교수 (서명)

융합전공 이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38조의 융합전공 이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융합전공”은 두 개 이상의 학부(과)·전공(이하 “참여학과”라 한다)이 연계·융합하여 개설된 전공을 말한다.

② 융합전공은 교과편성 및 이수, 학위수여 요건 등에 따라 융합전공Ⅰ과 융합전공Ⅱ로 구분한다.

1. 융합전공Ⅰ: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 교과과정을 따르지 않고 융합전공의 전공 교과과정을 이수
2. 융합전공Ⅱ: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 교과과정과 함께 융합전공의 전공 교과과정을 동시에 이수

③ 이 규정에서 “융합전공”이라 함은 융합전공Ⅰ, 융합전공Ⅱ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융합전공의 신설 및 폐지) ① 융합전공의 신설은 희망 학부(과)·전공과 융합대학에서 협의된 안을 융합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 검토 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융합전공 신청자가 제5조제2항의 최소 선발인원에 2년 연속 미달될 경우 해당 융합전공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전공의 필요성, 산업체 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제4조(자격) ①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이하 “융합전공자” 라 한다)는 「동아대학교 학칙」 제33조에 따른 제1학년 수료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융합전공을 신청하는 해당 학기의 계절학기 학점은 수료 학점에서 제외한다.

② 「동아대학교 학칙」제57조의2에 따라 계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소속 학생은 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복수전공·연계전공·자기설계연계전공·교양 학사학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융합전공Ⅱ를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선발기준 및 모집정원) ① 융합전공자는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순,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의 운영특성에 따라 선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연간모집정원은 20명 이상으로 하되, 교육여건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정원을 설정해야 한다.

③ 본조 제1항에 의한 최종 선발인원 중 해당 융합전공 참여학과 소속이 아닌 학생의 선발 비중은 연간모집정원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④ 연간모집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2학기 모집정원은 연간모집정원에서 1학기에 선발한 인원을 제외한 잔여석으로 한다.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융합전공자는 신청기간 내 융합전공이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융합전공자를 즉시 해당 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과편성 및 이수) ① 융합전공의 교과과정 편성은 참여학과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융합전공만을 위한 신설 교과목 30학점 이내로 편성할 수 있으며 융합전공의 편성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합전공Ⅰ: 융합전공필수 18학점을 포함하여 90학점 이내
2. 융합전공Ⅱ: 융합전공필수 18학점을 포함하여 75학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교과목 담당교수·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참여학과가 아닌 학부(과)·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융합전공의 교과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

③ 융합전공의 졸업이수학점은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서 정한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융합전공Ⅰ의 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으로 정한다.

④ 융합전공Ⅰ의 전공교과 이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편성된 융합전공 교과과정 중 전공필수 18학점을 포함하여 7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연계·자기설계연계전공·교양 학사학위과정·융합전공Ⅱ와 동시 이수하는 경우에는 전공필수 18학점을 포함하여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융합전공Ⅱ의 전공교과 이수는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서 정한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이수학점 전체를 포함하여 전공교과 45학점, 본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편성된 교과과정 중 융합전공필수 전체를 포함하여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기초 교과목은 전공교과에서 제외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마이크로모듈을 이수하는 경우, 소속 학부(과)·전공 및 융합전공Ⅱ의 전공교과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기초 교과목이 융합전공Ⅱ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그 학점만큼 융합전공 전공선택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⑧ 교양교과 이수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기준을 따르며, 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소속인 경우 교양교과와 학문기반교과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소속 학부(과)·전공의 졸업이수학점에서 교양학점, 학문기반교과학점, 융합전공학점, 융합전공Ⅱ의 경우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학점을 제외한 부족 학점은 자유선택 영역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⑨ 융합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융합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소속 학과의 전공 교과목은 해당 이수구분으로 인정하며, 소속 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⑩ 융합전공자는 「동아대학교 학칙」 제48조에 의한 융합전공의 졸업논문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8조(학위수여) 융합전공자가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동아대학교 학칙」 제50조에 의한 학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여한다.

1. 융합전공Ⅰ: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융합전공 학위를 수여
2. 융합전공Ⅱ: 소속 학부(과)·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만 각 학위를 동시에 수여. 다만, 제9조에 의거 융합전공이수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전공의 학위만 수여

제9조(중도포기) ① 융합전공자가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융합전공이수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관대학(독립학부)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대학장(독립학부장)은 융합전공이수포기서를 접수 받은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의 연간모집정원 조정과 제4항의 2학기 모집정원 기준은 2018학년도 2학기 모집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융합전공이수지원신청서

1. 소속대학

대 학		학부 · 과		전공	
성 명		학년		학번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2. 융합전공명

융합전공	

3. 학업성적

년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평균	비고

학칙 제38조에 의거 융합전공이수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융합전공이수포기서

1. 소속대학

대학		학부 · 과		전공	
성명		학년		학번	
생년월일			휴대전화		

2. 융합전공명

융합전공	

상기 본인은 ____학년도 제 __학년 _____의 융합전공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포기사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부전공이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38조에 의하여 부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부전공의 이수 대상 학부(과)·전공은 편제된 모든 학부(과)·전공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학과,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계약학과(산업공학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의과대학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총장이 지정하는 학부(과)·전공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자격)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이하 "부전공자"라 한다)는 「동아대학교 학칙」 제33조에 따른 제1학년 수료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을 신청하는 해당 학기의 계절학기 학점은 수료 학점에서 제외한다.

②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부(과)·전공으로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계약학과(산업공학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융합경영학과,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소속 학생은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조(신청 및 절차) ① 부전공자는 부전공 신청기간 내 부전공이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부전공자를 선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과의 이수) ① 부전공자는 「동아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에 따라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 66학점, 부전공 학부(과)·전공의 전공교과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교과중 전공필수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공기초 교과목은 전공교과에서 제외된다.

②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전공을 부전공 하고자 할 경우 교과이수는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교과목이 부전공의 전공필수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그 학점만큼 부전공 전공선택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부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부전공의 전공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자격 취득)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증서와 학적부에 표기한다.

제7조(중도포기) ① 부전공자가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부전공이수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부전공하는 대학 또는 독립학부의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은 부전공이수포기서를 접수 받은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6학년도이전 부전공이수 신청자는 종전 부전공 이수원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부전공이수 규정」을 적용하되, 2006학년도 입학생과 학년, 학기를 같이하는 복학생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부전공자의 교과 이수에 관한 제5조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부전공자의 교과 이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전공이수지원신청서

1. 소속대학

대 학		학부·과		전공	
성 명		학년		학번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2. 부전공대학 학부(과)·전공

대학		학부·과		전공	

3. 학업성적

년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평균	비고

「동아대학교 학칙」 제38조에 의거 부전공이수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전공이수포기서

1. 소속대학

대 학		학부·과		전공	
성 명		학년		학번	
생년월일			휴대전화		

2. 부전공대학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상기 본인은 _____학년도 제 ____학년 _____학부(과)·전공의 부전공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포기사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전부(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19조의 전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전부(과)라 함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안에서 학생의 학부(과) 또는 전공을 변경함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 전부(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학년: 2개 학기를 이수한 자로 「동아대학교 학칙」 제33조에 규정된 1학년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2. 3학년: 4개 학기를 이수한 자로 「동아대학교 학칙」 제33조에 규정된 2학년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3. 4학년: 6개 학기를 이수한 자로 「동아대학교 학칙」 제33조에 규정된 3학년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과)할 수 없다.

1. 야간 학부(과)로 입학한 자가 주간의 학부(과)로 전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전공 이수자가 해당 복수전공의 학부(과)로 전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시기) 전부(과)는 매 학년도 2월 중에 실시한다.

제5조(공고) 전부(과)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실시일 10일 전까지 학부(과) 또는 전공별 전입허용인원, 선발방법, 선발시험일자, 기타 전부(과)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절차) 전부(과)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범위) ① 2학년 전부(과)의 허가범위는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과) 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의과대학 각 학과 및 간호학부 간호학과는 전부(과)를 불허하며, 교육학과는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전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3학년 전부(과) 여석은 직전 학년도 2학년 잔여 여석으로 한다.

④ 4학년 전부(과) 여석은 직전 학년도 3학년 잔여 여석으로 한다.

제8조 (삭제 '92. 3. 1)

제9조(선발) ① 전부(과) 신청자가 전입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영어성적(토익, 토플, 텝스) 순으로, 전출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업성적의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및 예술체육대학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동일 학부(과) 안에서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전부(과) 신청자에 우선한다.

제10조 (삭제 '92. 3. 1)

제11조(교과 이수) ① 전부(과)한 자는 「동아대학교 학칙」 제28조에 규정된 해당 학부(과)의 교과를 이수해야 하며, 기 이수한 교과목은 모두 자유선택교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부(과) 이전 이수한 교과목이 전부(과) 이후 학부(과)의 교과과정에 있는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 및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에는 전부(과) 이후의 학과 기준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 수여제한) 전부(과)가 허가된 학기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17. 7. 26.)

제14조(전형료) 실기고사를 병행하는 학과에 지원한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석당인재학부의 전부(과)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석당인재학부 전부(과) 제한 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까지 적용하며,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석당인재학부의 전부(과)를 허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 또는 전공의 학생들로 하여금 중등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교직과정 운영의 필요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및 「학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라 함은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과) 학생으로서 소속 학부(과) 또는 전공의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2.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라 함은 복수전공이수규정에 의한 복수전공을 신청한 자로서 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 전공교직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하 "표시과목"이라 한다) 외의 표시과목을 취득하고자 복수의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3. 삭제(2008. 3. 1.)
4. "보건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라 함은 간호학과의 재학생으로서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5. "영양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라 함은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6. 삭제(2015. 3. 27.)
7. "유치원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라 함은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제4조(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직과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1. 교직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및 합격 기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양성에 필요한 사항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육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외부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조(이수정원,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교직과목 등) ① 교직과정이 개설된 각 학부(과) 또는 전공별 이수정원 및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교직과목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② 삭제(2006. 3. 1.)

제6조(교직과정 이수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제2학기중 소정의 기간내에 교직과정별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대상은 「동아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교직 적성·인성검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및 학과 면저을 통해 이수정원 범위내에서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선발한다(교육학과 제외). 교직 적성·인성 검사 및 면접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관리과에서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②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전공교직 이수정원 200% 범위에서 제1항에 준하여 교무처 학사관리과에서 선발한다.

③ 삭제(2006. 3. 1.)

④ 삭제(2015. 3. 27.)

⑤ 동점자 발생시 취득학점이 많은 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 전공 취득학점이 많은 자를 선발한다.

⑥ 당해 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자 중, 제적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2학년 말까지 추가 선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하여야 한다. 단, 휴학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할 수 없으며, 지원자 미달로 인하여 승인인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 3학년 1학기가 개시된 후에 신청을 받아 추가선발을 할 수 없다.

⑦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부(과) 또는 전공에 신(편)입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수정원에 관계없이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1. 실기교사(전체), 유치원 준교사 이상,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2.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 상담교사(2급) 이상

⑧ 타 대학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일 전까지 선발할 수 있다.

⑨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한 경우, 교직과정이 계속 설치되어 있으며, 제적에 따른 추가 선발자가 없고, 해당 학과의 교직과정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제8조(교직과정 이수학점) ① 전공·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에서 24학점 이상을, 전공교과에서 50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하며, 이수 전공교과에는 학부(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기본이수과목(7과목·21학점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3과목·8학점 이상)이 포함된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부(과) 또는 전공별 이수 정원,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삭제 2010. 12. 23.)

③ (삭제 2010. 12. 23.)
④ (삭제 2018. 9. 11.)
⑤ 제7조제7항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에 신(편)입학 했을 경우에는 교직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준교사의 경우 교직소양영역 및 교육봉사활동은 면제할 수 없다.
⑥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봉사활동 2학점(6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⑦ 교직 적성·인성검사와 관련하여 2015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이수예정자(편입 및 재입학생 포함)로 선발된 자는 재학 중 2회 이상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그 이전 선발자는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⑧ (삭제 2015. 3. 27.)
⑨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9조(학교현장실습) ① 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4학년 재학중에 4주 이상의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② (삭제 2010. 12. 23.)
③ 보건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유치원에서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④ 교육학과 교수를 학교현장실습 전담지도교수로 임명하여 학교현장실습 장소배정, 현장방문지도 및 학교현장실습 성적을 관장하게 한다.
⑤ 학교현장실습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교현장실습 학교장이 평가한 성적과 교과목 수업 점수를 합산하여 부여한다.
⑥ 학교현장실습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학생 부담으로 한다.
⑦ 복수교직에 의하여 두 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종별에 관계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한다.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교직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체 현장실습) ① 공업계 표시과목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졸업학년도 내에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② (삭제 2003. 3. 1)
③ 산업체현장실습은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주관하여 시행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부(과) 또는 전공별 이수 정원,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조(교원자격증 교부 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예정 학기말에 교직과정별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무처 학사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 ① (삭제 2010. 12.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1. 교직과목 평균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미만 및 전공과목 평균 백분위 환산점수 75점 미만인 자
2.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전공 교직과정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불합격한 자
3.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복수전공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4. 간호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자(보건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함)
5. 영양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한 자(영양교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함)
6. 교직 적성·인성 검사 미 통과자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 이수자
8. 성인지 교육 미 이수자
9.「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성범죄 경력,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에 해당하는 자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198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선발비율에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으며,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해당 재학학년에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조 제5항을 1993학년도 졸업생부터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4조는 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어중문학전공에 개설된 교직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중어중문학전공에 개설된 교직과정은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 (2000학년도 이전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1.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정원은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검정령(부칙②, '98. 8. 11)에 의거 이 영 시행당시 재학중인 자로서 복수전공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이수정원으로 한다.(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6호)
2. 교원자격증 교부는 2001학년도 졸업자부터 교부하되, 종전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한 해당 교직과정 과목과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개정 규정 제12조에 의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해당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교부한다.
④ (부전공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전공 교직과정의 이수는 종전 규정 제10조 [별표3]에도 불구하고 1999학년도부터 부전공 이수 학부(과) 또는 전공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 제1항,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 2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지정 교과목은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간호학과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당시 부전공 교직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의 부전공 교직과정자의 선발은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전공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전공 교직과정의 이수는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교직과정 이수학점) 및 제12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재)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계전공 교직과정자의 졸업논문면제는 2010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교직과정 이수학점) 및 제12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의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이후 교직과정자(편입 및 재입학생 포함)로 선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교직과정자 선발) 제1항은 2017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제1항은 2020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하며, 제8조제1항의 재료, 정보·컴퓨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한 내용은 2018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8조의 성인지 교육은 2021.2.9.기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20학번 이전(20학번 포함) 교육학과 학생은 본문 중 “4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본다.



계절학기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계절학기라 함은 학칙 상의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학칙에 규정된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수강대상) ① 본 대학교 재적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이수자
2. 조기졸업대상자로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자
3. 재수강자
4.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휴학생
5. 기타 사유로 학점 취득이 필요한 자

② 학술교류협정체결대학 학생으로서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조(개설교과목) 계절학기 개설교과목은 교과과정에 의한 교과목으로 하며, 15명 이상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개설한다.

제5조(학점취득)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 시까지 24학점 이내로 한다.

제6조(수강신청 및 취소) ①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수업일수가 2분의 1이 경과한 계절학기 교과목은 수강 취소할 수 없다.

제7조(수업료) ① 계절학기 수업의 수업료는 개설학점 단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정규학기에 개설이 불가능하여 계절학기로 개설한 교과목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

1. 수업개시 3일 이전 : 수업료 전액
2. 수업개시 2일 이전 ~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이전: 수업료의 3분의 2
3.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경과 후 ~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이전 : 수업료의 2분의 1

③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수업) ① 1학점 당 수업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 수업은 승학캠퍼스, 구덕캠퍼스, 부민캠퍼스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9조(시험) ① 계절학기 수업의 성적평가는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성적) ① 계절학기 수업 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정규학기의 평가방법과 같으며 이수한 성적은 계절학기 성적으로 별도 처리한다.

②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졸업학점과 전 학년 평점평균 산정에만 인정하고, 학사경고·유급과 장학생 선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대학교에서 취득한 계절학기 과목의 성적은 인정 시 P(Pass), 불

인정시 NP(Non-pass)로 구분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 산정에는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제 규정류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재수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4조의 재수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절차) 재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수강신청 또는 수강 정정시에 재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교과목) 재수강의 신청 교과목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등급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며, 동일 교과목(유사및대체교과목 포함)의 재수강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다만, 학업성적 등급이 F등급인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제3조의2(취득성적제한)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A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신청학점) 재수강 교과목의 신청학점은 학칙 제32조에 따라 최대취득학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각각 6학점으로 제한)

제5조(성적처리) ① 재수강 신청이 확정되면 재수강 이전의 성적은 취소한다.

② 재수강 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하여도 이미 받은 학사경고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③ 재수강으로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R'(Retake)을 표기한다.

부 칙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1985학년도 재학생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된 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된 규정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된 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재학생 수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9조에 의거하여 재학생의 수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험생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험생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소란행위를 하는 자
2.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
3. 지정시간에 지각한 자
4.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한 자
5.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 응시하는 자

제3조(수험부정자 처벌) 수험부정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대리수험, 피대리수험 또는 지정 시험장 이외에서 작성한 답안을 제출한 자 : 1개월 이상 정학과 당해학기 시험전과목 성적 무효
2.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종이 및 기타 개인 소지품에 준하는 곳에 사전 기록해 오는 행위를 한 자 : 근신과 당해과목 성적 무효
3. 벽면, 책상위에 기록한 것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당해과목 성적 무효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험한 자 : 당해과목 성적 무효
5. 시험감독원의 지시에 반항한 자 : 당해과목 성적 무효

제4조(장학금 지급 제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학기간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6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7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7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의 학업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의 분류) 학업성적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등급 및 평점으로 표시한다.

등급	A+	A	B+	B	C+	C	D+	D	F	P(Pass)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0	산입하지 않음

※ NP(Non-Pass)는 성적표에 표기하지 않고, 평점평균 및 학점(신청 및 취득)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성적의 평점평균 및 백분율 산출) ① 성적의 평점평균(학기 및 누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고 셋째 자리부터 반올림한다.

$$\frac{\text{(교과목별 평점 × 학점수)의 합계}}{\text{수강신청 총 학점수}}$$

※ F등급은 포함하고 P등급 및 NP등급은 제외한다.

② 성적의 백분율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평점평균은 소수점 다섯 자리까지 인정하여 계산하며, 이에 따라 산출된 백분율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고 셋째 자리부터 반올림한다. 백분율점수 = {(평점평균 × 100) - 100 } × 0.114286 + 60

제4조(성적의 평가) ① 교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등 급	분 포 비 율		
	전공	교양	교직
A+ ~ A	30% 이하	30% 이하	50% 이하
A+ ~ B	70% 이하	60% 이하	90% 이하
C+ ~ F	30% 이상	40% 이상	10%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제한된 절대평가”한다. 다만,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등급의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영어강의 교과목 : 강의 시간표에 영어수업이라고 표기된 교과목
2. 실습교과목 : 이론 강의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 실험, 실습, 설계 및 실기교과목
3. 절대평가 대상을 제외한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교과목

등급	분포비율		
	전공	교양	교직
A+ ~ A	50% 이하		
B+ ~ F	50%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의학과 학생, 외국인 학생은 절대평가를 하고, 장기 현장실습 대체교과목 인원은 상대평가 대상 인원수에서 제외한다.

④ 등급별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예습, 중간시험, 기말시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 및 운영 방법에 따라 시험을 과제물 및 교원이 정한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수업실시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체육특기자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동아대학교 학칙」제40조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등급 또는 NP (Non-Pass)로 처리한다.

⑦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교과목 담당 교원의 자녀인 경우, 교과목 개설 단위부서[학부(과) 또는 기초교양대학]의 장은 교과목 담당 교원으로부터 성적관리 기록물을 이관 받아 성적평가의 공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 2(추가시험) ① 시험기간에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시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성적입력은 성적 정정기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의예과 및 의학과는 「의과대학 학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성적 입력 및 공시) ① 교과목 담당 교수는 성적등급 입력 전까지 성적 세부점수 입력을 완료해야 하고, 성적등급은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기말 시험기간 종료 7일 후 학생의 성적을 홈페이지에 7일 동안(이하 “성적공시기간”이라 한다)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적입력 및 공시기간에 주말을 제외한 법정, 대체 및 임시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성적등급 입력기간 동안 상대평가 비율의 최대 인원을 입력한 후, 성적 공시기간 내에 성적을 추가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대평가 비율의 적용을 받는다.

⑤ 학생은 제2항의 성적 공시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성적을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⑥ 이의 신청을 받은 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성적 공시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⑦ 성적은 성적 공시기간 종료 후 확정되며 성적 입력 및 정정 내역을 전산으로 기록 ·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과목 담당 교원 변경에 따른 성적평가) ① 교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수업이행 및 성적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교과목 개설 단위부서[학부(과) 또는 기초교양대학]의 장은 사유발생 즉시 대체 교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대체교원은 이관 받은 성적관리 기록물을 반영하여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③ 이관 받은 성적관리 기록물이 없을 경우, 단위부서[학부(과) 또는 기초교양대학]의 장과 관련분야 교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④ 교과목 담당 교원이 성적입력 기간 내에 성적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단위부서[학부(과) 또는 교

양대학]의 장과 관련분야 교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성적확정 후 성적정정) ① 확정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착오(입력착오, 오기 또는 누락) 및 추가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성적확정 후 7일 이내(단, 제5조제3항 적용)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성적정정원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성적정정원 제출에 의한 성적정정의 경우에는 상대평가 비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의2(성적관리 기록물의 관리) 성적관리 기록물은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학점 및 성적관리 기록물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 석당인재학부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성적관리 기록물 관리 적용례) 제6조의2 성적관리 기록물 관리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기록물부터 적용한다.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제3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규정된 졸업학점, 학사경고, 유급, 졸업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조(졸업사정 기준)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과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동아대학교 학칙」제5조에 따른 수업연한 충족
2. 「동아대학교 학칙」제34조에 따른 졸업학점 충족
3.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 2.0이상
4.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2조에 규정된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의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표 상에 명시된 교과의 이수

제3조(학사경고 기준)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 또는 9학점 이상을 F등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제4조(학사경고 통지) 학사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신청 학점 제한) 학사경고를 통산 2회째 받은 학생에게는 그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3학점을 제한한다.

제5조의2(상담 및 프로그램 이수) ① 학사경고 및 유급을 받은 자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평생지도교수의 별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습 및 심리상담을 받아야 한다.

② 학사경고를 통산 2회째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습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DAU 자기관리학습법」교과목)을 의무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학사경고 제적) 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 한다.

제6조의2(학사경고 횟수)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 재입학 전의 학사경고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졸업예정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유급기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

1. 해당 학년(1, 2학기) 평점평균이 1.2미만인 자
2. 해당 학년(1, 2학기) 평점평균이 2.7 미만(간호학과는 2.3미만)인 자로서 희망하는 자

제8조(유급 횟수 및 시기) ① 유급은 학년 단위로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통산 2회째 유급되면 제적한다. 단, 재입학 전의 유급 횟수와 신청유급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졸업예정자(4학년 포함)는 유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유급의 시기는 학년말에 한다.

제9조(유급자의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① 유급자의 수강신청은 반드시 유급된 학년으로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 학점은 제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유급자가 유급된 학년에 이미 취득한 모든 교과목의 학점은 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평점이 3.0이상인 교과목과 성적이 P등급인 교과목은 유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유급자의 매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제2항의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동아대학교 학칙」제32조에 따른 최대취득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학점은 제외한다.
1. 특별학점
2. 사회봉사학점
3. 고교-대학 연계학점
4. 대학과목선이수제 학점
5. 군 복무 중 취득학점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까지 종전의 졸업정원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적용을 받은 학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6조는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및 제9조는 1996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제6조는 199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사정 성적기준의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졸업논문시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48조의 졸업논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의 제출자격)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4학년 1학기 수료자로서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조기졸업에 해당하는 자
3.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
4.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
5. 자기설계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
6. 융합전공 Ⅰ·Ⅱ를 이수하는 자
7. 교양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

제3조(삭제 1997. 3. 1)

제4조(졸업논문계획서의 제출)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년도 3월 31일(전기졸업자) 및 9월 30일(후기졸업자) 이전에 졸업논문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팀프로젝트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졸업논문의 지도교수) ① 각 학부(과)장은 졸업논문계획서에 의하여 졸업논문 지도교수를 추천하고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이 위촉한다.

② 졸업논문 지도교수는 졸업논문의 자료준비, 작성, 제출 및 발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제6조(졸업논문의 형태) 졸업논문은 개별논문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나,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집단논문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졸업논문의 제출) 완성된 논문은 최종 졸업학기 소속 학부(과)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2(졸업논문의 공지) 소속 학부(과)에서는 최종 졸업학기 개강 후 한달 이내에 졸업논문에 대한 세부사항(제출기한 포함)을 학생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8조(졸업논문 심사위원) 졸업논문 심사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이 위촉한다.

제9조(졸업논문의 발표일시 및 장소) 각 학부(과)장은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1주일 전에 졸업논문발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고, 졸업논문 심사위원에게 졸업논문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졸업논문의 심사) 졸업논문 심사위원은 발표 논문의 내용, 체계 및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졸업논문의 판정) 졸업논문은 졸업논문 심사위원 과반수의 합격판정을 받아 인정된다.

제12조(졸업논문의 재제출)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재학 중 2회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졸업논문의 대체 및 면제) ① 교과과정의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공인된 기관의 어학시험 및 자격증, 응용설계 최종보고서, 팀프로젝트 결과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Ⅲ을 졸업예정학기에 이수하는 자에게는 소속 학부(과) · 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졸업논문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자가 해당 대학원에 등록한 경우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 등을 면제한다.

제14조(실험·실습보고, 심사 및 성적평가) ① 실험·실습보고에 관한 사항은 소속 학부(과)장이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보고는 실험실이나 실습장에서의 연구결과 또는 현지나 사회조사연구의 결과를 말한다.

③ 실험·실습보고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소속 학부(과)장이 2명 이상의 교원을 추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이 위촉한다.

④ 실험·실습보고의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5조(실기발표의 지도, 심사 및 성적평가) ① 졸업예정자는 실기발표에 앞서 졸업 2개 학기 전까지 주제선정 및 작품 구성계획서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소속 대학장은 상기 계획서 제출기간 1개월 전에 주제와 그 제출기간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 대학장은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사 및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졸업종합시험, 성적평가) ①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소속 학부(과)장이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졸업종합시험은 매 학년도 5월 및 11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험과목은 각 학부(과)의 전공과목중 4-5개 교과목에서 출제한다.

④ 졸업종합시험은 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7조(결과보고) 결과보고는 소속 학부(과)에서 전산시스템에 졸업논문 심사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입력기한은 졸업예정학기 수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8조(기록물 보존) 졸업예정자가 제출하여 심사가 종료된 졸업논문 및 제13조에 따라 졸업논문을 대체하여 평가된 관련 기록물 등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하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졸업논문 및 관련 기록물은 원본을 대체하여 전자매체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

제19조(시행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논문서식) 졸업논문의 서식은 별첨 서식 제1호와 같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7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87학년도 건축공학과 미졸업자의 졸업논문 시행규정은 제13조 제2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90학년도 의류학과 미졸업자의 졸업논문 시행규정은 제13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90학년도 해양공학과 졸업자는 이 개정 규정 제13조 제2호에 의거 졸업논문에서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치하여 졸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94학년도 화학공학과 졸업생은 이 개정 규정 제13조 제4호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9학년도까지 학과로 졸업하는 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의 사정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학년도 졸업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 제13조 제5호(경영대학 국제관광통상학부 국제관광학전공)의 졸업논문 대체는 2002

학년도 이전 국제관광전공을 배정받은 자(복수전공신청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2. 이 개정 규정 제13조 제6호(공과대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및 종전의 규정 제13조 제4호(공과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의 졸업논문 대체는 2000학년도 입학자 및 2000학년도 입학자와 학년을 같이 하거나 학년 이하로 복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하되, 복학생이 2000학년도 입학자와 학년이 다를(상위학년)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 제13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하고 입학 당시의 제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학년도 졸업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학부(과)·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제개편으로인한 종전의 대학·학부(과)·전공의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대학·학부(과)·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학부(과)·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제개편으로 인한 종전의 대학·학부(과)·전공의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대학·학부(과)·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학부(과)·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제개편으로 인한 종전의 대학·학부(과)·전공의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대학·학부(과)·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계획서

	학부(과)장	학 장

대학 학부(과) 전공 학번	성 명	
제 목		
목 적		
방법 및 개요		

연구일정	월 별 / 연구과정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참고문헌

위와 같이 20 학년도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지도교수 : (인)

○○ 대학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팀 프로젝트 계획서

학부(과)장	학장

대학	학부(과)	전공		
팀 명				
조 원	성명	(인)	학번	
	성명	(인)	학번	
	성명	(인)	학번	
담당교수 (기입하지 마시오)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개요				

위와 같이 학년도 팀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 대학장 귀 하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5조 및 제35조의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기졸업이라 함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5조제2항의 수업연한에 따른 학기 이수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① 조기졸업 지원자격은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4.0이상, 교과목평점 3.0(P/NP등급 제외)이상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경우 교과목평점 3.0(P/NP등급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② 경영대학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융합경영학과, 공과대학 스마트제조공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 및 편입생은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절차) 조기졸업 지원자는 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 이수 신청서(온라인 신청)를 교무처 학사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신청) 조기졸업 대상자는 「동아대학교 학칙」제32조제1항의 최대취득학점을 초과하여 3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6조(조기졸업) 졸업에 필요한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에 합격한 자로 한다. 다전공 및 융합전공 신청자는 다전공 및 융합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동아대학교 학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이수학기 중 매 학기 취득학점이 평점평균 4.0, 교과목평점 3.0(P/NP등급 제외) 미만인 자(다만, 계절학기의 경우 교과목평점 3.0(P/NP등급 제외) 미만인 자)
3.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
4. 한 학기 모든 성적을 P/NP등급 받은 자(계절학기 제외)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9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휴학·복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22조 내지 제25조의 휴학과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의예과 및 의학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조(휴학기간 및 연장)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이전(1학기 복학예정자: 2월 말일까지, 2학기 복학예정자: 8월 말일까지)에 휴학연기원을 소속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학 중 휴학기간은 통산 「동아대학교 학칙」제5조제1항의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병역, 창업 및 육아의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창업휴학은 통산 4학기, 육아휴학은 통산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휴학구분) 휴학은 일반휴학, 병역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으로 구분한다.

제4조(일반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입학생의 첫 학기 일반휴학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질병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질병: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휴학은 학기별 수업일수 15주 종료일 2주 전부터 종료일까지는 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해야 할 학기의 소정의 기간 이내에 복학을 하지 않거나, 재학 중인 자가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총장승인 하에 해당학기 직권으로 휴학기간 연장 또는 휴학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휴학 사용가능 기간이 남은 자에 한하며 해당기간을 휴학 사용기간에 산입한다.

제5조(병역휴학) ① 입영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 전에 입영할 경우에는 휴학원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를 받아 병역휴학으로 대체해야 한다.

③ 병역휴학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입영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입영 후 60일 이내에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복무확인서 중 하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의2(창업휴학)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에 창업지원단장 또는 창업교육센터 소장의 확인을 받은 후 증빙서류(본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 관련 서류 등)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3(육아휴학)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신,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등록금) ① (삭제 2000. 12. 6)

② 등록을 필한 재학생이 휴학한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납부한 등록금은 이월한다.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 전액
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 3분의 2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 2분의 1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후: 이월하지 아니함

③ 학기 중 병역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기 수업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휴학 중 병역휴학으로 대체하지 않고 입영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해야 한다.

④ (삭제 2023.2.1.)

⑤ (삭제 2023.2.1.)

제7조(휴학취소) ①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취소 원인이 발생한 5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휴학취소원에는 일반휴학의 경우에는 사유서를, 병역휴학에는 귀가증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제8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해야 할 학기의 소정 기간 내에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절차를 필해야 한다.

② 2개 이상의 전공이 개설된 학부(과)의 학생이 1학년 1학기 이수 후 휴학하였을 경우의 복학은 1학년 2학기로 해야 한다.

③ 휴학자가 복학할 때 휴학당시의 학과가 학부로 전환되었을 경우 소속 대학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학부의 동일전공으로 복학한다. 다만, 동일 전공이 없는 학부는 유사학부 또는 유사전공으로 복학한다.

부 칙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 이후 휴학자부터 적용한다.
2.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9월 1일 이후 휴학자부터 적용한다.
3.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3월 1일 이후 휴학자부터 적용한다.
4.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1991년 3월 1일 이후 휴학자부터 적용한다.
5.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4조 제2항은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동 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1992학년도 2학기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3.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 이후 휴학자부터 적용한다.
14. 이 개정 규정은 2004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규정은 200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05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81조제3항에 의거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학부(과)·전공의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 학부(과)·전공)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학부(과)·전공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프로그램 구분 및 명칭) ①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심화 프로그램"이라 함은 공학교육인증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과과정을 말한다.
2. "일반 프로그램"이라 함은 본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의한 교과과정을 말한다.

② 학부(과)·전공별 프로그램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화 프로그램 이수) ① 공학교육인증제 대상 학부(과)·전공의 재학생은 심화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2016학년도 이후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해당 학부(과)의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심화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③ 2017학년도 이후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해당 학부(과)의 전입(편입, 전부(과), 재입학)생은 전입과 동시에 심화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④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 조항 범위로 보고, 각 심화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화 프로그램의 이수여부를 결정한다.

1. 편입생, 전부(과)생, 재입학생의 경우
2. 다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자로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학·석사 연계과정 포함), 자기설계연계전공, 융합전공, 학군사관후보생과정(ROTC)을 이수하는 경우
3. 조기졸업신청자, 교직이수자 학생의 경우
4. 복수·부·연계·자기설계연계전공과 전공교직과정을 동시 이수하는 자와 복수·연계전공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
5. 위탁생 및 외국인 유학생, 교류학생(한 학기 이상), 학기중 인턴파견(해외현장실습포함)학생의 경우
6.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계약학과 학생의 경우

⑤ 위의 각 호의 예외 조항에 속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시점에 예외조항 범위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⑥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영역별 이수학점 취득
2. 전공교과 학점 중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입문 및 종합설계를 포함한 설계 교과목 학점을 취득
3.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최소 졸업기준 [별표 2] 이상 취득

제4조의 2(편입생 초과학점 취득) 편입생이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매학기 최대 신청학점 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있으며, 초과 신청할 수 있는 교과목은 공학교양과 기초과학 및 수학교과에 한한다.

제5조(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 ① 심화 또는 일반 프로그램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하는 자는 다음

[별표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심화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제6차 학기말에 심화 프로그램 이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및 학과장(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과(전공)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화 프로그램 및 일반 프로그램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의 전공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인정은 「공학교육인증제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6조(심화 프로그램 중도포기) ① 심화 프로그램을 중도포기하고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심화프로그램 이수포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및 학과장(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과(전공)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2016학년도 이후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해당 학부(과)의 신입생과 2017학년도 이후 공학교육인증제에 참여하는 해당 학부(과)의 전입(편입, 전부·과, 재입학)생들 중 예외조항에 속하는 자는 심화 프로그램의 이수여부를 제7차 학기 수강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단, 졸업시점에서 각 예외조항의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다.

③ 학년도별 졸업예정자의 심화 프로그램 중도포기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④ 중도포기자는 제6차 학기말에 심화 프로그램 이수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심화 프로그램 재이수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및 학과장(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과(전공)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사 및 대체과목 인정) 심화 프로그램 교과목의 개설 학년 및 학기 변동 등의 사유로 유사 과목을 이수한 경우와 전부(과)생 및 편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심화 프로그램 교과목 인정여부는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심화 프로그램 이수사정) ① 심화 프로그램 대상자의 심화 프로그램 이수사정은 졸업예정학기 말에 각 심화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학과(전공)는 각 프로그램위원회의 심화프로그램 이수요건 사정 결과를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검토 후 해당 학과의 소속 대학장 혹은 독립학부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학위수여 및 표기) ①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칙 제50조 제2항 별표2(2-2)의 학위를 수여하며, 영문명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육과정 운영 규정」제10조 규정에 따른 각 교과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심화 프로그램 이수포기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동아대학교 학칙」 제50조제2항 별표2(2-1)의 학위를 수여한다.

③ 심화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자와 이수한 자의 학적부를 포함한 제 증명서 전공명칭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프로그램위원회) 공학교육인증제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심화 프로그램 내에 학부(과)·전공별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제11조(운영내규) 심화 프로그램 교과목, 설계교과목, 프로그램 학습성과와 각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학교육인증제운영 내규」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제규정류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4학년도 신입생(1,2학년 복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공학교육인증제 운영지침”에 의거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인증프로그램 적용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호 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2003학년도 이후 신입[복학, 전부(과), 편입학, 복수·부전공 포함]학생이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인증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③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6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학년도 졸업예정자는 제7차 학기말에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심화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최소 졸업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3의 복수·부전공 이수요건의 변경사항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심화프로그램 이수포기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위원장	학과장(책임교수)

공학교육혁신센터	담 당	소 장

1. 신청자

대 학		학부(과)		전 공	
학 년		학 번		이 름	

2. 심화프로그램 대학 및 학과

대 학		학부(과)		전 공	

3. 상세내용

상기 본인은 _____학년도 제 ____학년 _____학부(전공)·학과의 심화프로그램 이수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 포기사유 :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위원장	학과장(책임교수)

공학교육혁신센터	담 당	소 장

1. 소속대학

대 학		학부·과		전 공	
학 년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2. 복수(부)전공 대학 학부(과) · 전공

대 학		학부·과		심화전공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인증제를 운영하는 전공의 복수(부)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심화프로그램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별지 제3호 서식]

심화프로그램 재이수신청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위원장	학과장(책임교수)

공학교육혁신센터	담 당	소 장

1. 소속전공

대 학		학부·과		전 공	
학 년		학 번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2.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

대 학		학부·과		심화전공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거
인증제를 운영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심화프로그램 재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표1]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전공 및 프로그램 명칭

학부(과)·전공	심화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비고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심화 프로그램	건설시스템공학 프로그램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공학심화 프로그램	에너지·자원공학 프로그램	
전 자 공 학 과	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	전자공학프로그램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심화프로그램	컴퓨터공학프로그램	
건 축 공 학 전 공	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	건축공학프로그램	
기 계 공 학 과	기계공학심화프로그램	기계공학프로그램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심화 프로그램	산업경영공학프로그램	
신 소 재 공 학 과	신소재공학심화프로그램	신소재공학프로그램	
화 학 공 학 과	화학공학심화프로그램	화학공학프로그램	

[별표2]

심화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최소 졸업기준

학부(과)·전공	심화프로그램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최소 기준	비고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심화프로그램	프로그램 학습성과 상·중·하 구분의 중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공학심화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전 자 공 학 과	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심화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건 축 공 학 전 공	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기 계 공 학 과	기계공학심화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심화프로그램	프로그램 학습성과 최상·상·중·하·최하 구분의 중	
신 소 재 공 학 과	신소재공학심화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화 학 공 학 과	화학공학심화프로그램	최대 프로그램 학습성과의 60%	

[별표3]

복수·부전공자의 이수요건

1. 소속 학부(과)·전공이 심화 프로그램인 자의 이수요건

구분	심화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복수 전공	1.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화 프로그램을 이 규정 제4조에 의거 이수 2.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의 교과를 다음과 같이 이수 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교과를 추가 이수 나. 전공교과 학점 중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입문 및 종합설계를 포함한 설계 교과목 학점을 취득 ※ 이수학점의 기준은 인증원의 지침에 따름 다.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최소 프로그램 학습성과(별표2) 이상 취득	1.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화 프로그램을 이 규정 제4조에 의거 이수 2.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 이수
부전공	1.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화 프로그램을 이 규정 제4조에 의거 이수 2.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의 교과를 다음과 같이 이수 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교과를 추가 이수 나. 전공교과 학점 중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입문 및 종합설계를 포함한 설계 교과목 학점을 취득 ※ 이수학점의 기준은 인증원의 지침에 따름 다.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최소 프로그램 학습성과(별표2) 이상 취득	1. 소속 학부(과)·전공의 심화 프로그램을 이 규정 제4조에 의거 이수 2.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교과 이수

2. 소속 학부(과)·전공이 심화 프로그램이 아닌 자의 이수요건

구 분	인증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복수 전공	1. 소속 학부(과)의 전공심화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을 이수 2.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의 교과를 다음과 같이 이수 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교과를 추가 이수 나. 전공교과 학점 중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입문 및 종합설계를 포함한 설계 교과목 학점을 취득 ※ 이수학점의 기준은 인증원의 지침에 따름 다.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최소 프로그램 학습성과(별표2) 이상 취득	「복수전공이수규정」에 따름
부전공	1. 소속 학부(과)의 전공심화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을 이수 2.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전공의 교과를 다음과 같이 이수 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교과를 추가 이수 나. 전공교과 학점 중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입문 및 종합설계를 포함한 설계 교과목 학점을 취득 ※ 이수학점의 기준은 인증원의 지침에 따름 다. 심화 프로그램에서 정한 최소 프로그램 학습성과(별표2) 이상 취득	「부전공이수규정」에 따름

[별표4]

심화 프로그램 중도포기시기

구분	2008학년도 후기, 2009학년도 졸업자 (09년 8월, 10년 2월, 10년 8월)	2010학년도 졸업자 (11년 2월, 11년 8월)	2011학년도 이후 졸업자 (12년 2월 이후)	2018학년도 전기 이후 졸업자 (19년 2월 이후)
정규과정자	제5차 학기말	제4차 학기말	제4차학기말 /제6차학기말	제7차 학기 수강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조기졸업자	제5차 학기말	제4차 학기말	제4차학기말 /제5차학기말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자	제5차 학기말	제4차 학기말	제5차 학기말	
편입생	제5차 학기말	제5차 학기말	제6차 학기말	
3학년 전부(과)생	제5차 학기말	제5차 학기말	제6차 학기말	

[별표5]

제 증명서 심화 프로그램 학위명

학부(과)·전공	심화 프로그램(국문)	심화 프로그램(영문)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Civil Engineering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Electronics Engineering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Computer Engineering
건축공학전공	건축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Mechanical Engineering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in Chemical Engineering

[별표6]

제 증명서 심화 프로그램 표기명

학부(과)·전공	심화 프로그램	비 고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심화전공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에너지·자원공학심화전공	
전 자 공 학 과	전 자 공 학 심 화 전 공	
컴 퓨 터 공 학 과	컴 퓨 터 공 학 심 화 전 공	
건 축 공 학 전 공	건 축 공 학 심 화 전 공	
기 계 공 학 과	기 계 공 학 심 화 전 공	
산 업 경 영 공 학 과	산 업 경 영 공 학 심 화 전 공	
신 소 재 공 학 과	신 소 재 공 학 심 화 전 공	
화 학 공 학 과	화 학 공 학 심 화 전 공	

현장실습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현장실습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이란 본 대학교와 현장실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본 대학교 학생이 현장실습기관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의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기관” (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 학생의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현장실습 과정별 본 대학교의 주관하는 부서로 “현장실습지원센터”, “취업지원실”, “국제교류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현장실습 협약에 따라 참여하는 실습기관 및 학생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현장실습은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현장실습 편성) ① 현장실습은 각 과정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현장실습Ⅳ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분	과정명		개설시기	실습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성적평가
	국내	국외						
단기 현장실습	현장실습Ⅰ-1	국외현장실습Ⅰ-1	방학 중	4주 이상	3학점		전공선택	이수(P) 미이수(NP)
	현장실습Ⅰ-2	국외현장실습Ⅰ-2			3학점			
	현장실습Ⅰ-3	국외현장실습Ⅰ-3			3학점		자유선택	
	현장실습Ⅰ-4	국외현장실습Ⅰ-4			3학점			
	현장실습Ⅱ-1	국외현장실습Ⅱ-1		8주 이상	6학점		전공선택	
	현장실습Ⅱ-2	국외현장실습Ⅱ-2			6학점		자유선택	
장기 현장실습	현장실습Ⅲ	국외현장실습Ⅲ	학기 중	12주 이상	단일	18학점	전공선택	
					대체	18학점 이내	수강신청 교과목	
	현장실습Ⅳ	-	학기 중	12주 이상	단일	18학점	전공선택	
					대체	15학점 이내	수강신청 교과목	

②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4주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기관은 현장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 범위에서 실습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실습은 제한한다.

제5조(주관부서) ① 현장실습의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재정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국내 단기현장실습 : 현장실습지원센터



2. 국내 장기현장실습 : 취업지원실
3. 국외 현장실습 : 국제교류과

② 현장실습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1.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2. 실습기관 및 현장실습 학생 모집 안내·홍보
3.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
4. 실습기관의 관리 및 지도
5. 현장실습 지도교수 지정
6. 선발된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7.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결과보고서 취합 및 학점인정 신청
8.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부서적인 업무 시행

제6조(현장실습 협약) ① 현장실습의 협약은 총장과 실습기관장이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상황에 따라 주관부서장과 실습기관의 부서장이 체결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2.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및 현장 지도 계획
3.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수혜 조건(수당 및 후생복지 등)
4. 평가 방식, 학점 부여 및 기준
5.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실습 협약서는 실습기관의 상황에 따라 제2항의 협약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실습기관 관리 및 지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이행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운영 계획서를 본 대학교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
3. 현장실습 대상 전공, 인원 및 학년
4.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내용
5. 현장실습지원비 및 현장실습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지도교수는 산업체 파견 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파견 후에는 학생의 작업환경, 근무상태 등을 1회 이상 방문하여 점검하며 학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실습의 경우에는 전화 또는 e-mail 등의 방법으로 현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자격) ①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졸업사정 전까지 현장실습을 종료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자
3. 「동아대학교 학칙」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1. 다전공 (복수, 연계, 자기설계연계, 부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자 : 장기현장실습 신청 제한,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예외로 한다.
2. 졸업예정자 : 단기현장실습 신청 제한

③ 기타 세부적인 신청자격은 주관부서의 별도 지침에 따르며, 실습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9조(신청 절차 등) ①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관부서에서 공지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기한 내에 학생이 소속한 학부(과)장(전공의 경우 전공책임교수, 이하 "학부(과)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전공(복수, 부전공, 연계, 자기설계연계) 및 융합전공 학생이 해당 전공으로 현장실습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 호의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복수·부전공 : 학생이 복수 또는 부전공하는 학과의 학부(과)장
2. 연계·융복합전공 : 학생의 연계·융복합전공을 주관하는 학과의 학부(과)장
3. 자기설계연계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부(과)장

③ 장기현장실습 신청 시에는 학생의 소속 학부(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교과목 유형에 한하여 학생이 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강, 교직, 국가자격 인정 필수 교과목(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 등을 대체교과목으로 신청 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교과목의 이수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현장실습에 지장이 없는 온라인 강좌 등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선발 및 학생 의무) ①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은 별도의 선발기준에 의거 현장실습 분야,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학생을 선발한다.

② 학생 선발을 위해 필요 시 해당 학부(과)장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실습 선발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장기현장실습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이수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 실습기관의 제 규정 및 안전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은 즉시 현장실습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기관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 시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11조(과정의 변경 및 포기) 학생이 현장실습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실습기관 및 과정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제12조(학점인정 등) ① 학생의 소속 학부(과)장은 학생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출근부, 현장실습일지, 실습기관의 평가서, 현장실습결과보고서 등)를 취합·검토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이를 취합하여 학사관리과로 학점인정을 요청해야 한다.

② 현장실습의 이수학점은 최대 24학점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에서 정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③ 현장실습의 성적은 학업성적 평점평균 환산에는 제외한다.

④ 장기실습학기제(대체교과목)은 수강신청 교과목의 이수구분에 따라 대체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졸업예정학기에 장기현장실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필요할 경우 소속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예외적 인정) ① 현장실습은 실습기간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인정을 원칙으로 하나, 실습기간의 5분의 4이상을 이행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될 경우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학의 공식행사,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2. 국가의 의무적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울 경우
4. 질병 또는 상해 등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로 잔여기간의 실습이 어려울 경우
5. 기타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를 인정받아 과제물로 대체하는 경우

제14조(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학생의 현장실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숙식비, 교통비, 실무 및 프로젝트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실습지원비의 지급수준은 실습기관의 종류·규모, 실습 내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본 대학교와 실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이 노동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실습지원비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아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과 실습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르며,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제38조의 3와 「대학원 학칙」제53조에 의거 학·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모집단위 및 모집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전 학과. 단, 학과의 사정에 따라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2. 전문대학원 : 국제전문대학원 전 학과 전 전공

② 모집인원은 연계과정 모집 당해 학년도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조(지원자격) ① 연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7학기까지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자(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의 경우 6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9학기까지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자)
2.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당해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제외]
3. 학사학위과정 소속 학부(과)·전공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편입학생 및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은 연계과정에 지원할 수 없다.

제4조(모집요강 및 지원시기) 연계과정의 모집요강은 학기말 90일전에 공고하며 지원시기는 학기말 60일 이전으로 한다.

제5조(지원서류) 연계과정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성적증명서 1부

제6조(전형방법 및 시기) ①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 학과(전공)별로 따로 정하여 전형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의 전형은 5학기 말[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7학기 말]에 실시한다.

제7조(수업연한) ①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6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은 3.5년[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4.5년]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 간주한다.

제8조(이수학점 등)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사학위과정 6~7차[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8~9차] 학기동안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외에 3학점 범위내에서 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해당 대학원 전공교과목 중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석사학위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학위 과정별 최소 졸업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 「동아대학교 학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입학년도 및 해당 계열의 졸업이수학점

을 따른다.

2. 석사학위과정 : 24학점

제9조(대학원 지원) ① 학사학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7차[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9차] 학기의 소정 기한내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해당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대학원의 입학을 취소하며 중도 포기한 자로 간주한다.

1. 해당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해당 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은 자
3. 학사학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4. 해당 대학원 전공교과목 중에서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제10조(등록) ① 연계과정으로 해당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자 중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학위과정의 8차[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은 10차] 학기를 정규등록하여야 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중 3차 학기 이내에 최소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4차 학기를 정규등록하여야 한다.

④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기일 내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휴학 및 자퇴)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학사과정을 휴학하는 경우에는 연계과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첫째 학기에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및 질병(동아대학교 의료원 진단서 첨부)으로 인한 휴학은 제외한다.

제11조(연계과정 선발자의 혜택) ① 연계과정자에게는 해당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해당 대학원에 등록할 경우 대학원 입학금 및 학사학위과정의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 등을 면제한다.

제12조(사무분장) 모집요강 공고, 연계과정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입학전형은 해당 대학원에서 행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아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선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계교육학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계교육과정”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전문대학(이하 “양교”라 한다)간의 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에 따라 본 대학교 교과과정과 전문대학 교과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협력대학”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체결한 대학을 말한다.

제3조(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 ① 연계교육과정 협약의 체결 시에는 연계 학부(과)·전공명, 연계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선발 방법 및 교수·학생의 교류 등 실질적인 연계교육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 후 양교의 학부(과)·전공 명칭 또는 교과과정의 개편 등의 사유로 협약체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계교육운영위원회 및 연계교육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연계교육과정 교과목 편성) ① 협력대학 총장은 본 대학교 전공교과목과 연계가 가능한 연계교육과정 교과목을 연계교육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12학점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② 협력대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계교육과정 교과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육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양교는 상호 협의하여 연계교과목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

제5조(연계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대학에 개설된 연계교과목 중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교수 및 학생교류)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학술교류, 학술행사 및 교수·학생 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

② 해당 학부(과)·전공 교수는 연계교육과정의 수업에 상호 참여할 수 있다.

③ 협력대학은 연계교육과정 학생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평가하여 차기 연계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상호협력) ① 협력대학에서는 연계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본 대학교에서 요청할 시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② 양교는 연계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기자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편입학 지원자격) ① 본 대학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대학에 연계교육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2. 개설된 연계교과목 중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4.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에 의한 학업성적 등 일정수준의 요건을 갖춘 자



②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지원하는 자는 본 대학교의 해당 학년도 타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제9조(모집인원) 모집인원은 해당 3학년 입학정원의 3%,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전형 및 선발 등) ① 전형일정은 본 대학교 편입학 전형일정에 의하며, 그 일정은 모집요강에 공고한다.

② 전형방법은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에 의한다.

③ 연계교육과정 협약체결 후 본 대학교 연계교육과정 학부(과)·전공이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된 경우에는 연계교육운영위원회 및 연계교육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 학부(과)·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해당 협력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 대학교 연계교육과정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전부(과)를 불허한다.

제11조(연계교육운영위원회) ① 연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계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계교육 운영계획 수립
2. 연계교육 협약체결
3. 연계교육 관련 규정의 제·개정
4. 연계교육 운영협의회에서 상정한 사항
5. 기타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되, 입학관리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협력대학장이 추천하는 협력대학의 전임교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사관리과 수업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연계교육운영협의회) ① 연계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부(과)·전공별로 연계교육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본 대학교 해당 학부(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로 하며, 위원은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력대학 전임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계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 연계교과목 선정 및 교재개발
3.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전형방법
4.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5. 교수·학생의 교류 및 협력

6. 연계교육과정 운영협약체결
7. 기타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의 소관업무는 해당 학부(과)·전공에서 관장한다.

⑤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 개최 시 회의록에는 회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연계교육과정운영지침」에 의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결 허용범위) 학생의 공결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한다. 단, 제3조제7호에 의한 사유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 제3조제11호에 의한 사유는 해당 기간 전체를 허용한다.

제3조(공결인정사유 및 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결석은 지정된 기간만큼 공결로 인정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5일 이내
2.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이내
3. 학생의 입원 또는 전염성 질병(법정감염병에 한함) 감염 : 입원기간 또는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격리기간
4.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예비군훈련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실제 소요기간
5.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과가 주관하고 단과대학(독립학부)장이 인정하는 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해당기간
6. 국내외 각종 대회(학술대회, 전국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 및 교류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 : 해당기간
7. 체육특기자 또는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된 학생 중 스포츠단장이 인정하는 학생의 훈련 및 대회참가 : 해당기간
8. 전국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해당기간
9.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단, 계절학기 중에는 1일에 한함)
10.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채용 확정 후 직무 관련 연수에 참석하는 경우 : 실제 소요기간
11. 졸업예정자의 취·창업으로 인한 사유: 해당기간
12. 교내 부서에서 주관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주요 비교과 프로그램 등 참가: 해당기간
13.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행사 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해당기간
1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기간

제4조(공결인정 절차) ① 공결을 원하는 자는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휴일 포함, 제3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공결은 사유 발생 후 3주 이내)에 공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 종료 이후의 공결신청은 불허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포츠지원단장이 해당 학생의 공결을 처리하고, 승인 즉시 그 명단을 소속 단과대학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 부서에서 사전에 교무처장의 협조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주관 부서의 장이 해당 학생의 공결을 처리하고, 승인 즉시 그 명단을 소속 단과대학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결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받은 자는 공결하고자 하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1호의 사유에 의한 공결 신청자는 「취·창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의 공결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공결 신청 후 2주 이내(단, 제3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공결은 사유 발생 후 3주 이내) 또는 수업 종료일까지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결 신청을 취소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7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결신청서

확인	행정지원실

공 결 자	학번		성명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공결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공결사유	- 첨부: 증빙서류 1부					

공결과목	과 목 명(분반)	요일	교시	담당교수명	비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별지 제2호 서식]

공결허가서

공 결 자	학번		성명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공결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공결사유						

공결과목	과 목 명(분반)	요일	교시	담당교수명	비고

위와 같이 공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학장 (직인)

※ 공결자는 공결허가서를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결사항은 매학기별로 담당교강사에게 발송됩니다.

대학과목선이수제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학칙」 제43조의 6에 의거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대학과목선이수제(UP : University - level Program)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개설과목 및 시기) ① 개설과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협약이 체결된 과목에 한한다.

② 개설 시기는 매년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한다.

제4조 (수강신청 및 이수) ① 대학과목선이수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준에 따른다.

③ 수강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수업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고, 성적을 C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5조(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① 상호 학점인정대상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시행 대학과목선이수제에 참여한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한다.

② 대학과목선이수제로 취득한 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명이 본 대학교 교과목명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이수구분을 적용한다.

③ 대학과목선이수제 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년 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신청서를 학부(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과목선이수제로 취득한 학점은 1학년 1학기 성적에 P(Pass)로 기재되며,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학기별 최대수강신청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대학과목선이수제에 따른 학점인정은 강좌를 이수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의 대학과목선이수제(AP : Advanced Placement)의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석당인재학부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81조제4항에 의거 석당인재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의 설치) 석당인재학부(이하 “학부”라 한다)에는 공공정책학전공을 둔다.

제3조(특화반) ① 학부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및 국가고시 합격, 각종 자격 취득 등의 체계적 준비를 위한 특화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특화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학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부장과 전공책임교수 및 특화반 지도교수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부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부생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학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6. 학부 운영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교과과정) ① 학부생의 교과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② 학부의 교양교과목은 필요에 따라 학부생을 위한 독자적인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제6조(성적평가) 학부생에 대한 성적평가는 「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평가한다.

제7조(전부(과) 및 다전공) 전부(과) 및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 연계전공 등) 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삭제, 2017.12.19.)

제9조(편입학) 학부는 편입학생을 모집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장학금) 학부생에게는 입학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외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제11조(생활관) ① 학부생은 「한림생활관규정」 제17조제1항제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4년간 입사할 수 있다.

② 한림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입사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2조(특별 프로그램) ① 학부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월 도서구입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삭제, 2017.12.19.)

제14조(수당지급) 특화반 및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아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부에는 2010학년도 신입생에 한하여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학전공과 공공경영학전공을 두며, 전공의 배정 및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부생은 제1학년 제2학기 기말시험 이전의 소정 기간에 전공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공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전공의 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전공별로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전공교과목의 수강 인원이 적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학부장은 해당 교과목을 폐강 조치하고, 동일 교과목이 개설된 관련 학부(과)의 협조를 받아 전공교과를 이수하게 할 수 있다.
4. 학부생이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하되, 제2학년 제2학기 기말시험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업성적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학업성적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전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전부(과)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장학금 등 지원 제도에 대한 경과조치) 장학금 등 각종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 지침」을 따른다. 다만 2010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입학생은 각 학년도별로 적용된 지침을 따른다.

⑤ (해외연수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외교류학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37조에 따라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학술교류협정체결 관계가 있는 국외 대학교(이하 “교류대학”이라 한다)에서 수학 중인 자(이하 “교류학생”이라 한다)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교류학생 신청자격은 본 대학교 및 대학원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않은 자 중, 본 대학교에서 두 학기 이상(대학원은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인 자로 최종 학기는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3조(신청절차 및 방법) 교류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외국제처 국제교류과에 제출하여야한다.

1.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파견학생 : 교류대학 수학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수학허가서 취득에 의한 자비유학생

가. 교류대학 수학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자비유학 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다. 교류대학의 수학허가서 1부

라.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

제4조(선발절차 및 방법) 교류학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파견학생은 학업성적, 어학능력,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대외국제처장이 선발한다. 단과대학 자체 프로그램은 대학(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의 명단을 프로그램 실시 2개월 전까지 대외국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수학허가서 취득에 따른 자비유학생은 전공책임(지도)교수의 추천과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학기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파견학생의 교류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협정체결대학간 협정을 통해 따로 정한다.

제6조(학적 및 등록) ① 교류대학 교류학생의 수학기간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그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② 교류대학 교류학생은 수학기간동안 본 대학교의 등록절차에 따라 매 학기 본 대학교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 및 절차) ①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 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P(Pass) 또는 NP(Non-Pass)로 표기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 환산에는 제외한다.
2. 이수한 교과목명의 표기는 영어 교과목명으로 표기 한다.
3.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영문명이 본 대학교의 교과목 영문명과 일치하더라도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교류대학 교류학생은 수학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외국제처 국제교류과

(대학원생은 소속 대학원)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외국제처장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 학사관리과에 학점인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교류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증명서

③ 대학(원)장(교양교과목은 교양대학장)은 학생이 제출한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과목별 이수영역을 판단하되, 신청서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 및 교과목 개요 등의 추가자료를 교류학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소) 교류학생으로 수학 중 수학의 취소를 원하는 자는 교류대학 수학 취소원(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 또는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고, 행정지원실에서는 대학(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대외국제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지도) 교류대학 교류학생의 지도는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본 대학교의 또는 교류대학의 학칙에 의거 처리한다.

제10조(초청 교류학생)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국외대학의 초청 교류학생은 재학하고 있는 대학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초청 조건은 협정체결대학간 협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1서식]

교류대학 수학 신청서(학부)

(프로그램 명:)

접 수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여권명과 동일				사 진 (3x4)
소 속	대학 학부	전공 학년					
학 번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학생	휴대폰		E-Mail		자 택	지역번호-전화번호	
연락처 보호자	휴대폰		성 명				
	주 소						
파견대학			수학분야				
학업성적	평점평균	/ 4.50	졸업예정일	년 월			
기타 외국어 능력	시험종류		점수	응시일자			
	※ 외국어 능력 시험종류가 없는 자는 교류대학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경험							

지원일자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장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교류대학 수학 신청서(대학원)

(프로그램 명:)

접 수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여권명과 동일				사 진 (3x4)
소 속	대학원	과정	학과	학기			
학 번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학생	휴대폰		E-Mail		자 택	지역번호-전화번호
	보호자	휴대폰		성 명			
		주 소					
파견대학			수학분야				
학업성적	평점평균	/ 4.50	졸업예정일	년 월			
기타	외국어 능력	시험종류	점수	응시일자			
		※ 외국어 능력 시험종류가 없는 자는 교류대학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경험						

지원일자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장 귀하

[별지 제2호의1서식]

교류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학부)

확인	학부(과)장	학장		담당자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학번		성명		총신청 학점수	
교류대학명		수학기간	~		

No.	이수 교과목명 (원어명) 이수 교과목명 (영문명)	학년	학기	학점	이수영역
1					
2					
3					
4					
5					
6					
7					
8					
9					

동아대학교 학칙 제32조(취득학점)를 초과하였을시 포기 교과목

No.	이수 포기 교과목명 (원어명) 이수 포기 교과목명 (영문명)	학년	학기	학점	이수영역
1					
2					

년 월 일

제출자 (인)

※ 학장의 결재를 득한 후 대외국제처 국제교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교류대학 취득학점인정 신청서(대학원)

확인	책임교수	대학원장		담당자

소속	대학원	과정	학기

학과		전공		총신청 학점수	
학번		성명			
교류대학명		수학기간	~		

No.	이수 교과목명 (원어명) 이수 교과목명 (영문명)	학년	학기	학점	이수영역
1					
2					
3					
4					
5					
6					
7					
8					

대학원 학칙 제21조(수강신청학점 한도)를 초과하였을시 포기 교과목

No.	이수 포기 교과목명 (원어명) 이수 포기 교과목명 (영문명)	학년	학기	학점	이수영역
1					
2					

년 월 일

제출자 (인)

※ 책임교수의 결재를 득한 후 대학원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의1서식]

자비유학생 승인서(학부)

확인	학부(과)장

담당자	팀(실)장	부학장	학장

소속		대학		학부	전공
학번			학년		성명	
수학	대학	영문으로 기재			
	분야				
	기간			국가	
책임(지도) 교수 추천		우리학교 학생들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외대학 수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니 전공책임(지도)교수님께서는 해당 학생이 수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책임(지도) 교수	소속				
	성명	(서명)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 학장의 결재를 득한 후 대외국제처 국제교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자비유학생 승인서(대학원)

확인	책임교수

담당자	팀장	실장	부학장	학장

소속		대학원		과정		학기
학번			학기		성명	
학과			전공			
수학	대학	영문으로 기재				
	분야					
	기간			국가		
책임(지도) 교수 추천		우리학교 학생들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외대학 수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니 전공책임(지도)교수님께서는 해당 학생이 수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책임(지도) 교수	소속					
	성명	(서명)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 소속 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대외국제처 국제교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의1서식]

교류대학 수학 취소원(학부)

확인	학부(과)장

담당자	팀(실)장	부학장	학장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학번		성명		수학기간	2018. 8 ~ 2019. 8
교류대학명		이수학기	2018-1	취소학기	2018-2
취소이유					

년 월 일

제출자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 학장의 결재를 득한 후 대외국제처 국제교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교류대학 수학 취소원(대학원)

확인	책임교수

담당자	팀장	실장	부학장	학장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학번		성명			
학과		전공		수학기간	2018. 8 ~ 2019. 8
교류대학명		이수학기	2018-1	취소학기	2018-2
취소이유					

년 월 일

제출자 (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 학장의 결재를 득한 후 대외국제처 국제교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등록생학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8조에 의거, 시간제등록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3조(삭제 2010. 9. 9)

제4조(전형) ① 전형은 서류전형(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면접 등으로 하며, 매학기별로 선발한다.

② 산업체 근로자는 근무년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前)학기 수강자가 계속 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특별한 전형절차 없이 합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및 수강신청) 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학점에 따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학부(과)에 제출,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학기제 및 수업연한) ① 학기제는 본 대학교에서 개설하는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에 따른다.

② 수업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본 대학교 학부(과)의 정규학생과 통합운영한다.

제8조(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① 이수학점은 매학기 12학점,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법학부는 150학점 이상)이며, 교양·전공교과를 학부(과)별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대학 재적중 시간제등록제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삭제 2010. 9. 9)

제10조(등록제한 및 취소) 수업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등록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신분변경) 시간제등록생의 정규학생으로의 신분변경은 본 대학교의 편입학 절차에 따른다.

제12조(등록금 책정 및 반환) ① 등록금은 학점당 등록금제로 하며, 학점당 등록금은 정규학생의 학기당 총등록금액과 취득 기준학점의 비율을 적용하여 학기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납입한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13조(등록 포기) ① 시간제등록생이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포기원을 해당 단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장은 이를 교무처 학사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사관리과에서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 포기사항을 재무처 경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학적관리 및 증명서발급) ① 시간제등록생의 학적은 별도로 관리한다.

② 시간제등록생에게는 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본대학교 학칙과 그에 관련한 제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43조의2에 의거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양필수교과의 Communication English 교과목에 한하여 특별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조(신청자격) 특별학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특별학점 인정) ①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및 인정학점은 [별표]와 같다.

② 특별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학기별 최대 취득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특별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학점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신청)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교무처 학사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학점 인정신청서(온라인 신청) 1부
2. 어학시험 성적 사본 1부

제6조(성적처리) 특별학점은 성적표상에 "P(Pass)"로 표기하며, 학업성적 평점평균 환산에는 제외한다.

제7조(재수강) "Communication English" 교과목을 재수강 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학점 인정기준에 해당하고 특별학점 인정신청서에 따라 재수강을 신청할 경우 재수강 이전의 성적은 취소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에 학칙 제43조의2(특별학점의 인정)에 의거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이전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개편된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특별학점 적용 범위에 관한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변경에 따른 제2조,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3학년도 이전 신입생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특별학점 적용 범위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3학년도 이전 신입생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한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특별학점 적용 범위에 관한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7학년도 이전 신입생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18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변경에 따른 제2조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22학년도 이전 신입생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22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및 인정학점

교과목명	발급기관명	특별학점 인정 자격기준	인정학점	비고
Communication English	서울대학교TEPS관리위원회	TEPS 257점 이상	3학점	※성적유효기간은 발급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 80점 이상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43조의 4에 의거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협약체결대학"이라 함은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협약서에 명시된 대학교를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개설 강좌 및 시기) ① 개설강좌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개설강좌 수 및 내용은 본 대학교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강좌개설 시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이후로 한다.

③ 1강좌당 시수는 3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수강 신청 등) 수강신청 접수 및 수강료 수납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통합 시행한다.

제6조(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본 대학교에 입학한 후 협력체결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최대 1강좌 2학점을 인정한다. 이 경우 이수한 교과목은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하되, 교과목명이 본 대학교와 일치할 때에는 본 대학교의 교과이수구분을 적용한다.

② 고교-대학 연계학점은 해당 학기 최대수강 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의거 인정받은 학점은 성적표에 P(Pass)로 표기하고 학칙 제34조의 졸업학점에는 포함시키되, 성적 평균평점 환산에는 제외한다.

제7조(운영예산)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본 대학교의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강사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지원비로 충당한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에 종전의"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의거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생활기록부위주전형 예비입학생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43조의 8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위주전형(이하 학생부위주전형) 예비입학생 학점인정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학생부위주전형 예비입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부위주전형으로 합격하여 등록예치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 학생부위주전형에 합격한 예비입학생으로 한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 운영은 본 대학교 입학관리처 입학사정관실에서 주관한다.

② 프로그램은 학업 및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기초 TOEIC 및 영어회화, 글쓰기, 기초 수학 등 교과 수업과 교양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운영한다.

제5조(개설 교과) ① 개설 교과목은, 인문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기초 TOEIC, 영어회화, 글쓰기’, 자연계열은 ‘기초 TOEIC, 영어회화, 기초 수학’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교과목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총 강의시수는 45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강 신청 및 이수) ①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접수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따로 정하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신청서」상의 수강료를 준용한다.

③ 수강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수업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평가시험에서 3개 교과목을 모두 합격하면 이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영어회화는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의 4분의 3 이상만 출석하면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이수증을 받은 학생이 본 대학교에 입학하면 자유선택교과 ‘새내기 레벨업’ 교과목으로 2학점을 인정한다.

② ‘새내기 레벨업’ 학점은 해당 학기 최대수강 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인정받은 학점은 성적표에 P(Pass)로 표기하고, 학칙 제34조의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성적 평균평점 환산에는 제외한다.

제8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학생회 간부자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14장의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회 간부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학생회”라 함은 본 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단과대학 및 학부(과) 학생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생회의 정 · 부회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학생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4조(자격기준) 학생회의 정 · 부회장 입후보자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부 재학중인 자
2. 전(全)학년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C+)이상인 자.
3.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단, 학사조직 특수성 및 학생정원조정에 의한 학(부)과 신설, 통폐합 등의 경우 「총학생회칙」에 의거 민주적 절차와 관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학사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제5조(자격상실) 학생회의 정·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 제4조의 4호에 위배될 경우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5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상벌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하되 학업성적, 미등록 등 교무행정상의 이유가 징계사유로 될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상벌기재) 상벌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유기정학 이하의 징계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장 학생상벌위원회

제4조(구성) 포상과 징계 등 학생상벌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대학장 및 독립학부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3. 간사는 학생복지과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상벌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안건에 따라 해당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임) 총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포 상

제8조(포상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졸업예정자 중 본 대학교 또는 각 대학(학부)에서 전(全) 학년 평점평균 성적이 우수한 경우(석차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동아대학교 학칙」 제5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외한다)
2. 문학, 과학, 예술, 운동경기 등의 전국적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대상(우승)에 입상(해당)하거나 5급 상당의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경우
3. 학생간부로서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4. 선행과 효행이 뛰어나 대내·외적으로 모범이 되어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 기타 공적이 인정되어 소속 대학장 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제9조 (포상 시행 및 방법) 시상은 학위수여식 또는 개교기념식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세부적인 포상 방법(부상 포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징 계

제1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② 근신은 1주일 이내, 유기정학은 4주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학 중인 학생이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복학한 날로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학생이 징계기간 중 휴학할 경우 휴학기간은 징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대학 내 구성원에게 인권침해(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 등)를 행한 경우
3. 성폭력과 관련되어 성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청한 경우
4. 교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경우
5. 학교시설물이나 기자재 등을 파손하거나 이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
6.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나 학교에 제출하는 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7. 학생단체 지원경비 또는 학생회 공금을 유용, 횡령한 경우
8.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9. 기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제5장 심의절차

제12조 (심의절차) 포상과 징계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포상

가. 소속 대학장(독립학부장) 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8조 1호 규정에 의한 포상은 추천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2. 징계

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의 소속 대학장(독립학부장)이 징계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나. 징계의 대상이 총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 소속 학생간부일 경우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징계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 위원장은 출석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해당학생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로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라. 해당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시는 소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출석을 원치 않을 시 소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마.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심의가 회부된 날로부터 12주 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징계해제 및 감면) 정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소속 대학장(독립학부장) 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징계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징계를 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징계통보) ①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징계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소속 대학장, 관련 부서, 학부모 및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징계 처분 사항은 결정 후 30일 이내로 7일간 교내 게시판에 부착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심의요구서

소속	대학 학부(과) 학년	학 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건명			
징계 심의 사유			
징계 심의 요구자 의견			

위와 같이 징계심의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징계심의요구인: 직위 성명 (인)

학생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제 호

인적사항	소속	대학 학부(과) 학년		
	성명		학번	
	주소			
출석사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것. 2.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안 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함.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함. 년 월 일 학 생 상 벌 위 원 회 위 원 장				

[별지 제3호 서식]

소 명 서

소속	대학 학부(과) 학년	학 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소명내용			

위와 같이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진술인 : (인)

학생상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징계통지서

제 호

인적사항	소속	대학 학부(과) 학년		
	성명		학번	
징계구분				
적용규정				
징계사유				

위와 같이 징계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학생·취업지원처장

귀하

장학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 학칙」 제66조에 따라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부 재적생에게 적용하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교외장학금(국가, 지자체, 장학단체 및 개인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기관의 선발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장학금의 구분)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2. 교외장학금 : 외부단체 또는 개인이 기탁하는 장학금
3. 국가장학금 :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정부지원 장학금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으로 따로 정하되,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생)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3. 수혜요건이 지정된 경우 그 요건에 적합한 자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수혜기간)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8학기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학과는 10학기, 의예과는 4학기, 의학과는 8학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모집단위 폐지로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2.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인 경우
3. 기타 총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

③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혜 사유가 발생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의 제한) ① 교내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중복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 해당 학생이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2. 학업보조성(월보조장학금 포함) 및 근로성 장학금
3.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의 장학금(특별장학금)인 경우
4. 기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 미만인 자(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2. 직전학기 유기정학 이상 징계처분 받은 자(예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장학생의 교체)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을 교체할 수 있다.

1. 중복수혜 대상으로 해당 장학금을 반환하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휴학한 경우

②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에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선발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을 교체하여야 한다.

1.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2. 근무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선정절차) ①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분위 파악을 위하여 소정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매학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또는 소관부서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또는 소관부서에서는 장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선정결과를 검토하여 장학생을 최종 확정한다.

제10조(지급방법)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장학금액만큼 감면하여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록금을 기 납부한 경우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의 반환)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한 자(복학생 포함)가 당해 학기에 전부(과)하였을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위원회) ① 장학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학생·취업지원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입학관리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대학장 및 독립학부장이 추천하는 부학장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생·취업지원처 학생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 업무의 기본방침
2. 장학금 조성 및 집행
3. 장학 관련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단과대학 및 학부별로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장학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대여장학금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교 대여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장학금은 동아대학교 학교대여장학금(이하 "학교대여장학금"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본 장학금의 수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빈곤 기타 사유로 학자금 조달이 극히 곤란한 자
2. 전(前)학기 학업 성적이 평균평점 C학점 이상이고, F학점이 없는 자
3. 재학중 징계받은 사실이 없고, 평소 품행이 단정한 자
4. 신입생은 계열 및 학부(과) 입학순위 30%이내에 포함된 자
5.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
6.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2 장 장학금의 지급절차

제4조(장학금의 신청) 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30일 전에 다음 서류(별표 1)를 구비하여 학부(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정) ① 단과대학 장학위원회위원장은 매 학기 개시 20일 전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이를 장학위원회에 회부하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생 선정의 공고) 장학생이 선정된 후에는 이를 공고하고, 학부형에게 통고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한도) 재학중 4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장학금의 상환

제8조(장학금의 상환기간) ① 장학금을 대여받은 자는 졸업 후 3년 이내에 대여받은 장학금 전액을 무이자로 분기별 균등분할(12회)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시는 군복무기간, 대학원 진학시는 대학원 재학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② 졸업전에 학적을 상실(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여받은 장학금 전액을 분기별 균등분할(4회) 또는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상환면제) ① 장학금을 대여받은 자가 재학 또는 졸업 후 상환하기 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장학금 상환 면제 및 감액신청을 할 수 있다.

1. 장학생 본인이 사망한 때



2. 졸업 후 본인이 심신의 장애로 취업이 불능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때

② 장학금 상환 면제 및 감액여부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0조(장학금 상환 불이행시의 조치)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 4 장 장학기금

제11조(장학기금) 상환된 장학금은 장학기금으로 운용한다.

제12조(주민등록표 제출) 졸업 및 학적을 상실한 자는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등본을 장학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이전 10일까지
2. 졸업생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1월 15일 이내
3. 학적 상실자는 상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청서류

서 류 명	부수	취급기관	비 고
1. 대여장학금신청서 (서약서, 재정보증서)	각 1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학부(과)장 추천을 받을 것
2. 생활보호(영세민) 의료시혜 대상자 증명서	1	동·면사무소	해당자에 한함. 선발자료
3. 보호자 재산세(농지세) 연간 납부실적 증명서	1	동·면사무소	해당자에 한함. 선발자료
4. 학생의 주민등록 또는 호적등본	1	동·면사무소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등재된 것
5. 인감증명서 • 보호자 • 보증인	2 (1) (1)	동·면사무소	
6. 보증인 재산세(농지세) 납부실적증명서	1	동·면사무소	연간 재산세(농지세) 6,000원 이상 납부 실적자 1인(3,000원 이상 2명도 가함)



2. 단과대학 소개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대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의 요람으로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탐구하는 문학, 사학, 철학과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과 교육학의 융합을 통하여 시대적 소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비판적 성찰과 창의적 상상력 등 인문학적 통찰과 융합역량을 갖춘 미래 지향적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humanities.donga.ac.kr/humanities/Main.do
학장실 : 200-7100
행정지원실 : 200-7003~4 FAX : 200-7005 [승학캠퍼스]

❖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전화 : 200-7006 FAX : 200-701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philobioethics.donga.ac.kr/philobioethics/Main.do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는 모든 학문과 예술, 사상의 기초가 철학과 생명과학기술시대에 우리 사회가 절실히 요청하는 생명의료윤리학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기초학문으로서 철학에 대한 훈련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분야에서 남의 것을 모방하는 데는 잘하더라도 실제 창조적으로 새로운 학문과 예술 및 과학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요즈음 이런 한계를 절실히 깨달은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철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대학에서 철학교육의 강화, 고등학교에서 철학교육의 필수화, 사회적으로 철학 교육의 확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삶과 죽음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명의료윤리적 물음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의약품 산업 등의 발달로 인한 임상연구 및 인간대상 연구의 확대는 연구의 윤리적 기준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생명과학기술시대에 생명의료윤리학의 중요성 및 생명의료윤리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학과에서는 철학의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모든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교육방향을 철학전문가(철학자, 교사, 종교가) 양성, 법학전문가와 공무원 양성, 융합전문지식에 근거한 사회진출(기업체) 등으로 보다 구체화 시키고 있다. 더불어 생명의료윤리학을 특성화시켜 철학·윤리적 기초교육, 생명과학 및 의학 기초 지식 교육, 생명의료윤리 이론 및 전문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였고, 이를 통해 생명의료윤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전화 : 200-7060 FAX : 200-7069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history.donga.ac.kr/history/Main.do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구 사학과)은 전근대사 연구의 필수적인 기본 사료이자 민족의 귀중한 기록문화유산인 방대한 분량의 『고려사』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적으로 간행한 『역주 고려사』와 『국역 고려사』의 산실이다. 이런 학술적 역량에서 볼 수 있듯이 사학과에는 각 분야에서 실력 있는 교수들이 포진하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역사지식에 대한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다. 자주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열린 자세와 역사적 통찰력을 함양하고, 그 위에서 역사적 전문지식을 배양코자 한다. 역사교육은 한국사를 비롯하여 동양사, 서양사 등 세 갈래의 전공 교과과정을 기본 축으로 해서 여러 시대와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한 강의들로 진행된다. 역사교육의 목표달성에는 이런 교육과정의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도 중요시된다.

동아대학교 사학전공은 대학가에서 흔치 않게 역사 분야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어, 교사 지망생들은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988년 이래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교학협의회가 정기적으로 학과 내의 주요 문제를 논의해서 처리하는 데서 짐작되듯이, 학과의 분위기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나 선후배 사이에서나 대단히 민주적이고 인간적이다.

❖ 역사문화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

전화 : 200-7151 FAX : 200-7156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gomisa.donga.ac.kr/gomisa/Main.do

역사문화학부 고고미술사학전공(구 고고미술사학과)은 고고학과 미술사학 분야의 학문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과이다. 고고학은 인간의 숨결이 배여 있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미술사학은 회화·조각·공예·건축 등 인간이 만든 미술품의 역사와 문화를, 각각 연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학문이다. 고고학과 미술사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에 소장된 각종 유물과 기획전시, 콘텐츠 등에 관심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분야에 흥미를 지닌 학생에게 적합한 전공이다.

교육의 주안점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업무와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학년에 따라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 문화유적 필드워크 및 조사연구, 국내외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산의 수집·보존·관리·콘텐츠화, 박물관·미술관 인턴십 등 전문 지식과 체험을 교육한다. 이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능력을 갖춘 미래의 문화유산 전문인력(고고학도&미술사학도)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향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연구소, 문화유산 발굴전문기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유산감정관실 등 문화재 관련 전문분야, 그리고 지자체문화예술기관, 각종 문화산업 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한국어문학과

전화 : 200-7019 FAX : 200-7033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korean.donga.ac.kr/korean/Main.do

한국어문학과는 인문학에 대한 풍부한 소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안목을 지닌 한국어문학 연구자, 예술 분야의 창의적 인재, 지역문화 전문가를 양성한다.

첫째, 한국어와 한국 문학 및 문화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한다. 한국어와 한국 전통문화와 문학, 한국 현대 문학과 문화에 대한 기초 심화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인 전문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타 언어권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한국어문학 전문가를 양성한다.

둘째, 다양한 콘텐츠 생산 능력과 스토리텔링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언어와 문학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인문학적인 사유와 해석, 표현, 창작, 융합 활동을 유기적으로 견인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매개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셋째, 인문학의 생활화를 통해 인문학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 문화 전문가를 양성한다.

❖ 교육학과

전화 : 200-7074 FAX : 200-7087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ed.donga.ac.kr/ed/Main.do

교육학과는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도전하고 소통하는 창의 인재'를 바탕으로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장기적인 비전을 '인품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형 교육전문가 양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학과 비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육전문가 양성, 인성 및 품성을 갖춘 교육전문가 양성, 사회 및 교육현장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양성이라는 3대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핵심 역량을 교육전문가로서 교육 실천 연구 역량, 인간과 조직에 대한 이해 및 리더십 역량, 교육적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역량기반 교과 및 비교과를 운영한다.

교육학과의 비전과 목표, 핵심 역량을 위한 실천전략을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예비 교사의 교육현장 역량 강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수 역량 강화, 혁신적 학습 지원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설정하고 각 실천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16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교수, 교육행정가, 평생교육사, 교수설계 전문가, 이러닝 전문가, 기업교육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할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 아동학과

전화 : 200-7306 FAX : 200-7312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friend.donga.ac.kr/friend/Main.do

아동학과는 아동학, 유아교육학, 심리 및 상담 등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이 응용된 융합학문을 다루는 학과로 아동과 가족에 관한 폭넓은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영유아교육 및 보육, 상담 관련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심리 및 상담의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현장과 연계한 실습을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하여 전공 관련분야의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아동 및 청소년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아동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과학대학

튼튼한 기초과학 교육으로 첨단과학세계를 열어가는 자연과학대학은 각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진이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으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첨단장비를 갖춘 실험실, 기초과학 실험실습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과 연구를 가능케 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natural.donga.ac.kr/natural/Main.do
학장실 : 200-7200
행정지원실 : 200-7203~4 FAX : 200-7205 [승학캠퍼스]

❖ 정보수학과

전화 : 200-7206 FAX : 200-7217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math.donga.ac.kr/math/Main.do

자연과학과 공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기초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인 수학은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와 총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수학과는 수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수학 실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정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반도체학과

전화 : 200-7221 FAX : 200-7232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semiconductor.donga.ac.kr/semiconductor/Main.do

지난 수십년간 자연과학 지식으로 무장한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실용적 인재를 양성해 왔고 산업적인 수요에 따라 2021년부터는 반도체학과로 개편되었다. 반도체 학과는 반도체재료, 반도체공정, 반도체소자, 반도체모듈로 이어지는 반도체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학문분야로, 전통적인 학과 관점에서는 신소재분야, 반도체물리, 전자소자 분야들이 융합된 학문이다. 교수진의 높은 연구 역량과 외부 연구비 수주 증대로 인한 실험장비의 투자 증가는 재학생들의 학구열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학과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임교수들의 구성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재료부터 시스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분야를 연구하고 수업에서 활용할 장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었고, 특히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에너지분야까지 포함하는 범반도체 산업분야는 국내 총생산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학과는 재학생들에게 산업체 진출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줄 것이며, 대학원 진학에도 크게 유리할 것이다.

❖ 화학과

전화 : 200-7240 FAX : 200-7259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chem.donga.ac.kr/chem/Main.do

이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화합물과 저 화합물이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처럼 화학은 물질의 성분과 구조를 이해하고 물질 변화의 원리를 실험적,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중심 학문이다. 일상에 밀접하고 중요한 화학제품들, 정유, 반도체 등의 산업에 필수적인 화학 물질 등을 개발하는 전통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기능성 신소재 개발, 배터리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연구, 생화학 기술을 이용한 신약 개발, 물리화학적 원리를 응용한 나노 기술 등의 분야는 화학의 기본 지식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첨단 응용 분야이다. 이런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취업 분야나 범위도 다양하며,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전문 인력 충원 요구를 받고 있다. 화학전공에는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나노화학 등의 다양한 강좌가 실험 강좌와 함께 개설되어 있다. 동아대학교 화학과는 기능성 화학 재료(고분자, 에너지, 유기재료) 전문 분야 특성화 학과이다.

❖ 바이오메디컬학과

전화 : 200-7260 FAX : 200-7269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biomedical.donga.ac.kr/biomedical/Main.do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Next-generation sequencing), 초고해상도 현미경(Super- resolution microscopy) 등으로 대두되는 최첨단 분석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류는 생명과학 역사에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기초 생명현상 연구, 질병과 노화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되어 난치병의 예방과 치료제 개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바이오메디컬학과는 인간의 질병과 노화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기초 지식과 최신의 연구동향, 분석기술 등을 집중 교육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의생명과학자를 배양하기 위해 모든 교원이 합심하여 교육, 연구, 봉사에 임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은 정치, 경제, 행정, 언론 등 사회 제반 현상에 대한 연구와 탐구를 기반으로,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과 더불어 종합적인 사고력도 키우게 된다.

홈페이지 : https://socialscience.donga.ac.kr/socialscience/Main.do
학장실 : 200-8600
행정지원실 : 200-8603~4 FAX : 200-8602 [부민캠퍼스]

❖ 정치사회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전화 : 200-8605 FAX : 200-8606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political.donga.ac.kr/political/Main.do

정치외교학은 권력비판의 학문이며, 동시에 사회경영의 학문이다.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정치외교학은 학생들이 정치사회에 대한 예리한 분석력, 정확한 판단력, 냉철한 비판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현실정치와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함양하여 현실정치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특히 학과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정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신설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역 차원의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재학 중에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역 정당정치, 선거캠페인, 시민사회운동 등에 대한 자발적 지원활동, 인턴활동 등을 통해 현장의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졸업 후에는 학과에서 배운 정치 지식과 재학 중에 현장실습 경험들을 토대로 지역 정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한다.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는 지역 정치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중앙, 지역정치에의 참여



이외에 일반기업, 언론사, 공공기관 등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매우 다양하다.

❖ 정치사회학부 사회학전공

전화 : 200-8638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sociology.donga.ac.kr/sociology/Main.do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말은 사회학이 펼쳐가는 연구세계의 에너지원입니다. 생활의 친숙한 과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시켜 생각함으로써 그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 사회학은 그러한 학문적 모험심으로 시작되는 종합 학문입니다. 문화, 사회구조와 개인간의 관계, 성과 결혼, 가족, 집단과 조직, 의사소통과 미디어, 일과 직업, 인구현상, 도시와 공간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이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인간의 복잡한 사회현실 속에서 기본질서와 변화를 탐구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학 연구활동의 중심 축입니다. 특히 정보화사회, 탈산업사회로의 변동과 이러한 변동에 따른 현대사회의 각종 사회문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은 사회학이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 가장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에 호기심이 많고, 여러 사회문제들을 개방적인 자세로 탐구할 수 있는 학생,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적인 사고 성향을 가진 학생이라면 사회학을 공부하기에 적합합니다.

❖ 행정학과

전화 : 200-8628 FAX : 246-0610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padmin.donga.ac.kr/padmin/Main.do

행정학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조직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관리문제에 대하여 공부하는 학문이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집행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정책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국가의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환경요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집행되므로 행정학은 정치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등 인접학문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정책문제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조직,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므로 이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조직론, 인사행정론 그리고 재무행정론에서 다루게 된다.

오늘날 국가의 행정은 각 분야별로 많은 세부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행정학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분야를 개별적으로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 디지털 전환시대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및 전자정부를 연구하는 행정정보론을 배우며, 세계화 시대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정부조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정부개혁론 및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등의 세부적인 영역도 다루게 된다. 따라서 행정학과에서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조직의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시키고, 단기적으로

는 취업 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 사회복지학과

전화 : 200-8666 FAX : 200-8667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socialwelfare.donga.ac.kr/sosowel/Main.do

사회복지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도·행정·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이러한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가치·이론·실천기술을 겸비한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사회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전화 : 200-8645 FAX : 200-8693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comm.donga.ac.kr/comm/Main.do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구현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방송, 신문, 광고, PR, 온라인미디어, 실감미디어 등 미디어 콘텐츠 기획과 제작 기법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실무적으로 훈련을 쌓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창출하는 현실에서 정보를 가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론과 실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전공의 특성상 신문과 방송, 광고, PR, 온라인 미디어, 실감미디어 등 현장에서 다년간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은 교수진이 풍부하면서도 생생한 지식을 전하고 있다.

❖ 경제학과

전화 : 200-8615 FAX : 241-4254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decon.donga.ac.kr/decon/Main.do

경제학은 사회과학분야 중에서 엄밀한 논리성과 합리성으로 유일하게 노벨상이 수여되고 있는 학문이다. 한마디로 '경제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제학은 제한된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사



회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연구한다. 본 학과에서는 경제학 세미나를 폭넓게 개설하고 있어 경제문제를 토픽별로 토론하고 연구, 발표할 수 있는 실용경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문제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지닌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는 학문이며, 특히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여러 학문 중에서 가장 과학성이 높다는 사실을 토대로 해 볼 때 사회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 정리할 수 있는 능력과 수학적 모형을 응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 경찰학과

전화 : 200-8670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police.donga.ac.kr/police/Main.do

경찰학과는 형사사법 및 공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경찰학, 범죄학, 형사법, 범죄심리 등 범죄문제를 이해하고 범죄에 대한 공식적 대응 기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법학개론, 헌법, 행정법 등 국가통치의 근간이 되는 법령체계를 익히고, 경찰무도, 체포술, 응급처치론 등의 실습과목을 학습한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폭넓게 운영하여 형사사법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여러 형사사법기관과 공공안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갖출 수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발견하고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영대학

경영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4차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상호협력적이며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전문 글로벌 경영인재(DAUist)'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약, 비상 그리고 다우이스트(Jump Up, Fly High, Be DAUist)]라는 슬로건 하에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DAUist: Dong-A University Interactive Solution-focus Thinker

홈페이지 : https://dauist.donga.ac.kr/dauist/Main.do
학장실 : 200-7400
행정지원실 : 200-7402~4 FAX : 200-7405 [부민캠퍼스]

❖ 경영학과

전화 : 200-7406, 7489 FAX : 200-7423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bus.donga.ac.kr/bus/Main.do

경영학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기업을 스스로 창업하여 운영해보고 싶거나, 공인회계사가 되어 기업의 회계감사를 하기를 원하거나, 경영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학자나 연구소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문분야이다. 경영학과 교과과정은 다섯 개의 세부전공 분야와 기업법 등 공통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야는 인사조직, 마케팅, 운영관리, 재무, 회계이다.
특히 우리대학 경영학과에서는 경영학교육이 이론 위주의 교육에 치우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영학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대학 경영학과는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켜 경영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에서 손 꼽을 수 있는 학과라고 할 수 있다.

❖ 관광경영학과

전화 : 200-7426, 7490 FAX : 200-7435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dongatourism.donga.ac.kr/dongatourism/Main.do

관광경영학은 여행사, 항공사, 호텔, 외식, 카지노, 컨벤션, 관광개발 등의 산업에 종사할 도전과 열정을 가진 관광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문이다. 관광경영학과 교과과정은 다양한 관광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영학 관련 기초과목과 관광 및 환대산업 관련 전공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맞는 관광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어 및 해외관광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관련 학습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국제무역학과

전화 : 200-7436~7 FAX : 200-7446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trade.donga.ac.kr/trade/Main.do

국제무역학과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경제, 국제경영, 그리고 무역실무(무역절차 및 무역관계법 등)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경제와 국제경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상품과 자본의 국가간 이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진출 후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영정보학과

전화 : 200-7463, 7474 FAX : 200-7481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mis.donga.ac.kr/mis/Main.do



경영정보학과는 기업 경영 활동에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기업의 디지털 경영 혁신을 선도하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공 교과과정을 데이터 사이언스 모듈과 디지털 비즈니스 모듈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핵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금융학과

전화 : 200-8661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finance.donga.ac.kr/finance/Main.do

오늘날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전에 없는 속도로 급변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전통적인 데이터 기반능력, 디지털 금융 전문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융합형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금융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금융의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최신 디지털 금융 역량을 겸비한 융합형 금융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학과에는 금융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경제학 이론 위에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기관경영, 현물 및 파생 금융상품, 부동산 금융 등 전통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깊이 있게 다룬다.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 기법과 ESG 금융, 디지털 자산 등 미래 금융시장의 핵심 트렌드에 대해서 학습한다.

❖ 지식서비스경영학과

전화 : 200-7496 FAX : 200-7470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kno.donga.ac.kr/kno/Main.do

지식서비스경영학과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의 학과로 제조 및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 종사자의 기본자세 함양 및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관리자의 직무향상과 경영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학과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 융합경영학과

전화 : 200-8036~7 FAX : 200-7470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ibm.donga.ac.kr/ibm/Main.do

융합경영학과(Department of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는 경영 및 경제 지식을 바탕으

로 다양한 산업분야(경영학, 관광경영학, 국제무역학 및 경영정보학)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양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는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2021학년도에 개설된 융합경영학과는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전공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하고, 범 세계시민 의식의 제고를 학과의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생명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창발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 육성과 연구를 목표로 한다. 생명자원과학대학의 교육 및 연구는 분자유전공학, 미생물/소동물/식물 생명공학, 식품생명공학, AI 연계 바이오자원 생산, 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환경과학 등의 분야를 포괄하며 학제간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대학은 인류의 미래를 주도하는 식량, 식품, 생명, 환경 등에 관한 핵심학문인 생명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탐구능력과 글로벌 무대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 도전과 지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nrls.donga.ac.kr/nrls/Main.do
학장실 : 200-7500
행정지원실 : 200-7503~4 FAX : 200-7905 [승학캠퍼스]

❖ 바이오소재공학과

전화 : 200-7598 FAX : 200-790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mge.donga.ac.kr/mge/Main.do

분자 수준의 다양하고 새로운 생명현상을 탐구하며 얻은 기초 지식과 유전자편집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적 도구를 접목하여 식량 및 환경문제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성 식의약품의 개발과 질병의 분자적 진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첨단과학기술 함양을 목표로 한다. 우리 학과의 교육목표는 (1) 학문적 소양과 함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인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태도를 함양하고 (2) 생명현상을 분자적, 생화학적, 유전(체)학적, 후성유전학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 원리를 생명공학적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감염병 및 유전병에 대한 분자진단 기술의 기초 및 분석 능력 등 생명과학의 기초와 더불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응용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 응용생물공학과

전화 : 200-7595 FAX : 200-790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appbio.donga.ac.kr/appbio/Main.do

응용생물공학과는 생명공학 관련학문을 연구하며, 이를 응용하여 생물산업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첨단분야의 학과이다. 세부적으로는 생명공학의 기반인 유전자에서 출발하여 식물병을 포함한 식물과 미생물의 생명공학적 연구, 곤충을 포함한 소동물의 생명공학적 연구, 농약학을 포함한 생물환경공학적 연구 등에 관련된 학문을 다룬다. 이러한 응용생물공학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연구분야이며, 최근 급속하게 대두되고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을 응용하여 생물공학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응용생물공학과는 다양하고 심도있게 생명공학 관련 학문을 연구개발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 예로 '졸업 후 진로'에서 볼 수 있듯이 응용생물공학과 출신자들은 생명공학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응용생물공학과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생물에서 우리 인간까지' 아울러 '유전자에서 생명산업까지'의 과정 중 어떠한 분야에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흥미롭게 공부하고 성취할 수 있다.

❖ 식품생명공학과

전화 : 200-7596 FAX : 200-790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fbiotech.donga.ac.kr/fbiotech/Main.do

식품생명공학과는 식품, 의약품, 생물산업 및 농업 등과 관련된 학문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학과이다. 본 학과는 식품 산업 분야의 응용학문인 식품가공학, 기능성식품학, 발효 및 효소공학, 식품안전학, 식품미생물학 다섯 분야를 특화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다룸으로써 건강한 인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식품생명공학은 미래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식품공학, 생명공학, 미생물학, 화학 등을 모두 응용하는 첨단 과학으로 21세기 국가기술발전의 주요 핵심산업기술 분야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식품생명공학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식품의 가공, 생물공정기술, 기능성 식품소재 식품 안전성 평가, 식품 미생물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한 전공분야이다.

❖ 스마트그린자원학과

전화 : 200-7590 FAX : 200-790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liferes.donga.ac.kr/liferes/Main.do

스마트그린자원학과는 식물을 포함한 생명자원의 효율적 생산, 이를 활용한 바이오 기능성 식품·의약소재 탐구, 스마트팜 재배 산업화, 친환경 시스템 구축과 인공지능·ICT 기반 자동화로 생명자원의 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이론과 응용기술을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본 학과는 미래선도 고부가가치 생명자원을 개발하고 대사체 농업 구현의 정밀생산과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종자산업 육성, 기능성 규명, 스마트팜 적용 인공지능·ICT 및 환경 시스템 구축 관련 미래선도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에 맞추어 생명자원 실용화와 상용화를 위한 작물생리, 종자생산·육종, 성분분석, 유용성 규명 등 특화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적용한 스마트팜 및 인공지능·ICT 기술, 환경 최적화 적용으로 생명자원 정밀생산 및 산업화에 효율적으로 사회진출 가능한 지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

첨단과학기술 시대를 이끌고 나갈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공학기술 연구의 요람인 공과대학은 1955년 이래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첨단 공학기술을 다루는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성장했다. 또한 이론적인 기술연구 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기업의 공동 산학연구의 장으로 활발한 교류 및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engineering.donga.ac.kr/engineering/Main.do
학장실 : 200-7600
행정지원실 : 200-7603~5 FAX : 200-7799 [승학캠퍼스]

❖ 건축공학과

전화 : 200-7606 FAX : 200-7616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archi.donga.ac.kr/archi/Main.do

건축공학과의 특성은 첫째 창조적 학문, 둘째 실용적 학문, 셋째 전문적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창조적 학문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용적 학문이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적 학문이란 오랜 역사를 가진 건축물만큼 이들을 창조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교육은 디자인 중심의 건축학 및 공학 중심의 건축공학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학은 대지 위에 무엇을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디자인과 관련된 소양을 배우는 건축디자인 중심의 학문으로서 5년제 교육과정을 이수 후 건축설계, 인테리어 사무소 등에서 건축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건축공학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설계된 건축물이 안전하게 시공되며, 합리적으로 유지관리 되기 위한 공학적 소양을 배우는 학문으로서, 시공, 구조, 재료, 환경, 설비 등을 배우게 됩니다. 졸업 후 종합건설회사, 전문 시공기업, 엔지니어링 사무소, 건물 유지 관리 기업 등에



취업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학과 교육은 건축 기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기술인의 양성과 국제적 협약에 따른 국가 상호간 인정기술사 양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건축공학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위한 학문 체득, 건축 지도자적 인격의 도야를 위한 체험적 훈련, 합리적 사고능력의 함양을 위한 과학적 교육기반의 마련 및 국제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건축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4개의 건축공학 분야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먼저 건축공학설계는 건축디자인과 소통하는 교육을 받고, 특히 건축분야 주요한 이슈인 친환경 설계에 대한 지식의 확보 및 이와 연관된 건물의 주요 디테일을 직접 설계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건축구조분야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구조해석, 구조설계)를 배우는 공학적 교육 분야입니다. 그리고 시공 재료 분야는 설계된 건물이 합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공방법 및 재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건설관리 및 경영 등 제반 전문 지식에 대해 교육 받습니다. 건축환경 및 설비는 열, 빛, 음, 실내공기 환경 등 실내 공간에서 인간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물의 물리적 성능뿐만 아니라 공기조화 시스템의 계획 및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 지식에 대해 교육받게 됩니다.

❖ 도시공학과

전화 : 200-7662 FAX : 200-7670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urban.donga.ac.kr/urban/Main.do

도시공학과는 삶의 공간인 국토 및 도시지역에 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1965년 3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 관련 학과로 설립되었다. 본 학과는 국토공간과 도시·지역차원의 인간정주공간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규명·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과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공학, 인문사회학, 도시설계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련 학문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 학문 간의 융·복합을 통해 형성되는 전문기술을 습득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도시공학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도심 쇠퇴, 정보화 시대 및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스마트 도시계획,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공간정보분석을 위한 GIS, 새로운 교통시스템인 ITS 등, 새로운 국토·도시관리체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문분야를 주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 건설시스템공학과

전화 : 200-7620 FAX : 201-1419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civil.donga.ac.kr/civil/Main.do

건설시스템공학과는 인간의 사회 및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교량, 환경시설물, 플랜트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지식체계를 제공한다.

단순한 이론과 실험 교육을 통한 전통적인 학문분야의 지식과 건설기술을 전수하는데 제한하지 않고, 건설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스마트건설기술과 스마트시티 개발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유치 및 교육과정 반영을 통해 새로운 건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중앙 및 지자체 건설사업 발주 부서의 공무원, 건설 유관 공기업, 시공 및 설계사, 그리고 정부산하 건설 연구소와 같이 관산학연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우수한 학과의 취업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 환경·에너지공학부 환경안전전공

전화 : 200-7674 FAX : 200-7683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envu.donga.ac.kr/envu/Main.do

환경·에너지공학부 환경안전전공은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환경오염의 원인, 현황, 예방, 대책 등을 연구한다. 따라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제어는 물론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대기, 수질관리, 수자원 재이용, 토양·환경보전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대해 공부한다. 나아가 전반적인 환경안전 시스템을 구성하여 보다 나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다룬다. 그래서 이에 관심 및 호기심을 가진 학생이 공부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지구환경 보전기술, 녹색환경 기술, 신재생에너지, 사후처리기술, 사전예방기술 등을 포함한 현장위주의 실제 기술들도 현장견학 및 실습과 함께 배우게 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환경 분야에 체계적인 연구를 희망하거나. 산업체 기술인 및 환경관리자로서 환경 및 안전 분야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문이다.

❖ 환경 · 에너지공학부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전화 : 200-7763 FAX : 200-7771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donga.dsso.kr/

미래 지향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환경·에너지공학부 미래에너지공학전공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전통에너지 탐사, 개발, 생산, 처리, 경제에 관한 교육과 아울러 에너지분야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구비한 전문엔지니어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개발인력양성 특성화대학”으로의 선정을 계기로 우수학생 유치, 교수진 확충, 교육프로그램 개편,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하여 획기적인 학과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전기공학과

전화 : 200-7732 FAX : 200-7743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electrical.donga.ac.kr/electrical/Main.do

전기공학과는 50년이 넘는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 및 미래 사회의 근간인 전기에너지에 대한 기초이론과 응용기술을 함께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전공 분야는 전기에너지의 공급과 수급을 위한 전력시스템 분야, 산업체의 원동력인 전동기 설계 및 제어 분야,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어 및 변환하는 전력전자 분야, 전기전자설비 및 로봇을 위한 제어시스템 분야 그리고 차세대 전기전자기기 및 센서 개발을 위한 전기재료 분야로 구분된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핵심기술(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역량까지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전기공학과의 교육목표는 전기공학 분야의 기초이론과 응용기술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기술 개발능력, 설계능력, 실무능력 및 의사전달능력 등을 갖춘 전문 기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수학, 기초과학, 전공기초이론을 토대로 공학적 분석과 이해력 및 평생학습능력을 기르고 그 후 관련 전공심화지식을 통하여 설계능력, 공학적 문제 인식 및 창의적 해결능력을 기른다. 또한, 팀별 실험실습의 계획 및 수행을 바탕으로 팀 구성원간의 협력을 통한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전공이론의 실무현장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취득 가능 자격증 - [기사 및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정보통신, 철도신호, 통신선로, 공업계측제어,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등

❖ 전자공학과

전화 : 200-7701 FAX : 200-7712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ee.donga.ac.kr/ee/Main.do

전자공학과는 “나노기술 및 전자부품(반도체, LCD, OLED, VLSI, ASIC)”, 신호처리(영상통신,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정보통신)“, ”통신(통신시스템, 통신프로토콜, 통신네트워크, 안테나, RF소자, IoT)“, ”제어(산업로봇, 지능로봇, 인공지능)“ 등의 전자공학 분야에 필요한 기초 이론과 핵심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재에게 요구되는 설계능력, 실무능력 및 의사전달 능력 등 다방면의 능력을 소유한 산업체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전자공학과에서는 국가 산업과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며, 산업현장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선구적인 전문인, 교양과 올바른 품성을 갖춘 진취적인 지성인, 첨단 기초 및 응용기술에 선도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공학과에서는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공학교육인증 과정을 도입하여 더욱 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 기계공학과

전화 : 200-7659, 7635 FAX : 200-7656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mech.donga.ac.kr/mech/Main.do

기계공학과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약 반세기 동안 창의적인 기술인을 만들고 지역사회 및 국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혁신의 주역을 길러낸다는 설립 당시의 교육목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공학과는 국가 산업 및 지역 산업 발전과 동향에 따라 교과 및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기계공학과는 설립 후 지금까지 지역 산업과 국가 산업에 맞춤형 인재와 산업 역군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현재 부산 경남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계공학은 모든 산업에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학생의 취업기회는 국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선택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 산업경영공학과

전화 : 200-7686 FAX : 200-7697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ie.donga.ac.kr/ie/Main.do

다양한 산업 분야(제조업·첨단산업·금융업·서비스업 등)에서 요구되는 과학적 방법론을 습득하고, 기업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경영과학, 생산관리, 품질경영, 인간공학, 정보기술, 물류관리 등의 산업경영공학의 주요 지식과 소양을 갖춘 경영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융합과 창조의 시대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첨단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오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 조선해양공학과

전화 : 200-7787 FAX : 200-779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naoe.donga.ac.kr/naoe/Main.do

본 학과는 조선/해양 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친환경/스마트 선박 및 해양플랜트 시스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 육성과 세계 최고의 기술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조선/해양 산업은 조선뿐만 아니라 IT, 기계, 전기, 제어, 화공 등 여러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제품을 설계/개발하는 핵심 융합 산업이며, 관련 산업체로는 조선소, 기자재, 선급,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산업은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위치를 지켜왔으며, 스마트 무인 선박 등 많은 신개념의 선박을 꾸준히 개발/설계하면서 미래에도 세계 1위의 위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4차 산업 융합기술을 편성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 중심의 융합형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산업체와 긴밀한 협



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화학공학과

전화 : 200-7717 FAX : 200-7728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dache.donga.ac.kr/dache/Main.do

화학공학은 미래 지식 화학 산업인 화학공정, 화공재료, 나노공학,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 분야 관련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고급 화공엔지니어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화학공학 관련 대표적인 산업 분야로는 석유화학·정유, 정밀화학, 고분자재료, 에너지전환 및 저장, 반도체 소재·공정, 페인트 및 도료, 의약품, 나노·복합재료,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및 전기전자 소재·부품, 신발·피혁, 조선기자재 부품, 로봇, 환경, 바이오 산업 등으로 화학공학은 다기능 첨단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응용범위가 넓은 미래 지향적 학문이다. 화학공학 관련 산업 현장과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 학과에서는 핵심이론 및 실험실습을 포함한 양질의 교과과정과 우수한 교수진 갖추고 있으며, 기초과학, 공학적 이론, 다양한 실험실습 교육과정과 교수 연구분야와 연계한 첨단분야 연구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이론학습과 더불어 실무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장차 우리나라의 화학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소재공학과

전화 : 200-7747 FAX : 200-7759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mse.donga.ac.kr/mse/Main.do

신소재공학이란 소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그 소재의 성능을 원하는 수준까지 발현시키고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학문이다. 소재가 활용되는 다양한 학문 및 산업 분야로의 넓은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학문의 대상도 기존에 없었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소재 개발에서부터 기존 소재의 성능 개선 및 향상까지 아우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재료의 기초물성에 대한 파악 및 제어기술, 고성능 발휘를 위한 재료 설계기술, 고성능 소재의 첨단 제조기술 등이 필요할 것이다.

신소재공학과의 교과과정은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전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년별, 난이도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입생을 위해서는 인성을 갖춘 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양 교과목과 함께 4차 산업혁명형 인재에게는 필수적인 융합형 컴퓨터 활용능력 및 코딩 교과목이 제공되며, 이와 더불어 신소재 공학 전공과목 이수를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수학, 물리, 화학뿐만 아니라 신소재공학을 소개하는 도입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2학년부터는 소재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이러한 소재 특성의 제어에 관련된 전공 교과목을 학습하게 되며 각 교과목은 관련성과 난이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전공 교과목의 이론적 내용을 관련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공학 실험과목을 통하여 공학적 지식을 체득하게 되며 신소재 종합설계 교과목에서는 학습한 이론을

이용하여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제품까지 제작해 보는 기회를 접할 수 있다.

디자인환경대학

디자인환경대학은 미래의 창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디자인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교육·연구의 마당으로서, 창의사회가 요구하는 디자인과 공간환경의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합형 디자인대학"이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환경대학은 다양한 학문의 연계와 융합을 시도하고, 미래의 창의적 디자이너를 생산해내기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삶의 터전인 도시, 환경, 생활, 커뮤니티 디자인 및 공학 기술을 통합하는 융복합형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선도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도시 건축 환경의 창출과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미래의 디자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de.donga.ac.kr/de/Main.do
학장실 : 200-5900
행정지원실 : 200-5902~3 FAX : 200-5905 [승학캠퍼스]

❖ 건축학과

전화 : 200-7618 FAX : 200-5562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arch.donga.ac.kr/arch/Main.do

건축학과는 건축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등록 건축사가 되기 위한 최소 교육요건으로 필요한 건축학 교육 전문 학위 과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에서 시행하는 건축학 교육 인증제도의 최고등급을 계속 유지(4차 인증 실시 통과)하고 있다. 건축학과에서는 국제 건축교육제도에 부합하는 건축학전공 5년제와 함께 디자인 교육으로 특화된 실내건축디자인 전공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진다. 건축학과의 특성은 첫째 인문적 소양을 겸비한 지역사회 선도능력, 둘째 형장에 충실한 통합적 실무능력, 셋째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국제화 능력, 마지막으로 융합적 사고와 디자인 능력이다.

· 인문적 소양을 겸비한 지역사회 선도능력
- 역사와 현재의 사회문화적 이해를 토대로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고, 건축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다.

· 현장에 충실한 통합적 실무능력



- 시대적 조류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현장에서 전문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 통합능력을 배양한다.

·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국제화 능력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 경험으로 국제화되어 가는 건축 환경에 대응하는 실무 감각과 국제화 시대에서 대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식기반을 구축한다.

· 융합적 사고와 디자인 능력
- 기술발전에 의해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은 기존 산업과의 융합으로 새롭고 다양한 영역이 창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건축을 중심으로 디자인과 융합하는 사고와 능력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건축학의 교과과정은 국제적인 건축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설계의 능력, 실무의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학 교육과정에 필요한 역량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적 소양
2) 지역사회 선도
3) 현장에 충실한 실무
4) 통합능력
5) 다양한 문화의 이해
6) 국제화 대처
7) 다양한 분야의 융합
8) 종합적인 디자인 능력

위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양과목을 기초로 건축학전공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건축사, 건축이론 등의 교과목을 통하여 건축의 역사, 문화분야의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고, 건축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실무적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건축계획, 건축환경,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축설비에 관한 체계적 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분야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건축설계 스튜디오, 실내건축 스튜디오, 디지털 디자인 등 디자인분야는 물론 도시와 조경 등의 폭넓고 다양한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 산업디자인학과

전화 : 200-7980 FAX : 200-7981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design.donga.ac.kr/

산업디자인학과는 현대 사회의 인간 생활과 발전에 요구되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을 창의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목표를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예술과 공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에 기반을 둔 융합적 디자인 사고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가 요구하는 다양한 디자인 수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고급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학과는 이와 같은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1978년 학과가 개설된 이래 30여 년의 시간동안 수 많은 디자인 인재들을 배출해 왔으며 다양한 역량을 갖춘 교수와 강사진의 노력으로 부산·경남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분야 선도 학과로 발전해왔다. 특히 디자인이라는 학문의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실기와 실습 그리고 기업체와의 산학협동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 문화를 창조하는 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최고의 디자인 학과임을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2011년도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에 부산·경남지역 대학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선정됨으로써 널리 인정받았으며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자체 노력을 기반으로 디자인과 건축, 패션, 조경 분야를 통합한 '융합형 디자인 교육'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과 이를 통한 융합적 디자인 인재 양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패션디자인학과

전화 : 200-7328 FAX : 200-733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dauf.donga.ac.kr

패션디자인학과는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융합형 디자인 교육을 통하여 패션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형 종합적 실무능력을 배양을 위한 글로벌 패션디자인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기초 전공교과과정에서는 조형실습, 디자인과 문화 및 디지털 메타 그래픽 스튜디오 등 융합 학문으로써의 디자인에 대한 이론과 실습의 균형을 갖춘 전공 교과내용으로 구성하며, 심화 전공교과를 통해 패션 산업 주요 직무 영역을 기반으로 한 세부교육영역별 전공 이론 및 실무 실습을 본격화한다. 세부교육영역별 교육 내용은 문화사 및 디자인, 소재, 의복구성, 마케팅, 리테일 머천다이징 및 패션테크놀로지 분야로 세분화하며, 교육영역에 따라 인문학, 경영학, 공학 등의 유관 학문분야를 포함하는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현장밀착형 실무 학습을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스튜디오 교과목을 운영함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문제해결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T융합 패션 기술 관련 교과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 패션 전문인을 육성하고자 한다. 여기에 창의 및 통섭형 교과목인 융합디자인프로젝트와 산학협력 프로젝트 교과목인 패션산업과 캡스톤디자인, 취업연계를 목표로 한 현장실습 교과목을 필수교과로 지정하는 등 현장밀착형 패션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 조경학과

전화 : 200-7571 FAX : 200-7572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la.donga.ac.kr/

조경(造景)이란 '造' 만들다. '景' 경치, 풍경. '경치, 풍경을 만들다'이다. 조경학은 말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주위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초적인 학문이다.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연구, 계획, 설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예술적 원리와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전문분야이기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도시환경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조경전문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조경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분야는 단독주택, 아파트에서부터 병원, 호텔, 고속도로, 공원, 문화재, 박람회장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조경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조경분야는 도시개발이나 천재지변에 의해 훼손된 산림지역, 도시하천지역, 고속도로변 절개사면 등을 생태적으로 회복시키는 생태복원사업을 통하여 우리국토를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재생하는 다양한 조경디자인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21세기를 이끌 새로운 조경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계획과 설계분야에서 드론과 컴퓨터를 활용한 지리정보분석(GIS)과 컴퓨터 그래픽 설계(CAD, Photoshop, Illustrator)가 기존의 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21학년도부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회복 및 수목보호 등의 조경관리 분야에 특화된 학과로 성장하고 있다.

예술체육대학

예술 및 체육은 경제와 사회를 복합적으로 접근하므로 그 범위는 매우 광대하다. 예술과 체육을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서는 한가지의 전공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적인 학습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술체육대학은 융·복합적 학문 기초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국민의 정서함양과 건강복지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홈페이지 : https://cas.donga.ac.kr/cas/Main.do
학장실 : 200-7800
행정지원실(체육계열) : 200-7802~4 FAX : 200-7805 [승학캠퍼스]
행정지원실(예능계열) : 200-1702~3 FAX : 200-1705 [승학캠퍼스]

❖ 미술학과

전화 : 200-1730, 1740 FAX : 200-170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arts.donga.ac.kr/arts/Main.do

미술학과의 교육목표는 21세기 한국문화예술의 다각화된 흐름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예술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대미술, 웹툰·애니메이션, 도자예술 및 목가구 전공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첫 번째, 현대미술 전공은 현대사회의 주도적인 흐름인 융·복합 패러다임을 학습커리큘럼에 적용해 세분화되어 있던, 이미 평면조형과 공간 조형으로 재편해 회화(한국화, 서양화)와 조각이라는 전통적인 장르를 통섭한 매체조형실습 및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

두 번째, 영상예술(웹툰·애니메이션)전공은 디지털 패러다임을 선도할 영상예술인 양성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2D애니메이션과 3D애니메이션 제작에서부터 웹 콘텐츠의 다양한 정규교과와 뉴테크놀로지를 결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 번째, 목조형가구 전공은 21세기 국제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코자 전통과 과학기술을 융합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목가구와 인테리어 분야의 문화산업과 연동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네 번째, 도자예술 전공은 우리나라 전통 도자를 기반으로 21세기 공예예술을 주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체계화된 정규 교과목을 기반으로 문화 산업적인 도자공예와 예술적인 조형도자 분야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한다.

❖ 음악학과

전화 : 200-1758, 1760 FAX : 200-170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music.donga.ac.kr/music/Main.do

동아대학교 음악학과는 1966년 12월에 부산 경남 최초의 음악과로 시작하여 현재의 음악학과의 틀을 갖추기까지 무수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본 학과는 예술적 표현력과 창의력 및 기술을 갖춘 '음악전문인 양성', 음악교육계 및 사회에 봉사하는 인격과 지식을 갖춘 '음악교육자 양성', 대중매체를 비롯한 음악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대중음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실용음악 두 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진 음악학과는 상호 화합하여 다양한 색채를 가진 학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전공의 세부전공으로는 피아노, 관현악, 성악이 있으며 실용음악전공에는 보컬, 재즈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색소폰, 실용작곡으로 세부전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음악시장에서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적인 음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음악학과는 실기 위주의 전공과목들과 음악 전반에 걸친 안목을 갖출 수 있는 이론과목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육학과

전화 : 200-7806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pe.donga.ac.kr/pe/Main.do

체육학과는 체육지도자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 및 교육을 위한 기본 분야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맞는 전문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운동과학과 스포츠산업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학과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우수한 중등 교원 양성과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체육학 영역의 심화 교육의 특성을 가진다. 둘째,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체육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트레이너 및 스포츠마케터 실습 교육의 특성을 가진다. 셋째, 세계적인 체육학의 담론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응용 발전시키고 체육의 과학화를 위한 실험 및 실습 강화를 통해 연구자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화된 교육을 통하여 일반적인 체육교육의 주된 대상인 기존의 제도권 내의 체육만을 주체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의 신체교육 즉, 엘리트 체육, 레저, 특수체육, 보건 및 건강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폭넓은 분야에서의 체육의 역할과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한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인접학문 (의학, 심리학, 공학, 경영학, 보건학, 사회학, 철학)과의 융합, 그리고 다양성 등을 수용함으로써 응용학문으로서의 체육학의 영역과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한 체육학의 전문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세계화 시대의 교육 확립, 고도 산업사회의 지식과 기술 강화, 그리고 인간존중의 가치관 확립이라는 동아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수용하여 체육학과의 세계화, 과학화, 그리고 실용화를 지향하기 위한 특성이다.

❖ 태권도학과

전화 : 200-7856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taekwondo.donga.ac.kr/taekwondo/Main.do

태권도학과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용적 교과과정을 중요시하여 최첨단 차별화된 융합된 교과목을 3대 취업진로 방향으로 획기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는 Master Course로 사범, 코치, 감독, 교사, 교수로 육성되는 분야이고, 둘째는 Official Course로 군인, 경찰, 소방, 에스원, 트레이너, 국정원, 기업체 등 분야이며, 셋째는 Business Course로 태권도를 통한 도장경영, 회원 수가 2000명이 넘는 프랜차이즈태권도장 등 분야 진출에 자신의 취업진로 방향을 1학년부터 결정하여 4학년 취업현장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태권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아메리카,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 지역 특히, 호찌민, 방콕, 싱가포르, 마닐라 등을 중심으로 파견할 태권도 전문분야별 학생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

이 인재양성은 좀 더 세분화하여 3분야로 육성되고 있는데, 그 3분야는 겨루기 선수단과 시범단, 품새단의 구성이다. 이 구성에 의해 수련되어 선수단은 올림픽에서 김제경과 문대성 선수 2명의 금메달

리스트와 김태훈 선수 1명의 동메달리스트를 배출하였으며, 세계선수권대회와 국내 등 각종 대회에서 상위의 성적을 내었고, 시범단은 탁월한 시범을 통해 국내외에서 파워풀한 태권도의 위상을 알리고 있으며, 품새단 또한 아시아 대학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김현덕 선수를 비롯한 학생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어 한강 이남의 최고의 명문 태권도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강과학대학

가속화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심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대되는 건강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 및 특성화 연구를 목표로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 시대에 대비하여 의약학, 식품영양학, 건강관리학 등의 융합 특성화를 통하여 뉴노멀시대 헬스케어와 현대인의 웰빙을 선도할 건강과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다학제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 https://healthscience.donga.ac.kr/healthscience/Main.do
학장실 : 200-7900
행정지원실 : 200-7902~3 FAX : 200-7905 [승학캠퍼스]

❖ 식품영양학과

전화 : 200-7317, 7514 FAX : 200-790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foodscience.donga.ac.kr/foodscience/Main.do

부산지역 최초 영양사교육과정평가인증을 획득한 식품영양학과는 인간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영양의 균형, 양질의 식품 및 식품소재, 식품안전성, 수준 높은 급식경영 교육을 실시하여 높은 삶의 질 지향을 위한 학문연구와 그의 실천 및 응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식품영양학 분야의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다.

❖ 의약생명공학과

전화 : 200-7561 FAX : 200-790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medicinal.donga.ac.kr/medicinal/Main.do



의약생명공학과는 의학과 생명공학의 융합을 통해 수명 연장과 치료제 개발에 관련된 여구 및 개발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과이다.
의약생명공학과에서는 주로 바이오테크놀로지, 약리학, 세포생물학, 유기화학 등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합성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 관련 지식을 배우고 연구한다.
의약생명공학과 설립목적은 첨단 지식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과 치료법을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제약 및 생명공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적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의학과 생명공학의 융합연구를 선도하고 의약품 개발 관련 선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 건강관리학과

전화 : 200-7528 FAX : 200-790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donga.ac.kr/smarthealthcare/Main.do

건강관리학과는 국민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21세기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헬스케어 시대에 적합한 선도형 건강운동관리 전문가와 보건의료정보 분석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학과이다. 건강관리학과는 운동의과학, 스마트헬스케어,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다양한 실험 및 현장실습 기반의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건강장수시대를 열어갈 융합교육 및 특성화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동아시아의 중심 학과로 도약하고자 한다.

의과대학

의과대학은 미래 보건전문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식과 술기를 포함하여 의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해 인간에 대한 존중의 태도, 소통 역량, 연구 자세를 갖추며, 지역 사회와 인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료인으로 성장 할 것이다.

홈페이지 : https://medicine.donga.ac.kr/medicine/Main.do
학장실 : 240-2901
행정지원실 : 240-2903~4 FAX : 240-2971 [구덕캠퍼스]

❖ 의예과

전화 : 240-2944 [구덕캠퍼스]
홈페이지 : https://medicine.donga.ac.kr/medicine/Main.do

의예과는 의학과에 진급하기 위한 의학 전 단계 기초학문과 교양 교육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다. 본교의 의예과는 의과대학 소속으로, 의료원과 같은 구덕캠퍼스에 위치해 있어 의예과 과정 중 자연스럽게 선배 및 교수와 교류하며 일찍부터 의사상에 대해 고민하고 의사로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다.
본교 의예과 교육과정은 의학의 기초가 되는 생명과학 분야의 교육 외에도 여러 인문사회 및 인공지능 등의 미래 의료에 대비하기 위한 교과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의료인의 여러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배우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 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준비된 예비의료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 의학과

전화 : 240-2796 [구덕캠퍼스]
홈페이지 : https://medicine.donga.ac.kr/medicine/Main.do

의학과는 2년 동안의 예비 교육과정인 의예과 과정을 수료한 후, 의학과로 진급하여 4년 동안 학습하게 된다. 의학과 4년 과정 중 2년은 강의실이나 실험실에서 강의 위주의 수업이 이뤄지는데 이 기간 동안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의학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3,4학년 과정은 임상실습과정으로 강의를 통해 얻어진 이론적 지식을 임상실습을 통해 실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임상능력을 갖춘 훌륭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리 학교 의학과는 선진국의 최신 교육제도와 방법을 일찍 도입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기존의 각 과별로 강의하던 전통적 의학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장기별, 계통별로 모아서 강의하는 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5~6명과 교수 1인을 소집단으로 하여 토론식 학습을 하는 문제중심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 PBL)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의학실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써 객관 구조화 진료시험(OSCE)과 임상 수행평가(CPX)를 2004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료 및 수기문항 개발을 위해 별도로 독립된 술기실습실인 시뮬레이션센터가 있어 임상실기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센터는 학생들의 국가시험 합격률을 위해 국시원과 가장 흡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기본임상술기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은 타 대학과 비교하여 우수한 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대학

국제대학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적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범세계적 소양을 갖추고 세계 진출을 꾀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지역학)과 분과학문(인문학, 사회과학 및 ICT)의 융합적 지식을 제공하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지니고 세계 각 지역에 진출 가능한 창의적 인재상을 지닌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중국과 일본), 아세안 및 미주 지역을 망라하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및 NGO 진출을 위한 교육·연구 인프라구축을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장실 : 200-8700
행정지원실 : 200-8702~4 FAX : 200-7057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international.donga.ac.kr/international/Main.do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전화 : 200-8706, 8687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gb.donga.ac.kr/

21세기에 들어와 세계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양상을 잘 이해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위하여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출범하였다. 한국은 해외 진출과 투자를 통하여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실력을 갖춘 해외 비즈니스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학과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학과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경영경제학을 기초로 한 글로벌 경영 지식 습득, 중국과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주 지역의 경제 및 비즈니스 문화 등 글로벌 시장의 이해,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주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구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또한, 재학생들은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자매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그 곳 비즈니스 세계를 경험할 기회도 갖는다. 학과가 제공하는 마이크로 모듈, 학회활동, 기업분석 공모전, 취창업 및 어학 특강 등을 통하여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학과의 졸업생들은 공기업을 비롯하여 해외 진출 국내기업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뛰어난 어학실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외국기업에도 도전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산업분야(금융, 무역, 경영, 제조, 관광, 에너지, 환경 등)는 모두 본 학과 졸업생의 취업 목표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NGO, 대사관, 코트라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도 재학생의 향후 진출 대상이 되고 있다.

❖ 영미학과

전화 : 200-7036 FAX : 200-7057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bas.donga.ac.kr/bas/Main.do

영미학과는 영어학, 영문학, 영어교육 분야의 지식배양을 통하여 21세기 국제적 안목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알찬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시청각 기자재의 활용과 원어민 교수들의 강의를 통해 실력 있는 학생을 기른다. 그러므로 영미학은 어문학에 소질이 있으면서 동시에 영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 활동을 원하는 학생에게 적합하다. 영어에 대한 열성이 있으면 도전해 볼만한 전공이며, 어문학에 대한 적성, 관심, 배경지식을 지닌 학생이면 더욱 적합한 전공분야라고 하겠다.

❖ 중국학과

전화 : 200-8727, 7128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chinastudies.donga.ac.kr/chinastudies/Main.do

중국학과는 중국어를 기반으로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깊이 있는 학문 탐구가 이루어지는 지역학과이다. 중국 및 대만의 여러 유수 대학(인민대학, 동북사범대학, 대만정치대학 등 49개 대학)과 맺은 교환학생 프고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고급 중국어 구사능력은 물론 중국 현지를 이해하는 안목을 키우고 있다. 또한 현대 중국을 이해하고 미래의 중국을 전망할 수 있는 통찰력 제고를 위해 단계별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심화된 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중국인 유학생과 교류하는 청설()동아리, 토론 동아리, 고흥천(원어 연극)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유대 관계도 더욱 돈독히 하고 있다. 이 외에 중국 관련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국내 취업 연계 인턴십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학과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세계 속 중국의 위치를 이해하여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한 인재를 키워내는 곳이다. 수준 높은 중국어 구사능력과 중국에 관한 폭넓은 지식 및 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중국학과는 단계별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인과의 실질적인 교류·업무가 가능한 실무 능력 확보에 교육 목표를 두고 체계적인 어학수업 및 균형 잡힌 교과목 학습을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를 심도있게 이해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교강사들의 열정적인 강의,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선배들의 관심과 지원, 학부생 간의 끈끈한 유대는 중국학과의 소중한 자산이자 자부심의 토대이다.

❖ 일본학과

전화 : 200-8707 FAX : 200-7057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japan.donga.ac.kr/japan/Main.do



고도의 일본어 운용능력을 바탕으로 일본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본지역 실무 전문가를 양성한다.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문학·역사·사상 등 풍부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와세다 대학 등 일본의 38여개 자매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교환 유학생과 파견 유학생 및 장단기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어 운용능력을 조기에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함으로서 현실 응용능력을 배가하여 실무형 일본지역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다. 기본적으로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취득과 더불어 동북아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인 양성이 목표이다.

종래 어문학 중심의 일본 이해를 벗어나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군에 도전할 수 있다. 통상적인 관광레저, 무역, 조선 관련, 일본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일본어 교사, 외국주재 파견원(외교 분야, 기업, 방송국), 언론사 기자, 아나운서,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항공회사, 일본계 기업, 호텔, 번역가, 통역사, 여행사, 일본학 관련 연구소 등 다종다양한 분야에 진출 가능하며, 최근 일본 현지 취업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대학은 2021학년도에 컴퓨터공학과를 한 개의 학과에서 독립학부로 확대 개편하고 AI학과를 신설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Comput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BigData, Digital Twin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행정지원실 : 200-5821 FAX : 200-7783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software.donga.ac.kr/software/Main.do

❖ 컴퓨터공학과

전화 : 200-7776 FAX : 200-7783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computer.donga.ac.kr/computer/Main.do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보처리 시스템을 분석,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정보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교육목표는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공학실무의 기술, 방법,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컴

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처리 시스템을 설계, 개발 및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정보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 AI학과

전화 : 200-7775 FAX : 200-7783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ai.donga.ac.kr/ai/Main.do

AI학과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확률통계, 데이터과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처리 시스템을 분석,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는 체험, 경험, 실증적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창의적이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간 존중의 인공지능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교육목표는 과학지식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공학 실무의 기술, 방법,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 인공지능공학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공지능처리시스템의 개발 역량을 갖춘 인재, 효과적 의사표현 및 외국어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인간 존중의 가치관으로 4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증적,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간호대학

❖ 간호학과

학장실: 240-2690
행정지원실 : 240-2692~4, 2947 FAX : 240-2695 [구덕캠퍼스]
홈페이지 : https://nursing.donga.ac.kr/nursing/Main.do

간호학과는 지역사회의 특성, 국내·외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간호 전문직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핵심역량에 근거하여 인간존중을 실현하는 인재, 전문성이 빛나는 인재, 창의성이 충만한 인재,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재의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한 이론교육과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실습과 병원임상실습의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이론교과목과 실습교과목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며, 반복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교양대학

학장실 : 200-6430
행정지원실 : 200-6431~4 FAX : 200-6435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cge.donga.ac.kr/cge/Main.do

교양교육의 본질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교육'으로, 교양교육은 대학교육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을 함양하고 인간·사회·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며 자유민주사회에 적합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교양대학은 학생들이 비판적 문제의식과 창의적 사고력을 겸비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양교육의 궁극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중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대학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며 필수 요소이다.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교양대학은 학생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Learning-to-Be" 교양교육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교양교육 본질의 달성에 매진하는 한편,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의 추세에 따라 기초, 교양, 소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양대학은 표현력증진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컬 ·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맞춤형 첨삭지도 및 상담과 글쓰기 특강을 시행하고 있고, 인성체험증진센터를 통해서는 인성 · 창의 · 도전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과목과 연계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양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취업의 도구에서 벗어나 교양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우리 대학의 건실한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 핵심역량에 기반한 양질의 교양교육을 수행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융합대학

융합대학은 기존 학과나 전공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학문들을 접함으로써 학문 간 융합과 통섭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유전공학부와 5개의 융합전공을 두고 있다.

행정지원실 : 200-5765~7 FAX : 200-5768 [승학캠퍼스]
홈페이지 : https://convergence.donga.ac.kr/convergence/Main.do

❖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는 자기주도적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학문간 탈경계화가 진행되는 최근의 흐름에 조응하여, 신입생들이 무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한 후 1년 동안 성찰적 자기 탐색과 다양한 전공 분애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색 과정을 거친 다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자율선택 학부이다. 자유전공학부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전공선택을 위한 환경을 지원한다.

❖ 융합전공

융합전공은 2개 이상 학과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전공으로 융합형 인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학과 및 학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ICC연계교육 및 전용공간 등의 인프라 확보를 통한 실무형 교육 환경을 지원한다.

· 수소시스템 융합전공

수소시스템 융합전공은 수소경제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융복합 전공으로 신소재공학, 기계공학, 조선해양플랜트공학을 기반으로 수소 산업 시스템에 대한 다학제간 융합복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목표는 수소 산업에 활용되는 '소재-부품-시스템' 단위의 전 주기 기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스마트모빌리티 융합전공

스마트모빌리티 융합전공은 전자공학, 기계공학, AI공학, 컴퓨터공학, 건설시스템공학을 기반으로 스마트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분야 개발 역량, 스마트모빌리티 하드웨어 및 시스템 분야 개발 역량, 스마트모빌리티 시스템의 통합적 이해 및 운용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DNA(Data-Network-AI) 기술을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시스템에 접목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 바이오헬스규제과학 융합전공

바이오헬스규제과학 융합전공은 식품영양학, 건강관리학, 바이오메디컬학, 패션디자인학을 기반으로 기능성식품, 의약품, 디지털헬스케어기기, 화장품 등 규제가 필요한 바이오헬스 제품들을 위한 유효성, 안전성, 품질 및 성능 등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개발하는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헬스



제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 역량, 정밀맞춤 바이오헬스 제품 개발 역량, 지속가능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역량을 갖춘 규제과학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 AI·SW 융합전공

AI·SW 융합전공은 지역혁신 산업기반 Local Creator 양성을 위한 AI·SW 표준 기반 AI·SW 융합전공(Local AI·SW + X)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전공이며, 지역특화 Domain을 융합하는 직무중심 융합 마이크로모듈(Local AI·SW, 17개 모듈 설정)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 결과로부터 얻은 통찰력을 전공 분야에 결합하고, AI 및 SW를 활용한 문제해결력, 실무적인 사고를 증진 및 지역산업 데이터분석 및 AI 활용 역량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은 경영정보학과, 식품영양학과, 의약생명공학과, 건강관리학과 등 4개 전공과정이 융합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에서 전문적인 데이터분석가로 활동하거나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신산업으로서 헬스케어분야 전공지식의 융합적 이해는 물론 방대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고급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석당인재학부

행정지원실 : 200-8752 FAX : 200-8591
학과사무실 : 200-8590 FAX : 200-8591 [부민캠퍼스]
홈페이지 : https://seokdanghonors.donga.ac.kr/seokdanghonors/Main.do

석당인재학부는 동아대학교의 선도·대표 학부이다. 〈바름을 기본으로 창의적 도전을 품격 있게 실천하는 석당인재학부〉로서의 충실을 위해 학부구성원 모두는 교육과 인성함양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글로벌 리더로서의 인격과 전문성을 함양하는, 품격 있는 인재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독자적인 맞춤형 교육과 행정 지원시스템으로 자신의 미래를 집중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 및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공공법무 전문가 및 공공인재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로스쿨 진학 및 공기업/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학부적 특성을 더욱 더 강화한다.

본 학부에 입학하면 장학조건에 따라 A등급은 입학금 및 수업료 무료(8학기), 교재비 월 40만원(4년), B등급은 수업료 50% 감면(8학기), 교재비 월 20만원(4년)을 지원하며, A, B등급 모두 기숙사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전체 학생에게 기숙사 우선 배정(유료),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기회 우대, 전용 학습공간 제공, 본교 로스쿨 진학 시 입학성적 50%이내로 합격하면 수업료 50% 감면(6학기), 기타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국내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최고의 지원과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석당인재학부는 인문사회과학영역의 융합교육을 통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 고위공무원과 유망기업으로의 진출 및 창업 등을 도전적으로 실천하는 인재를 교육하는 최고의 특성화 학부가 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통섭력과 창의력을 갖춘 창조형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의지, 학부차원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비전제시, 학생들의 확고한 목표의식과 교수님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최고학부로서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있다.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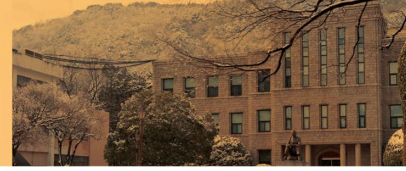
동문회

DONG-A UNIVERSITY BULLETIN

1. 동문회 회칙

2. 동문장학회 정관





1.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동아대학교 동문들의 모임을 동아대학교 총동문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소재 동아회관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간의 친목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회보 및 그 밖의 간행물 출간 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 각 과정을 졸업한 자 및 수료한 자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재적 또는 재직한 자와 사회적 덕망이 있고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따라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이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과 회비 부담 및 집회 출석의 의무를 가진다.
②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등

제8조(임원의 구성)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자문위원 약간 명
4. 위원회 위원장 약간 명
5. 이사 약간 명

6. 감사 3인
7. 사무처장 1인

제9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이 미리 지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문위원은 회무를 자문하며, 임원회의 일원으로 회무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4.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장은 별도 규정 또는 결의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5. 이사는 해당연도의 동문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6. 감사는 이 회의 회무를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여 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정기 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7.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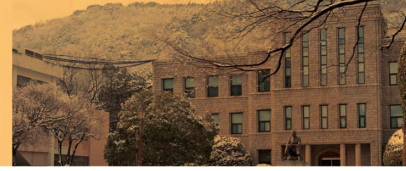
1. 회장,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 자문위원, 상임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각 위원장 등은 별도 규정 또는 결의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4. 이사는 졸업 및 수료 연도별로 약간 명을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5. 상임임원은 자문위원, 부회장, 위원장, 이사 중 회장이 위촉한다.
6.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 이 회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사회적으로 인격과 덕망이 높고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를 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은 이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자 중 약간 명을 임원회의 추대로 회장이 위촉한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회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4.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회의) 이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상임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개회는 출석 회원으로 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5.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5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이 회의 집행기관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 회의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 개회는 출석 위원으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회장 및 감사 선출
3. 이 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4. 예산안 및 결산안
5. 회비,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6. 특별회원의 승인 및 명예회원의 추대
7. 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8. 회원의 포상 및 징계
9. 사무처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 제출할 의안
11.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6조(상임임원회) 원활한 회무 집행을 위하여 회장은 임원회 대신 상임임원회를 운영하여 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 5 장 기 관

제17조(사무처) ① 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특별위원회 등) ① 이 회의 사업 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상설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이하 "특별위원회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19조(재원) 이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및 연회비
2. 임원 분담금 및 이사 회비
3. 찬조금
4. 기본재산의 과실과 사업 및 기타 수입금

제20조(회계연도)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1조(재정 관리) 이 회의 수입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22조(재정 보고) 사무처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산하 조직

제23조(산하 조직) ① 이 회는 필요에 따라 단과대학 동문회, 특수대학원 동문회, 직능별 동문회와 지부, 분회 등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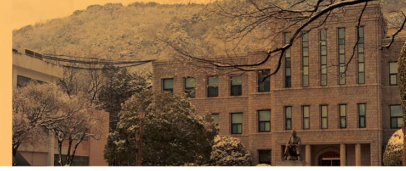
② 산하 조직은 이 회와 수시로 교류하면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자체 규약) 각 산하 조직은 이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규약과 운영 상황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상 벌

제25조(포상과 징계) ① 이 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은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상벌규정) 상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장 회칙 개정 등

제27조(회칙 개정) ①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
② 회칙 개정안은 임원회의 의결이나 회원 100명 이상의 서명 또는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28조(규정 제정) 이 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규정은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회가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른다.

제정·개정 사항

제정 1948년 7월 10일
개정 1967년 7월 25일
개정 1969년 2월 22일
개정 1971년 3월 28일
개정 1975년 3월 30일
개정 1985년 4월 28일
개정 1989년 4월 29일
개정 1998년 4월 25일
개정 1999년 4월 24일
개정 2003년 4월 26일
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12월 23일

2. 동문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동아대학교 동문회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하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 문화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동아대학교 동문장학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3-8번지 동아대학교 동문회 회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학술연구비 및 해외 연수비 지급
3. 회보의 발간 및 출판 홍보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② 제 1 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 4 조 제 1 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동아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대학원생 포함)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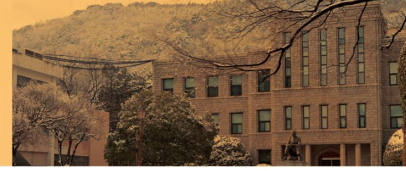
③ 수혜자의 추천규정은 다음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전학기의 소정 교과목 학점을 전부 취득한자
2. 전학기의 학업성적이 평점 3.5이상인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인 자
4. 모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 6 조 제 3 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의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행한 재산은 재평가 기준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이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등)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재산사용 및 대여 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제 3자게 무상으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인의 기

본재산에 대한 기부자외 기부조건이 있을때와 이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3인
2. 감사 2인

② 제 1 항 제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임이사) ① 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의 이사와 감사는 동아대학교 동문회 회원중에서 선임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 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전항의 이사장은 동아대학교 동문회 회장을 우선하여 선임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동아대학교 동문회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을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 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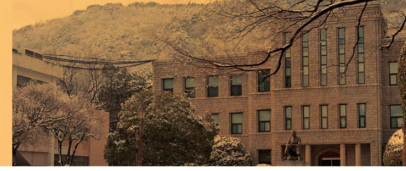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25조(자문에 응할 협의기구 설치) ①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회의 고문 및 장학위원으로서 자문에 응할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 1 항의 협의기구는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26조(사무국) 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서 정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4 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4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부산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결산공고
3.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사장	박영한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740번지 자유APT 101-1021호	4년
상임이사	김소진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405-31번지 삼익그린맨션3-1208호	2년
이사	김치곤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294번지	4년
이사	우병택	부산시 동구 초량3동 89-6번지	4년
이사	김희정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665-3번지	4년
이사	정해택	부산시 남구 광안1동 502-2번지	4년
이사	석춘재	부산시 동래구 구서2동 185-1번지 선경APT 3-1208호	4년
이사	김상현	부산시 남구 대연동 639-25번지	2년
이사	강병중	부산시 동구 초량3동 701번지	2년
이사	정종현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3-83번지	2년

직위	성명	주 소	임기
이사	강향희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20번지	2년
이사	박상국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156-18번지	2년
이사	김영희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192-3번지	2년
감사	박필룡	경남 양산군 양산읍 북부동 488-2번지	2년
감사	박병규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133번지	1년

제40조(실적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8. 6. 2. 제정
2000. 3.25. 1차 개정
2001. 6. 5. 2차 개정
2004.10.28. 3차 개정
2008. 3.17. 5차 개정
2010.11.11. 6차 개정
2012.10.31. 7차 개정
2014. 3. 3. 8차 개정
2016.10. 31. 9차 개정
2018. 4. 5. 10차 개정
2020. 4. 7. 11차 개정
2020.10.23. 12차 개정
2021. 2. 9. 13차 개정
2023. 1. 16. 14차 개정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88년 6월 2일 설립)

재산명	수 량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100,000,000원	반도투자금융(CMA)
합계		100,0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할 것.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반도투자금융		43,000,000원	43,000,000원	박영한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이정기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최찬택
동산(현금)	〃		7,000,000원	7,000,000원	김치곤
동산(현금)	〃		5,000,000원	5,000,000원	우병택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김만수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박병규
동산(현금)	〃		7,000,000원	7,000,000원	정종현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천완배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김신재
동산(현금)	〃		10,000,000원	10,000,000원	강병중
동산(현금)	〃		7,000,000원	7,000,000원	강향희
동산(현금)	〃		7,000,000원	7,000,000원	정주영
동산(현금)	〃		2,000,000원	2,000,000원	방흥석
합계			100,000,000원	100,000,000원	14명

[별지 2]

(구)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1년 2월 9일)

재산명	수 량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1,534,200,000원	
합계		1,534,2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할 것.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수협		360,000,000원	360,000,000원	정기예금
동산(현금)	부산은행		45,400,000원	45,400,000원	정기예금
동산(현금)	부산은행		243,000,000원	243,000,000원	정기예금
동산(현금)	교보생명		253,000,000원	253,000,000원	저축성보험
동산(현금)	교보생명		632,800,000원	632,800,000원	저축성보험
합계			1,534,200,000원	1,534,200,000원	

[별지 3]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3년 1월 11일 현재)

재산명	수 량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1,547,200,000원	
합계		1,547,200,000,원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할 것.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지적)	단 가	평가액	비 고
동산(현금)	부산은행		364,000,000원	364,000,000원	정기예금
동산(현금)	부산은행		894,800,000원	894,800,000원	정기예금
동산(현금)	부산은행		288,400,000원	288,400,000원	정기예금
합계			1,547,200,000원	1,547,2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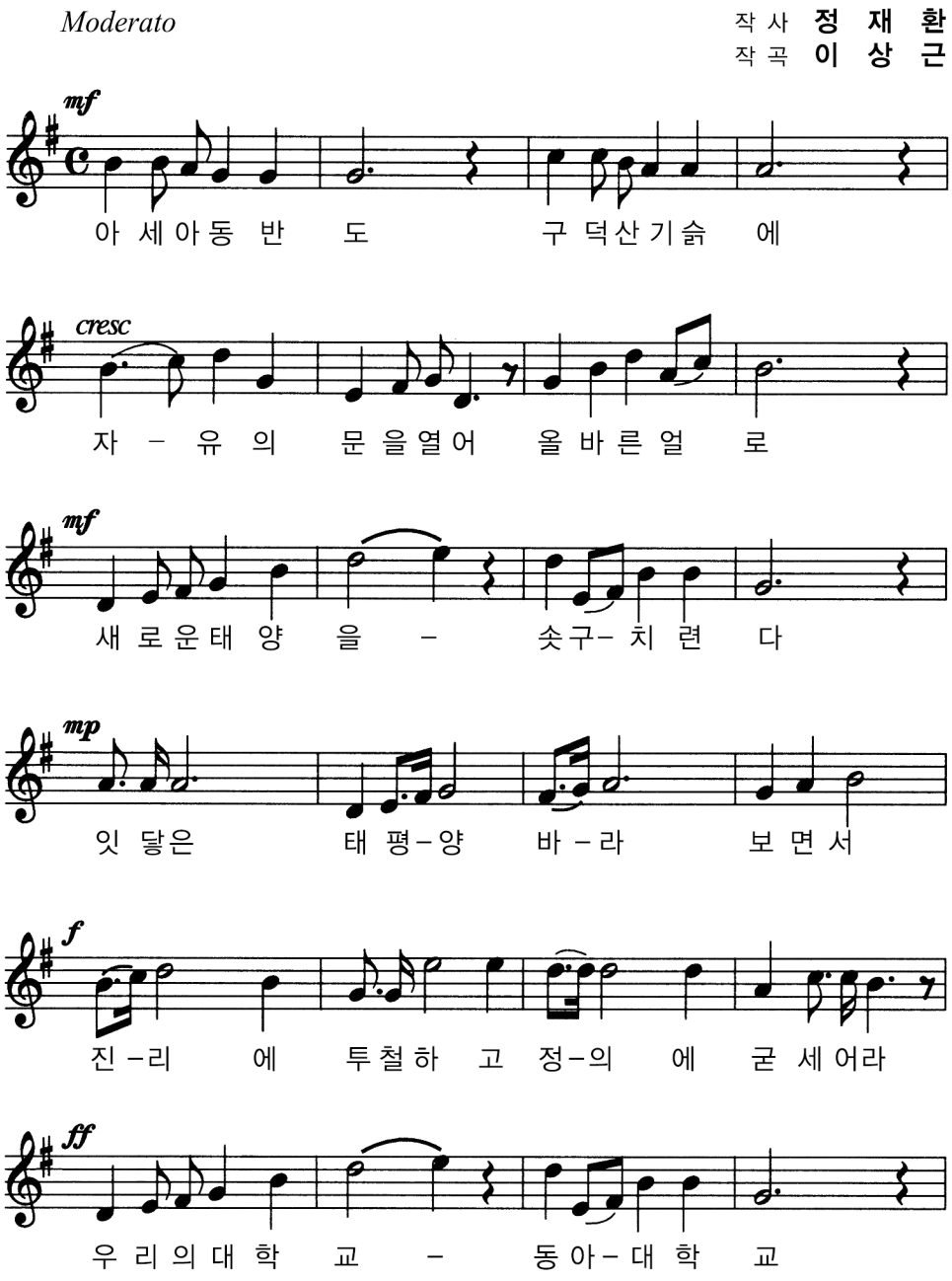
부록 VI

DONG-A UNIVERSITY BULLE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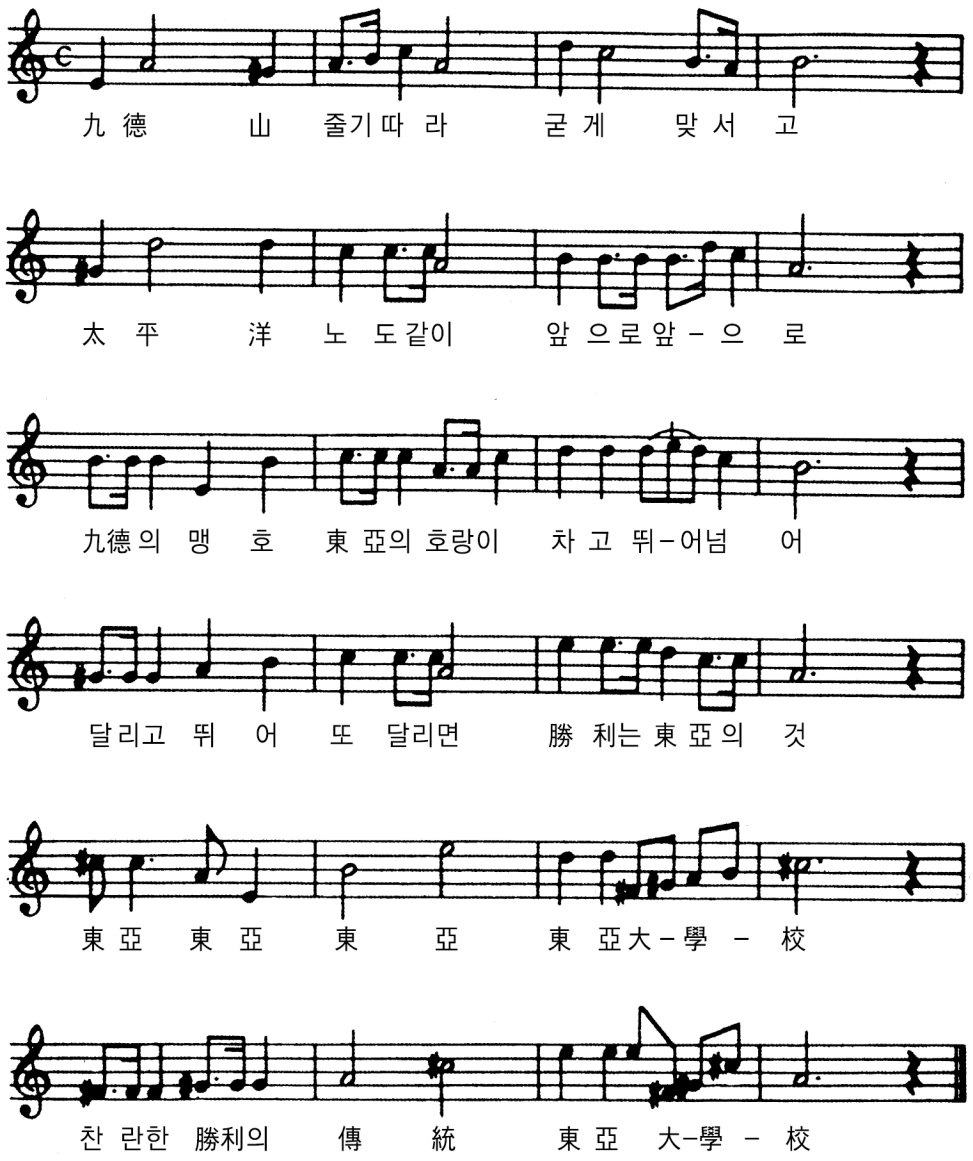
1. 교가, 응원가 Ⅰ, Ⅱ
2. 캠퍼스 안내



▸ 교가


Moderato
작 사 정 재 환
작 곡 이 상 근
mf
아 세 아 동 반 도 구 덕 산 기 슭 에
cresc
자 – 유 의 문 을 열 어 올 바 른 얼 로
mf
새 로 운 태 양 을 – 솟 구 – 치 련 다
mp
잇 닿 은 태 평 – 양 바 – 라 보 면 서
f
진 – 리 에 투 철 하 고 정 – 의 에 굳 세 어 라
ff
우 리 의 대 학 교 – 동 아 – 대 학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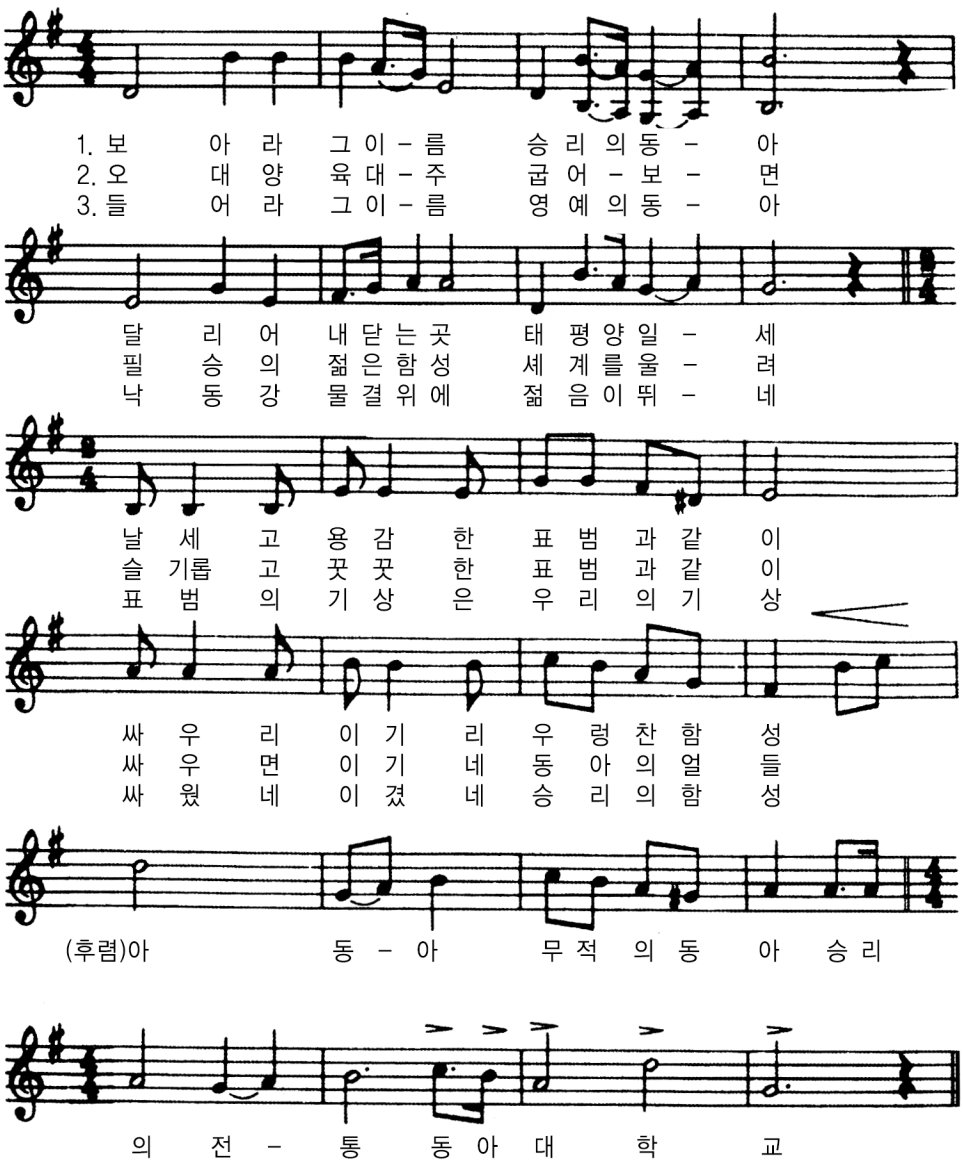
▸ 응원가 I


九德 山 줄기따라 굳게 맞서고
太平 洋 노도같이 앞으로앞-으로
九德의 맹호 東亞의 호랑이 차고 뛰-어넘어
달리고 뛰어 또 달리면 勝利는 東亞의 것
東亞 東亞 東亞 東亞大-學-校
찬란한 勝利의 傳統 東亞 大-學-校

▸ 응원가 II

작사 **정 충 효**
작곡 **권 영 철**

보통빠르게



▸ 승학캠퍼스



★.정문

S01.대학본부 및 인문과학대학(A)
S02.학생회관(Q)
S03.공과대학 1호관(P1)
S04.공과대학 2호관(P2)
S05.공과대학 3호관(P3)
S06.공과대학5호관(RS)
S07.예술체육대학 1관
S08.교수회관(W)
S09.생명자원과학대학 및 건강과학대학
S10.한림도서관(B)
S11.자연과학대학(E)
S12.공과대학 4호관(P4)
S13.창업관
S14.산학관(SM)
S15.한림생활관 승학1관
S16.학생군사교육단(DE)
S17.예술체육대학 2관
S18.예술체육대학 실습동
S19~20.한림생활관 승학2관
S31.수위실

▸ 구덕캠퍼스



★.정문

G01.석당기념관(GE)
G02.의과대학강의동(S1)
G03.의과대학(S2)
G04.의과대학기초의학동(S3)
G05.구덕강의동 1,2호관(GA)
G11.구.예술대학
G12.구.예술대학실습동
♣.동아대학교의료원
♠.심뇌혈관질환센터
◆.동아대학교의료원(신관)

▸ 부민캠퍼스



★.정문

B01.석당박물관(BM)
B02.법학전문대학원(LS)
B03.평생교육원(BE)

B04.종합강의동(BA~BD)
B05.국제관
B31.수위실

◆.한림생활관 부민관

2025

동아대학교 요람

발행일 | 2025년 6월 30일
발행처 | 동아대학교 학사관리과
인 쇄 | 씨에스디자인
(T.202-8101)
http://www.donga.ac.kr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TEL : (051)200-7000, 6114 / FAX : (051)201-5430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TEL : (051)200-7000, 6114 / FAX : (051)248-6015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TEL : (051)200-7000, 6114 / FAX : (051)240-8475

홈페이지 http://www.donga.ac.kr